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서울
2014. 4. 8.(화) 14:00~16:5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대구
2014. 4.10.(목) 14:00~16:30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부산
2014. 4.11.(금) 14:00~16:00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사)열린네트워크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광주
2014. 4.15.(화) 14:00~16:30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대전
2014. 4.23.(수) 14:00~16:00
대전 하나은행(오류동) 10층 회의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제주
2014. 4.25.(금) 14:00~16:00
탈라장애인 종합복지관 다목적실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는 4월 11일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여섯 돌이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국가의 보호대상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장애인도 인권 향유의 당당한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사회참여의 구성원이라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어떤 법률보다도 의미 있는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진정된 접수건수만 보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었던 진정사건 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95건으로 10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통신발달에 따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비해, 관련법의 한계 또는 미흡함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의 개별적 권리구제와 더불어,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성년 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등 집단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을 통해 법률·제도·관행의 개선을 도모해 왔으며,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률

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염전 사업장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올해에도 장애인의 지속적인 인권실태 파악과 권리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및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5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근절을 위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나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공감의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철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도 장애인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고 느끼게 합니다.

또한 동네마트의 높은 출입문 문턱,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홈페이지 등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으며, 법 시행 이후 작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이행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재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개선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의식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8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그러나 지금은?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도, 장애인의 삶을 보고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장애 관련 법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한 의지가 참으로 미흡하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교육률은 여전히 낮고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 및 수당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 가족의 취업알선, 정보 제공 및 기능습득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은 사회 문제화 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빈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자살사건은 우리들의 긴 한숨 속에 묻히고 맙니다. 경제적 어려움, 부양의무제도와 장애등급제도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권리의 배제, 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으로 인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삶의 벼랑 끝에 몰려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여성분들이 하루에 5명 가까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료적이고 보

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름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위한 조사와 시정권고의 기능에 제한되어 있고, 변함없이 진정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고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7193건의 장애차별 진정이 접수되었으나 각하된 건이 3413건, 기각된 건이 2741건으로 대다수의 차별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권고 외에 실효성이 확보되는 다른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장애인이 살만한 동네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장애인도 동등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이나 건물에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가요?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막고 있는 차별적 선거 환경,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에서의 인권 유린,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차별은 이미 고착화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 차별,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규정 및 강제치료,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권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만한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아무렇지 않게 어울려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환경을 만들려면 장애를 바라보는 의식과 시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동네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속적인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시혜와 동정의 관점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을 수립하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기업, 일반 국민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대해 심사를 받는 해입니다.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한민국에서 장애의 개념이 바로서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차별행위가 사라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변 경 택**

목 차

Contents

서울

- ▶▶ 당사자발언 1
 - 한눈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3
 - 박대욱

- ▶▶ 당사자발언 2
 - 청각장애인으로서 영화관람의 문제점과 제언 7
 -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 ▶▶ 당사자발언 3
 -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 한소네 사용에 대한 당위성 15
 - 서인호·조은산 (서울맹학교 재학생)

- ▶▶ 발제 1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 23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 발제 2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39
 -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본 성과와 평가 95

-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발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과제 119

- 배용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발제 5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안 131

-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147

-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광 주

▶▶ 발제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원칙과 국내·외 기준 187

- 권미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 발제 2

광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195

- 황현철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 토론 1

장애인 자립생활 법·제도 분석 213

-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 토론 2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활동지원 확대 과제 223

- 김대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토론 3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229

- 박찬동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인권팀장)

▶▶ 토론 4

자립생활 저해요인 및 우선적 지원과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243

- 황은영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대전

▶▶ 발제 1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 조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쟁점과 과제 255

-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2

장차법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선거권을 중심으로 273

-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89

- 이현수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토론 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307

-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 토론 2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중심으로 327

- 이영옥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 토론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333

- 김선태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 토론 4

장애인 선거권자 선거참여 편의제공 방안 339

- 김영영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담당관)

▶▶ 토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 방안 345

- 윤석연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

대구

▶▶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약속, 인권조례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355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인권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371

-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팀 활동가)

▶▶ 공부도 인권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계획 385

- 정경렬 (대구광역시남부교육교육청 장학사)

경험으로 말하는 장애인 교육 현실 391

- 도숙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 장애인 유권자가 말하는 6·4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점검 397

- 은종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장애인 참정권! 내 것인 권리가 주는 불편함 411

-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참고자료] 장애인선거권자의 선거참정권 보장·지원 대책(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423

부 산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439

-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443

-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 **발제 2**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459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2**

장애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475

- 신수현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 **발제 3**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현실과 제언- 485

-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토론 3**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497

- 이흥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토론 4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 현황 및 성과 511
 •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제 주

▶▶ 발제 1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의 배경 및 과제 519
 •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토론 1

당사자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지역 장애인관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539
 • 고은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 토론 2

해외 선진국의 장애인 관광현황 및 정책 547
 • 문성종 (한라대학 교수)

▶▶ 토론 3

농아인 관광의 현주소 557
 • 배우리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팀장)

▶▶ 토론 4

발달장애인 제주지역 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569
 •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토론 5

제주지역 장애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 577
 • 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토론회 일정

서 울

- 일시 및 장소 : 2014. 4. 8(화) 14: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사회 :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 좌장 :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당사자 발언	❖ 개회선언	14:00~14:05
	❖ [기념사]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
	❖ [축 사]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14:10~14:15
	❖ [축 사]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14:15~14:20
	[당사자발언1] 한눈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박대욱	14:20~14:30
	[당사자발언2] 청각장애인으로서 영화관람의 문제점과 제언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14:30~14:40
	[당사자발언3]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 한소네 사용에 대한 당위성 서인호·조은산 (서울맹학교 재학생)	14:40~14:50
	휴 식	14:50~15:00
발제 및 토론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5:00~15:15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5:15~15:30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본 성과와 평가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5:30~15:45
	[발제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과제 배용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15:45~16:00
	[발제5]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안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16:00~16:15
	[발제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박중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16:15~16:30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30~16:50
	폐 회	16:50

2014. 4. 8. _ 서 울

[당사자발언 1] 한눈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박대욱

[당사자발언 2] 청각장애인으로서 영화관람의 문제점과 제언

-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당사자발언 3]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 한소네 사용에 대한 당위성

- 서인호·조은산 (서울맹학교 재학생)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본 성과와 평가

-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발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과제

- 배용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발제 5]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안

-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 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 박중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당사자발언 1

한눈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박대욱

한눈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박대욱

시각장애 6급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한쪽 눈을 다쳐서,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학교생활이나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제 눈의 장애를 결정적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에 갔을 때 왼쪽 눈이 안보이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 취득은 가능하지만,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 눈이 안보인다고 해서 운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는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9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의 크기와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2종으로도 4톤 트럭까지는 운전할 수 있는데 확인해보았더니 똑같은 4톤 트럭도 영업용만 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차를 영업만 못하게 하면 결국 무엇을 위해 면허를 주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직업만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 입니다, 교회 승합차를 이용해 신도분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9인승 승합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1인승을 운전해야하는 저는 목사의 양심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도 2년전 법개정을 통해서 1종까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7~8년전

부터 청와대와 인권위 등에 민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에 시각장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국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소원 판결에 안과의사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없어서 운전면허 취득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었고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청 등에 면담도 요청하고, 문제제기도 했지만, 결국 법을 바꾸지 않고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법개정 활동을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많은 사례자분들을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법안을 만들어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법안에 대한 상황을 확인했더니 경찰청 등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비장애인의 생각으로 선입견을 갖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는 이후에 법안통과를 위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꼭 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도 가능한 사람을 차별하는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당사자발언 2

청각장애인으로서 영화관람의 문제점과 제언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영화관람의 문제점과 제언

■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1. 들어가며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는데 필요한 기관 일부 또는 모두에 사고나 질병, 약물, 유전 등에 의해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에 장애가 생기면 경우에 따라 평형기능장애나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를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장애 부위에 따라 ‘전음성 난청’과 ‘감음성난청’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음성난청은 전음기관(외이도, 고막, 중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하며, 감음성난청은 내이(속귀)인 달팽이관에서부터 대뇌피질의 청각 중추에 이르는 곳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청력 상실 정도가 가벼운 정도에서 약간 심한 정도를 전음성난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난청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청력 상실정도가 80dB 정도인 사람까지를 난청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음성난청이 있는 사람을 농인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농인은 대체적으로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dB 이상을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난청의 형태와 원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적용 대상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적으로 전음성난청과 감음성 난청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청각장애인과 영화관람

앞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장황하게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다고 영화를 보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음성난청인 가운데 (특히 나이가 많은 수록) 수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 영화의 경우도 수화로 전달해주면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전음성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 집단형 보청기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하면 불편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영화를 보는데 수화통역, 자막, 보청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장애 정도와 의사소통의 양식에 따라 필요 정도는 달라집니다. 다만,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제외하고 극영화 등에서는 수화통역 제공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수화통역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각장애인에게 영화를 보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자막과 보청시스템이며, 여기에 영화관 안에서 정보나 의사소통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하고, 비상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건광등을 비롯한 비상장치도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상태나 욕구를 반영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막, 보청시스템, 안내서비스, 비상인지 시스템 등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영화의 경우 수화통역은커녕 자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년에 한편 정도 그것도 자막이 들어있는 외화를 볼까말까 했습니다. 젊을 때 영화를 본 것이 몇 편이 안 됩니다. 영화는 저에게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초 한국농아인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농아인협회에 근무하던 직원 '김철환'에 의해 '장애인영화제' 행사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장애인영화제 행사장에서는 물론 일반극장에서 자막영화가 상영될 때면 가끔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보니 이제는 영화를 보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만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나 후배들인 청각장애인들은 한국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현재의 영화관람 정책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권리가 아닌 시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1>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5항에 영화관람 관련 조항이 있지만 임의(任意)조항이라 영화제작업자나 배급업자는 물론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죽은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150여편의 한국영화가 1년에 상영되는데 자막이 있는 영화는 14편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자막상영은 대부분 낮 시간에, 주중에 이루어집니다. 몇 년 전 1년에 7편 정도인 자막영화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의하여 내년(2015)부터 영화관사업자에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을 하지만 300석 이상 극상영관에만 적용할 한다는 것입니다. 300석 이상 영화관은 전국 극장의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어도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영화관련 조항

조 항	조 문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p>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다.</p>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다행인 것은 <표 2>와 같이 지난 해(20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한국영화 상영 전용일 경우 장애인을 관람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장애인 관람을 위한 편의제공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시행될 때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라 크게 효과가 없는 법률입니다.

〈표 2〉 영비법에서 최근 개정된 내용

조 항	조 문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서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다양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화관 내 보청시스템 마련입니다. 청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르신 등 난청인들이 편히 영화의 음향을 감상하려면 보청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영화관의 상영관에 화재 등 비상시 상황을 빛 등으로 알려주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향후 정책에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화관마다 장애인 할인을 해주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할인표를 받아야합니다. 번거로움을 넘어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야 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영화를 봐야 합니다. 넷째는 수화통역 등 영화관 내 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나와 있을 것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단체의 차별진정에 대하여 조사 중인 영화 상영관의 화재 등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문제, 영화관 창구에서만 할인표를 발급받도록 하는 문제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에 공유해 주십시오.

3. 제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면 첫째,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하여 자막상영이 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물론 영비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영화관의 상영관 안에 보청시스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근거를 명확히 해서 이를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를 인지하는 비상등이 영화 관람석 안은 물론 통로로 연결되는 지점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화통역 등 안내서비스 조항은 편의증진법에도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인 할인의 경우 창구에서의 할인이 아닌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영화 관련업체들이 양보하고 공익차원에서 나서주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십시오. 저도 제가 몸담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단체를 통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하지만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각장애인, 더 나아가 영화를 관람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이해하시어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영화 관계자 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당사자발언 3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 한소네 사용에 대한 당위성

서인호·조은산
(서울맹학교 재학생)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 한소네 사용에 대한 당위성

Ⅰ 서인호·조은산 (서울맹학교 재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월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예비고2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저 역시 내년 연말이 되면 다른 일반 고등학생과 함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겠지요?

앞서 현 수능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증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소네(점자정보단말기)가 무엇인지, 이 한소네가 수능 시험에서 저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수능시험에 도입되었을 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한소네가 무엇이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소네의 기능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테블릿PC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문서작업은 물론, WiFi와 같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웹서핑, 소셜네트워크, 메신저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를 이용한 파일 전송, GPS를 이용한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영한 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 계산기, 녹음기, 라디오, 달력, 알람, 시간확인, 점자학습과 같은 부가적인 보조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테블릿PC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입력방식이 터치 방식이 아닌 6점 점자를 이용한 물리적 키보드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화면 내용이 제품 하단의 점자 디스플레이로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점자는 한 칸에 최대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이용하여 한글, 영어, 수학기호 등 수많은 문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소네는 이러한 점자를 한 줄에 최대 32칸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한소네 찍은 동영상 틀면 좋을거 같아요.)

또한, hwp, pdf, txt, doc 와 같은 일반적인 문서 포맷 이외에 brl, brf 와 같은 점자문서 포맷을 지원합니다.



(사진: 험스인터네셔널 홈페이지)

한소네

실제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학습, 독서, 여가 등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소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작성한 파일을 한소네로 읽어드리면 파일의 텍스트 내용이 곧바로 점자디스플레이로 출력되어 다른 작업 없이 파일의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 집합, 원소, 행렬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수학기호들은 한소네에서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는 점자문서를 사용하여 점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점자문서는 텍스트 내용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점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한소네가 어떤 기계인지 잘 이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이 한소네가 수능 시험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왜 필요한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경우 크게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 제2외국어영역의 다섯 영역으로 나뉩니다. 탐구영역은 학생에 따라 응시하는 시험이 다르고 제2외국어는 응시하는 학생도 있고 응시하지 않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어영역을 생각해 볼까요?

[32 ~ 33] <보기>는 '[가], [나], [다]' 텔레비전에 대한 어느 소비자의 '속성 만족도 -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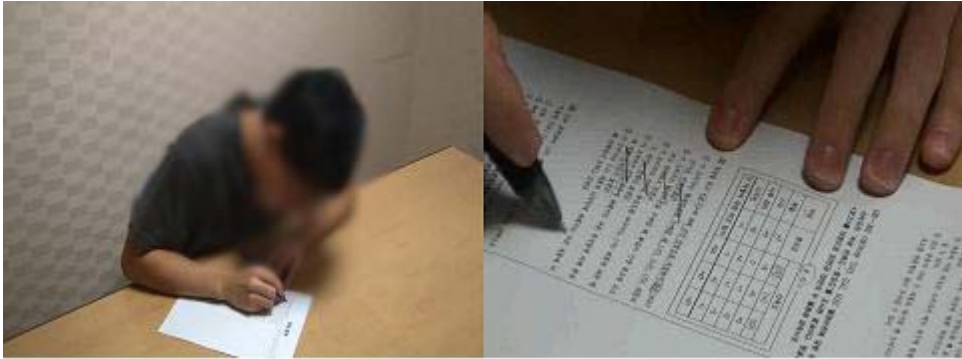
〈 보 기 〉

속성	중요도	만족도		
		[가]	[나]	[다]
화질	+7	+5	+5	+5
가격	+5	0	+1	+2
사후 관리	+5	+4	+1	-3
디자인	+1	-1	+2	+1
각 제품에 대한 태도 점수		+54	+47	+31

32.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가], [나], [다] 제품의 순서로 선호하겠군.
- ②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화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겠군.
- ③ 이 소비자가 가격의 중요도를 바꾸어도 [가] 제품에 대한 태도 점수는 변화가 없겠군.
- ④ 이 소비자는 [가]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속성들에 비해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군.
- ⑤ 이 소비자는 [나]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겠군.

2013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31~33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지문에 나와 있는 공식과 표를 이용하면 결코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 수능제도에서 시각장애 응시생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점자 시험지로 지문만 세 페이지인데다 문제까지 합하면 6페이지에 달합니다. 비장애 학생의 경우 지문에 보기 좋게 밑줄을 긋는다던가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학생이 한소네로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소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문서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에 밑줄을 긋는다던가 간단한 메모가 가능합니다.



비장애학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모습(좌), 위 학생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작성한 밀줄과 메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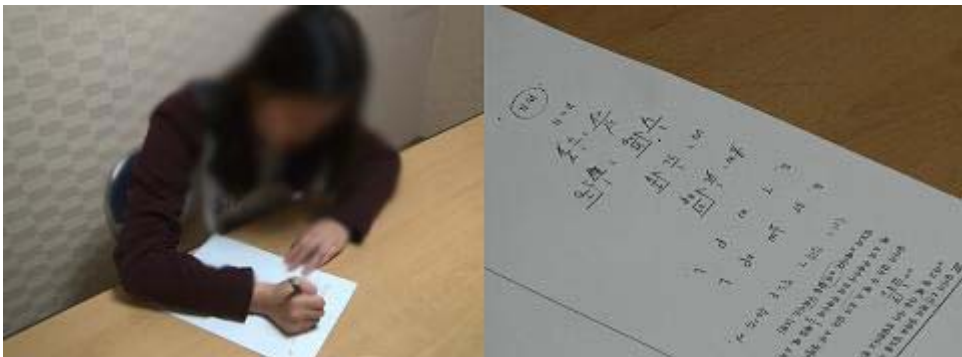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학 영역입니다.

27. 길이가 L 인 현의 장력과 밀도를 각각 T, ρ 라 하고 주파수를 ω 라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omega = \frac{1}{2L} \sqrt{\frac{T}{\rho}}$$

길이가 같은 두 현 A, B가 있다. A의 장력이 B의 장력의 3배, A의 주파수가 B의 주파수의 $\frac{1}{2}$ 배일 때,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n 배이다. n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역시 2013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27번 문제입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주어진 식을 대입하여 비교하는 문제로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안인 학생의 경우 두 식의 계산과정을 필산, 비교하여 쉽게 해결합니다.



비장애학생이 문제를 푸는 모습(좌), 위 학생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산과정(우)

반면에 시각장애인 학생은 서로 다른 두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두 식을 머리 속으로 동시에 생각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학생이 한소네를 이용한다면 정안인 학생처럼 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영역입니다. 영어영역의 경우 듣기와 독해 부분으로 나뉘는데, 독해 영역 보다는 듣기 영역에서 한소네가 필요합니다. 듣기 파트에서 수험생은 듣기 지문을 한 번만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험생은 내용 일치/불일치, 돈계산 문제 등 듣기에서 스크립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지문의 일부 내용을 받아 쓰는 등 메모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수험생은 듣기 스크립트의 내용을 받아쓴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기억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소네를 이용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한소네를 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험생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수험생은 비장애인 학생보다 약 1.7배의 연장시간을 받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내용의 지문을 점자로 읽었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7배라는 연구결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소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소네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무선인터넷과 라디오 기능은 부정행위의 소재를 제공하기 딱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한소네에 ‘수험용 한소네’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험용 한소네는 국가공인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소네에 설치하면 파일관리, 문서작업, 미디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이 사라집니다. 문서작업 또한 hwp, txt, doc 등 일반적인 파일은 보이지 않고 brl, brf와 같은 점자문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점자판으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공개된 이후부터는 한소네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수능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앞으로 약간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점역교정 자격증 시험과 같은 사례가 있기에 이 프로그램을 응용한다면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공인인증 자격증시험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와 적용문제

Ⅰ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 들어가는 말-법의 시간도 이미 6년이 흘렀다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장애계가 함께 모여 법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첫걸음이 시작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그 첫걸음을 시작으로 많은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지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2006년 그동안 만들어진 내용들이 담겨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3개 당이 본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렇게 4년여의 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결국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로 제정 공포되고, 2008년 4월 11일 처음으로 장애인의 삶속으로 한걸음 들어와 시행의 첫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모든 법은 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시대의 어려움을 담아내며, 그 법을 적용받게 될 대상에 대해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이전부터 오랜시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6년여의 시간을 함께해왔다.

하루가 다르게 생활속의 기기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가 변화하며, 사회적인 이슈 또한 매일매일 모습을 달리하는 상황속에서 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법의 시행이 6년동안 큰 틀의 개정없이 흘러왔다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시대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7년 장애인 스스로도 대응의 근거를 찾지 못했던 차별의 종류를 처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규정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두었던 때는 이미 지났다.

2014년의 장애인은 모바일과 웹 접근성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영화와 체육 등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받기를 원하며, 예전에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를 준비한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요청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뿐 아니라 시설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권리구제의 방식 또한 인권위 진정도 어려워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처벌을 요청하고 있어, 차별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 방안을 찾아 주기를 원하고 있다.

2. 2013년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분석-상담은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의 요구는 장애인차별상담을 통해 접수되는 사례의 양상과 내담자들의 요구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평지)'를 통해 접수되는 상담은 한달 평균 10~15건이며, 차별의 유형과 상황 그리고 내담자의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하다.

2013년 평지 상담분석보고대회 자료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의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관련한 차별유형은 ▲무임금 노동착취, ▲학교에서의 괴롭힘, 폭행, ▲성폭행 ▲시설이용 시에 출입거부, ▲보험가입 거부, ▲수업에서의 정당한편의 미제공,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안함 등,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겪는 직접차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_경찰조사시 신뢰관계동석자 또는 의사소통조력인 미배치에 대한 상담은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어왔던 조항이 장애인당사자의 권

리의식 향상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영역별로는 재화용역(28%)과 괴롭힘(23%)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재화용역영역에서는 문화예술체육(12%)과 관련한 내용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여가생활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실제 생활에 반영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차별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차별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도 가장 큰 비중(2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괴롭힘 상황자체의 증가라기 보다는 괴롭힘을 당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인식이 더 이상 참고 지나가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같은 당사자의 권리의식의 변화는 상담대응방법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년동안 총 8건의 소송과 5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어 차별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또한 형사사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사기간이 길고 강제력이 약한 인권위진정에 대한 내담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절차나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사례를 통해 시대를 본다

법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변화해야만 사문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법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담아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과 욕구를 장애인의 삶의 차별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1) 개별적인 사안에 맞춘 구체적 정당한 편의

일괄적이고 단순하게 제공되던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춘 세밀한 편의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도 15개의 장애유형에 일괄적으로 맞춰진 편의가 아닌 양손장애의 인적지원사례처럼 다양한 유형별 고려가 필요할 때이다.

○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특수교사의 근로지원 신청 거부

2013년 4월 특수교사로 임용된 이모교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수업진행시 업무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근로지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했지만 교사는 공무원이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였다.

사례개요 : 장애인 교사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임용자체의 거부에 대한 문제와 이후 학교내에서의 업무분장에 대한 불이익이나 배제 등의 문제가 주요한 장애차별상당 사례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를 가진 교사의 임용이 늘어나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사례진행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대법원 1996. 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경우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로자로 보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두손장애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인적지원 거부

양손장애가 있는 1급 뇌병변장애인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 실기2급 시험>에 응시 1차 필기시험은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2차 실기시험에서 두손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조작하여야하는 시험특성 때문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대한 상공회의소에

추후 시험을 재응시할 경우 보조인력과 추가시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이 구두로 지시하면 보조인력이 컴퓨터 작업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식을 진행해주시기를 요청.

이에 대해 <장애 유형별로 시험시간을 임의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수험자 이외의 타인이 입력작업 등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수험자와 대리로 입력작업을 수행하는 보조자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즉,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운영함에 있어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바,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부 응시자에 대해 시행방법을 변경하거

나 시험시간을 임의로 증한하여 우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시험의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례개요 : 최근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시험에 응시하여 비장애인들과 사회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당사자들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시험관리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대응을 위한 근거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위의 사례의 경우 양손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험에 차별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사례진행 : 위 사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 12월 최동익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요청하였다.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2 (시험관리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시험관리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시험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응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1) 법안 희망법의 김재왕변호사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작성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시·청각 장애인의 응시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4. 시험시간의 연장

5. 그 밖에 장애인의 응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의 시험관리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의 요청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2) 보조기구 및 기기발달에 따른 법적용 확대

장애인 보조기구의 발달과 컴퓨터와 핸드폰의 보급으로 정보접근에 대한 장애인의 새로운 인식이 구축되며 그에 따른 장애인 차별 상황 발생 및 해소를 위한 법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시각장애학생의 수능시험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요구

수능시험 응시에정인 전맹시각장애학생들이 현재 수능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로 제공되고 있는 점자문제지와 녹음테이프 및 1.7배의 시험시간 연장 제공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생들은 어린시절부터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모의고사 및 수능시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례개요 :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의 참여가 미비했던 수능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응시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애유형별 편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많은 보조기구들이 새롭게 개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전 세대에서 활용되어 오던 보조기구가 대체기구의 개발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같은 장애유형의 경우에도 세대별로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유형이 달라 모든 장애유형

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고 세밀한 보조기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사례진행 :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부터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스크린리더기의 사용 허용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점자정보단말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웹 접근성 확보-시각장애인 웹 접근시 응답시간 조절 요청**

은행의 웹 사이트에 접근한 전맹시각장애인이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던 중 콘텐츠의 응답시간 조절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어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쇼핑물의 상품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례개요 : 정보접근에 있어서 컴퓨터의 보급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웹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웹 콘텐츠의 접근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 및 관련기기의 발달 및 개발에 따라 각 기기와 시스템에 대한 장애유형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시행령 제14조의 내용에 대한 개정을 통해 기기의 확대와 편의제공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례진행 : 세밀한 규정을 위한 개정법안을 마련했지만, 개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련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시기를 검토중이다.

[제안중인 시행령 개정법안 일부]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모바일 웹,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3)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참여 증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나가는 기본 생활방식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증가에 따라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등 자신의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의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 영화관람권 확보-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요청

청각장애인이 한국영화를 관람하고 싶지만, 자막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상담의뢰자는 도가니 영화가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볼수가 없었으며, 다른 청각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로여서 항상 외국영화만 봐야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례개요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극장에 대한 적용기준은 2015년부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극장이 멀티플렉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실제 100~150석 정도의 규모로 2015년이 되어도 장차법의 적용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화·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상영 전용관에 대한 지원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례진행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기준의 좌석규모 축소와 함께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행시기의 단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화,자막,화면해설 등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상영일수를 현실적으로 규정에 대한 추가조항을 통해 장애인의 영화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 체육시설에서 차별-시각장애인의 요가프로그램 인적지원거절

시각장애인 여성이 00구 스포츠센터의 요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정당한 편의로 보조인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보호자동반시에 한해서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례개요 : 장애인당사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설 이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등은 프로그램 참여를 표면적으
 로는 제한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실제 참여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진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장애인차별 시정
 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1월 피고측이 원고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께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종결되었다.

[조정내용]

- a.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프로그램제공 - 피고측은 원고가 차별받았던 요
 가, 헬스프로그램에 국한, 전 프로그램 참여시 보조인력제공의 어려움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주장. 원고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샴
 위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보조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 b.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점자자료제공 - 피고측은, 웹사이트 홈페이지
 비용이 7천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함(제공시기: 2014년 12월), 점자자료는 향후 시각장
 애인과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서 제작, 배포하는 방식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조정함(제작완료: 2014년 6월 30일까지)
- c. 요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필요한 보조인력제공: 원고측이 하려고 했던 요가, 헬
 스프로그램에 참여시 탈의실, 샴위실 등 이용에 있어서 여성보조인력 1인 제공을 하기로
 함(제공시기: 2014년 1월 1일)

** 조정내용에는 도시관리공단이 미이행시, ‘피고들은 (가)항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
 로’ 조항을 명시하겠다고 재판장이 얘기했고, 원고측은 피고측이 미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킴.

4) 상충법률 개정을 통한 법 실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상충법률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운전면허 취득 차별-시각장애6급 1종 운전면허 취득 불가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한쪽 눈을 다쳐서 좌안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 6급 장애인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본인의 직업인 교회목사 직분상 교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11인승 차량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교회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되어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례개요 : 현행법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의 경우 양쪽 눈의 시력을 각각 측정하고 있어 한눈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취득을 근본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1종 대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 및 2종 면허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입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차량의 크기나 운전의 방식이 2종 보통면허에서 허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별 상황을 해소하려고 한다.

사례진행 : 2013년 8월 진선미의원실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²⁾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항의 3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 삭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1항 1호 가. 제1종 운전면허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9 이상이어야 한다(제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제외)' 추가

4.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제는 바뀌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당사자들은 장애를 이유로 배제,제한, 분리, 거부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차별금지에 대한 요구에서 이제는 한차원 높은 적극적인 차별 해소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2) 법안의 내용은 김예원변호사가 작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첫 논의가 있던 2003년과 2014년은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졌으며, 장애인당사자가 나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고 확인하고 제공받기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장구의 개발로 실제 장애인당사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당한 편의의 종류와 수도 매우 확대되었다. 물론 이 모든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대에 맞는 새 옷을 갈아입고 더 큰 변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에 몇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다양한 차별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규정의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세부적인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제시해야 할 경우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기기나 차별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되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추가 또는 새로운 차별상황 중 반드시 명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용에 있어서 강제노역이나 임금착취 등의 적극적인 차별조항 필요
- 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추가 필요
-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배리어프리 상영일수에 대한 조항 필요
- 웹, 모바일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내용 추가
- 기타 필요한 사항 검토 필요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중 발달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상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에 대한 규정은 세밀하게 명분화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 등 관련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와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차별의 대표적 공간인 복지시설에 대한 조항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간인 복지시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너무나 미약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권리의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의 차별이 많은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반면 시설에서의 차별 및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그 내용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범주에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니터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관련기관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진행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의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

○ 실제 권리구제를 위한 벌칙조항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역할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제4조의 차별행위’에 있어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차별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있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 차별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 또한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빠른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 ▶ **법무부**의 시정명령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단 두 건만 이루어져 시정명령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 조항이 되어가고 있다.
- ▶ **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시행 이후 단 한건의 구제청구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구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의 부재와 관련 국가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속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 차별이 시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무엇보다 시급하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리구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5. 맺는말-시대를 비추는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정말 큰 힘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법을 통해 실제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상황을 구제할 수 없을 때 법의 무력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차별을 금지하는 최초의 법으로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고 위대하며 6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성장해왔다.

이 법을 근거로 상충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장애인의 삶에서 차별이라는 근본적인 위해요소를 조금씩이라도 지워나갈 수 있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조항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결국 국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이 만들어질 당시와는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장애인보장구의 다양성과 편리성이 높아졌으며, 장애인의 권리의식 또한 세월이 흐르며 진일보해왔다. 하지만, 점점 상담을 통해 요청받는 상황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많은 한계를 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체계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연구를 통해 전면적인 재개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바꿔내고, 제정 당시 담기 어려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어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법은 탄생하고 변화하며 시대와 발을 맞추고, 그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라지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대를 비추는 장애인의 법으로 재탄생하여 장애인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기대해본다.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발제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 들어가며

2014. 4. 11.은 장애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6주년을 맞이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3년말까지 총 6,540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접수되었고, 그 중 위원회 조사대상이 된 사건은 3,181건이었다.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사건은 319건, 조사중 해결된 사건은 1,709건, 합의종결된 사건은 245건으로, 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중 2,268건(71.1%)의 차별시정이 이루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일상생활 도처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처리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살펴보면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일정 직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권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과 위배되는 상충법률이 존재한다는 점 ▲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과거 오래전에 제정된 세부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동안의 사회·문화적, 기술적 급속한 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5.) 이후 2013.12.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은 총 16,589건으로, 이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7,193건인 전체 차별사건의 43.4%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11.) 이전 15.3%였던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비중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6년간 평균 53.1%로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 제고와 신장에 큰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조).

〈표 1〉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 2013.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3. 12.	진정건수	16,589	9,396	7,193
		비율(%)	100.0	56.6	43.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2008. 4. 11.~ 2013. 12.	진정건수	12,320	5,780	6,540
		비율(%)	100.0	46.9	53.1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1	1,182	1,309
		비율(%)	100.0	47.5	52.5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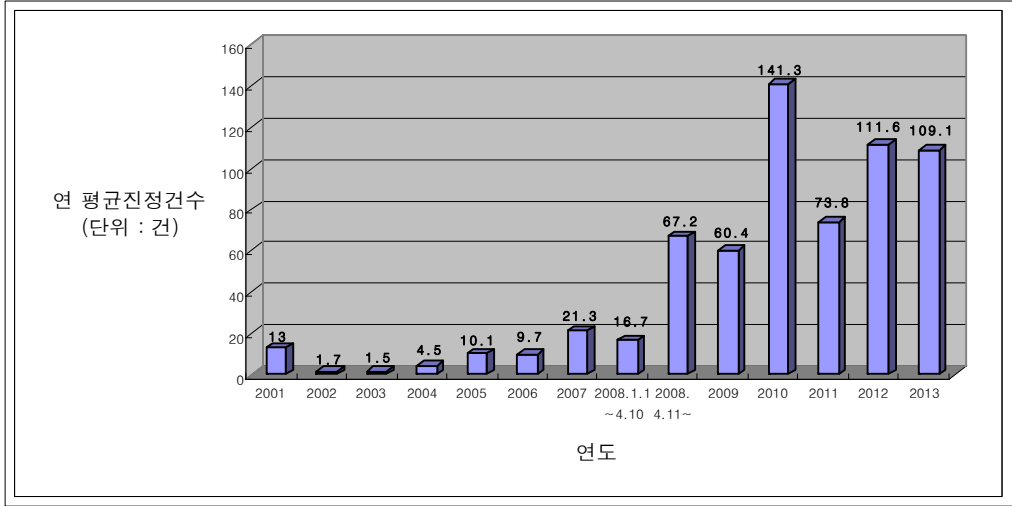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10배 이상 증가

200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7,193건이며, 그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6,540건이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 접수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는 월 평균 95.2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이후 10배 이상 사건 수가 증가하였다.(<표 5> 참조).

<표 2>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3.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합계	2001 (11 ~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1 ~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7,193	13	20	18	54	121	116	256	55	585	725	1,695	886	1,340	1,309
	월평균	49.6	13	1.7	1.5	4.5	10.1	9.7	21.3	16.7	67.2	60.4	141.3	73.8	111.6	109.1



[그림 1] 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3.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지체장애관련 진정사건이 전체사건의 3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체 장애인이 2,033건(31.1%), 시각장애인이 1,238건(18.9%), 지적·발달장애인이 840건(12.8%), 청각장애인이 831건(12.7%), 뇌병변장애인이 455건(7.0%),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818건(12.5%) 순으로, 지체장애인과 관련한 사건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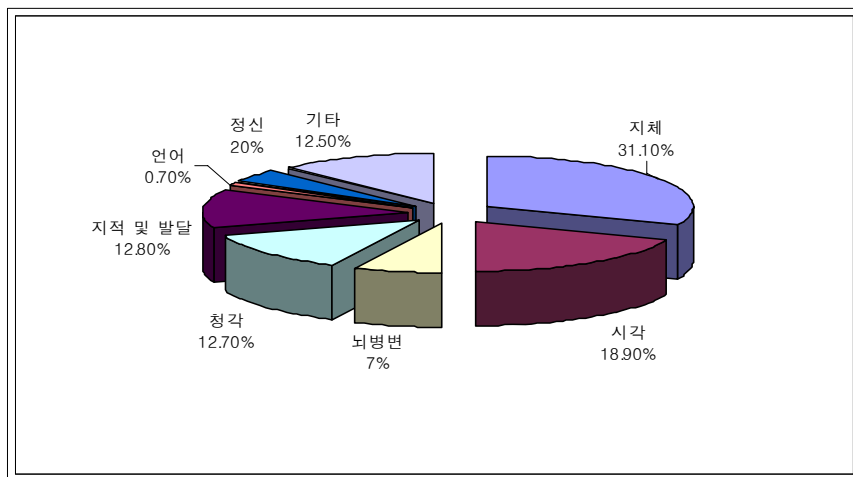
<표 3>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3.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및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6,540	2,033	1,238	455	831	840	48	277	818
	비율	100.0	31.1	18.9	7.0	12.7	12.8	0.7	4.2	12.5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4.9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및 발달	언어	정신	기타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5	8.1	24.2	0.9	5.4	5.4
2012	건수	1,339	492	192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3	6.5	10.6	17.3	1.0	3.5	10.1
2013	건수	1,309	376	300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8.7	22.9	5.4	19.2	8.8	0.5	3.8	10.6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 (천명)	2,511	1,322	252	258	259	190	18	95	117
	비율	100.0	52.6	10.0	10.3	10.3	7.6	0.7	3.8	4.7

한편, 전체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52.6%, 뇌병변장애인 10.3%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위원회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지체장애인 31.1%, 뇌병변 장애인 7.0%로 오히려 실제 구성비 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각, 청각, 지적 및 발달장애, 정신장애 관련 사건은 등록장애인 구성비(31.8%)와 비교해 볼때 보다 많은 비중으로 접수(48.6%) 되었다.



[그림 2] 장애유형별 사건접수 현황(2008.4.11.~2013.12.31)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2. 12.(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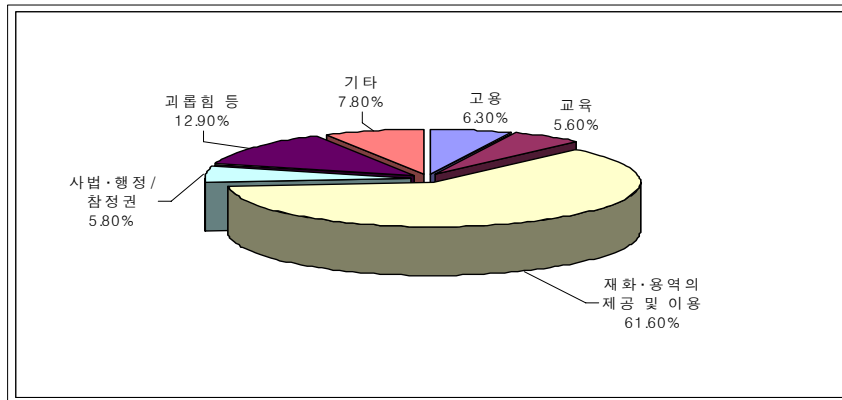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61.6%)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역별 사건비율은 재화·용역 일반이 15.4%, 시설물 접근이 13.5%,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4.5%, 보험·금융서비스가 7.4%, 이동 및 교통수단이 6.7%, 문화·예술·체육이 4.2%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은 2012년(42건)에 비해 2013년(306건)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대상의 단계적인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4〉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3.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6,540	413	368	4,030	1,009	483	881	436	947	274	379	842	508
	비율	100.0	6.3	5.6	61.6	15.4	7.4	13.5	6.7	14.5	4.2	5.8	12.9	7.8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09	75	45	707	156	55	128	49	306	13	70	303	109
	비율	100.0	5.7	3.4	54.0	11.9	4.2	9.8	3.7	23.4	1.0	5.3	23.1	8.3



[그림 3]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3.12.31)

이를 장애차별 영역별 월평균 사건수로 살펴보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58.7건, ‘괴롭힘 및 기타’영역이 19.7건, ‘고용’영역이 6.0건, ‘사법·행정 및 참정권’영역이 5.5건, ‘교육’영역이 5.4건으로, 월평균 접수 건수가 95.2건에 이른다.

<표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11.25.	2008. 4.11.	2009. 1. 1.	2010. 1. 1.	2011. 1. 1.	2012. 1. 1.	2013. 1.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2008. 4.~ 2013. 12.)
		~ 2008. 4.10.	~ 2008.12.31.	~ 2009.12.31.	~ 2010.12.31.	~ 2011.12.31.	~ 2012.12.31.	~ 2013.12.31.	
합계	전체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09	6,540
	월평균	8.5	67.2	60.4	141.3	73.8	111.7	109.1	95.2
고용	전체건수	153	41	69	82	64	82	75	413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6.0
교육	전체건수	122	61	49	55	62	96	45	368
	월평균	1.6	7.0	4.1	4.6	5.2	8.0	3.8	5.4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7	4,030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9	58.7
사법·행정 /참정권	전체건수	-	55	42	39	80	93	70	379
	월평균	-	6.3	3.5	3.3	6.7	7.8	5.8	5.5
괴롭힘, 기타	전체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2	1,350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3	19.7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다.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뇌병변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재화·용역 일반’에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별 경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간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 상 버스 및 철도 이용, 도로 및 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하여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사례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웹 접근성 등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 관련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사례가 많았다. 한편, 뇌병변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표 6〉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3.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6,540	2,033	1,238	455	831	840	48	277	818	
고용	413	149	41	32	60	31	8	26	66	
교육	368	52	61	34	42	121	3	8	47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1,009	345	144	122	66	187	10	39	96
	보험·금융	483	126	74	44	77	80	6	43	33
	시설물 접근	881	614	137	41	4	12	-	3	70
	이동 및 교통수단	436	198	67	34	16	30	3	2	86
	정보통신·의사소통	947	28	503	17	272	23	2	1	101
	문화·예술·체육	274	45	22	13	53	114	-	7	20
사법·행정	251	44	55	10	29	58	4	11	40	
참정권	128	43	23	-	2	4	-	1	55	
괴롭힘 등	842	195	47	75	194	141	8	100	82	
기타	508	194	64	33	16	39	4	36	122	

3.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및 주요 진정 사례

가. 고용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접수된 고용차별 사건 413건 중에서는 ‘모집 및 채용’(38.7%) 분야의 진정 접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퇴직 및 해고’(22.5%), ‘임금·복리·후생’(14.3%)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고용영역의 진정접수 유형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공영역은 145건, 민간영역은 268건으로, 민간영역이 공공영역에 비해 높았고(〈표 7〉 참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6〉 참조).

〈표 7〉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접수 세부유형(2008.4.11.~2013.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합계	합계	413	160	59	40	9	10	93	3	39
	비율	100.0	38.7	14.3	9.7	2.2	2.4	22.5	0.7	9.4
	공공	145	74	6	21	7	3	15	2	17
	민간	268	86	53	19	2	7	78	1	22
2008	합계	41	19	5	6	1	-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	1	1	1
	민간	23	8	4	4	-	-	7	-	-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4	23.2	1.4	1.4
	공공	20	11	-	5	1	-	2	-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	11.0
	공공	30	11	-	8	3	1	4	-	3
	민간	52	16	12	5	-	2	11	-	6
2011	합계	64	23	10	4	1	-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	26.6	1.6	12.5
	공공	14	8	-	-	-	-	2	1	3
	민간	50	15	10	4	1	-	15	-	5

구 분	고용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보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	9.8
	공공	34	18	4	2	1	2	4	-	3
	민간	48	15	6	3	-	3	16	-	5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	16.0
	공공	29	15	1	4	1	-	2	-	6
	민간	46	13	9	2	-	1	15	-	6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고용영역]

〈사례1: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진정인은 청각장애2급 장애인으로,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자격을 명시하여 차별을 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해시험에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독해시험에서 만점(495점)을 받는다하더라도, 600점 이상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직무특성 상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어점수자격 요건이 필수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이 채용하고자 하는 신입사원의 핵심직무는 IT사업 등의 기획 및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운영으로, 영어 소통은 이를 원활하게 하는 부가적 기능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진정기관과 유사업종인 ○○전자 주식회사의 경우, 건청인과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용 TEPS 시험점수(380점)만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5급 공채(행정직, 기술직, 외무직) 모집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원자격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신입사원 채용 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의 지원자격을 명시한 것은 피진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

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 신입사원 지원 자격에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 2 :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정인은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공단이 일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직권 면직 시켰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감당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 하였으나, 추후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수용하였다.

나. 교육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접수된 교육차별 사건은 총 368건이다. 그 중 ‘특수학급 설치거부’(19.6%)에 관한 사건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제외하면 ‘수업·시험평가 편의 미제공’(16.3%), ‘전·입학 거부 제한’(15.5%),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11.1%),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9.0%), ‘괴롭힘(4.6%) 등’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으며(〈표 8〉참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6〉참조).

〈표 8〉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3.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368	57	41	60	33	72	17	88
	비율	100.0	15.5	11.1	16.3	9.0	19.6	4.6	23.9
	공공	249	24	22	31	23	69	14	66
	민간	119	33	19	29	10	3	3	22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	4	5	-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	-	-
2011	합계	62	10	6	7	1	3	-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	56.5
	공공	43	6	5	1	-	3	-	28
	민간	19	4	1	6	1	-	-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	-	5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	-	2	-	5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교육영역]

〈사례1 :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진정인은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전형위원회 위원장은 구술시험 시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서류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형위원 중 한 명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새로운 자료 발굴을 해야 하나 진정인의 경우 언어장애로 인해 용이할 것 같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학교가 구술시험 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운용함으로써 진정인이 구술시험에서 자신의 지적능력, 사고능력, 가치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설령 신체적인 장애가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인 등의 활용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기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학교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2 :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시종일관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하였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동료 학생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주 4시간 순회수업만 받도록 하고, 현장견학 및 외부활동 등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킨 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바, 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학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교육감에게, 피진정인과 피진정인 소속한 학교의 장을 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 및 교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

‘재화·용역 영역’은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서비스 이용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접수율 또한 가장 높다. 세부 유형별로는 ‘재화·용역 일반’이 25.0%로 사건 접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이 23.5%, ‘시설물 접근’이 21.9%, ‘보험·금융’이 12.0% 순으로 높았다 (<표 9>참조).

‘재화·용역 영역’과 ‘장애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화·용역 일반’,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영역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영역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영역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진정 비율이 높았다(<표 6>참조).

한편 ‘사법·행정·참정권’영역은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투표소 등에서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과 관련된 사건으로, 6년 간 진정접수 건수는 379건이었다.

〈표 9〉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
(2008.4.11.~2013.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 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합계	합계	4,030	1,009	483	881	436	947	274	379
	비율	100.0	25.0	12.0	21.9	10.8	23.5	6.8	100.0
	공공	1,797	502	38	421	279	368	189	-
	민간	2,233	507	445	460	157	579	85	-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
	민간	258	87	84	60	13	9	5	-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62	211	6	181	71	269	24	-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3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
2013	합계	707	156	55	128	49	306	13	70
	비율	100.0	22.1	7.8	18.1	6.9	43.3	1.8	100.0
	공공	176	53	7	39	28	45	4	-
	민간	531	103	48	89	21	261	9	-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서비스 영역】

■ 재화·용역 일반 영역

〈사례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환자 인쇄본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위원회는 상기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사본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점자자료화 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8개 종합병원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사본 발급 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또는 점자자료, 녹음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상기 권고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피권고기관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2 :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보장〉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에 미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이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예 : 주차 이용신청,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사례3 :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구민회관을 방문하였으나 “여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가 없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피진정인은 보조인력의 배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별도 채용할 수 없는 관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조인력으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피진정기관에서는 보조인력의 배치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예산상의 문제로 보조인력의 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피진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과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보조인력의 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사례4 : 국어능력 인증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진정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 요건으로 2012년 5월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6월경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KBS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주관·실시하면서 뇌병변장

에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례5 :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진정인은 “A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A보험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의 지적장애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하고 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A보험사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 대한 보험 청약심사를 진행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요하였다.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영역

〈사례1 : 장애인등록증 점자 미표기에 의한 차별〉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카드와도 구별이 어렵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와 재질, 규격이 동일하여 촉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 관리를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하는 등 결과적으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에 점자 표기를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스티커를 제작·교부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2 :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집회 참가 후 체포되어 세 차례 가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 조력권 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 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절차상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권의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과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정신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을 수사 및 심문함에 있어 의사소통가능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생활안전·수사·형사·경비교통과 등 수사 관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권고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답변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 참정권 영역

〈사례 : 선거 시 점자투표용구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이 대리투표를 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투표보조용구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투표소에 투표보조용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동행했던 가족에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피진정인은 「헌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따라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도는 비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선거원칙에 반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라. 괴롭힘 등 영역

‘괴롭힘 등’ 영역은 매년 ‘재화·용역’ 영역,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 다음으로 진정접수 비율이 높은 영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괴롭힘으로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842건이었으며, 주요 피해자는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이었다(〈표 6〉참조). 세부 유형별로는 모욕 및 비하(489건), 폭행 및 학대(132건), 금전적 착취(99건)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고, 민간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738건)가 공공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104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표 10〉참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은 주로 친구나 가족, 지인, 고용주, 시설주 등 주변인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표 10〉 괴롭힘 등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세부유형(2008.4.11.~2013.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842	17	24	17	132	99	489	64
	비율	100.0	2.0	2.9	2.0	15.7	11.8	58.1	7.6
	공공	104	4	2	2	17	3	63	13
	민간	738	13	22	15	115	96	426	51
2008	합계	42	-	-	3	5	7	26	1
	비율	100.0	-	-	7.1	11.9	16.7	61.9	2.4
	공공	2	-	-	-	-	1	-	1
	민간	40	-	-	3	5	6	26	-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	-	4	-	12	1
	민간	87	-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	21.0	15.2	47.6	8.6
	공공	19	-	1	-	4	1	12	1
	민간	86	4	3	-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0	10.8
	공공	17	1	-	-	2	-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	2	1	-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주요 진정 및 결정 사례 : 괴롭힘 등 영역]

〈사례1 : 장애인시설에서의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피진정시설 입소 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월 5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퇴소 시 피진정인에게 받은 실수령액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입소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와 장애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인당 25만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시설통장이 입금하고, 생활인들에게는 용돈으로 8만원씩을 지급한 후, 잔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회계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생활인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을 수사의뢰하는 동시에 피진정인에게 2008. 4.부터 2011. 3.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 해당 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의 폐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 구청은 피진정시설에 행정처분 후 시설 회계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례2 : 장애인시설에서의 예배참석 및 현금강요 등〉

피진정시설의 전직 직원인 진정인은, 시설장인 피진정인이 생활인들에게 예배참석, 십일조 및 현금, 후원 등을 강요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예배참석을 이유로 생활인에게 외출을 제한하고 쉼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예배참석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현금, 후원금 등을 내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상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는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제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해당시설에게 향후 유사한 인

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해당지자체와 관련시설기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사례3 :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진정인은 “사회복지 법인 A대표이사 등이 장애인들을 폭행·체벌하였고 거주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의료조치 소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니 피진정인들을 조사 및 처벌해 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부분은 대량으로 후원 물품이 들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관할 ○○시청에서 주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의료조치 소홀 부분은 거주인이 총 14회의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있었으며, 부당한 노동 강요 부분은 물건을 차로 옮겨준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일회성 등으로 보여져 이들 부분은 각각 기각하였다.

그러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체벌과 관련하여서는 A대표이사가 김○○ 등의 거주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대표이사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행사하며 과도한 체벌을 하였고, 법인 산하 공관장 B사무국장은 김○○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관장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과도하게 체벌한 사회복지 법인 A 대표이사와 법인 산하 공관장 B사무국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3,191건(51.6%) 중 시정권고 319건, 조사중 해결 1,703건, 합의종결 245건 등 모두 2,268건(71.1%) 차별 시정

위원회 설립 이후 11년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7,193건이며(〈표 2〉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6,840건(95.1%)을 처리하였다(〈표 11〉 참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 살펴보면, 지난 6년 간 접수된 사건은 6,540건이며(〈표 3〉 참조), 그 중 위원회는 총 6,187건(94.6%)을 처리하였다(〈표 12〉 참조).

6,187건의 처리 사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3,191건(51.6%)이고, 나머지 2,996건(48.4%)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²⁾에 따라 각하된 경우(2,956건, 47.8%), 조사중지된 경우(13건, 0.2%), 타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27건, 0.4%)이다.

3,191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19건은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등을 통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1,703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은 245건,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건으로, 총 2,268건(71.1%)의 사건이 차별시정되었다. 그 외 923건은 조사 결과, 차별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처리되었다(〈표 12〉 참조).

〈표 11〉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3.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840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2) 각하 대상인 경우는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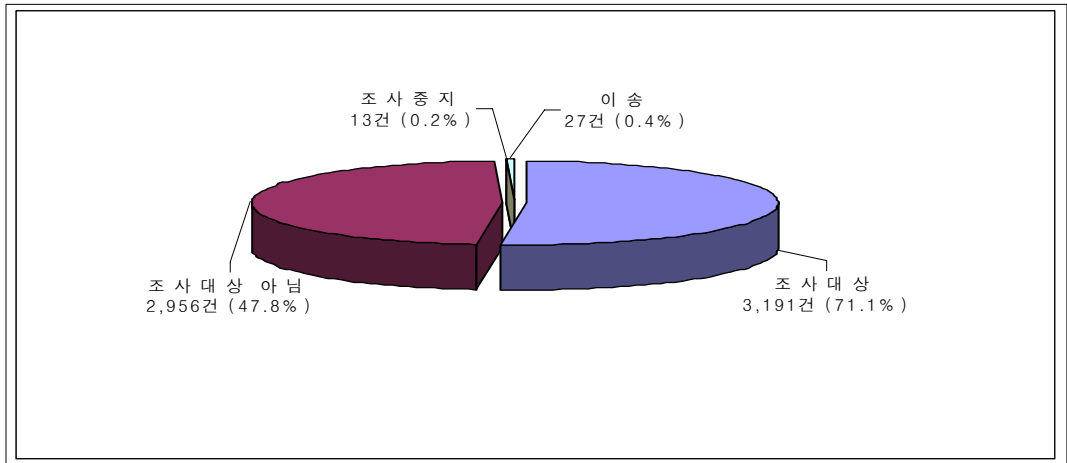
〈표 12〉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04.11.~2013.12.3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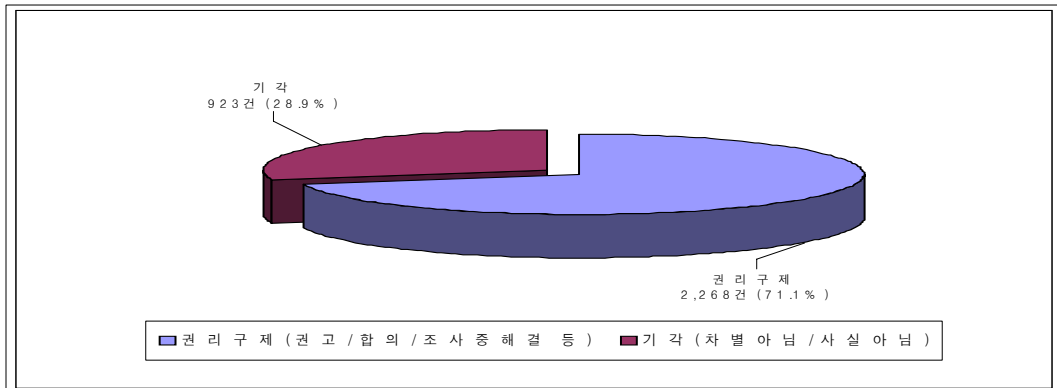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6,187	3,191	2,268	319	1	245	1,703	923	2,956 (1,903)	13	27
구성비 (%)	100.0	100.0	100.0	14.1	0.0	10.8	75.1				
			71.1					28.9			
		51.6								47.8	0.2
2008년	347	156	92	14	-	11	67	64	190 (116)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5.2	-	12.0	72.8				
			59.0					41.0			
		45.0								54.8	0.3
2009년	716	355	209	8	-	47	154	146	351 (236)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3.8	-	22.5	73.7				
			58.9					41.1			
		49.6								49.0	0.6
2010년	1,101	417	262	28	1	56	177	15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0.7	0.4	21.4	67.6				
			62.8					37.2			
		37.9								60.2	0.5
2011년	952	566	361	124	-	32	205	205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4.3	-	8.9	56.8				
			63.8					36.2			
		59.5								40.0	0.1
2012년	1,508	890	701	116	-	20	565	189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16.5	-	2.9	80.6				
			78.8					21.2			
		59.0								40.8	0.1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3년	1,563	807	643	29	-	79	535	164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4.5	-	12.3	83.2				
			79.7					20.3			
		51.6							48.3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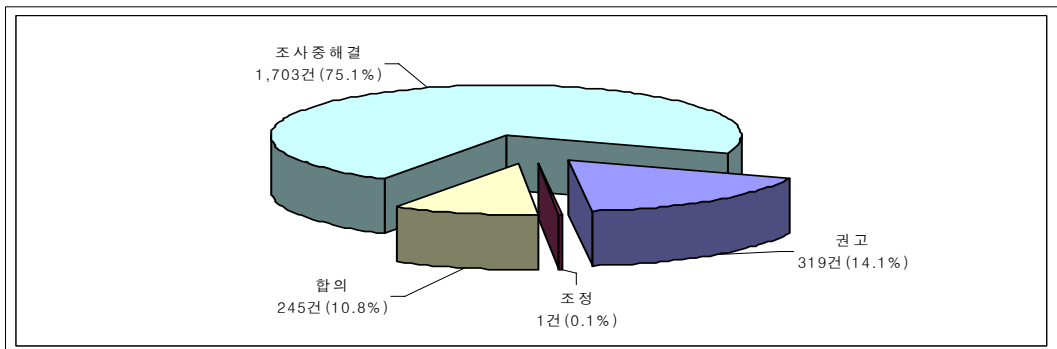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나.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처리한 조사대상 사건 중 고용 38.5%, 교육 79.4%,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76.1%, 사법·행정·참정권 77.6%, 괴롭힘 등 42.1%가 차별 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중 권고, 조정성립, 합의종결, 조사종해결 등을 통해 차별이 시정된 비율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고용영역이 38.5%, 교육영역이 79.4%,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 76.1%, 사법·행정·참정권영역이 77.6%, 괴롭힘 등 영역이 42.1%였다(〈표 13〉 참조).

지난 6년간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한 영역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

이었고(274건), 이는 전체 인용(권고) 건수(319건)의 85.9%에 해당된다(〈표 13〉 참조).

〈표 13〉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04.11.~2013.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6,187	3,191	319	1	246	1,703	923	2,956 (1,903)	13	27
	비율(%)	100.0	100.0	71.1				28.9			
				51.6				47.8	0.2	0.4	
고용	건수	389	130	6	-	27	17	80	256 (200)	3	-
	비율(%)	100.0	100.0	38.5				61.5			
				33.4				65.8	0.8	-	
교육	건수	347	165	7	-	28	96	34	179 (147)	-	3
	비율(%)	100.0	100.0	79.4				20.6			
				47.6				51.6	-	0.9	
재화·용역	건수	3,817	2,359	274	1	135	1,386	563	1,448 (975)	6	4
	비율(%)	100.0	100.0	76.1				23.9			
				61.8				37.9	0.2	0.1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361	183	15	0	3	124	41	177 (108)	-	1
	비율(%)	100.0	100.0	77.6				22.4			
				50.7				49.0	-	0.3	
괴롭힘 등	건수	1,273	354	17	0	52	80	205	896 (473)	4	19
	비율(%)	100.0	100.0	42.1				57.9			
				27.8				70.4	0.3	1.5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다. 장애인차별사건 시정권고 및 이행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위원회 권고 319건 중 이행은 291건, 일부이행은 21건으로, 권고이행률 95.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한 사건은 모두 319건이다.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한 사건은 308건(96.5%)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한 사건은 11건(3.5%)이다(〈표 14〉 참조).

〈표 14〉 적용법률에 따른 인용(권고) 사건 현황(2008.4.11.~2013.12.31.)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권고 사건 수	319	6	7	274	15	17
국가인권위원회법	11	1	0	7	2	1
장애인차별금지법	308	5	7	267	13	1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위원회가 권고한 319건의 사건 중, 권고가 이행된 사건은 291건, 일부이행된 사건은 21건으로, 총 312건(95.1%)의 진정사건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졌다(〈표 15〉 참조).

이때, '일부수용'은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결정 중 피진정인이 권고의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는 불수용하겠다고 답변한 사건을 의미하며, 주로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예산 마련 등 제도적·정책적 권고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한편, 위원회의 권고가 '불이행'된 사건은 고용영역에서 2건, 재화·용역영역에서 1건, 사법 절차에서 2건으로, 총 5건이다. 이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사건은 모두 2건이며, 한 건은 시정명령에 의하여 이행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권고의 이행을 원치 않았다. 나머지 3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사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경찰의 진압 업무 수행 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및 제재(병합 2건)와 관련한 사건이다.

〈표 15〉 각 부문별 권고이행률 비교(2008.4.11.~2013.12.31.)

(단위: 건)

구 분	총계 (권고건수)	권 고 이 행 상 황				권고이행률 (%)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검토중		
합계	합계	319	291	21	5	2	95.1
	공공부문	137	125	8	4	0	94.2
	민간부문	182	166	13	1	2	95.8

- * 권고이행률 산정식 = {이행+(일부이행×0.5) / (전체권고건수-검토중)} × 100
- **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공립학교,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사립학교, 개인을 의미함.
- *** 이행: 위원회에 정식 통보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용처리함.
- **** 검토중 : 권고수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중.

5.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우리 위원회는 언론 모니터링 및 장애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현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초조사 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개선을 유도하여 즉각적인 구제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장애단체로부터 직권조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위원회 설립 이후 장애와 관련한 직권조사는 총 17건이다.

〈표 16〉 직권조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가.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3직권 000400)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로부터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거주인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는 제보자 면담조사 결과 시설 종사자 및 지인에 의한 지속적인 거주인 괴롭힘·성추행,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 행사의 배제 등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2013. 5. 2.)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시설은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 및 괴롭힘, 거주인 방치, 그 룹홈 밖으로 내쫓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등을 위반하였고, 2007년부터 거주인 간 성폭행 사안이 10여 건 발생하였으나 시설 측에서 적절한 치료 및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등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지관에서 거주인 통장을 일괄 관리하며 입출금 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무연고 거주인들에게 유언장을 작성케 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에 정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종사자에 의한 괴롭힘 및 거주인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진상 파악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주인을 선정한 후 이들 특성에 맞는 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 못한 것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하여 2012년 8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학교 역시 성폭력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 및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지침의 입주 자격 조항을 개정하여 차별 소지가 없도록 정비하고, 관내 그룹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도 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그룹홈 내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등을, 해당 시설장에게 그룹홈 거주인 선정 시 대상자의 장애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본인 및 보호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그룹홈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그룹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시 개별면담을 통한 욕구파악 및 반영 등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과 거주인의 유연장 폐기 및 금전관리, 프로그램 활동 등과 관련한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13직권000500, 13직권000600)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시 소재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동 센터에서 입수한 동영상 자료와 시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익요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자행되어왔고, 현재에도 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2013. 5.16.)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중증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행하였고,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A)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 별도의 장애인 복지시설(B)을 설치 신고한 후 A시설과 B시설의 생활인 또는 이용자의 숙식 및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여, 신고시설 생활인이 받아야 할 적절한 서비스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종사자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여 4,9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7명의 통장에서 각 30만원씩 총 21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시설은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마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럼 속여 3,8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부정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2명을 고발하고,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 000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13직 권00024000)

2013. 10. 18. 서울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였고, 기초조사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폭행, 장애수당 횡령,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방치, 이동 및 거주 자유 제한, 운영비 횡령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직권조사를 결정(2013.11.12.)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생활재활교사가 시설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중에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거주시설 전(前) 부원장도 한 시설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법인 소속 거주시설에서는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였고, 시설원장이 입던 헌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원장 자신의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금전을 인출하였고,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 1억5천만원 가량과,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13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하였으며, 오랜 기간동안 법인 사택의 주부식·난방·김장비용을 거주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하였고, 특수학교에서 숙직을 하지 않으면서 숙직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으며, 이사장 가족이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실 직원의 성과상여금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금전착취와 보조금의 횡령·배임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장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장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구성할 것, ○○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시교육감에게 해당 사회복지법인
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3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3)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13진정0073700)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0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3)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 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 고용보장 지원체계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21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붙임2. 장애차별 진정사건 위원회 권고현황(2008.04.11~2013.12.31)

□ 고용 영역(6건)

연 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권고	2009.8.28.	불수용 (시정명령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지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의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1.9.27.	수용

□ 교육 영역(7건)

연 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2008.12.22.	수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2008.12.22.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 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 권고	2008.12.26.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 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 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 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2.1.10.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 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 권고	2012.6.13.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274)

연 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 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 권고	2008.8.27.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17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 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 권고	2008.10.1.	수용
1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 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 권고	2008.12.3.	수용
19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21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권고	2009.9.18.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 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 및 시행할 것 권고	2010.7.19.	수용

연 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인 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8.9.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 권고	2010.8.9.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0.8.9.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 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 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권고	2010.8.9.	수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000 등 2건)	- 대표이사에게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 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 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할 것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 행할 것 권고	2010.8.25.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 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 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29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2010.10.20.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 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 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31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권고	2010.10.20.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련관동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1.1.6.	수용
3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한다.	2011.4.26.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순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1.4.26.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권고 	2011.5.17.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6.30.	수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제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6.30.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45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1.7.22.	수용
4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1.8.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 권고 	2011.8.22.	수용
4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1.11.10.	수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범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사 주자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1.11.28.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1.2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 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 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발뚎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 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 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 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 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5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급 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 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제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 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권고	2012.3.23.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제심사 할 것과, 보험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자와 진 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권고	2012.5.1.	수용
5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 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 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권고	2012.5.1.	수용 (90건) 일부 수용 (2건)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의 규정 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 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 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는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 해 부당부관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 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 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주하 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2012.5.25.	수용
62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권고	2012.7.18.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 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 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 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2012.7.18.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 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6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 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스 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 을 수립할 것 권고	2012.8.22.	수용
67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 권고	2012.11.29.	불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 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할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 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 탈의실내 사물함·헬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육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지도 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 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 공,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 의 세정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 이, 접이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 을 권고	2013.5.2.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78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 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 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진 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 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 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 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 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 에게 즉시 송부할 것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08.8.8.	수용
83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 권고	2009.8.31.	불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 권고	2010.1.15.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을 실시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애 대하여 주의 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1.5.4.	일부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 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 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 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 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 설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권고	2008.12.3.	수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 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08.12.3.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 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 설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 괴롭힘 영역

연 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2010.6.3.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0.11.15.	수용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 	2010.12.17.	수용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에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 할 것 등 권고 	2011.1.6.	수용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 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6.	수용
99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 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 권고	2011.6.7.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장의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 (11진정0440300)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2011.11.10.	수용
10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권고	2011.11.10.	수용
10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0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 권고	2012.2.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검토중
10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10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2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정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0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0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검토중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본 성과와 평가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본 성과와 평가

■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I. 들어가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683천명으로 추정되어, 전체 인구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00년 3.1%, '05년 4.6%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발생률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애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법 시행 6주년을 맞아 그간의 법 이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생활영역별로 단계적 편의 제공 수단기관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의무기관이 실제 편의제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신규 의무기관을 중심으로 법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이행

정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재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여전히 이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개선을 상담·안내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비장애인의 의식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주체로서의 인식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주요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 '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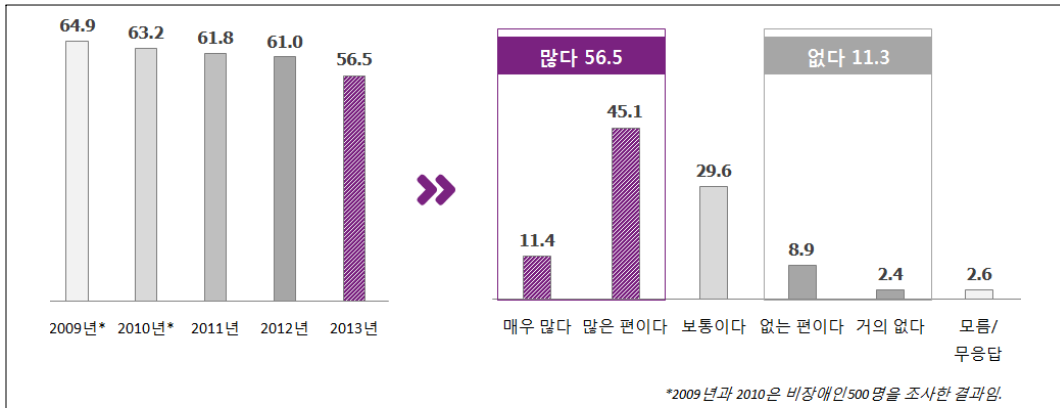
□ 장애인차별 인식조사

○ 장애인차별 인식조사 개요

-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 모니터링 때부터 실시해왔던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의 정도, 장애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또는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 장애인 차별 정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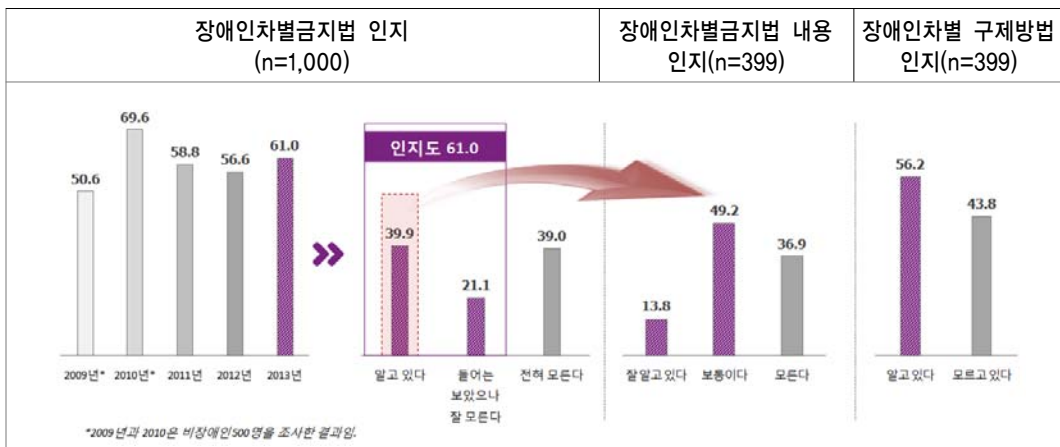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5%로, 2011년 61.8%, 2012년 61.0%에 비해 감소하여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차별구제방법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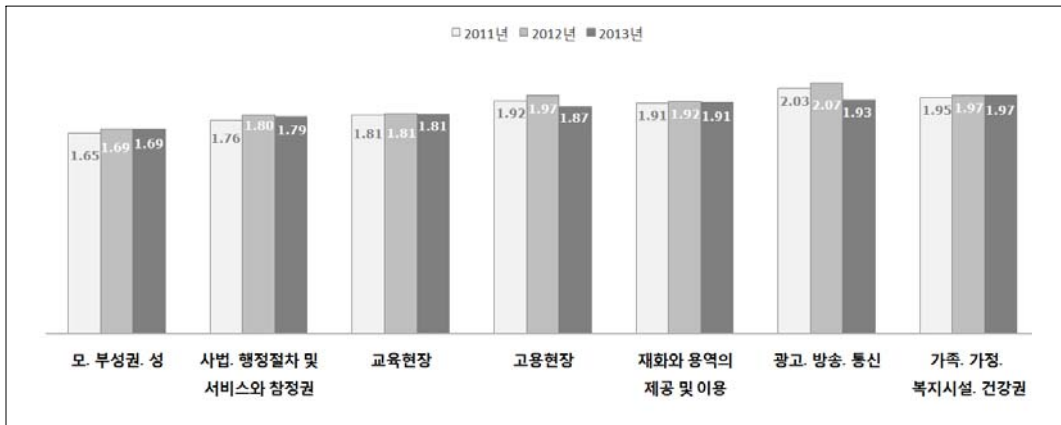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1.0%)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을 알고 있거나 들어는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6.2%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차별구제방법에 대한 인지도

○ 영역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

-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1.97점으로 이해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고·방송·통신’ 1.93점, ‘재화와 용역 제공 및 이용’ 1.91점, ‘고용현장’ 1.87점, ‘교육현장’ 1.81점,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1.79점, ‘모·부성권·성’ 1.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타 영역에서는 대체로 지난 해와 유사한 이해도를 보였으나, ‘고용현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이해도와 ‘광고·방송·통신’에서의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2012년에 비해 점수가 높아져 이해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영역당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3] 영역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의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개요

- 2013.4.11. 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의 단계적 적용에 의거하여,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립유치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사업장(30명 이상~100명 미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1〉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의 단계적 적용 대상 기관(2013. 4. 11.부)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유치원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 연수기관 - 직업교육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30명 이상~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1. 사립 유치원 모니터링 결과

- 입학 시 장애아동을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실태조사 대상 사립 유치원 492개소 중 1개소에 불과했지만,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의 입학을 공공연하게 거부하거나 입학 과정에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을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립 유치원은 그 배제 사유로 ‘장애원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바, 문제된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라면 그 사유는 정당할 수 없고, 설사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설치가 과도한 부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설치해야 한다.
- 조사대상 사립유치원의 74.0%(365개소)는 장애아동이 입학했을 때, 그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요청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6.0%(128개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편의제공 필요 시 편의제공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입학했을 때, 학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장애원생이 정당한 편의를 필요로 할 경우에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음	365	74.0
	알려주고 있지 않음	128	26.0
	합계	493	100.0

- 심층면접 조사결과 일부 장애원생 부모들은 정당한 편의를 받는 권리를 모르고 있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유치원이 장애아동 입학 시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립유치원은 편의시설이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로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장애원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등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사유는 특정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 정당한 편의제공 중 교육보조인력의 충원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원생을 전담하는 보조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립 유치원은 4.9%에 불과하다.
- 그러나 심층면접 조사결과 보조인력에 대한 장애원생 학부모들의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장애원생을 위한 별도의 보조인력 유무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장애원생을 위한 별도의 보조인력 유무	갖추어져 있음	24	4.9
	갖추어져 있지 않음	469	95.1
	합계	493	100.0

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

- 입학 시 장애영유아를 입학 및 등록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602개소 중 3개소에 불과했지만,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일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의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에서 장애영유아를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그 배제 사유로 ‘영유아의 장애가 심하여 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와 ‘정원을 초과해서’를 들었는데, 전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도 여전히 어린이집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에 한해 정당하고 후자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표 2-4〉 입학 및 등록에서 장애영유아 배제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를 이유로 교육과정 입학 및 등록에서 해당 영유아를 배제시킨 적이 있습니까?	있음	-	0.0	3	0.8	-	0.0	3	0.5
	없음	65	100.0	379	99.2	155	100.0	599	99.5
	합계	65	100.0	382	100.0	155	100.0	602	100.0

- 조사대상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41.9%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58.1%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책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예산 미책정' 또는 '예산 부족'을 드는바, 이들 기관들이 예산 책정 시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고려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행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편의제공 필요 시 예산 책정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영유아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책정하고 있음	56	86.2	166	43.5	30	19.4	252	41.9
	책정하고 있지 않음	9	13.8	216	56.5	125	80.6	350	58.1
	합계	65	100.0	382	100.0	155	100.0	602	100.0

- 정당한 편의를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지침 또는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34.7%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은 편의제공 의무를 규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립하는 것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편의제공에 대한 내부 규정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영유아를 위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편의를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공식적인 내부 지침 또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식/비공식적 내부 지침 또는 규정이 없음	45	69.2	127	33.2	37	23.9	260	43.2
	공식적인 내부 지침 또는 규정이 있음	16	24.6	89	23.3	28	18.1	209	34.7
	비공식적인 내부 지침 또는 규정이 있음	4	6.2	166	43.5	90	58.1	133	22.1
	합계	65	100.0	382	100.0	155	100.0	602	100.0

3. 평생교육시설 모니터링 결과

- 장애학생 현황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인바,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학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조사대상 평생교육시설의 35.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60.6%가 장애학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7〉 평생교육시설의 장애학생 현황 파악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음	363	64.1	56	39.4	419	59.2
	파악하지 못함	203	35.9	86	60.6	289	40.8
	합계	566	100.0	142	100.0	708	100.0

- 조사대상 평생교육시설의 5.1%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33.8%는 입학 등록 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온라인이 아닌 다른 등록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등록만 허용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을 등록에서 배제할 소지가 매우 크다.

〈표 2-8〉 평생교육시설의 입학·등록 시 온라인 등록 허용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생들의 입학·등록 시 원칙적으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예	29	5.1	48	33.8	77	10.9
	아니오	537	94.9	94	66.2	631	89.1
	합계	566	100.0	142	100.0	708	100.0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다면,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른 신청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허용함	24	82.8	37	77.1	61	79.2
	허용하지 않음	5	17.2	11	22.9	16	20.8
	합계	29	100.0	48	100.0	77	100.0

- 강의 및 학습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이 전체 조사대상의 19.0%에 불과하였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웹 접근성 인증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원격평생교육시설	
		빈도	비율
홈페이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인증 받음	27	19.0
	신청 중에 있음	2	1.4
	인증 받지 않음	113	79.6
	합계	142	100.0

4. 연수기관 모니터링 결과

- 장애연수생 현황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인바,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연수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연수기관의 33.0%, 원격연수기관의 68.6%가 장애연수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10〉 연수기관의 장애연수생 현황 파악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연수기관		원격연수기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연수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음	63	67.0	16	31.4	79	54.5
	파악하지 못함	31	33.0	35	68.6	66	45.5
	합계	94	100.0	51	100.0	145	100.0

- 조사대상 중 21.3%의 연수기관과 64.7%의 원격연수기관에서는 연수 등록 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온라인이 아닌 다른 등록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등록만 허용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을 등록에서 배제할 소지가 매우 크다.

〈표 2-11〉 연수기관의 입학·등록 시 온라인 등록 허용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연수기관		원격연수기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수생 등록 시 원칙적으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예	20	21.3	33	64.7	53	36.6
	아니오	74	78.7	18	35.3	92	63.4
	합계	94	100.0	51	100.0	145	100.0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다면,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른 신청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허용함	17	85.0	27	81.8	44	83.0
	허용하지 않음	3	15.0	6	18.2	9	17.0
	합계	20	100.0	33	100.0	53	100.0

- 강의 및 학습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연수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25.5%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격연수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격연수기관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표 2-12〉 원격연수기관의 웹 접근성 인증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원격연수기관	
		빈도	비율
홈페이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인증 받음	13	25.5
	신청 중에 있음	1	2.0
	인증 받지 않음	37	72.5
	합계	51	100.0

5. 직업교육훈련기관 모니터링 결과

- 장애교육생 현황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인바,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교육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조사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20.8%(64개소)에서는 장애교육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13〉 장애교육생 현황 파악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장애교육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음	243	79.2
	파악하지 못함	64	20.8
	합계	307	100.0

- 장애인을 입학 및 등록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3.6%(11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입학 및 등록에서 배제한 이유로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장애가 심하여 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14〉 입학 및 등록에서 장애교육생 배제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장애를 이유로 교육과정 입학 및 등록에서 장애인을 배제시킨 적이 있습니까?	있음	11	3.6
	없음	296	96.4
	합계	307	100.0

- 조사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38.8%가 장애인이 입학했을 때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요청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장애인들은 편의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권리인지 몰라서 또는 이를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장애교육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를 권리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5〉 편의제공 필요 시 편의제공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입학·등록 시 장애교육생이 정당한 편의를 필요로 할 경우에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음	188	61.2
	알려주고 있지 않음	119	38.8
	합계	307	100.0

6. 근로사업장 모니터링 결과

-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은 ‘고객이 장애인근로자를 선호하지 않아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퇴사할 것 같아서’ 등과 같이 명백히 차별적인 사유를 제시하였다.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직업세계로의 진입이 이처럼 명백히 장애 차별적인 사유로 좌절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표 2-16〉 응시한 장애인이 채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응시한 장애인이 채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서	12	40.0
	장애와 무관하게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서	7	23.3
	고객이 장애인근로자를 선호하지 않아서	3	10.0
	오래 일하지 못하고 퇴사할 것 같아서	3	10.0
	업무수행 중 산재 위험도가 높아서	1	3.3
	기타	4	13.4
	합계	30	100.0

- 장애인 응시자가 모집·채용과정에서 채용 기관에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채용 공고문 등에 사전에 고지한 비율은 30.3%였으며, 장애인 응시자가 실제로 채용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한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편의 제공에 대한 고지가 없으면 장애인 응시자가 이를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은 채용 공고문 등에 안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표 2-17〉 직원 채용 시 정당한 편의제공 사전 고지 및 요청 여부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직원 채용 시 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 채용 공고(문) 등에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까?	예	510	30.3
	아니오	1,172	69.7
	합계	1,682	100.0
직원 채용 시 장애인응시자에게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청함	24	1.4
	요청하지 않음	1,658	98.6
	합계	1,682	100.0

- 조사대상 근로사업장 중 사내 전산망(인트라넷)이 시각 및 청각장애인근로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43.6%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 현황 조사결과 지체장애, 지적장애 다음으로 청각 및 시각장애가 많이 분포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8〉 인트라넷(사내 전산망) 구축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인트라넷(사내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있음	681	40.5
	없음	1,001	59.5
	합계	1,682	100.0
인트라넷(사내 전산망)은 장애인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까?	구축되어 있음	297	43.6
	구축 예정임	12	1.8
	구축되어 있지 않음	372	54.6
	합계	1,682	100.0
시각 또는 청각장애근로자 등 인트라넷(사내 전산망)의 접근·이용이 불편한 장애인근로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축하지 않아도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별 문제가 없어서	250	67.2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27	7.3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19	5.1
	내부규정(방침)이 없어서	18	4.8
	기타	58	15.6
	합계	1,682	100.0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지원 및 관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지원 및 관리(상담·안내)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의 이행 실태조사 결과, 미진하게 이행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미진한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지원·관리하였다. 이 조치는 단순히 이행 실태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개입하여 이행을 개선하는 적극적 조치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난 제4차(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 대상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그 대상이다. 상담안내 요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법적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던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맞게 개조되었는지 조사하고,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여 차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하였다.

〈표 2-19〉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개선 지원 및 관리(상담·안내) 대상기관

(단위: 개소)

구분	공공·민간 종합공연장 (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미술관· 박물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체육시설	공공 기관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	종합 병원	합계
대상기관 수	6	7	52	24	16	27	132

○ 공공·민간 종합공연장에 대한 상담·안내 내용¹⁾

- (시설물 접근·이용) 지난 4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에서 공공·민간 종합공연장은 시설 내 장애인보조건의 동반을 제한한 것에 대한 사유로 ‘다른 관람자들의 공연이나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시설 내 공간이 부족하여’라는 사유를 제시하였다.
 - ‘다른 관람자들의 공연이나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는 사유에 대해서 보조건이 공연이나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특정될 수 있고 그 방해 정도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여 발생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 한해서 정당할 수 있는 사유임을 안내하였다.
 - ‘시설 내 공간이 부족하여’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연장에서 보조건이 일정 공간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개선 지원 및 관리(상담·안내)의 조사대상기관인 공공·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미술관·박물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체육시설, 공공기관, 시·도립 장애인복지관, 종합병원의 상담·안내 내용이 유사하므로 본 자료에서는 공공·민간 종합공연장에 대한 상담·안내 내용을 대표적으로 제시함.

을 차지하여 옆 좌석의 다른 관람자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면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해당 장애인에게 비상통로 바로 옆 좌석을 제공하면 되고, 보조건의 동반을 예상하여 좌석 1~2개를 없애고 그 공간을 보조건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 (정보통신·의사소통) 지난 4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에서 공공·민간 종합공연장은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에 관해 생산·배포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해 낭독자 등 의사소통 보조인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로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없음’을 제시하였다.

- ‘의사소통 보조인력을 요청한 장애인이 없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일 수 있으나, 장애인이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에 관해 생산·배포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수화통역사 등 의사소통 보조인력을 요청하는 법조항이나 요청 방법을 몰라서 이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공연장 측은 관련 정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인은 이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요청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 지난 4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에서 공공·민간 종합공연장은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유로 ‘내부규정(방침)이 없어서’를 제시하였다.

- 공공·민간 종합공연장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인바, 그 제공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다고 하여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하였다.

-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사유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웹 접근성 구축비용이 공연장의 규모, 예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공연장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구축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사유는 공연장 측이 예산 배정 기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정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기관별 편의시설 개선율

- 각 기관별 편의시설 개선율을 살펴보면, 공공·민간 종합공연장의 평균 개선율이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립대학 미술관·박물관의 평균 개선율이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시설관리자와 인터뷰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떠한 시설에서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기관별 편의시설 개선율²⁾

(단위: 개소, %)

항목	2012년 조사결과 제4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2013년 조사결과 제5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평균 개선율	
	적정	부적정	미설치	비해당	적정	부적정	미설치	비해당		
공공·민간 종합공연장	매개시설	3	10	2	0	3	10	2	0	0.0
	내부시설	1	13	3	3	4	10	3	3	15
	위생시설	1	27	1	11	1	25	1	13	0.0
	안내시설	2	11	24	0	8	5	22	0	22.9
	기타	5	19	7	4	7	13	8	7	8.6
	합계	10	80	37	18	23	63	36	23	9.7
사립대학 미술관· 박물관	매개시설	4	14	0	3	4	14	0	3	0.0
	내부시설	7	18	2	1	7	18	2	1	0.0
	위생시설	2	25	20	9	3	18	14	21	1.8
	안내시설	0	10	39	0	0	10	39	0	0.0
	기타	2	8	28	11	2	4	32	11	0.0
	합계	15	75	89	24	16	64	87	36	0.5

2) 편의시설 개선율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은 적정설치(법적기준에 맞게 설치), 부적정설치(설치는 하였으나, 법적기준에 맞지 않음), 미설치(설치하지 않음), 비해당(법적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시설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지 않음), 개선율((5차 적정설치 개수 - 4차 적정설치 개수) / 비해당을 제외한 총 설치 개수)로 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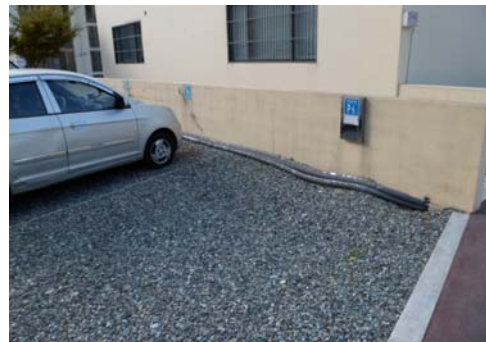
항목	2012년 조사결과 제4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2013년 조사결과 제5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평균 개선율	
	적정	부적정	미설치	비해당	적정	부적정	미설치	비해당		
지자체 체육시설 (인구 30만명 이상)	매개시설	35	85	26	4	47	80	18	5	4.8
	내부시설	51	89	27	33	54	90	15	41	3.6
	위생시설	42	189	87	82	47	142	52	159	5.4
	안내시설	55	53	241	1	83	33	200	34	15.0
	기타	12	113	148	77	21	98	92	139	4.8
	합계	195	529	529	197	252	443	377	378	7.2
공공기관	매개시설	8	48	9	1	10	48	7	1	3.0
	내부시설	22	50	16	0	24	50	14	0	3.4
	위생시설	21	56	66	33	18	45	49	64	1.1
	안내시설	12	14	128	0	21	3	129	1	5.8
	기타	0	16	24	114	0	12	21	121	0.0
	합계	63	184	243	148	73	158	220	187	2.5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	매개시설	15	33	0	0	17	31	0	0	6.3
	내부시설	16	42	4	2	18	39	3	4	4.7
	위생시설	12	88	5	23	19	59	4	46	7.0
	안내시설	16	2	14	80	39	8	29	36	19.6
	기타	2	18	12	80	8	12	10	82	6.3
	합계	61	183	35	185	101	149	46	168	9.5
종합병원	매개시설	18	60	2	1	24	52	4	1	7.4
	내부시설	18	86	3	1	18	83	5	2	4.6
	위생시설	12	121	11	72	16	114	7	79	1.9
	안내시설	35	50	98	6	43	31	112	3	3.7
	기타	0	2	0	187	3	0	0	186	1.6
	합계	83	319	114	267	104	280	128	271	3.2

- 상담·안내반은 상담안내서의 해당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설명하고 편의시설 개보수 조사와 확인을 하였으며, 조사항목별로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몇 가지 사례를 아래 [그림 2-4]에 제시하였다.
- **사례 1(매개시설)**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로 「편의증진법」에서는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부출입구가 더 편리할 경우에 한정하여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없이 진입하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면 「편의증진법」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례 3(내부시설)**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계단으로 설치된 경우로, 오래된 건물, 전체 층수가 낮아 내부에 승강기가 없는 건물, 2개 층 이상으로 된 건물 등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 단차(계단)가 있어 장애인이 이용 및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한 환경이다.



〈사례 1〉

(매개시설)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



〈사례 2〉

(매개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잡석이 깔려 있어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사례 3〉

(내부시설)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계단으로 설치된 경우



〈사례 4〉

(위생시설) 대변기 전면에 휠체어 회전공간이 없는 경우

[그림 2-4] 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기관들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내용이나 제공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애인이나 장애인부모 및 가족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요청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특히 인식개선이 필요한 영역(장애인 보험가입, 장애인 성생활, 장애학생의 입학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자료의 생산·배포와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조사대상 기관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로 ‘예산 미책정’ 또는 ‘예산 부족’을 들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도 평균 14.0% 정도로 조사되었다.
- 편의제공 의무기관들이 예산 책정 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예산을 고려하는 것

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예산을 심의·배정토록 요청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 관련한 모범 지침과 규정을 작성하여 배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조사대상기관들은 대부분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내부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평균 15.3% 정도로 확인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필수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서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Ⅲ. 나가기

지금까지 2013년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개선 상담·안내 결과를 위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기입식 조사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조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편의시설의 경우 어느 정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인 만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법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계획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4월에 유엔 에스캡 총회 ‘인천전략’ 최종 승인, 올해 2월에 인천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아태 지역의 장애인 정책 선도국가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의 권익 증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이하여, 향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 부처로서 타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 고용, 경제활동,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장애인차별 금지법상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과제

배용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과제

▮ 배용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많은 차별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한계와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다. 이제는 한번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논의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적 보완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났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교육 또는 장애인인권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 최근 장애인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면서 장애인인권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차별금지교육이나 장애인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아래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 조례의 예를 보더라도 교육의 대상(제6조 제1항), 교육을 위한 노력(제2항), 교육계획의 수립(제3항) 등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 조례

제6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비단, 서울특별시의 조례 뿐 아니라,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8조), 안양시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8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7조) 등 자치구 조례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 제9조(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구제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등
 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한 사항
-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처음 장추련에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는 벌칙에 벌금 외에 사회봉사 및 장애인인 권 교육 일정시간 이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벌칙이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간소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누락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차별금지교육 및 장애인인권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p>

둘째, 여행, 관광, 레저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서 문화와 예술 영역을 다루고 있으나 여기에 여행, 관광, 레저 부분이 빠져 있어 여행, 관광, 레저 부분에서의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여행의 경우 여행상품,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편의제공의 근거가 없으며, 관광이 누락되어 전국의 관광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레저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시설 부분은 다루고 있으나 관광지의 경우 궁·릉과 같은 문화재, 테마공원과 같은 다양한 공원 등이 있어 제18조의 시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4조를 개정하여 여행, 관광, 레저를 추가하여야 한다. 레저의 경우 24조가 아닌 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관광 등이 누락된 이유는 제2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예술사업자만을 의무 주체로 정하였으며, 제3조(정의)에서 문화, 예술사업자의 범위에서 관광, 여행 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관광, 여행, 레저”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제24조(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예술사업자만 장애인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주체로 되어 있다.

결국 장애인의 여행과 관광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조(정의)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제24조를 개정하거나 관광, 여행, 레저를 포함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도에 UN에서 결의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더라도 제30조에서 문화활동에 관광을 포함시키고 있다.¹⁾

제 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용(2009.1.9.)

-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0조 1항 다의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활동”, 5항의 다의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5항의 마의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관광, 여가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부분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광지에서의 접근 및 여가활동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예술사업자 외에 관광사업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의 1의 관광사업은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관광에 대한 모든 관련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광지 뿐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점, 테마공원 등의 관광산업에서 당하는 차별과,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은 이러한 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제3조(정의)</p> <p>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정의)</p> <p>12. “관광”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제1호의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의 이용을 말한다.</p> <p>1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4조(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 및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 및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셋째, 재화와 용역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차별금지에서 제1절(고용)과 제2절(교육),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제18조(시설물 이용·접근의 차별금지)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편의를 편의시설로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제4조 제2항)로 폭넓게 정한 정당한 편의가 그 일부인 “편의시설”로 축소됨으로써 고용이나 교육에 비해 제18조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매우 간단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시행령 제12조). 따라서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거나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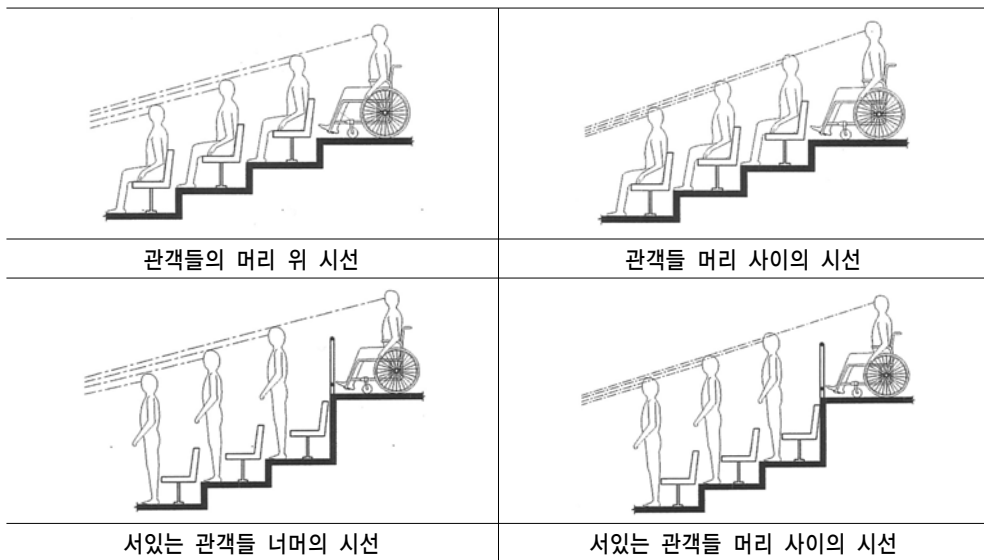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지만, 의자와 테이블로 된 좌석의 비율, 좌석과 좌석 사이의 간격 등과 같은 정당한 편의도 중요하다. 영화관 역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도 필요하지만,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의 위치, 앞좌석과의 간격, 분산배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상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상영 등의 정당한 편의도 필요하다. 문제는 현행 편의증진법으로는 편의시설 외의 정당한 편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ADA의 경우 ABAAG(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을 별도로 두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별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보더라도 장애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얼마나 자세하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과 '건축장벽법 접근성 가이드라인'(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 ABAAG)은 휠체어 공간과 관람시선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람시선은 휠체어 공간 앞쪽에 앉아 있거나 서있는 관객들로 인해 관람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9〉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장애인 관람석의 시선



‘연방접근성표준기준’(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에는 집회공간에 대해 정의를 “공중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종교적, 오락적,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이거나 여흥적인 목적으로, 혹은 음식과 음료의 소비를 위해 모인 오십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 있다. 그 종류에는 공원, 경기장, 미술관, 관람석, 불링장, 교회, 법정, 드라이브인 극장, 테니스장, 도서관, 식당, 선술집, 방송국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어떤 특별한 공연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집회공간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기준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회공간에 총 좌석의 수 4개 이상부터는 휠체어 장애인 접근 가능한 좌석수가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300개 이상부터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휠체어 공간을 비어두도록 되어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좌석의 배치는 입장료의 차이와 휠체어 등의 관람 시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통로 상에 위치하도록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청취시스템의 기능이 고장된 관람석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무대나 연주자로부터 반경 15m(5ft) 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다. 15m 내에 관람석이 위치하여야 배우의 얼굴 표정과 다른 사소한 몸동작과 수화 통역사의 수화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기존에 있는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정당한 편의의 전부로 규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당한 편의가 후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 특히, 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진정직업 자격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차별에 있어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4조 제3항의 2)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을 들어 고용을 거부할 경우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상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차별행위를 해도 차별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수행상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1)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승객의 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고용에서 탈락하였다. 이 경우 택시기사의 직무는 승객의 운송인가? 짐을 들어서 실어주는 것까지인가?

예 2) 보행장애인 교사는 학생들과 뛰어놀 수 없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하였다. 이 경우 체육교사가 아닌 교사의 직무는 어디까지인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차별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직무의 범위가 기준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방향 모색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세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었으며, 한국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세계의 흐름은 두 가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운동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보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어떻

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작용하였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다른 차별금지법의 통합 추세이다. 2010년에 영국은 「장애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과 다른 차별금지법 등을 통합하였고, 미국 역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2008년도에 개정하면서 장애차별 외에 다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통합하였다. 이러한 장애차별과 다른 차별금지법의 통합은 단순한 차별금지 요소들의 통합이 아니라 평등법으로의 전환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둘째, 차별금지법이 아닌 “평등법”으로의 전환이다. 영국은 2010년에 「평등법(Equality Act)」을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차별금지법을 흡수하였다. 평등법에서는 장애, 성별, 연령, 성적지향 등 다양한 차별요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도에 이미 「장애인평등법(BGG : 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Equal Opportunities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제정하며 목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차별금지”를 추구할 것인가,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은 평등에 대한 추구이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다면 굳이 차별금지만을 방법으로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근본적인 목적인 평등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것이냐 기회 균등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 이 방법 역시 다양해 질 수 있으며, 추구하는 평등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래 역시 평등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과 권리의 목표가 “완전한 참여와 평등”으로 바뀐지도 이미 오래이다. 차별금지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평등의 추구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차별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차별금지과 평등 추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애계는 소위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였다. 그것은 장애차별의 독특성과 장애차별의 금지가 다른 차별요소와는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생애에 걸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장애차별을 금지하기에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만 2009년에 제정되었을 뿐, 다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평등법에 대한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처럼 평등법에 대한 반대도 있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축소와 같은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이 점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인권의 현주소를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평등법의 제정은 더욱 어렵거나 제정된다고 해도 진정한 평등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더 높고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축소만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은 금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금지가 첫 걸음이라면 이제 평등의 추구라는 더 큰 걸음을 향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아직 멀기 때문이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5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안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안

■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장애와 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¹⁾,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제정된 법률은 1950년의 「군사원호법」이다. 이 법의 제3조는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 국가가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보다 장애인법제가 먼저 생긴 미국²⁾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모두 근대 장애인 관련 법률은 전쟁에서 장애를 얻은 군인을 돕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가 다름에도 두 나라 모두에서 민간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장애문제를 “개인의 불행(personal tragedy)”으로 보고, 그 개인이나 가정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³⁾. 즉, 일반 시민의 장애는 사회문제 혹은 ‘공적(public)’ 관심사로 여겨지지 않았다.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 군인 보호에서 출발하여 장애 경찰관⁴⁾ 보호로, 그 다음에는 산업활동⁵⁾에 종사하다 장애를 갖게 된 민간인 보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민간 장애인을 위한

- 1)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말까지 장애인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 책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역면제 및 감형 제도,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제도 등 다양한 제도와 장애인들의 생활사를 알 수 있다.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항아리, 2011 참조.
- 2) 장애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법률은 1918년 직업재활법(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of 1918)이다. 이 법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재활치료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Peter Blanck, Eve Hill, Charles D. Siegal and Michael Waterstone, *Disability Civil Rights Law and Policy*, West, 2004, p.1-5 참조.
- 3) 김창엽 외 지음,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도서출판 삼인, 2002, 11~12면; Arlene S. Kanter, “The Law: What’s disability studies got to do with it or an introduction to disability legal studies,” 42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403 (2011) 참조.
- 4) 1951년에 제정된 경찰원호법 참조.
- 5) 1963년에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

첫 법률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군인, 경찰, 주요 산업체 종사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에게 적용된 첫 번째 법률이 ‘심신’장애를 가진 자의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입법임은 물론이고, 장애를 인권이나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의료와 시혜의 측면에서 다룬 입법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 법은 결국 대폭 개정되어 1989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그 명칭이 사라졌다.

이처럼 한국에서 장애인에 관한 법률은 ‘복지’에 초점을 둔 입법으로 출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아래,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며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법률⁶⁾이 제정되었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층이 많고⁷⁾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취업과 경제적 자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자리 관련 법률에 이어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연금법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이 각각 고유한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가지고 있지만,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른 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¹⁰⁾ 이 법률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시혜의 대상’ 혹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전통적 시각¹¹⁾에서 탈피하여, 소위 ‘사회적 모델’¹²⁾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 법률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한 권리의 주체’¹³⁾로서 부당한 차별에 주체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된 것은

6) 1991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7)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을 인구의 4.5%(216만명)로 추정하며, 이 중 59만여명이 2006년 기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 장애인이라고 본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28.1%에 해당되며, 비장애인의 절대빈곤율(7.3%)보다 4배가량 높다고 한다. 『경향신문』, 2009년 4월 19일자 기사, 송진식, “장애인 59만명이 ‘절대 빈곤’…장애급여는 OECD 30분의 1” 참조.

8)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조.

9) 2010년에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참조.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및 경과는 이 법률제정운동의 핵심 주체였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약칭 장추련)’의 법제정위원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 변호사의 다음 글들을 참고 바람: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과 전망”, 『국제인권법』 제7호, 2004, 51~83면; 박종운, “장애인 차별의 현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월간 복지동향』 2008년 4월호, 4~8면.

11) 각주 3)의 김창엽 외 지음, 앞의 책, 40~56면 참조.

12)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장애보고서』(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번역), 한국장애인재단, 2012, 32~33면; 유동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1호, 2011, 217~239 참조.

13)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권리옹호: 장차법 시행 3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월간 복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990년에 제정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약칭 미국장애인법 혹은 ADA)’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직후인 2008년에 미국은 ADA를 대폭 개정했다. 이 발표문에서는 1990년 및 2008년의 미국장애인법을 중심으로 시행 6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개정방안을 모색해 본다.

II. 핵심 조항의 비교법적 검토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장애 및 장애인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기능의 손상으로 이해한다면 정의를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장애학이나 장애인법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2006년 12월에 UN 총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약칭 CRPD)’은 장애의 개념을 “진화하는 개념(evolving concept)”으로 이해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환경 혹은 비장애인들의 태도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본다.¹⁴⁾

장애의 개념을 진화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 적용의 측면에서는 명확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명확성을 위해 장애의 정의를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나열한 경우와 비교적 추상적 규정을 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¹⁵⁾

동향」, 2011년 5월호, 43~50면 참조.

14)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문(Preamble)에 있는 표현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cognizing that disability is an evolving concept and that disability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impairments and attitudin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hat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밑줄 강조는 필자)

15)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의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은 “신체나 정신적 기능의 전체 또는 일부상실, 신체의 한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 상실, 신체에 장애나 질병을 일으키는 기관 존재, 신체에 장애나 질병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후자의 입법례를 가진 미국의 예를 따랐다. 이처럼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세한 시행령이나 해석지침 혹은 판결을 통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미국장애인법(ADA)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A) 하나 이상의 주요한 일상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 (B) 그러한 손상의 기록
- (C)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¹⁶⁾

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신체의 일부분의 기능장애나 용모 손상, 학습장애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능장애, 사고 과정, 현실인식, 감정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결함이 있는 행동을 야기시키는 장애나 질병”(DDA 제3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08년 이전에 제정된 법률들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은 “출생 당시의 부상(injury)이나 질병(illness)의 결과로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업무능력(functional capacity)에 관한 모든 영속적인 신체적·정신적·지적 제약(limitation)”으로 규정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 차별금지법(Equality Act; EA)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의 중요한 징표는 ①상해·질병, ②업무능력, ③ 영속적, ④ 신체적·정신적·지적 제약이다.

뉴질랜드의 인권법(Human Rights Act)경우, 장애의 개념에는 ①신체적 장애 또는 손상(예: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②신체적 질병, ③심리적 질병(예: 우울증 또는 정신 분열증), ④지적·심리적 장애 또는 손상(예: 학습장애), ⑤심리적·생리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결손이나 비정상(예: 관절염 또는 절단), ⑥인도견(guide dog)이나 휠체어 또는 기타 치료수단에 대한 의존, ⑦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진 신체의 존재(예: 에이즈또는 간염) 등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다. 캐나다 인권법상의 “장애” “신체장애”라 함은 이전의 또는 현재의 정신적 및 육체적 장애를 의미하며 이는 손상된 외모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도 포함된다.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에서는 ‘장애(Disability)’를 사람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2) 신체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3)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기체의 체내(體內) 존재, (4)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기체의 체내 존재, (5) 신체 일부분의 기능부전(機能不全), 기형 또는 변형, (6) 부조(不調) 또는 기능부전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학습효과를 가져오는 개인의 학습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조나 기능부전, 또는 (7) 사고 과정, 현실 감각, 정서 또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부조, 질병 또는 행동의 교란을 유발하는 부조나, 질병을 말하며, ① 현재 존재하는 장애, ②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장애, ③ 향후 발생 가능한 장애, ④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장애를 포함한다.

정영선,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충남대)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1, 137~139면에서 전문 인용.

이러한 정의 중 (A)는 현재의 실제 장애(actual disability)로서 미국장애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첫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다. 이것을 고용 기회 평등위원회(EEOC)의 해석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신체적 손상은 생리학적 이상이나 상태, 미용상 훼손 혹은 해부학적 상실로 다음과 같은 육체 조직이나 기능의 하나 이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신경계, 근육과 골격, 특별 감각기관, 호흡(발성 포함)기관, 심장혈관계, 생식계, 소화기관, 비뇨기관, 면역체계, 순환계, 혈관계, 임파계, 피부, 내분비선¹⁷⁾
- (2) 정신적 손상은 지적장애(종래의 “정신지체”), 기질성 뇌증후군, 정서 장애 혹은 정신 질환, 특수한 학습장애와 같은 모든 정신적 혹은 심리적 이상을 의미한다.¹⁸⁾

위 개념 정의에서 (B)는 과거의 장애이다. ADA는 현재는 장애가 없어도 과거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까지 금지한다. 예를 들어 과거 결핵이나 암으로 투병한 것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 (C)는 오인에 의한 차별행위까지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추가되었다. 과거나 현재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상대방이 오해해서 발생하는 차별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ADA가 이처럼 장애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했음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규정을 축소 해석했다. 따라서 2008년 ADA 개정법에는 이 개념 정의 중에 나오는 “주요한 일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6) 42 U.S.C. § 1210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Disability

The term “disability” means, with respect to an individual -

(A)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hat substantially limits one or more of the major life activities of such individual;

(B) a record of such impairment; or

(C) being regarded as having such an impairment.

17) 29 C.F.R. 1630.2(h).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Any physiological disorder or condition, cosmetic disfigurement, or anatomical loss affecting one or more body systems, such as neurological, musculoskeletal, special sense organs, respiratory(including speech organs), cardiovascular, reproductive, digestive, genitourinary, immune, circulatory, hemic, lymphatic, skin, and endocrine; or learning disabilities.

18) 원문은 아래와 같다:

(2) Any mental or psychological disorder, such as an intellectual disability(formerly termed “mental retardation”), organic brain syndrome, emotional or mental illness, and specific

1항에서 규정한 주요한 일상 활동은 자신을 돌보는 것,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서 있는 것, 물건을 드는 것, 몸을 굽히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배우는 것, 읽는 것, 집중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 일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예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¹⁹⁾

AD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재판은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해 왔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HIV 감염자가 제기한 Bragdon 사건²⁰⁾에서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다수의견은 재활법 504조의 적용과 관련된 Arline 판결²¹⁾에 근거하여 HIV 감염자를 ADA상의 장애인으로 보았는데, Arline 사건의 원고는 결핵에 감염된 교사였다. Bragdon 사건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원고가 HIV 감염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는데, 소수의견은 ‘임신’은 ADA의 해석지침에서 나열한 주요한 일상 활동의 다른 예들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08년 ADA 개정 이후, 연방대법원이 장애의 개념 또는 장애인 판정에 관해 내린 판결은 아직 없다. 개정법이 Sutton 사건 등 문제가 된 판결²²⁾을 비판하고, 장애 판정에 핵심 요소인 주요한 일상 활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그 범위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주요 행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법적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직접’ 차별에 중점을 두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차별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ADA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하지 않는 것도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고, 간접차별²³⁾과 광고에 의한 차별²⁴⁾도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자에 관한 차별²⁵⁾,

19) 42 U.S.C. § 12102(2)(A).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major life activ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aring for oneself, performing manual tasks, seeing, hearing, eating, sleeping, walking, standing, lifting, bending, speaking, breathing, learning, reading, concentrating, thinking, communicating, and working.

20) Bragdon v. Abbott, 524 U.S. 624 (1988).

21) School Board of Nassau County v. Arline, 480 U.S. 273 (1987).

22) Sutton 판결과 함께 “3부작(trilogy)”라고 불리는 나머지 두 판결은 Alberton, Inc. v. Kirkingburg, 527 U.S. 555 (1999)와 Murphy v. United Parcel Service, 527 U.S. 516 (1999)이다.

23) 간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밑줄 강조는 필자)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

보조견 등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²⁶⁾하는 행위도 차별행위로 본다. 차별행위의 범주가 이렇게 확대되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비장애인 혹은 휠체어나 시각장애보조견 등에 대한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보다 더 넓은 개념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줄여서 ‘장애 차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법과 관련해서 더 정확한 용어이다.²⁷⁾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ADA의 장애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2. 장애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9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이후,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수가 급증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월 평균 한두 건에 불과하던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월평균 21.3건이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8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²⁸⁾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 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호: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27)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 제34권, 2011, 111면 참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근거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그러한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²⁹⁾와 같이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³⁰⁾처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시정권고는 그 명칭처럼 ‘권고적’ 효력 밖에는 없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자에게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42조가 이러한 권고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 의한 강제적 조치가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시정권고가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러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미국장애인법(ADA)에서는 시행을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는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교육관련 차별은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Offices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교통에 관해서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주거에 관해서는 주거·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다중시설의 이용에 관련해서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³¹⁾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차별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해행위에 의해 장애인이 입은

28) 이 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형석박사가 200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사건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토론회 자료집」(2012. 4. 19)에서 인용하였다.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2호.

3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민법상 통상적인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의미한다. 미국 장애인법(ADA)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고의를 넘어 “악의적(with malice)”이거나, 법이 보호하는 권리에 대해 “극도로 냉담한(with reckless indifference)” 태도를 가지고 일회성 침해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러한 침해를 해 왔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하고 있다³²⁾. 입법론³³⁾으로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허용하는 것이 장애차별의 예방 및 금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우리 상황에서는 위자료 인정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장애차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높게 인정함으로써 차별행위를 시정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³⁴⁾

제47조에는 입증책임의 배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피고는 차별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차별행위는 있었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러한 항변의 내용은 피고(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³⁵⁾ 입증책임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원고가 지는 일반적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여 피고에

3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42 U.S.C. § 1981a(b)(1) Determination of punitive damages:
A complaining party may recover punitive damages under this section against a respondent (other than a government, government agency or political subdivision) if the complaining party demonstrates that the respondent engaged in a discriminatory practice or discriminatory practices with malice or with reckless indifference to the federally protected rights of an aggrieved individual. (밑줄 강조는 필자)

3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에서, 악의에 의한 차별행위인 경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각주 22)의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75~77면 참조.

34) 차성안,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2008년 2월), 63쪽 참조.

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게 전환한 특칙으로, 장애 차별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다. 미국장애인법(ADA)은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판례를 통한 해석이 서로 상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적절한 입법례이다.³⁶⁾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 배상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경우도 있다. 가령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를 예로 보자. 이 경우에 장애아동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맞게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당사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서 멀리 있는 다른 학교나 특수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의 한 예는 미국 법원에서 행해지는 강제이행 판결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논의과정에서 법무부의 시정명령보다 더 강력한 구제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측에서 제기되어 법원의 구제조치가 정부측 법률초안에 포함되었다.³⁷⁾

미국장애인법(ADA)은 장애차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구제방법은 민권법 제7절(Title 7 of the Civil Rights Act)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³⁸⁾ 민권법의관련 조항에 따른 고용상 차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먼저 행정적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는 차별행위 시정명령(injunctive or equitable relief), 복직, 급여 소급지불, 변호사비용지급 등이 있고, ADA에 반하여 승급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승진을 명하는 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³⁹⁾는 법원이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명

36) Timothy A. Ogden, "Shifting Burdens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9 *Indiana Law Review* 179 (1995) 참조.

37)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권, 2007, 43면 참조.

38) 42 U.S.C. § 12117(a).

3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의 핵심인 제2항은 법원이 구체적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 제1항은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 간접강제를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적극적 조치의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61조⁴⁰⁾를 준용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현재까지 장애 차별을 이유로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한국 법률가들은 이러한 구제수단을 영미법계의 고유한 사법제도로만 이해하고 이를 한국 현실에 활용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도록 한국 법원이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한 판결이 없는데⁴¹⁾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적자치’ 혹은 ‘계약자유’에 근거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체결의 자유 내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하지 않고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만을 명했다.⁴²⁾ 계약자유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강행법규에 의해 상당한 제약 받는다. 사인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사적 자치나 계약자유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법원이 소극적인 두 번째 이유는 권력분립이론이다. 행정부의 차별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시정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내리길 주저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제기하는 항고소송⁴³⁾의 종류를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

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밑줄 강조는 필자)

40)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1) 구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방영을 명한 결정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97카합6437 결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8092 판결.

43) 「행정소송법」 제3조 1호.

법확인소송의 세 종류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에서 ‘이행소송’이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⁴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점에 관해 행정소송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삼권분립론을 근거로 이행소송을 부인하는 입장도 적극적 구제조치의 실현을 막을 수는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의 소’를 구하는 것이 행정소송에서와는 달리 논란이 없어 보인다.⁴⁵⁾ 삼권분립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온 미국의 보수적인 연방대법관들도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 없다⁴⁶⁾는 입장을 취한다.

한국법제가 대륙법계 전통이라는 이유로 영미법계에서 기원한 적극적 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입장도 감지된다. 이 제도의 기원이 영미법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제도를 회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한국 법제에 얼마나 많은 영미법계, 특히 미국법 제도나 규범이 수용⁴⁷⁾되어 있는지를 보면, 한국이 대륙법계 국가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⁴⁸⁾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형평법의 적용이나 강제명령은 신중하게 보충적으로 사용한다.⁴⁹⁾ 하지만 이것은 성문법규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ADA가 활용하는 강제명령제도는 형평법이나 판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제정한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의 구체적 규정⁵⁰⁾에 의한 것이다. 미국 성문법규를 모델로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법원이 주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44)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위 조항이 예시적인 것이라 본다.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830면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판 1992.2.11. 91누4126 참조.

4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박영사, 2012, 183~184면;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13, 218~219면 참조.

46) Fritz W. Scharpf, “Judicial Review and the Political Question: A Functional Analysis,” 75 *Yale Law Journal* 517, 584면의 각주 230에 나열된 판결들 참조.

47)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노명선, 이완규, 『형사소송법』, 제3판 성균관대출판부, 2013, 598~603면); 구속피고인의 보석제도(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9, 846~847면); 통상법원이 행정사건도 재판하는 “영미형” 사법국가제도(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0판, 박영사 2012, 893면); “미국법의 수권자본제도, 이사회중심제, 영국법의 주식할인발행제도 등을 채용”한 상법 개정(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290면) 등 참조.

48) 일본을 통해 들어온 대륙법계에서 한국 근대법제가 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한국법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륙법계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지는 못 한다. 이는 존재와 당위의 혼동이다.

49) Dan B. Dobbs, *Law of Remedies: Damages, Equity and Restitution*, 2d ed., 1993, West, pp.66~67.

50) Section 717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42 U.S.C. 2000e-16).

Ⅲ. 개정 방안

장애의 개념정의를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경험을 통해 볼 때, 바람직한 개선책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채택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 개념이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점, ‘사회적 모델’에 따라 장애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면서 추상적인 현재의 개념정의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외국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상세한 장애 개념을 풍부한 예시와 함께 나열하여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문언을 보강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적극적 구제조치를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을 법문상 더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와 사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특별법적 역할을 하도록 입법자가 의도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시 장애관련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서 장애에 관한 언급은 제34조에만 있다.⁵¹⁾ 그런데 그 내용이 “신체장애자”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주체적 시민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조항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⁵²⁾도 개정되어, “장애를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51)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2)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 박중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2007. 3. 6. 17:30경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3. 3. 1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같은 해 4. 15. 장추련이 결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지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 4. 4.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4. 10.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08. 4. 11.부터 시행되었으니, 2014년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째 되는 셈이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상황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인권의식 발전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의 현실이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시혜에서 인권으로’ 중심축이 옮겨져 가는 상황에 있었다.

반면에, 현실의 법과 제도는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수용할 만큼 발전되어 있지 못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결여된 시정권한 등으로 인해 실제 사안에 있어 정의가 실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법부 또한 기존 법률을 동원·해석하여 장애인차별 여부를 판단하려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노력의 최대 결과는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었을 뿐,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장추련에서는 ① 효과적인 권리구제 기구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힘있고, 독립성과 객관적 중립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담보된 장애인차별금지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②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인권위가 규정한 권리구제수단 이외에 시정요구/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 소송, 교육 및 봉사 위주의 징벌제도를 갖추어야 하며¹⁾, ③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요청된다고 논의되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는 제정 및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다(당사자주의).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작부터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국회 등과 협상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요, 당사자 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 ②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다(연대주의). 한국장총이나 장총련과 같은 거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몇 년을 지탱해 왔다. 나아가, 장애의 공통성과 보편성의 결과물이라 할 장애계 내부 단체들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노동, 교육, 여성, 인권, 종교, 문화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장추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장추련과 결합하였다.

1)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司法적인 수단이 있어야하는데, 민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 즉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① 입증책임의 전환, ② 징벌적 손해배상, ③ 집단소송 제도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 ③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복지의 시혜 대상, 일방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 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④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인권 운동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지나간 세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고 다수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 라인 및 판단 기준을 법률적으로 제시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부 등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보다 확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 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 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 ⑦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각종 법령의 제정 및 정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차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이고 각론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각종 법령에 잔존하고 있는 차별적 조항들을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⑧ 우리나라 전체 법 제정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당사자(혹은 수요자) 중심의 법률 제정 운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시행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 감수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특히, 시혜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이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3. 소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라는 세계장애인 운동의 이념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NGO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투쟁(생존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정책에 의존하는 단계(복지형)를 거쳐,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파악하고 차별 및 권리침해에 저항하는 방향(인권형)으로 진화되어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인권형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아태장애인 10년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 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국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II.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및 개정의 필요성

벌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로는 ① 법 및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단계적 시행에 영향을 받은 바도 있겠지만, ② 차별 사례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법원으로 가기 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③ 아직까지도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으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④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은 법무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이제까지 고작 2건에 그치고 있다는 점, ⑤ 법 제정 당시에 기대를 모았던 법원의 임시 구제 조치(제48조)가 실제 재판에서 법원의 소극적인 대응과 법리 구축 부족 등으로 단 한 건의 사례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 과정에서 투쟁과 협상, 정치적인 역학 관계 등이 작용되었다. 그 때문에 ① 장추련이 원래 요구했던 법안에 비하면 후퇴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② 법안에는 명기되지 못하였지만 시행령이나 다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협의되었던 내용은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③ 4년 가까이 장추련이 주도하는 법제정 운동이 지속되었지만 막상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만드는 과정은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일부 법조항의 모순이나 불명확성이 남게 되었다.

그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원래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와 비교하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실현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는 법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경과〉

제정 : 2007. 4. 10. 제정[법률 제8341호] 2008. 4. 11. 시행

1차 개정: 2008. 3. 21. 타법개정[법률 제8974호] 2008. 4. 11. 시행

2차 개정: 2009. 5. 22. 타법개정[법률 제9705호] 2009. 8. 23. 시행

3차 개정: 2010. 5. 11. 일부 개정[법률 제10280호] 2010. 5. 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② (생략)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③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래밍,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함
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화사업자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함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함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생략)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49조(차별행위) ①·② (생략)	제49조(차별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③ _____ _____ _____ _____.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과태료) ① (생략)	제5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_____ 과태료는 _____.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차 개정: 2011. 3. 29. 타법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9. 30. 시행
5차 개정: 2011. 6. 7. 타법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12. 8. 시행
6차 개정: 2012. 10. 22. 일부개정[법률 제11522호] 2013. 4. 2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생략)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⑥ _____ 장애인에게 _____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_____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바,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p>

7차 개정: 2013. 3. 23. 타법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

8차 개정: 2013. 8. 13. 타법개정[법률 제12035호] 2014. 2. 14. 시행

9차 개정: 2014. 1. 28. 일부개정[법률 제12365호] 2015. 1. 2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_____ _____ 1. ~ 3. (현행과 같음)</p>	<p>정보접근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서류, 공·사문서 및 인쇄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따른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반</p>
<p>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4. _____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_____</p>	<p>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서류, 공·사문서 및 인쇄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따른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반</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④ (생략)</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서류, 공·사문서 및 인쇄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따른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반</p>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1. 개관

장	절	조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제02조 장애와 장애인 제03조 정의 제04조 차별행위 제05조 차별판단 제06조 차별금지 제0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0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0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절 가족·가정·복지 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장	절	조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과 절, 조항마다 조금씩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은 다른 발제자들께서 개정 제안을 할 것으로 믿고, 여기에서는 필자가 법률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1장(총칙)과 제4장(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벌칙)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안하려고 한다.³⁾

3) 사실 본 발제자는 2012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이미 세세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개정안에 관해서는 위 연구 성과물을 상당 부분 원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위 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11.)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2. 총칙

1) 제2조 제1항 : 장애의 정의

가. 문제점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쟁점 중 하나이다. 장추련은 ‘장애’의 개념 정의에 ① 장애의 기간(장기간, 단기간, 일시적 모두 포함), ② 장애 판단의 기준(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으로부터 출발하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조화 도모), ③ 장애 발생의 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아니라,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이 그 이유임), ④ 장애의 궁극적인 내용(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즉, 기회불균등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상태)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 및 장애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부 측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과의 조화, ② 장애인 판단의 용이성, ③ 국제장애인권리협약상의 규정(이는 위 규정을 명백하게 오해한 것임) 등을 이유로 ‘장애’ 개념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조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6조(차별금지)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차별금지선언을 하면서 과거장애, 예단(豫斷)장애도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제2조(장애와 장애인)는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고 하여 ‘장기간에 걸친’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영구장애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안 제안 이유를 통해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 사유로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미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의 기간은 장기간으로 한정하였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 모델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법보다 나중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손상중심적’이고, ‘의료적 모델’에 더 가까우므로 오히려 퇴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나. 법 개정안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 간의 충돌이라 볼 수 있다. 복지적 관점에서는 특정된 장애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예컨대, 현행 장애인복지법), 인권적 관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때 그러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기간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고, 사회적 모델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손상중심적’, ‘의료적 모델’, ‘기능적 제한 접근법’에서 ‘인권적’, ‘사회적 모델’,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한 걸음 전진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먼저, ‘장애의 기간’과 관련하여, 일시적, 단·중기적 장애를 포함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장애인 복지도 ‘등급제’로부터 구체적·개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하듯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에 따라 일시적, 단·중기적 장애를 사유로 차별을 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 판단의 기준’ 및 ‘장애 발생의 사유’와 관련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로 개정할 것으로 제안한다.

〈장애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제3조 제1호 : 광고

가. 문제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 및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안) 등을 보면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4호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음반, 전기 전자 매체를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포괄적인 정의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최종적으로 ‘광고’로만 제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광고는 최소한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 광고”를 포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및 광고만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 법 개정안

이 법에 의한 광고는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 광고”를 포괄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상의 광고를 모두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광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표시 및 광고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도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u>를 말한다.</p>

3) 제3조 제20호, 제4조 제1항, 제32조 : 괴롭힘

가. 문제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용어의 정의) 제20호는 “괴롭힘 등”에 대해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차별행위)에는 ‘괴롭힘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직접차별, 제2호에서 간접차별, 제3호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제4호에서 광고를 통한 차별, 제5호에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제6호에서 보조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오는 사건 중에는 ‘괴롭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는 ‘괴롭힘 등’이 누락되어 있고, 제38조(진정)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위 제38조의 취지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다.

나. 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문언만으로 보면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게 된다는 지적이 타당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차별금지)과 제3장(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은 각 영역별로 금지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32조는 “괴롭힘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위 제4조 제1항의 문언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① 제4조 제1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상으로는 위와 같은 의문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는 점, ② 비록 제32조에서 “괴롭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진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점, ③ 법 체계상으로 볼 때 제4조 제1항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이상, 각 호에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⑤ 명확성의 원칙상 해석론상 가능하더라도 가급적으로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4조 제1항 제4호에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나머지 각호는 하나씩 뒤로 밀리거나, 제4조 제1항 제7호로 신설할 것으로 제안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7호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신 설></p>	<p>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7.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p>

4) 제4조 제2항 : ‘정당한 편의’ 개념 정의

가.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는 물리

적인 편의는 포함하고 있으나 비물리적인 편의는 놓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언급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는 물리적인 수단과 인적인 수단이라는 물리적 수단만을 가리키고 있고,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역시 물리적 수단만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편의에는 그러한 물리적 수단 또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규정·기준·관행 등을 변경하는 비물리적인 수단 또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간부급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 주차장 이용 정책을 장애로 인해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비간부급 장애인 직원도 회사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 변경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책이라는 비물리적인 것을 변경 또는 조정한 비물리적 수단 또는 조치다.

이처럼 정책 변경과 같은 비물리적인 것도 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법적 편의로 보는 것은 영국의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 §20(3), 미국의 「미국장애인법」 §101(9) 등 여러 다른 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존재한다.

한편, 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 개념 정의에 비물리적인 수단 또는 조치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나열한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다른 직무에 배치’ 등은 규정·기준·관행의 변경에 해당하는 비물리적 편의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비물리적 편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법 개정안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는 비물리적 편의를 포함하지 않지만 동법은 다른 조항에서 정당한 편의에 비물리적 편의도 포함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사실상 비물리적 편의를 인정하므로 당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대신 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비물리적 편의가 ‘정당한 편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항을 최대한 간략하게 개정하여 이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임을 적시하는 것이다.

개정하는 대안을 먼저 살펴보자면, 기존의 ‘정당한 편의’에 ‘정책·절차·관행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당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혹은 ‘정책’으로만 규정하고, 위 ‘정책’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규정·기준·관행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차별행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제4조(차별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정책·절차·관행 등 인적·물적·비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5)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 혹자는 위 법조문의 해석상,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적용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견해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① 신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입법자가 피진정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일정 기간까지 유예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구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과 ②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혹은 단계적 적용 범위를 둔 것은 피진정인을 권리구제 절차에 있어 강제이행(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서 유보한 것이지 피진정인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피진정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자체를 면제하였다거나 또는 강제이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행위라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시정권고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의 의미 혹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모든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여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을 문언적·형식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냐, 차별판단과 권리구제라고 하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권리구제를 주요 과제로 하는데,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4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장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분리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특별법·신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 관련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위 두 개의 법이 비록 일반법과 특별법,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조직상의 중복이 있을 뿐(장애인차별금지법 제40조, 정의(장애, 차별 등), 적용 영역, 적용 범위, 권리구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

원회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었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장애 차별 관련 조항이 사문화, 효력 상실, 폐지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설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 차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에 관하여 두 법은 양립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구제 수단과 방법, 벌칙 등을 적용할 수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면 위 법이 정한 권리구제 수단과 방법이 적용될 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임과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 경우에는 두 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수단과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 신법이고 특별법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이 모두 실존하는 법으로 양립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보다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에 합치하듯이, 위 규정 또한 차별 판단과 권리구제라고 하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하는 것,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밖의 법률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문언적 해석 방법을 따를 때에는 위와 같이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려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는 이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장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차별금지법 제9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는 이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장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p>

3. 권리구제 수단

- 제4장 ~ 제6장 -

1) 개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① 제4장(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38조 내지 제41조)과 ㉡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42조 내지 제45조)을, ② 제5장(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에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제46조 내지 제48조)을, 그밖에 ③ 제6장(벌칙)에 ㉢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제49조)과 ㉣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제50조)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제49조 제2호 : 악의적 차별 판단 기준

가.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제2항은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악의적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위 기준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4가지 전부를 고려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4가지 기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악의적 차별로 판단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차별이 매우 고의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이 약하거나, 지속성 및 반복성이 없거나,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가 크지 않으면 악의적 차별로 판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상규로 볼 때 이러한 결과가 오히려 형평성에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매우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 특히, 정부최종안과 열린우리당안에는 ‘전부’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도 없었는데 2007. 3. 2.경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당시 위원장이 “악의적 차별 판단시 4가지 기준을 그냥 고려하게 되면 이것이 4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악의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4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해야 악의적이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할뿐더러 예컨대 어느 한 가지 기준에는 해당하는 데 다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형평에 어긋날 우려도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수정 통과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악의적 차별인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전부’라는 단어가 없어도 4가지 기준을 적정하게 끌고루 고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전부’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사실상 형사처벌 조항을 장식(裝飾)화, 형해(形骸)화함으로써 다른 형사 관련법과의 형평성에 반하게 하기보다는, 아예 위 단어를 삭제할 것으로 제안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차별행위)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p>제49조(차별행위)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3)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힘있는 기구, 독립성과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권을,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보면,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신속하지도 못하고 장애인 감수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며 권한마저 솜방망이와 같다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야 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발동 요건을 상당 수준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4) 사법(司法)적인 권리 구제 방법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① 징벌적 손해배상, ② 집단소송제도 등이다.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적인 도입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의 손해를 그대로 전보해 주는 전보배상의 법리(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 실손배상)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실제로는 정신적인 손해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손해를 입증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증한다고 해도 소액에 그치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될 것이고, 가해자는 패소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여전히 법을 위반 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의 악질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 가해자나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게 단순히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이 불법행위자의 처벌 내지 행위의 억제에 있다는 점에서 형벌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것이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또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만일 이러한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함부로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국가기관 또한 차별을 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므로 상급기관 및 국민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손배상이나 전보배상의 법리를 뛰어 넘어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의 한도를 입증액의 2 - 5배로 한다거나 배상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나. 집단소송제도의 제한적인 도입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소액 다수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단체소송을 포괄하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당사자의 수효만 다수인 공동소송이나, 피해자 모두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선정당사자제도와 구별된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란 매우 적은 숫자의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 잠재적인 원고로부터 위

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 소송을 승소나 합의로 이끈 후에는 이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1966년경에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갖추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법제화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적용 대상을 중요한 몇 가지 차별금지 및 손해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대상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5) 그밖에 실효성 확보 방안

가. 개관

(1) 민간 및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실효성 확보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만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장에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밖에 재화와 용역, 문화, 사법, 참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래를 내다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법제도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교육·홍보 - 상담·사례발굴·적용 - 모니터링 - P&A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홍보 및 교육, 진정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인식 개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 및 단체들이 일상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장에서 항의하는 것부터 집단진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파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실행 의지

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가만히 놓아두면 법대로 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사례들을 발굴해 내고, 이를 집단진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을 통한 구제(시정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제(법원의 임시조치, 손해배상, 처벌 등)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기획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해 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과 인권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복지적인 측면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연금법, 편의증진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여러 법령들과 함께 가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재정 확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니터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고, 이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는 차별의 실태와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입법기관 및 정부의 활동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P&A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교육·홍보 - 상담·사례발굴·적용 - 모니터링 - P&A 시스템 등이 각기 가진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익옹호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근거 조항 신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제를 자체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동법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동법을 운용하여 장애 차별을 조사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이래 거의 매년 동법의 이행을 모니터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4차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모니터링’이라는 명칭으로 해당 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다른 차별 금지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법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의 제3차 이행 모니터링 때부터는 그러한 실태조사 이외에 전년도 이행 모니터링에서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미진한 부분이 어떠한 것이고 이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사업을 이행 모니터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에 우리 사회의 장애 차별의 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등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등을 조사하는 인식조사도 포함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부터 주요 현안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여 주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문제된 부분을 개선하게 하고 위원회의 관련 진정사건, 정책 권고, 정책 과제 등의 도출 또는 개발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모니터링을 위해 주로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현장에 보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 두 기관의 모니터링 사업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문제점을 노출했다. ①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 기관의 조사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그간 충분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②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모니터링 주관 기관, 모니터링 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둘 중 어느 기관이 어떠한 내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어 왔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동법에 법 이행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

가 두 기관 안팎에서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는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모두 해당 법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조항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주관 기관 및 수행 방법,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의 주기/규모/방법 등의 대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 한국형 P&A 시스템 도입의 근거 조항 신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단체들은 그 인권센터가 한국형 지방자치단체 P&A 시스템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이하 'P&A')의 모델이 되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장애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P&A의 구축이다. 2010. 8. 25. 에는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2년 11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연대' 구성을 제안했으며, 2013년 8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대신 '장애인기본법' 제정 추진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P&A란 미국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에서 시설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대나 방임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스템인데, 주로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되, 그와 독립하여 실질적 조사권을 갖고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한 국가기구로서 조사권, 시정권 고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 신속성, 전문성, 감수성, 실효성, 최근에 보수성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신중·인색하여 현재까지 단 2건에 불과하다. 장추련 등 민간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도 없고 제소권도 없다.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보자면, 가정 등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학대행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권리옹호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 방문, 분리조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즉, 아동학대예방센터⁴⁾, 노인학대예방센터가 P&A 시스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독립된 민간단체들에게 조사권한, 보호·구제조치권, 제소권 등을 주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A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미국식 P&A만이 반드시 좋고 우리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⁵⁾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기대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권리옹호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가 고민되고 있다.

특히, P&A 기관은 ① 조사권 및 접근권장애인 차별 및 권리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문제 장소에 접근하여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함(강제조사권 혹은, 임의조사권 + 조사 거부/기피자 제재 등), ② 조사 이후의 조치 및 사례관리, ③ 긴급전화, ④ 직접 구제 혹은 구제방안 제시 및 실행, ⑤ 각종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권과 권리구제에 관한 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P&A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호기관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의 한 곳씩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하다.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민간위탁을 위한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미국의 P&A는 지적장애인 대형시설인 윌로브룩(Willowbrook)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달장애인 옹호 및 권리장전법(DDABRA, DD Act)을 근거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4. 소결

위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함으로써 원래 법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인식개선의 문제, 차별시정 관련 기관의 자세 및 태도는 중요하다.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진정사건 처리 속도는 느리기만 하니, 어느 세월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에 접수되는 진정 및 상담 건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고, 각 지역의 인권취약계층을 위하여 그 역할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인원 및 조직은 축소되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사무소 또한 좀 더 많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통하여 전문성,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수호기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시정명령심의회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도 적합한 사례를 발굴하여 피해자를 통해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시정명령권 발동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법률들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편의증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내용이 대폭 수용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증진법에 없는 인적 서비스와 설비 및 도구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가 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관련 법률들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신법(新法)이요, 장애인 인권 관련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합당하게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상충되는 개별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에 상승 작용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현재로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나, 위 협약의 근본 취지를 국내 실정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되지 못한 내용을 국내 법 체계 및 재판 실무에 반영할 것인가가 숙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위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에 상승 작용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IV. 결 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교육, 홍보, 제재/규제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인식 개선).

다른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사례들을 발굴해 내고, 이를 (집단)진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을 통한 구제(시정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제(법원의 임시조치, 손해배상, 처벌 등)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고, 이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는 차별의 실태와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입법기관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P&A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교육·홍보 - 상담·사례발굴·적용 - 모니터링 - P&A 등이 각기 가진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익옹호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추련이 2008. 12. 22. 발표한 ‘장추련의 향후 나아갈 길’이란 글에서 잘 나타나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댄 것일 뿐이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법원, 인권위, 법무부 등이 차별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애인 차별, 정당한 편의, 간접 차별, 직접 차별 등의 개념과 이론적, 철학적 논거를 개발하고 정립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빈틈을 메워줄 법률의 제정,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넘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점 등의 산적한 문제가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축하하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법과 제도의 개정과 보완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앞당기게 되기를 소망한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토론회 일정

광 주

- 일시 및 장소 : 2014. 4. 15.(화) 14:00,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실
- 사회 : 황정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 좌장 : 최완욱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기념사]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축 사] 최연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14:05~14:30
	❖ [축 사]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제 및 토론	[발제1]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원칙과 국내·외 기준 권미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14:30~14:50
	[발제2] 광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황현철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14:50~15:10
	[토론1] 장애인 자립생활 법·제도 분석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15:10~15:20
	[토론2]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활동지원 확대 과제 김대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5:20~15:30
	[토론3]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박찬동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인권팀장)	15:30~15:40
	[토론4] 자립생활 저해요인 및 우선적 지원과제 황은영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5:40~15:50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5:50~16:20
	폐 회	16:20

2014. 4. 15. _ 광 주

[발제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원칙과 국내·외 기준

- 권미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발제 2] 광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 황현철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토론 1] 장애인 자립생활 법·제도 분석

-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토론 2]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활동지원 확대 과제

- 김대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토론 3]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박찬동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인권팀장)

[토론 4] 자립생활 저해요인 및 우선적 지원과제

- 황은영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원칙과 국내·외 기준

권미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원칙과 국내·외 기준

I 권미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1. 장애인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이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완전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채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삶을 말한다¹⁾.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주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바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활 패러다임은 장애를 신체적인 손상, 심리적 부적응, 직업기술의 결여 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물리치료사,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개입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를 전문가 및 친척·타인 등에 대한 의존성,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장벽 등으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옹호,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의 제거 등을 강조한다. 후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주변적 환경 또는 사회로부터 장애가 야기된다는 개념으로, 자립생활 운동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표〉 재활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Dejong, 1978)

항 목	재활패러다임 (Rehabilitation Paradigm)	자립생활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와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
문제의 소재	개인	환경, 재활과정

1) 박경수 외(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p.16.

항 목	재활패러다임 (Rehabilitation Paradigm)	자립생활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
문제의 해법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인 개입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조,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의 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의 주체	전문가	소비자
바라는 성과	ADL(일상생활활동) 극대화, 유급 고용, 심리적 적응, 동기 유발, 완벽한 신변처리	자기관리,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

이처럼 장애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접근할 때, 장애는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된 건축구조와 법·제도·정책·관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환경의 변화와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갖추어지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정상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일상적인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보호자나 전문가에게 종속되어 있던 삶을 스스로 통제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 즉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 원칙

이처럼 장애로 인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변경 및 지원**이 요구된다. 물리적 환경·교육·고용분야 등이 비장애인이 위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장애인에게 불리한 제도 및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도로·교통·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저해하는 각종 제도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등을 장애특성에 맞게 개조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이 자

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부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각종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받는 것도 내포한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는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자신의 의사와 의지를 갖는 것, 즉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정권에는 자신의 건강관리, 식단조절, 금전 관리 등 일상적인 생활을 비롯하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와 이에 스스로 대처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한편, 최근에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결정 및 선택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²⁾, 이는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의지 뿐만 아니라 주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탈시설화**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자립생활이 사회참여 및 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 및 인력을 지원하여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국내·외 기준을 통해 바라본 자립생활의 정책 방향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국내 법률로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국제 기준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보호대상의 관점에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본 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선택의 자유, 자립적 생활,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참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활동보조지원 및 각종 가정·생활시설·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정희 외(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P.22.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선택의 자유, 자립적 생활,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참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b) 장애인의 생활과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되거나 격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지원(Personal Assistance)을 포함하여 각종 가정, 생활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여야 한다.
-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기준으로 이용가능 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외, 동 협약 제9조(접근성) 및 제20조(개인의 이동성), 제25조(건강), 제27조(근로 및 고용),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등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이동 및 거주 자유를 제한·박탈·구속 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 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제3조(기본이념)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5조(장애유

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활동보조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합하여 보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들은 그 목적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에 두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도록 하고있는데, 자립생활 정책의 방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법·제도·관행의 개선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되어야 한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2

광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황현철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광주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 황현철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프롤로그(prologue)

광주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장애인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다 라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인권도시를 논한다는 것은 인권적이지가 않다. 시청 건물에 연말이 되면 수출 100억달러, 141억 달러라는 거대한 프랑카드가 시청 건물 전체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4.2%(울산 1.4%)로 전국 평균 2.7%보다 1.5배(울산의 3배)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14번째이다. 물론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더 약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시청 건물 앞에 걸려있는 거대한 프랑카드가 시민들과 장애인들의 삶을 가리고, 소통을 차단하고, 시장의 눈을 가리는 차단막이 아닌 시민들의 염원이 적혀 있는 글이 건물 안쪽을 향해 걸려 시장과 공무원들이 밖을 쳐다볼 때 마다 시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푯대가 되기를 원한다. 장애인들의 삶이 광주광역시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으로 함께 하고, 어떻게 하면 개별적인 자율성이 보장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인권도시, 창조도시, 일등 광주는 없다.

여기에서는 탈시설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2010년에 실시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자립생활 실태조사, 인권 실태조사, 인화원 사건을 중심으로 한 탈 시설 정책에 대한 광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립생활 관련 법적 환경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노동, 주거, 교통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법률의 주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있지만 주된 부처는 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법적 환경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1조 목적에 자립생활을 통해 사회활동의 참여증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2, 53, 54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활동보조인 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9조 2항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조 목적에는 활동지원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3조에는 자립생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자립생활이라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 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의 개념과 현황

과거 장애인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대안적인 거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 평생 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하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은 대부분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종신행 거주시설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2008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거주중심으로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대형시설을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고, 2009년 이후 신규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 규모를 넘지 않으며, 한 유닛은 2~4인의 그룹홈 규모를 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일지라도, 전체 장애인의 1.5%를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의 25%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총량을 증대하는 것과 함께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 재검토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자립생활 모델이 강조되면서 더욱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확산은 이념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에서 평생 지내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도록 장애인들의 자기결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 사상은 ‘인간’의 지표로 ‘이성, 강함,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동시에 ‘비이성적 존재’나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인간을 모아 수용·치료·교육시킨다는 의식도 생겨나게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의 뱅크 미켈센은 지적장애인부모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대형 수용시설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화 이념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스웨덴의 니르제가 이를 더욱 확산시켰다. 북유럽 방식의 정상화란 ‘분리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로 요약되며, 이

는 시설에서의 생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올펜스 버거는 북유럽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북미식 정상화원리를 고도로 이론화시켰는데 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내 재택생활을 중시하였고, 문화적으로 통상적인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이론을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로 발전시켰으며, 탈시설화는 20세기 초부터 점진적으로 시도되어 온 운동으로서,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지역사회정신보건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탈시설화는 복지예산의 절감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주거지원과 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오늘날의 탈시설화는 일차적으로 시설보다 지역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설을 개선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탈시설화의 일부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의 결과를 장애인 자신의 병리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 의해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장애의 문제는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축상의 장벽, 장애인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장벽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장애인 자신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자립생활협의회(National Council Independent Living: NCIL)에서 정의한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의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개인의 삶에 대해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이란 장애인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체계, 보조인, 보조기구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기능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및 환경의 자원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제조건은 주거, 활동보조, 주변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권, 권익옹호와 훈련, 정보와 상담, 그리고 보장구등의 지원이다. 또한 자립생활에서 의미하는 ‘자립’의 의미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민권보장의 정신 및 장애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립생활의 정의도 직업적 자립이나 일상생활동작의 자립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 비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보조를 받지만, 자기 삶이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결정하고, 스스로 바라는 목표나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탈시설화, 자립생활 이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인화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거주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자와 퇴소자 수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은 강제력이 없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상의 문제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년도별 예산안 비교

내용	2010년	2011년	2014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9개소, 순시비포함)	300,000천원	450,000천원	860,000천원
장애인활동지원(순시비포함)	10,055,889천원	16,286,000천원	29,635,995천원
자립지원금	10,000천원	10,000천원	20,000천원
임대주택지원(인건비포함)		50,000천원	87,500천원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활동보조사업에서 활동지원제도로 명칭도 바뀌었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순시비 17억(2014년)을 활동지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자립지원금의 경우 20,000천원으로 4명에게 5,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으로 5채의 집을 임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활동지원제도의 변경 내용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1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
신청자격	만6~만65세 미만 1급 장애인	만6~만65세 미만 1,2급('13.1.1~) 장애인
대상자	35천명('11. 9월 기준)	60천명(12. 12월 기준)
급여내용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급여량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 다만, 외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정) 시군구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선정) 시군구
본인 부담금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차상위 초과 : 4~8만원 독거특례	기본급여 : 1~4등급 기초는 무료, 차상위는 2만원 차상위 초과 : 6~15% 차상위 초과 : 22,400 ~ 94,500원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 ('12년 94,500원)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2~5% (최소 본인부담율)
제공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교육기관 : 시도 지정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교육기관 : 시도 지정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제공기관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지침)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고시)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최근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특성 연구” 결과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한 장애인들과 운영자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이용자가 생각하는 좋은 서비스의 개념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공급자가 인식하는 좋은 서비스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종 장애인들은 좋은 서비스의 개념을 서비스 이용결과나 성과가 아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과의 상호교류 과정 자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은 서비

스 성과(outcome)가 아닌 과정(process)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부의 이용자 중심 품질 관리 방안의 핵심은 서비스 기관 간의 “경쟁”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요구와 관련하여 “경쟁”과 “선택” 보다는 “참여” 즉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여 공급자 측과의 좀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 1급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갖는 공통적인 인식, 즉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부 서비스가 자신에게 언제나 주어질 수 있는 임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평생 함께 가야 할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인식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환경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시도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서비스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

광주에서는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와 연구는 최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실시한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거주시설 이용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수조사이었고, 이 결과물을 토대로 장애인단체들도 자립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인화원” 사건이 다시 세상에 “도가니”라는 소설과 영화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광주는 2011년, 2012년, 2013년에도 해마다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보면,

-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거주인 32.9%(235명)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반면, 66.1%(472명)은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비 보조, 지역복지 연계, 사회적 지원, 생활정보 제공, 생활지도사 파견, 직장 확보, 의료 지원, 활동보조인 지원 등의 순이었다.
- 외출을 전혀 하지 않는 장애인이 6.9%(22명)였고, 1년에 5회 미만 외출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1.6%(101명)이나 되었으며, 월 5회 미만 외출한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27.2%(87명)였다. 월 5회 이상 외출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1.9%(38명)였으며,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겨우 7.3%(23명)에 불과하였다.

- 시설에서 나가 일반 가정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1.3%인데 비해,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6.9% 였다.
 - 희망하는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동료 및 생활지도원과 함께 살고 싶다는 장애인이 25.2%였고,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장애인은 22.2%였으며, 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장애인 20.0%,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싶다는 장애인 17.0%, 생활지도원과 살고 싶다는 장애인 10.4% 등이었다.
 - 희망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가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20.0%, 단독주택 17.0%, 주상복합아파트 10.4%, 연립주택 3.7% 등의 순 이었다.
- 자립생활을 계획하기 위해 상담하고자 하는 대상의 순위를 보면 시설 직원 39.3%(53명),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 가족, 장애 및 인권관련 단체 활동가, 지인, 공무원,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동료장애인 등의 순이었으며, 누구와 상담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31.1%(42명)나 되었다.
- 자립생활이나 자립생활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시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나갈 수 없다는 반응이 31.0%(13명)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립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 계획을 함께 수립해 준 경우가 19.0%(8명)였으며, 구체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준 경우도 14.3%(6명)였다. 또한 나가지 못한다고 반대한 경우가 9.5%(4명)이었으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도 9.5%(4명)였다.
- 자립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는 장애인이 43.8%(140명)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축, 취업 준비, 사회적응 준비, 도와줄 사람 모색, 주택 탐색 등의 순이었다.
- 퇴소 시기에 대해 즉시는 21명, 6개월 이내 10명, 1년 이내가 10명이었다.
- 145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2011년)에서도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41% 였다.
- 시설 입소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7%,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8.0%로서 과반수가 5년 이상 15년 미만 동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거주인의 시설 입소 경위를 보면 가족의 의뢰가 49.6%로 가장 많았고, 연고자가 없이 의뢰된 경우도 47.5%나 되었으며, 장애인이 스스로 시설을 선택한 경우는 2.9%에 불과하였다.
- 가족조사 참여자의 90.0%는 장애가족이 생활시설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생활시설 거주를 원하지 않은 가족조사 참여자는 8.1%에 불과하였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수당,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콜택시 또는 저상버스와 같은 이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가족의 자립생활을 원하는 가족이 35.0%(56명),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는 가족이 51.3%(82명), 응답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은 가족이 13.8%(22명)였다.
- 장애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직접 제공하고,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 줄 경우 장애가족을 집에서 돌볼 것인가에 대해 가족조사 참여자들 중 오직 20.0%(32명)만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족 조사 참여자는 78.1%(125명)였다.
- 연령이 낮은 장애인들이 연령이 높은 장애인들보다 자립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자립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고가 없는 장애인과 가족에 의해 시설에 입소된 장애인이 시설 입소를 스스로 선택한 장애인보다 자립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낮에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 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장애인보다 자립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이 선택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수당,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콜택시 등에 대해 각각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본인의지로 시설 입소는 18%, 타인에 의해 입소는 38%로 응답하였다.

위 결과들을 요약하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한다면 거주형태는 그룹홈, 주택형태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장애인들의 자립욕구, 다양한 외부활동 경험을 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교사 입장에서도 적절한 지원

이 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이 33%나 된다. 여전히 외부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고,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나 상담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아 부족하였다. 본인 자의로 입소한 장애인보다는 타인이나 가족의 권유에 의해 입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족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광역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룹홈과 체험홈의 확대,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면,

- 가칭 ‘광주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이 센터의 주요기능은 장애인거주시설, 그룹홈, 자립생활 체험홈, 지역사회 내 거주시설 등 다양한 거주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조정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시설 거주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을 미리 준비된 매뉴얼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거주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이를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각 장애인별로 ‘개별화자립생활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별화자립생활계획은 지적장애인 각자의 지역사회중심 교육의 결과 및 지역사회 적응 정도 등을 기초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시설 내에서 인권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자립생활정보 고지 및 그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해야 하고, 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자립을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인의 자격요건이 되는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시설 거주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립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시설장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

립생활에 대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자립을 한다고 퇴소하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정부의 정책과 시대의 흐름,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4. 시설에서 시설로의 사례

2005년 6월 청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되어 지금까지 우석법인의 감추어져 왔던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비리와 횡령, 구타, 성폭력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집단인 사회복지법인의 방해, 돈에 굶주린 법률가들의 지원사격, 구태의연한 행정기관의 조치 등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모 구청 관계자는 “사람이나 죽어나가야지... 성폭행 정도로 시설이 폐쇄되었냐고” 도리어 반문까지 하였다. 하지만 많은 광주시민들과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의 창이 거대 권력집단의 방패를 뚫고 2011년 10월 31일자로 우석법인의 해산의 행정처분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60여명의 인화원 거주인들의 거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 2011년에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전무한 상태였고 자립생활 정착금 1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지역사회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과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결국 청각과 지적 등 중복장애를 가진 인화원 거주인들은 임시전원조치라는 명목 하에 5개 시설에 분산되었다. 그 후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인화대책위”)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북구청, 광산구청 등은 TFT를 운영하였다. TFT에서는 임시 전원조치와 거주인 재활지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임시 전원조치 후 건강진단, 심리검사, 욕구조사 및 일상생활훈련과 재활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행정기관은 수차례의 욕구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를 두고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인화원 거주인들은 임시전원조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전 전원조치가 되어 정든(?) 인화원을 떠나 새로운 시설에서 제 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화대책위에서 활동하셨던 한 장애인 어

머님의 절규가 생각난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인화학교)하면 끝날 줄 알고 2년 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거리에서, 천막에서, 법원에서, 시청에서 투쟁을 하였다. 내 아이가 졸업하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대학이라는 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이제는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서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기억난다. 전원 조치된 인화원 거주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하였고 몇 명의 장애인들은 계속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우리는 문제 시설에서 좀 괜찮은 시설로 그냥 옮겨놓은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동안 수차례 행정기관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허공속의 메아리처럼 “예산이 없다”, “결혼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얼마 되지 않은 자립생활 정착금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인화원”사건 그 이후 광주에서는 2곳의 장애인시설이 더 폐쇄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현비동산의 장애아들과 소망의 집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로 옮겨가는 것으로 문제는 종결되었다. 한 번으로도 족할 만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광주에서 추진한 장애인 임대 주택 5가구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하반신 지체장애인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등은 아직 자립생활과 관련된 교육과 준비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나오려고 할 것인가? 자립생활 욕구 및 실태조사에서의 결과들을 참고로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와 실적주의 등이 장애인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인화원”을 계속 양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5. 광주지역 장애 관련 지표 현황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남자 38,359명, 여자 30,175명 총 68,534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33,7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청각장애인으로 8,289명이었으며, 안면장애인이 59명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1급 5,954명, 2급 9,337명, 3급 11,780명, 4급 10,394명, 5급 13,698명, 6급 17,341명이다.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거주시설 24개소에 724명의 장애인이 법인시설에서, 87명의 장애인이 개인신고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22곳에 93명이 거주

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5곳, 주간보호센터 20곳, 수화통역센터 5곳, 심부름센터 2곳, 장애인 체육관 1곳이 운영중이다.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 4곳, 보호작업장 13곳,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곳 등 총 18곳이 운영중이다. 주요 생산품은 식료품(김치, 어묵, 콩나물, 참기름)과 제과제빵, 도자기, 전자제품 조립 등이다. 또한 장애인 유형별 단체, 총연합회, 자립생활센터 등 50여개의 장애 관련 단체들이 활동중이다.

에필로그(epilogu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0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복지시설에 장애인을 수용’ 하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시설 수용, 시설 수용중인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통제, 사회참여를 가로 막는 행위는 심각하게 반복 되어왔다.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난 우석법인 문제의 본질은 인화원이란 장애인생활시설, 인화학교란 기숙학교에서의 폐쇄적 수용을 방치하고 있는 법과 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자기방어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서구 복지 선진 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 이후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진행해 왔으며 더 이상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장애인수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2010년 우리나라에는 생활시설 452개소에 24,395명(시설당 53.9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도 생활시설 490개소에 25,345명(시설당 5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553개의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수용의 대안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은 2010년에는 692개소, 2011년에는 760개소가 운영중이다. 100여명의 대규모 시설을 30, 40여명의 시설로 나누어 원장, 사무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든 것이다. 탈시설화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가족들이 원한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한편으로는 거주시설을 여전히 늘리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준』에 의하면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인당 거실면적 2.0㎡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1인당 3.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

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정하고 있다. 몸도 불편하여 휠체어까지 이용해야 하는 8명의 장애인이 8평의 방 하나에서 개인옷장, 이불장, 책상 놓고 살라는 것이다. 최근 변경된 지침의 권고기준은 1인당 5㎡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논하는 것은 너무 민망한 일이다. 『국토해양부가 공고』하는 한국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1인 침실은 5.76㎡이며, 1인 거주기준(방 1, 부엌 1)은 14㎡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은 15㎡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1인당 1식 주부식비를 2,069원(2013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단체급식 기관인 특수학교는 2,590원(2013년 기준), 초등학교는 2,880원(2013년 서울특별시 기준), 복지관 무료급식소는 2,300원(2012년 광주광역시 기준), 군 장병은 2,144원(201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366원(2013년 기준), 공무원은 5,909원(2013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똑같은 나라의 국민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가 왜 이리 달라야 하는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1년 표준건축비는 1,627천원/㎡으로 일반청사 1,670천원/㎡, 경찰서 1,610천원/㎡, 병원 1,940천원/㎡, 전시시설 2,550천원/㎡이지만 2011년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건축비 지원 단가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1,149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2010)와 인권실태조사(2011) 결과를 보면 97.1%가 무연고 또는 가족의 의뢰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한 반면 2.9%만 스스로 장애인생활 시설을 선택하였다. 또한 시설 거주인들의 40%이상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지금 거주시설에서 40%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2014년 장애인 복지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립생활 정착금은 4명분 2,000만원만 책정되어 있다. 지금 당장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1년에 4명 정도의 예산을 배정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선택인 것이다. 조금만 지원해주면 가능한 꿈과 권리가 내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20년 후에야 이루어지는 세상을 누가 살고 싶을까?

참고문헌

- 김두래, 채인숙(2012).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 김성욱(2005). 정상화(normalization)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푸코의 처벌과 배제의 양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외 6명(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영일 외 5명(2010).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 광주광역시.
- 박수지 외 2명(2013).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특성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2008). 장애인생활시설 추진계획 보도자료.
- 서정희 외 3명(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 전재일, 이성희, 김효원(2000).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pp.528-552).
- 광주광역시(2011). 광주광역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내부자료.
- 광주광역시(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장애인 단체 운영현황, 장애인 등록현황. 노인장애인과 자료실(<http://www.gwangju.go.kr>)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1

장애인 자립생활 법·제도 분석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장애인 자립생활 법·제도 분석

Ⅰ 김상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1. 총론 : 재활에서 자립으로의 전환

가.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 극복 관점으로서 재활(再活) 패러다임은, 장애를 신체적인 손상, 심리적 부적응 등 완전한 것에 대한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한 후, 위 결핍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의존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종속성, 비주체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에서 출발하는 자립(自立) 패러다임은, 장애인이 가급적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일상에 대한 통제권을 쥐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참여하는 삶을 지향한다.

이 같은 자립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신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행동할 권리로, 존엄성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기본 목표이자 원칙으로 삼는다. 이는 장애인관련 법률의 지침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권리협약¹⁾, 장애인차별금지법²⁾ 등에서 선언되고 확인되고 있다.

- 1) 제3조(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b. 차별금지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 2)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또 위와 같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은 선택권(選擇權)과 통제권(統制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제공되어야 함을 뜻한다. 선택 가능한 대안적 방법들이 둘 이상 제공되고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립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社會參與)와 그를 통한 사회통합(社會統合)이다. 장애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에서 흔히 논의되는 탈시설화도 위와 같은 사회통합의 이념을 관철하는 수단적 의미가 있다.

나. 자립생활 이념의 현행 법률에 투영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

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 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각론 : 각 영역 자립생활 법제도 검토

가. 일상적 활동지원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며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상적 토대는 장애인보조기구 또는 활동보조인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조기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본적 보조수단이기 때문이고, 보조인은 사회참여, 근로 또는 문화생활,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해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보조기구 또는 활동보조인을 통한 일상적 활동지원은 복지적 차원이나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자기 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³⁾, 그와 같은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⁴⁾이 제정

3)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이하 광주시조례⁵⁾)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이하 광산구조례⁶⁾)에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 교부, 보조기구업체의 육성, 연구개발 등을 규정하고⁷⁾,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⁸⁾, 의료급여법은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의료급여의 하나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⁹⁾. 광주시조례 및 광산구조례는 보조기구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다.

현행 활동지원 제도는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의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게만 제공됨으로써, 3급 이하의 장애인이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신청자격에 관한 量的 제한),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을 기초로 지원 범위를 제도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개별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제공된 서비스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간 質的 괴리)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보조기구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장애인복지법이 고시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의 불과 18%만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험적용에서 배제된 보조기구가 너무 많다는 점, 보조기구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 광주시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제14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15조(추가지원) 등
- 6) 광산구조례 제7조 제1호(활동지원급여), 제9조(신청 및 지원), 제10조(지원인력과견), 제11조(추가지원) 등
- 7)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내지 제68조
- 8)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9)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장구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시설의 대형화, 통제 위주의 관리, 집단생활로 인한 선택권의 축소 등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 따라서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자립생활 전환을 유도하며,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영역의 제도 개선(이 점은 아래 라.항 참조)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책임을 규정하고¹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¹¹⁾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위와 같은 자립생활을 인식하고 그 철학 기저에서 제도를 설계하고는 있지만, 자립생활의 원칙을 정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외부와 소통함으로써 자립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 초기에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필요,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전환주거 운영 등 임시거주 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에 관한 사전 연습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탈시설화 이후 장애인에게는 거주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가능하다. 주거지원이 없는 탈시설화는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이는 탈시설화에 대한 대안적 성격도 있다. 현재 장애인의 주거보장은 장애인복지법¹²⁾과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¹³⁾¹⁴⁾, 주택법¹⁵⁾, 주택공급에관한규

10)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11)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제27조(주택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칙¹⁶⁾ 등에 산재되어 있다. 지원의 형태는 장애인에 대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급 측면과 설치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광주시조례¹⁷⁾ 역시 우선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3)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14)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15)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 1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내지 ④ 생략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 17) 광주시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제12조(주거보장 서

공급과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주거지원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공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애인 주택 보급률이 매우 낮다는 점, 취저주거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장애인을 포함한 주거약자를 전제로 한 기준만이 있어서, 장애인만을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라. 경제 활동, 의료 수요, 이동 및 접근성 지원을 통한 자립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은 일상 활동 지원, 주거 지원만으로 확보될 수 없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저해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배제, 차별 등이 개선될 때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일상활동 지원, 주거 지원이 기초이고 필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담보될 수는 없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제도개선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연금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법, 의무고용제도 및 직업재활훈련 등을 통해 고용보장을 꾀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료보장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설 접근권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관련법(이하 편의증진법), 이동권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정보접근권과 관련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 장애인 연금제도가 1~2급 중증장애인만을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경증장애인은 소득상실 여부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 ② 고용지원 영역에서는 의학적 판정 외에도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구체적인 근로능력, 개인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③ 의료지원 영역에서는 현행 장애인 진료의 보험수가가 너무 낮아 장애인 진료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소득수준에 따라¹⁸⁾ 의료보호를

비스), 제13조(공공주택 공급 지원)
 18)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던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수급권 대상에서 제외될 때, 의료보호 역시 제외되는 경우이다.

박탈해 버리는 문제점, ④ 시설접근권의 측면에서는 건축허가시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점, 허가시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승인된 후 이를 제거해 버리는 문제점, 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마을버스, 시외버스도 저상버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안내판 및 음성알림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⑥ 정보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수화를 단순한 보조 혹은 서비스와 같은 관점이 아닌, 수화언어를 법적 언어로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2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활동지원 확대 과제

김대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활동지원 확대 과제

■ 김대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활동지원서비스와 이동약자교통지원수단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일상적인 삶이란 먹고, 자고, 몸을 씻고, 배설하고, 집안 청소와 빨래... 등을 연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바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다. 즉 다시 말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인권법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립을 하지 못하고 시설이나 가족들의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혼자서 식사, 목욕·세면, 대소변을 해결할 수 없다. 아마도 중증장애인들은 내가 과연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서 먹고, 씻고, 신변처리하는 일을 시설이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던 때처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자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염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활동지원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급여(수가)가 차등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활동보조인들의 자세이다.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고, 각각 수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목욕장비가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활동보조인이 아닌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함으로 일종의 수치심이 생긴다. 또한 방문간호는 중증장애인들은 단지 장애가 심할 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유

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인들의 장애상태와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장애 2급까지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 실시되다보니 활동보조인들에게도 서비스를 하기에 쉬운 이용인이 있고 어려운 이용인이 있다. 분명 휠체어를 밀어주고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전동휠체어에 무거운 중증장애인을 태우고 목욕과 신변처리를 해 주는 것과는 서비스의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시간당 급여를 똑같이 8,55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활동보조인들이 어렵고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이용인(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활동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의 활동보조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말할 때 과거의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숙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날마다 아무도 없는 방안에 처박혀 외롭게 지내야했던 삶, 항상 죄스런 마음으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식사와 세면·목욕, 그리고 대소변을 해결해야 했던 삶, 미래에 대해 아무런 꿈을 갖을 수 없었던 절망적이었던 삶이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중증장애인들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결코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탄생 배경의 정신이다.

지난 2013년부터 활동지원 대상이 장애 1·2급으로 확대되고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휴일이나 심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평일 근무의 약 1.5배의 급여(수가)가 주어지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참으로 반갑고 기쁜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들이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더 보완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수가)가 차등적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활동보조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에 있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은 이동수단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가까운 거리는 전동휠체어로 먼 거리는 이동약자교통지원수단(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한다. 그런데 현재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80~90% 중증장애인들이 장콜을 이용한다. 지금의 저상버스는 승강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다. 설령 온다고 해도 인도의 여건이 좋지 않아 저상버스에서 리프트를 펼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승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저상버스가 멈추기라도 하는 날에는 승객들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은 공공의 적이 되고 만다.

이렇듯 저상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장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동료중증장애인에게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데 장콜이 잡히지 않아 2시간이나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약 7개월 전부터 이동약자교통지원센터의 운행 시스템이 예약콜제에서 즉시콜제로 바뀌고 난 후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장콜을 즉시콜제로 운행하려면 많은 차량이 확보되거나 차량 1대를 운전원 2~3명이 교대로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동약자교통지원센터의 상황은 리프트(경사로)장착 차량 68대, 운전원 91명, 임차택시 13대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들의 수를 고려해 볼 때 차량과 운전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콜을 타고 매일매일 직장으로 출·퇴근을 한다. 학교에 등하교를 한다.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러 다닌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도 간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또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도 날마다 지각을 하고 약속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리프트를 이용해 전동휠체어가 장애인콜택시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와!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나 또한 불과 몇 년 사이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장콜로 인해 많이 변하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은 집밖으로 조금만 나오면 버스건 택시건 바로 탈 수 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외출 한 번 하기 위해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아직도 광주광역시가 이동약자들을 위해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3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박찬동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인권팀장)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박찬동 (광주장애인권센터 인권팀장)

1.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전달체계의 문제점

“전달체계”는 정책과 관련한 정보 및 서비스 등을 공급자에서 이용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를 의미하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공급자 중 공공부문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고용노동청, 특수학교 등이 있고, 민간부문은 장애인 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시설), 개인, 기업, 종교단체 등이 해당한다. 수요자는 장애인복지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그 가족 및 관련자로서 복지욕구를 지닌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장애인에게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에 따른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들어¹⁾,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시·이·구는 신청접수와 지급결정·통보의 역할을,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민간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각각 담당하고 있고, 공적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 및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아, 장애인은 공적기관을 통해 서비스 적격자로 선정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1) 조한진 외(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p.31.

나.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즉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환경 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서비스가 결정되는 현행 장애등급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예를 들었던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격을 장애 1~2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심각한 선택권 침해에 해당한다. 장애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개별적 특성과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환경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 및 지속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여 **서비스 진입단계에서부터 연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원화된 전담조직²⁾**에서 처리해야 한다. 전담조직의 설치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은 위탁서비스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방관자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기회의 균등과 참여’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서비스제공기관, 그리고 이용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를 도입해야 한다. 직접지불제도는 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불받아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로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방법이다. 영국은 이미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Individual budget)**도 시행하고 있다.

‘직접지불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구매권을 주는 것, 즉 현금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 제도에 한발 더 나아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총량을 환산해 지급하는 것을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라고 한다. 개인예산제도는 직접지불제보다 더 유연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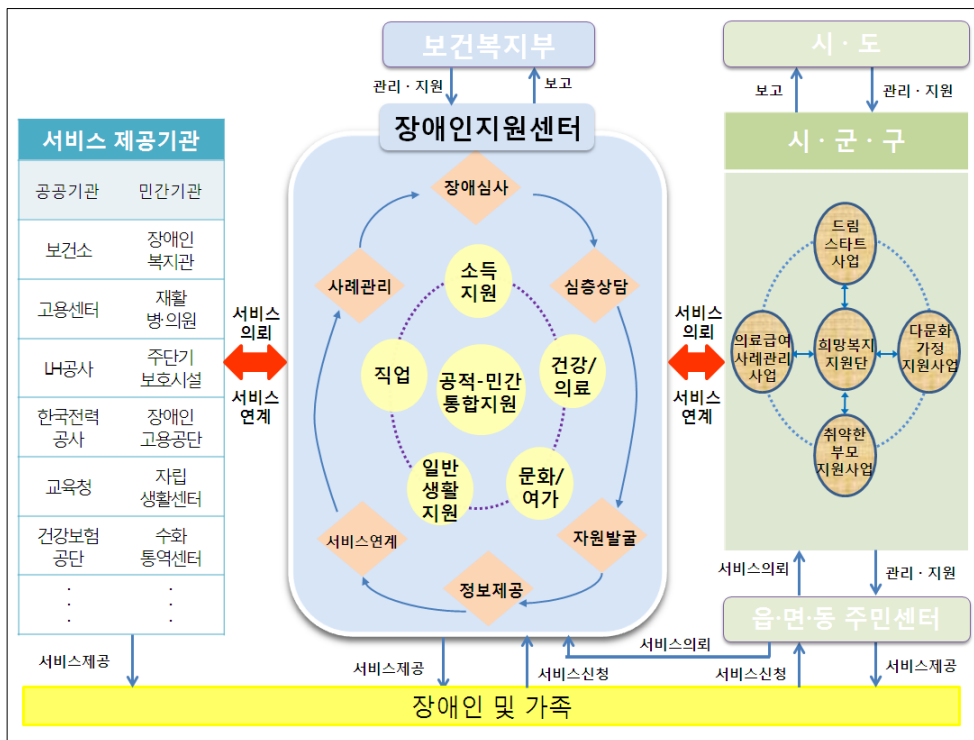
2) 조한진 외(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p.35.

3) 2013년 6월 25일, ‘현금지급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이 직접 선택한다면?’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의 발제문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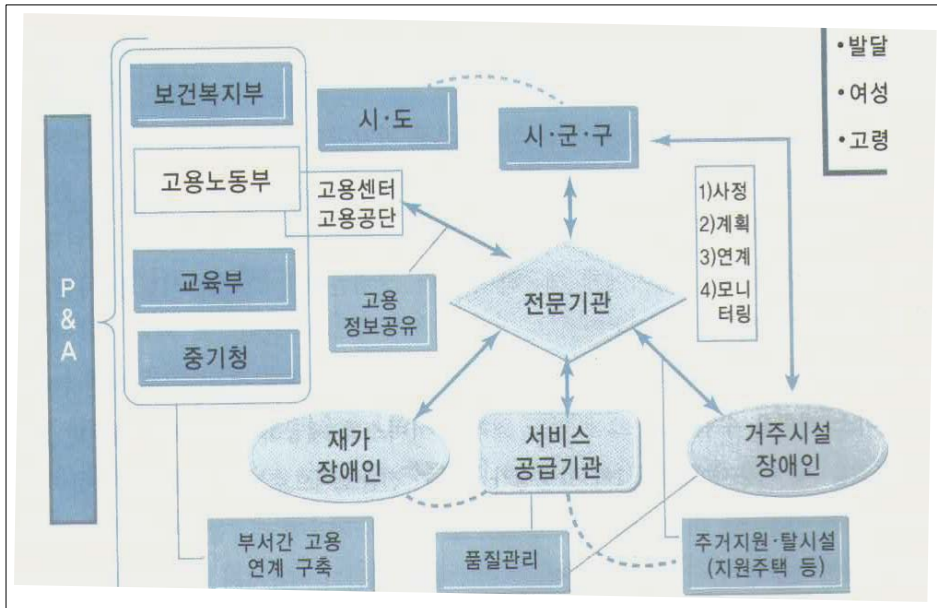
다 .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모델 소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실시해온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2013년에는 전국 24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하여 장애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도 광산구와 서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며(결정권한은 자치구에 있음),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일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3.03.08,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진행된 “장애인등급제 폐지시대, 서비스 전달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부장이 제안한 모형을 소개한다. 이 모형은 “장애인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2012)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민간부문에서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시·군·구(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를 통한 (가칭)장애인서비스 연계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모델이다.



두 모델의 공통점은 장애인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두고,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데 있다. 장애인지원센터(또는 전문기관)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2.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가. 공공부문(광주광역시)

○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2011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인당 지원 금액	5,000천원	5,000천원	5,000천원	5,000천원
지원 대상 (실제 지원)	2명 (0명)	2명 (2명)	4명 (4명)	4명 (계획)
총 지원 금액	-	10,000천원	20,000천원	

- 광주광역시 **자립정착금 현실화**(5,000천원⇒10,000천원)와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서울시 : 2005년 1,000천원을, 2013년 8,000천원, 2014년 10,000천원을 지원하며, 2017년까지 15,000천원으로 확대 계획
 - 전 북 : 2010년부터 시작, 매년 5명에게 10,000천원 지원

○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

- 목 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또는 체험홈 생활을 마친 시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등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
- 사 업 량 : **5채**(1채 2인 거주, **총 10명** 내외)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 공동생활가정 또는 체험홈 수료자**
- 내 용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임대주택 지원, 자립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거주기간 : **2년(1년씩 3회 연장 가능, 최장 5년)**
- 비용부담 : 입주자 부담(식비,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 시 지 원 : 주거비용(주택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 비품(냉장고, 세탁기 등)
- 기 타 : 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면적(약 55㎡), 임대보증금(4,000천원), 임대료(120천원/1개월)
- 광주광역시 지원 예산 : **87,500천원(시비)**
 - 주택임대보증금, 공공요금 등 공과금, 비품구입비, 사례관리자 인건비(1명) 등

-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여 5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자는 **4명**
-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홍보와 체험홈에서 생활 중인 사람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입주 자격 중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3급으로 확대**
- 임대주택 입주자가 확보되기 전까지 인권침해 피해자,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쉼터로 활용하는 유연한 운영** 필요
- 인권침해 피해자 및 임대주택 입주자의 의료적 지원, 일상생활 능력향상, 직업 연계 등을 위한 인력과 예산 마련 필요

○ 공동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할 전담부서의 부재
 - 서울시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서울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및 신규시설의 설치 원칙 마련
- 자립생활 욕구조사(2010년 실시)를 토대로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체계와 예산 마련
- 탈시설 정착금 현실화, 체험홈 운영에 대한 지원, 다양한 주거공간 지원 등
- 광주시는 체험홈의 운영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맡겨놓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시설 퇴소자 전세자금 보증금 지원(1~2인 가구 75백만원, 3인 이상 85백만원으로 최장 6년 거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

나. 민간부문(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 9개소
- 체험홈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 7개소(체험홈 수 : 9개소)

(2014년 3월 31일 기준, 자체 조사)

구 분	체험홈 운영			
	설립연도	운영 개소	현 생활 인원	현재까지 자립 인원
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2년	2개소	3명(남1, 여2)	31명
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6년	1개소	2명	2명
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7년	1개소	4명	5명
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3년	2개소	-	1명
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3년	1개소	1명	-
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3년	1개소	-	-
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4년	1개소	1명(예정)	-

- 문제점 및 대안

-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체험홈을 직접 마련해야 하며, 체험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의료적 지원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 체험홈의 목적에 맞게 자립생활 훈련, 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경우, 체험홈의 운영비는 市가 책임을 지고, 자립생활센터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운영비 년 35,700천원, 비품구입비 1회 5,000천원)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 장애인거주시설 수 : 생활시설 22개소, 공동생활가정 26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 체험홈을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수 : 7개소(체험홈 수 : 13개소)

(2014년 3월 31일 기준, 자체 조사)

구 분 (장애유형)	체험홈 운영			
	설립연도	운영 개소	현재까지 자립 인원	체험홈 위치
가 장애인거주시설 (지체)	2000년	1개소	40명(*)	시설 외
나 장애인거주시설 (시각)	2010년	1개소	-	시설 외
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적)	2012년	2개소	-	시설 內
라 장애인거주시설 (지적)	2009년	4개소	-	시설 內 - 2 시설 외 - 2
마 장애인거주시설 (지적)	2009년	3개소	1명(**)	시설 외 - 3
바 장애인거주시설 (지적)	2014년	1개소	-	시설 內
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	2014년	1개소	-	시설 內

(*) 40명 중 35명은 영구임대아파트, 5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 후 자립

(**) 장애등록증 반납 후, LH공사 주택지원으로 자립

- 그룹홈을 운영하는 거주시설장(및 직원)의 의견
 - 자립에 실패할 경우, 거주시설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체험홈에서 자립생활로 이어지지 못한다.
 - 탈시설 후 주택, 활동지원, 소득지원 등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렵다.
 - 자립한 이후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우울·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낮 시간 직장생활 또는 사회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립 이후 사회 참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2년 정도 시설 체험홈에서 훈련하고, 1년 정도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자립생활을 직접 체험한 후 이후 자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하다.
- 장애인거주시설이 담당하는 자립생활 지원의 한계
 - 체험홈 전담인력의 부족(생활재활교사가 체험홈 담당),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한계, 체험홈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부재,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체험홈에서 자립생활로 연결되지 못함.
-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와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필요

3.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구축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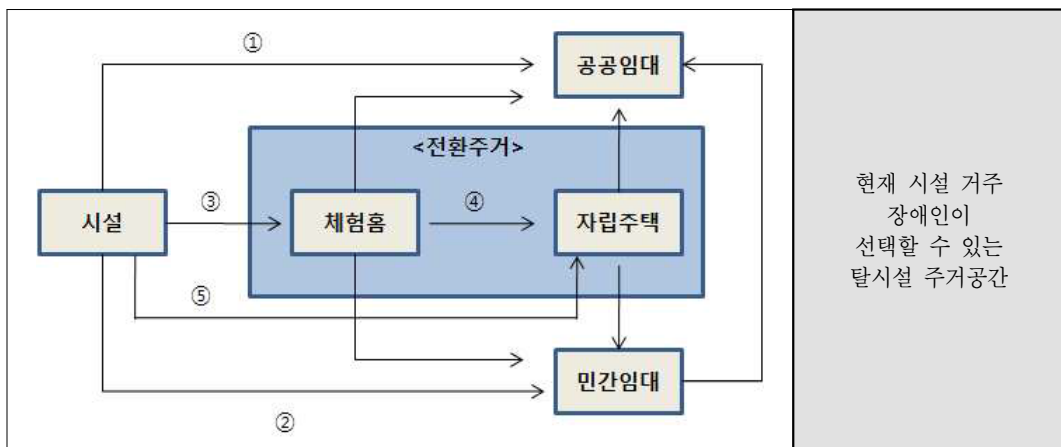
시설에서 20년을 살았다. 어머님 아버님 제사도 한 번 못 지냈고, 묘지에도 한번 가보지 못했다. 이젠 형제들 전화번호도 모른다.
 시설이 몸은 편할지도 몰라. 근데 그건 아니거든. 장애인도 사람이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난 사람이라고!!!
 난 세상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살고 싶지, 남의 도움 받으면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 달 만이라도 내 나이대의 평범한 남자처럼 밖에서 살아보고 싶고, 단 하루를 살아도 밖에서 살고 싶어.
 - 탈시설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박경수 외)’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득, 주거, 고용 의료 일상적 생활보장체계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그 중 주거영역의 경우, 체험홈이 부족하여 입소가 어려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공적 주거물량의 부족함, 거주시설 내 편의시설이 미비함 등이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거주인은 자립생활 관련 정보취득의 어려움, 자립을 위한 초기자금 부족, 초기 정착 주거공간의 부재 때문에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있다.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는 필수조건이다. 광주광역시도 현재 체험홈과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을 주거지원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광주시의 탈시설 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③에 머무르고 있고(그것도 민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로 담당), ④번은 이제 시작단계로 겨우 4명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②번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①번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대기기간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탈시설 주거공간

○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자.

- 장애인복지정책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경제력, 활동보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다.
- 서울시는 2013년 7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3,088명 중에 20%인 600명에 대해 탈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광주광역시도 2010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대상 자립생활 욕구조사 실시하여 조사대상인 714명의 장애인 중 41.3%가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도 40명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은 이러한 변화 방향을 반영하여,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과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자.

-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 탈시설 위한 실태(욕구)조사, 탈시설 정책 홍보, 개인별 탈시설 지원(주거공간 마련, 자립정착지원금 신청, 긴급 활동보조인력 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을 위한 전담기구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팀)'의 설치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 2015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팀)'의 설치를 목표로, 2014년에는 장애인전환 서비스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우선 둘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시설 내 인권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을 담당할 사례 참고)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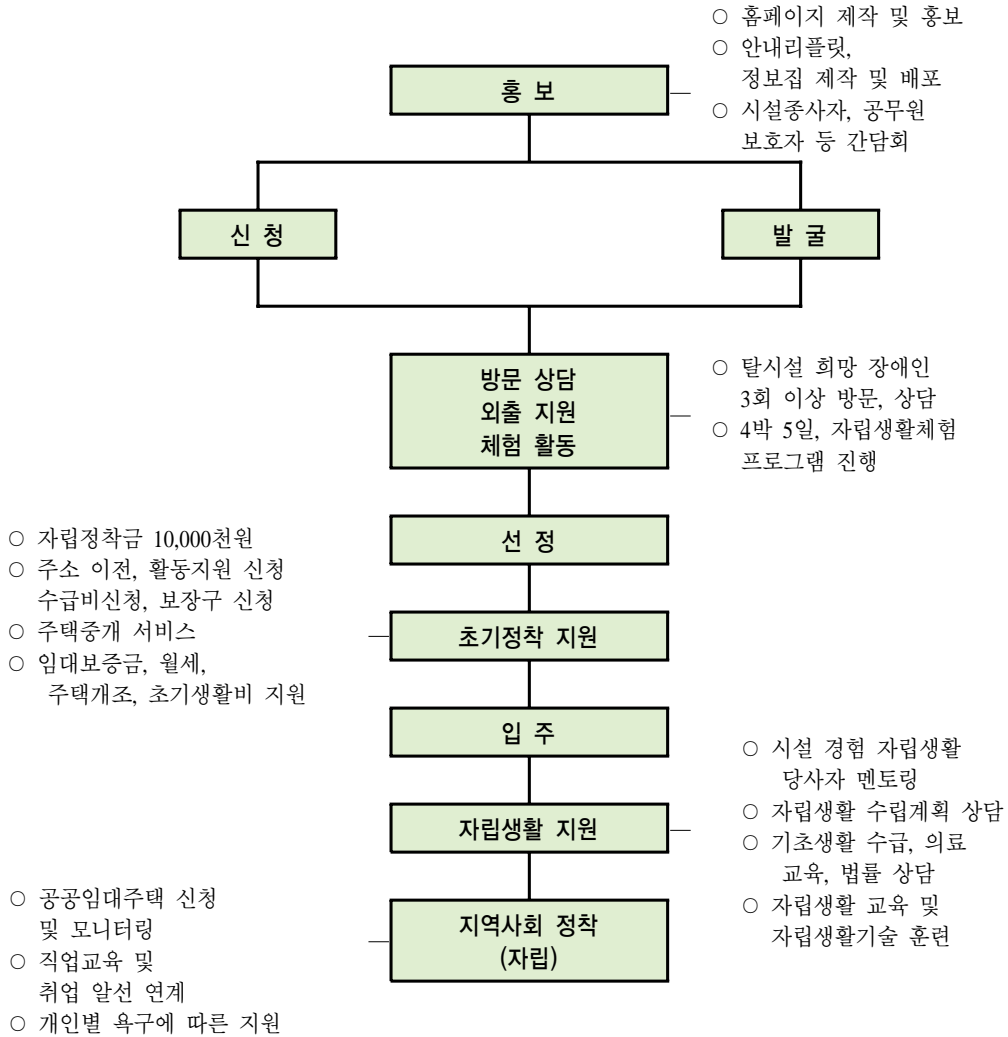
-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대상 탈시설-자립생활 욕구조사
- 탈시설 지원정책 홍보(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공간 관리(체험홈, 매입임대주택 등)
- 체험홈, 매입임대주택 코디네이터 지원 및 관리
-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 이와 동시에 탈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대상자 확대와 정착지원금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과정 로드맵 소개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시설 실태조사와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벗어난 많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면서 찾아낸 지원과정을 소개한다.

<탈시설 지원과정 로드맵>



출처: 2009년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교육자료집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4

자립생활 저해요인 및 우선적 지원과제
- 내 인생의 주인은 나! -

황은영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자립생활 저해요인 및 우선적 지원과제

- 내 인생의 주인은 나! -

■ 황은영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저는 1981년 8월에 서울 장이동 경희의료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45일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퇴원하였으나 신생아 황달과 미숙아 망막증 때문에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를 꾸준히 했고 3살부터 6살까지 부모님 등에 업혀서 이곳 저곳 재활치료를 받으러 찾아 다녔지만 특별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지인의 소개로 경상도에 있는 충무 자생원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정으로 집안에서 저를 키우지 못해 할 수 없이 떨어뜨려 놔다고 하였습니다. 집이 멀다보니 1년에 한 번씩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이다 보니 집에서 생활하지 못해 시설에서만 생활했는데 그 곳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저처럼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장애를 갖고 사람들이 40명이 넘게 모여 살았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서로 모여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 곳 생활은 더욱 더 힘들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국그릇에 밥, 국, 반찬을 다 섞어서 주고 옷도 남녀 구분 없이 선생님들이 입으라고 하시는 대로 입어야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 생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 곳에서 8년 되는 생활을 마치고 15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힘줄 까치발 수술과 사시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치료가 전혀 되지 않아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약삼이라는 절에서 침을 맞고 지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으려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또 중단을 해 버리니 아무 효과가 없어서 그것도 그만 두고 17살 때 친척의 소개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삼육 재활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직업전문학교 과정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주시설에 있으면서 자폐아, 정신지체, 지적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추억이 많아 가끔 친구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이후 집으로 돌아와 3년 동안 집에 있다가 다시 장애인 거주시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곳의 시설은 좋았지만 관리자와 지도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들어서 2년 동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머물렀다가 다행히도 2007년에 활동보조 서비스제도가 생겨 외출 도우미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통해 생각만 했던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친구 소개로 전남 담양에 있는 헤림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 교육, 원예치료 등을 배우고 요리도 가끔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료 장애인의 소개로 교회에 갔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죽암골 공동체로 옮겨와 1년 8개월 동안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과 단체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 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집에 머물러있는 생활이 싫증이 나던 찰나에 또 다른 친구 소개로 우리 이웃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체험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자립생활을 하기 이전에 실습과 같은 형태로 한번 거주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미안했고 자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던 저로써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입주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2012년 8월 9일에 체험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체험홈에서의 생활은 자립이라는 단어의 느낌을 조금씩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필요한 생활용품을 가족들이 사다주었는데 지금은 직접 마트를 쇼핑하고 가격이나 제품을 알아보며 화장품, 머리카락 등 여러 가지를 구입하고, 제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나의 신체에 힘든 점을 보조 해 주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곁에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제가 자립을 생각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급자 도움을 못 받고 돈이 한정되어 있어 생활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활동보조 시간이 적은 점이었는데 시간이 적다보니 센터에 가서 점심을 해결하고 거기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센터 내에 프로그램 있는 날은 그것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지금도 활동보조 서비

스 시간이 부족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포기해야 할 때가 많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험홈에 들어와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비누 공예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였는데 봉사자 도움으로 너무 재미있게 하였습니다. 비누의 좋은 향기가 제 기분도 좋게 만들어 주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마도 1주일에 한번씩 어깨와 허리를 꾸준히 치료하여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보치아 모임에 참석하여 손으로 공도 던지고 운동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휠체어 산행으로 등산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힘들어서 봉사자 도움을 받았지만 가서는 맛있는 백숙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기 위해 전대 후문도 가고 광주 우체국도 가서 열심히 서명을 받았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해 투쟁을 하러 보건 복지부에 갈 때는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심한 장애인이 앞에 나와 발표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부 관리, 교회 프로그램, 휠체어 산행으로 진도행, 순천정원박람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종종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 관리 프로그램 강사님은 장애인들을 많이 보지 못 해서 겁내고 그랬는데 피부 관리 하시면서 내가 느낀 점은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정말 피부 관리 shop에 갈 때 돈도 많이 주고 가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장애인들은 쉽게 못 하는 경험들이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후배들에게 내가 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험홈 교육을 통해 소장님이 동료상담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 심화 동료상담 전문 연속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료상담 교육을 통해 동료 상담 리더가 되어보야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보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난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료 상담을 통해 후배 장애인들과 모든 장애인들의 마음을 조금

더 나아가길 위해서 동료상담 리더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상담을 통해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 나보다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소그룹세미나 라는 프로그램의 리더도 맡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우리 이웃 기념식 사회를 봤는데 제가 시각 장애도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외워서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기 전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외우는 것을 활동보조분이 도와줘서 조금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힘들었지만 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부담감이 느껴졌지만 끝까지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고 나와 다음에는 다른 장애인들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사회를 해본 것을 정말 저한테는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웃 센터 활동가를 하면서 여러 후배 장애인 들을 보게 되겠지만 이 경험을 후배 장애인들에게 얘기 할 수 있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동료상담 리더를 하면서 중증장애인의 마음을 정말 알아 갈 것입니다.

이제 자립 생활을 준비한 것도 1년이 조금 넘어 가는데 자립을 준비해가며 느낀 것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더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것과 중증 장애인들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자립 생활을 내보내는 가족들이 더 겁을 먹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체험홈이나 또한 집을 나와 현재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보고가면 감탄을 하고 가며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사람들은 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도 바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들도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의 사회가 편의 시설도 많이 생기고 우리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많아졌습니다. 장애인의 가족들은 장애인을 사회에 내보내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훗날에 장애인의 부모들이 없으면 그 장애인들은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센터 활동가로 일하면서 동료 상담가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준비 할 것입니다. 동료상담가로 활동을 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장애인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동료 상담가가 될 것입니다. 동료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우리를 볼 때 도전의식을 받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한가지의 꿈이 더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며 찬양 선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보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옛날 생각대로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장애인들이며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편의시설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어 가야하고 조금 더 경사로도 더 많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해야지 비장애인들이 우리를 무시를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정말정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웃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소장님, 간사님, 활동보조인, 동료들의 도움으로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체험 홈 교육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바라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예쁘게 꾸며 놓고 살 것입니다. 수급자가 아니기에 돈 문제도 걱정이 되고 혼자서 살기에 활동보조 서비스간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이웃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에서 실무활동가로 일 하면서 생활을 당당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각장애까지 있기 때문에 실무활동가의 일을 저 혼자 할 수 없고 활동보조의 도움을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지만 종종 장애인들도 이렇게 활동보조를 받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멀리 보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일정

대 전

- 일시 및 장소 : 2014. 4. 23.(수) 14:00, 대전 하나은행 10층 회의실
- 사회 :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 좌장 :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기념사]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14:05~14:10
	❖ [축 사] 오세희 (대전광역시청 보건복지여성국장)	14:10~14:15
	❖ [축 사] 배석원 ((사)열린네트워크 대표)	14:15~14:20
발제 및 토론	[발제1]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 조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쟁점과 과제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20~15:10
	[발제2] 장차법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선거권을 중심으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현수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토론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15:10~15:50
	[토론2]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중심으로 이영옥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토론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김선태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토론4] 장애인 선거권자 선거참여 편의제공 방안 김영영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담당관)	
	[토론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 방안 윤석연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5:50~16:00
	폐 회	16:00

2014. 4. 23. _ 대 전

[발제 1]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 조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쟁점과 과제

-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2] 장차법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선거권을 중심으로

-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현수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토론 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토론 2]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중심으로

- 이영옥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토론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 김선태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토론 4] 장애인 선거권자 선거참여 편의제공 방안

- 김영영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담당관)

[토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 방안

- 윤석연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1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 조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쟁점과 과제**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 조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쟁점과 과제

Ⅰ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이주민, 탈북이주민, 소녀소년가장, 아동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는 신체기능, 정신기능, 문화이해 등 이 소외되었거나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장기적, 총체적, 통합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은 가정에서도, 시설에서도 사회에서도 전 생활영역에 걸쳐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아왔다.

장애인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거나 차별을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3년7월부터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써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개인이 완전하게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질, 지적능력, 재능, 의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영적 혹은 기타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준다”(UN,1987)

인권이란 용어 자체의 모호함과 불명료함으로 인해 인권을 이론적이나 권위 있는 정의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¹⁾ 인권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내리는 경우, 인권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라는 입장이다.²⁾

인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천부인권설)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³⁾ “Human Rights : Questions and Answers”(United Nations, 1987)에서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 정의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인성·지성·재능 그리고 양심을 사용하게 하며, 우리의 정신적 욕구는 물론 다른 욕구들을 만족시켜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인간 각자에게 내재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삶을 추구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한편 인권을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이들은 문화 및 경제영역에서의 언어적, 인종적, 소수자, 빈곤자, 주변화 된 집단 및 장애인의 권리에 주안점을 주기도 한다.⁴⁾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대전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조례에 대한 함의와 논의점을 찾고자 한다.

II. 인권의 국제사회 구분

인권적 권리가 세상에 등장한 시기에 따라 각각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 영역을 나누는 것은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Karel Vasak)의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것이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구분법입니다.

1) 이창수의,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p35
 2) 김미옥 외,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06, p51
 3) 김미옥 외,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06,p51
 4) 이창수의,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1. 1세대 인권 –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Reichert, 2001)

1세대 인권은 네 가지로 첫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둘째 ; 언론과 종교의 자유, 셋째 ; 이전((移轉)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 노예신분,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권의 첫 세대에 해당하는 UN의 세계인권선언은 공정한 대우 선거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강조를 두고 있다(제2조부터 21조). 이 권리는 “소극적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⁵⁾(이혜원 역, 2005).

▶ 세계인권선언에 관련된 규정(2-21조)

-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차별로부터의 자유(2조)
- 모든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3조)
-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9조)
-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12조)
-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하지 않을 자유(17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8조)
- 의사표현의 자유(19조)
-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등

2. 2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 2세대는 소위 “적극적 권리”로서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 자유, 경제·사회·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인권 2세대에서는 “사회권”이 새로이 등장했으며,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역할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의 권리들로 발전해 왔다.⁶⁾

5) 이혜원 역,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학지사, 2005.

▶ 세계인권선언에 관련된 규정(22-27조)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23조)
-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24조)
-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25조)
-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27조)

3. 3세대 인권 - 국가 간의 집단적 권리

앞의 1·2세대의 권리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의 권리라 할 수 있다.⁷⁾

오늘날 제3세계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권력과 자원, 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⁸⁾

3세대 인권은 이와 같은 세계화와 시장지배에 대응하는 집합적인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집합적 권리”는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에 관련된 규정(28-30조)

- 자결권 :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로이 발전할 수 있는 권리
-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지구와 우주자원·과학·기술·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 문화적인 전통·유적·기념물 등의 인류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6) 김미옥 외,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06.

7)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 속성, 2000.

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 속성, 2000.

Ⅲ. 법과 제도를 통한 인권보호

1.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 및 치매 노인이 포함된다. 특히 급속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령·치매 등으로 정신적 능력의 제약을 받게 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들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상화를 도모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개입’과 ‘구체적 필요에 따른 개별화된 후견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획일적 행위능력의 박탈·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던 종래 행위 무능력제도와는 달리,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원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 성년후견제가 지적·발달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노인에게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채 시행되면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보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미국(‘90), 호주(‘92), 영국, 홍콩(‘95),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제정되었다.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 6장50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장애와 장애인, 용어 정의 ○ 동 법상 차별행위를 ①직접차별 ②간접차별 ③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④광고에 의한 차별 이상의 네 가지로 유형화
제2장 차별금지 (제10조 내지 제32조)	고용	○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의학적 검사금지
	교육	○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재화와 용역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용역 제공, 토지·건물 매매임대 ○ 금융상품·서비스, 시설물 접근·이용 ○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 문화·예술·체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개인정보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법·행정절차 등	○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모·부성권 등	○ 출산·임신·입양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및 실질적 평등보장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양육권, 친권 등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 복지시설 이용시 장애로 인한 친권 향유, 가족면접, 외부와의 소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내지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 및 아동, 정신적 장애인 차별금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내지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받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권과 직권조사권 보유 ○ 국가인권위원회 내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설치 ○ 법무부의 시정명령권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법원의 구제조치 (제46조 내지 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 입증책임 배분
제6장 벌칙 (제49조 내지 제50조)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부칙		○ 시행일, 소위원회 설립 준비, 위원임기개시

3. 영역별 장애인차별 사례⁹⁾

고 용

- 1) 제 10조(차별금지) 적용 사례
 - 임금 차별, 승진 차별
- 2) 제 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적용 사례
 - 청력검사 상 문제가 없는데 ... 입사불허 통보는 사실상 '채용 취소'

교 육

- 3) 제 13조 ①항(입학지원 거부 금지) 적용 사례
 다운중후군인 자신의 딸을 집 근처의 B초등학교로 전학신청 거부함.
- 4) 제 13조 ④항(교내의 활동에서의 배제 등 금지) 적용 사례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역사답사프로그램을 본인 동의없이 리포트로 대치
- 5) 제 13조 ⑤(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적용 해설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 6) 제 13조 ⑥(비하나 모욕의 금지) 적용사례
 특수학급 교원인 C씨에게 그 반애들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질이 떨어진다고 함.

재 화·용역

- 1) 제 15조(재화용역제공의 차별금지) 적용 사례
 장애인좌석은 인터넷 예매가 되지 않고 전화예매만 가능함.
- 2) 제 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에서 차별금지) 적용 사례
 계약 위반을 하거나 혹은 계약을 파기한 이유가 임차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
- 3) 제 17조(금융상품 등에서 차별금지) 적용사례
 세금우대라는 좋은 상품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
- 4) 제 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적용해설

9)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과 적용

이용시간을 제한, 장애인석, 휠체어 및 보조견 진입 금지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 1) 제 26조(사법 행정절차 등의 차별금지) 적용사례
 의사소통 문제, 형사피해자로서의 권리 침해.
- 2) 제 26조(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 적용 사례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을 사용하지 않음
- 3) 제 26조(인신구급, 구속상태에서의 차별금지) 적용 사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의사소통수단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4) 제 27조(참정권의 차별금지) 적용사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모·부성권, 성 등

- 1) 제 28조(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의 차별금지) 적용 사례
 손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 부모가 생리처리와 임신을 우려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 2) 제 28조(입양에서의 차별금지) 적용사례
 장애인이라고 입양을 제한함.
- 3) 제 28조(보육에서의 차별금지) 적용사례
 시각장애인으로서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의 날 안 나와도 된다고 함.

가정·가족·복지시설, 건강권 등

- 1) 제 30조(의사결정과정 등에서의 차별금지) 적용사례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놓고 생활자인 장애인을 농장에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 2) 제 30조(외모 또는 신체 공개에 관한 차별금지) 적용사례
 정치행보를 선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3) 제 30조(가정, 가족 복지시설 등의 취학, 진학, 재산권 등 차별금지) 적용사례
 ○ 친척 중 한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장애인인 자녀에게

유산을 일부 남기고 친형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친형은 자신이 평생 돌볼 것이라면서 서류를 바꾸어 착복하고 동생을 시설에 보냄.

- 류마치스로 인해 중증의 장애인이 되었음. 시설에 찾아온 사람들과 교회를 다녀오 고자 하였으나 대소변 등의 신변처리 보조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하여서 결국 외출할 수 없었음.
- 가족이 시설에 갈 것을 권유하여서, 차라리 그 돈으로 방을 얻어주면 독립생활을 하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킨 경우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1) 제 33조(장애여성 차별금지) 적용사례
 -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시설물 이용할 때에 장애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
- 2) 제 33조(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차별금지) 적용사례
 - 장애여성을 씨받이로 이용하는 행위.
- 3) 제 33조(직장보육서비스의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사례
 - 수유실을 부탁했으나 사장은 화장실에서 하라 했음.

4. 장애인의 인권의 현주소

2010년 12월 실시된 장애인차별 인식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2%를 차지하며, 또 이 조사에서 차별경험으로는 광고·방송·통신에서의 차별(1순위),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2순위)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대한 장애인차별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11년 10월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104개 시설에서 성추행(6건), 성희롱(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폭행 의심사례(3건), 학대 의심사례(2건), 체벌 의심사례(7건), 수치심 유발사례(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5건) 등 총 27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들 사례에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해당 시·도에서 형사고발(4건), 시설폐쇄(14건), 분리조치 및 정상담전문가 심층 상담조사(6건)가 진행된 사례도 포함되었다.

〈표 2〉 장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법조항	내용
제8조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 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7조 (참정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V. 장애인 인권 친화도시 만들기

장애인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즉 시민들의 인권의식 및 문화, 인권행정체계,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 역량, 제도화 수준 등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지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실천방안으로 인권 환경 및 장애인 인권도시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UN 등 국제 사회도 기존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도시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지역이나 도시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이를 협력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명분과 흡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통합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인권의 의무 주체인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보장체제를 도시차원에서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의무주체로 설정될 수 있다.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명령 등이 검·경찰 및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같이 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권 및 명령권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몬트리올과 같은 움부즈만 성격의 조사 및 개선권고의 구체기능의 기구 설치 필요하다(김종건, 2013).

1. 추진내용

1) 장애인인권지표 마련

장애인인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 자료로 삼는다.

2) 인권조례

인권의 보장과 인권 침해에 관한 권리구제 그리고 그 시행을 강제화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그 구실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인권옴부즈맨

인권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권 차별의 접촉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지목하는 방식보다는 그 기관의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4) 인권교육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을 통해 생활과 문화에서 인권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자치가 발전하는 만큼 의무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권교육의 내용과 강사진을 지자체가 관리(인증 등)하여 그 질을 보장해야 한다.

5)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통해 보편적인 인권 보장의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집행기구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한다. 첫째,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인권 관련 주무부서가 없는 경우, 이 센터를 통해서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그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행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조례는 임의조항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장애인인권센터를 주축으로 관련 민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인권센터의 모세혈관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종건, 2013).

2. 장애인 인권보장조례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보장조례는 201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래 2013년 현재 40여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도 10여 곳 이상 되고 있다(우주형, 2013).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조례 현황

광역	법규명	제/개정일
경기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2012-04-06
서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대구	대구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에관한조례	2011-12-20
인천	인천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2011-10-24
광주	광주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2011-03-02
대전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2012-06-15
강원	강원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2011-09-23
전남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	2010-12-2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2011-06-29

먼저 광주시 경우는 ‘5·18’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인권·민주·평화를 위해 맞서온 광주의 역사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고 나선 것이었다. 광주시는 유엔 인권도시 지정을 목표로 1년 여간 준비한 100개 인권지표를 확정하였고 이를 활용해 광주의 현재 인권상태를 높이고, 유엔 주도로 나라별·도시별로 인권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표 4〉 지역별 광역 인권센터 현황과 보조금 내역¹⁰⁾

지역별 인권센터	2014년도 보조금	현 인원	지원연도
경기도	2억 5천만원	6명	2013년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3명	2014년
광주광역시	1억 5천8백만원	5명	2006년
전라남도	3억	6명	2006년
대전광역시	3천 8백만원	0.5명	2011년

광주시는 지난 2011년 3월 광역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했다. 이 센터에서는 장애

10) 대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4), 내부자료.

인 차별 및 인권 분야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인권상담 및 교육, 인권강사 양성, 홍보사업 등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 2011년 4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생활 의지는 있지만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도 지난 2011년부터 상·하반기로 매년 실시해 생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우주형, 2013).

한편,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1년 5월 30일에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3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규정에는 목적, 정의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정책개발,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하며,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시장,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V. 나오며

현재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5년을 주기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¹¹⁾을 수립 공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지역 차원의 인권 정책의 방향과 아울러 각 부문별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광모, 2013).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및 이행권고와 인권기본조례 표준조례안을 공표하였다. 이후 인권조례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39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 조례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권도시를 천명하려는 지자체의 의지와 계획은 좋지만 기존 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인권보장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인권센터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도시가 시대적인 흐름처럼 요구되고 있고 장애인이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장애인 인권도시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 NAP는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의 약자이다.

참고문헌

- 공미혜외, 「장애여성의 삶과 복지」, 신정, 2007.
- 김미옥 외,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06
- 김용득, 「장애인의 시민권과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2005.
- 김종권, 장애인 인권도시 만들기 가이드라인.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3.
- 박옥순, 「인권과 사회복지」, 양천장애인복지관 직원교육자료, 2006.
- 박영숙외, 「장애인복지의 이해」. 동인출판사. 2010.
- 짐 아이프, 「인권과 사회복지서비스 : 기회와 도전」, Jim Ife 초청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6.
- 짐 아이프,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인간과 복지, 2001.
- 염형국,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교남소망의 집 개원 22주년기념세미나 자료집, 2004.
- 이창수·윤영철·김영옥,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이명복, 「사회복지사의 인권운동」, Jim Ife 초청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6.
- 우주형, 장애인 인권도시 만들기 답론.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3.
- 이혜원 역,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학지사, 2005.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 속성, <http://sarangbang.or.kr>
- 정진모,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자료, 2009.
- 최윤영, 이경준, 2013.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인권 지침서」, 동 연맹, 2000.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2

장차법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선거권을 중심으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차법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선거권을 중심으로

Ⅰ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영화가 상영되었다. 바로 ‘변호인’이란 영화이다.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연배우인 ‘송강호’의 명대사이다. 즉,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짧은 대사가 우리사회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반향을 일으켜서 천만관객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렇다. 현재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시대에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또한 슬픈 현실이다. 즉, 송강호의 이와 같은 짧은 외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하며 스스로의 주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회의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의적인 현실에 대해서 장애인만큼 회의적인 집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의 경우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최소한 선거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받기 때문이다.

즉, 선거의 4대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¹⁾ 중 비장애인의 경우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뿐만 아니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거의 침해받지 않는

1) 보통선거란 연령과 성별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말한다. 평등선거란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직접 선거는 선거권자가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비밀 선거는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출처: 위키백과사전>

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선거의 4대 원칙마저도 현실에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근권의 제한, 보조수단의 제한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가 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2013)에 의하면,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투표 참여는 86.9%로 전국투표율 보다 높게 나타날 정도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72명 중 약 25%가 투표소의 접근성과 이동지원 수단이 없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현실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일정 부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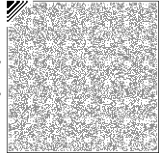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의 참정권 중 선거권을 중심으로 참정권 보장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차법이라 함)을 중심으로 국내법에 대한 분석, 기존 국내 장애인참정권실태 관련 조사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근거법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근거 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국제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장차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 및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9조(접근성), 제29조(정치와 공적생활참여)이다. 각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확인 및 제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a)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의 시설; (b)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개발, 공포 및 감시; (b)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구들이 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보장; (c) 장애인들이 직면한 접근성 이슈들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훈련 제공; (d)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 (e)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동반지원과 매개체의 형식 제공; (f)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 (g) 장애인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로의 접근성을 촉진; (h)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하는 것을 촉진하여 이러한 기술 및 체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위의 제9조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통한 정치참여 또한 삶의 모든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사국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보장, 선거홍보안내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도우미지원을 통한 접근성 보장 등이 동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a)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한다:

- (i)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한다;
- (ii) 필요하다면 보조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해 아무런 위협 없이 장애인들이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선거를 대표할 권리, 효과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하고 모든 단위의 정부기관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 (iii) 당선자로서 장애인의 의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 투표하는 것을 지원한다.
- (b)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장애인이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 (i)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연관된 비정부 기구 및 비정부 협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한다;
 - (ii) 국제, 국내, 지역적으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한다.

위의 제 29조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받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받으며,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보조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해 아무런 위협 없이 장애인들이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까지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통한 정치적 참여는 법적 권리로서 보장받아 마땅함을 알 수 있으며, 본 협약 당사국은 이를 위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장차법

장차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7조(참정권)이다. 각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제20조에 의하면,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관련자는 장애인

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차법을 통해 장애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 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며, 장애인 관련자는 수화통역, 점역, 낭독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통한 정치참여에 있어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자에 대해 방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제21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됨을 천명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출판물 발행사업자, 영상물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련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그리고 다양한 방송매체에서의 선거방송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위의 제 27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함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자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겪지 않도록 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65조(선거공보) 제4항,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제12항,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2항, 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제3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7항,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항,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시각장애인용 특수투표용지 등)이다. 각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위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수 있으며,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고,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투표안내문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해야 하며,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는 점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현황: 19개 국회의원선거 대상

국가인권위원회(2012)에 의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선거권 모니터링 이 실시되었다. 모니터링 대상은 모니터링단원이 속한 선거구의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로 2012년 4.1~4.11일 선거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다.

모니터링결과 중 대전광역시의 경우만 살펴보면, 우선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참여의 경우 투표소 시설접근성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높낮이 조절)의 경우 50%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의 경우 점자형·목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의 경우 60%만 충족하였

고, 점자형·목자형 투표안내문 내용동일은 20%만,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은 20%만, 요청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도 20%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안내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사용 및 정보제공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점자형·목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점자형·목자형 투표안내문 내용동일,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제공과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영역의 참정권보장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대전광역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모니터링 결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비율	전국평균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참여	투표소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단차 제거	16	13	0	3	100.0	91.1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6	16	0	0	100.0	89.9
		주출입구 통과유효 폭 (0.8m 이상)	16	16	0	0	100.0	92.9
		기표대 접근성(층간 이동)	16	2	0	14	100.0	99.4
	정당한 편의 제공	휠체어 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16	8	8	0	50.0	82.6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16	16	0	0	100.0	98.2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16	15	1	0	93.8	96.4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16	15	1	0	93.8	98.2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비율	전국평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투표 안내문 제공	점자형 투표안내문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5	5	0	0	100.0	100.0
		점자형·목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5	3	2	0	60.0	84.1
		점자형·목자형 투표안내문 내용 동일	5	1	4	0	20.0	72.7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	5	1	4	0	20.0	39.2
		요청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5	1	4	0	20.0	37.3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제공	키보드만으로 콘텐츠 접근가능		5	5	0	0	100.0	100.0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5	0	0	5	-	73.3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2)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임.

IV.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관련 법적·제도적 사각지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에서는 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합리적 조치들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장차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장차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참정권이 현실에서 공직선거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데, 이 공직선거법에 상당 부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소가 위 <표 1>처럼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첫째, 아직까지 공직선거법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주요한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각장애인용 점자용 선거공보 작성,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 선거관련 대담·토론회 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 제공,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 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위의 <표 1>에서도 이와 같은 임의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의규정들은 향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직선거법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법적흡결을 지니고 있어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직선거법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명시하지 못해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신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범주에 지적, 자폐성 및 정신 장애인이 누락된 점,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것이 누락된 점, 거주시설에서 투표하는 경우 기표소를 설치하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누락된 점 등이다. 따라서 향후 시각 및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 자폐성 및 정신 장애인처럼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도 스스로 투표할 수 없다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 또는 투표안내문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로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시설에서 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리투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시설 직원 또는 시설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파견되거나 또는 별도의 투표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대리자를 파견하여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장애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직선거법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장애인 선거권자의 입장에서는 참정권을 보장받는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

레가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를 일반적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해야 하는 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다. 즉,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적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일반적인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동일할 수가 없다. 위의 <표 1>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전광역시시의 경우 약 20%만 책자형과 점자형 투표안내문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면수 분량이 최소한 3배 이상으로 향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각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해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점자를 읽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의 접근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중 후천성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은 목자도 점자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따라서 향후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이스ای이가 삽입된 안내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민주주의 향기로운 꽃, 선거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꿈꾸며

우리는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표현한다. 즉,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3)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향이 약 80%로 나타날 정도로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권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참여제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꽃이면 향기가 나아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그 완전한 향기가 아직까지는 흘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거의 기본 4대원칙 중 하나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관련된 장차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다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좀 더 시급하며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

히려 더욱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 및 공직선거법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비록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이 공직선거법보다는 좀 더 상위규범으로서, 장차법이 공직선거법보다는 좀 더 특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 심지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초 2월에 장애인용 신형기표소를 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 기표소를 장애인들이 직접 체험해 본 결과 크기와 구조가 다양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급기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라 함)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정권 침해 긴급 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제작한 기표소가 장애인 입장에는 적절치 않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만큼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 또는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주의의 향기로운 꽃인 선거가 장애인에게도 향기라는 꽃이길 기대해 본다. 완전한 참여를 통해서...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2).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3). 장애인유권자 의식조사결과. 장애인정책 리포트.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현수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이현수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졌기에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아서 안 되며 특히 장애의 유무로 차별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가 있음으로 차별받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는 굉장히 많으며 이러한 현실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침해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법이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 피해상황이 심각해지거나 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에서 벗어나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리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 하겠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학교폭력 피해아동들의 자살과 가해아동들의 학교폭력 행위의 보도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아동, 학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수립 및 여러 번의 법 개정, 국가 기관 및 여러 단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이 사라지 기보다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것이다. ‘장애’가 대상의 취약성 혹은 폭력 위험에 대한 민감성에 대하여서는 그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초점으로 함축될 수 있다. 아동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으로서의 장애의 심각성으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거나(Kim, 2010), 학대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위협에 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노충래, 2002, 이주희, 이양희 2000). 장애아동들이 빈번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아동 중 지적 능력이 낮은 아동의 경우 폭력을 당했어도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아동들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 학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 시작점일 것인데 사실 장애 아동들에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애아동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장애아동 중 지적 능력이 낮은 아동의 경우 폭력을 당했어도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에는 장애인인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수의 모습인, 소수의 모습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나와 다른 사람일 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모든 폭력 행위를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장애아동들의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장애’아동 이기 때문에 더욱더 배려 받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전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정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사례

1.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아동에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구분이 없다. 즉,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기구와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아동간(혹은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혹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선행될 때 ‘장애아동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하는 공동의 과제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지도책임이 특수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아동을 지도하는 관계자 모두가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해결이 학교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교장·교감에 대한 학교폭력의 이해와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속적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학교폭력 연 수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장애아동이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 발로 때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폭행죄, 상해죄)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죄) -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
언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예: 외모 놀림, 바보 등 비하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받지만 퍼뜨린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
금품갈취,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금전) 뜯기(공갈죄) - 옷, 문구류를 빼앗거나 망가뜨리는 행위(공갈죄 또는 재물손괴죄) - 빵을 사오라고 하거나 계속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것(강요죄)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강요죄)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을 하여 강제적 성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행위 -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SNS 등을 통해 하는 경우 - 휴대폰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문자,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 - 위협·조롱·성적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다양한 매체로 유포하는 경우

2. 장애아동 학교폭력과 문제점

현행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즉,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기구와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아동간(혹은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혹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라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모르겠지’, ‘장애로 잘 모르겠지’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될 때 ‘장애아동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하는 공동의 과제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장애아동’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려는 상황이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에게 학교폭력 사건 피해가 발생했을때 학교 공동의 과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닌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특수교사에게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도록 일임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비장애아동을 두둔하거나 장애아동의 피해 진술확보의 어려움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학교폭력에 따른 처리 절차를 학교차원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특수교육 대상아동들의 지도 책임이 특수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아동을 지도하는 관계자 모두가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해결이 학교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는

데 이에 따라 교장·교감에 대한 학교폭력의 이해와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속적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 연수 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장애아동이 학교폭력 피해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2년 3월 21일 개정되어 추가된 학교폭력법의 내용 중 제17조(가해아동에 대한 조치) 2호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린 신고·고발 아동들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설·추가된 조항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이라면 비장애아동보다 더 쉽게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장애아동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행위 시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사례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들은 학교 내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을 강제조항으로 정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의 장애학생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1) 일반학교 학교폭력 사례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반 남학생 4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 인천 북부교육청 관내 A초등학교와 장애학생 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열두 살 지적장애 2급 김소라(가명)양이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함께 수시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과 4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한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1학기 초부터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로 장애를 가진 친구를 치는가 하면 남학생 2명이 장애친구의 팔을 양쪽에서 각각 잡고 또 다른 남학생은 발로 장애친구의 발을 차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원인 제공자가 장애학생이다. 서툰 말로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 그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짜증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소라가 자기통제가 안

된 채 아무 때도 질문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자신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권모(43·여)씨는 아들 A(13·1급 정신장애)군이 당한 일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A군은 쉬는 시간만 되면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아이들은 앉아 있는 A군을 발로 차고 연필로 찔러댔다. 복도를 지날 때는 어깨로 쳐서 넘어뜨리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일도 있었다. 권씨는 “제작년부터 옆에 누가 오기만 해도 아이가 기겁을 한다” 며 한숨을 지었다.

금천구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B(14)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당한 일은 정도가 더 심하다. 또래 여학생 4~5명이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담긴 대변을 먹으라고 시켰다. 대변을 먹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B양은 큰 상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전체 학교폭력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학생인 비율이 지난 2009년 1.2%에서 지난해 2010년에 1.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비장애우 학생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을 둔 김모(47·여)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5학년 때 수련회에 간 아들이 변기에 넣었다 빼 과자 받아먹었던 일이 있었던 것. 김씨는 “아이들의 장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아들이 중학교에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을 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반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들은 일반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 비장애 아동이 장애아동의 이해 부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이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례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닥친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학교당국과 관할 교육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2) 특수학교 성추행 및 성폭력 사례

성인 및 학교 교직원이 성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교직원이 그녀를 태워준다면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가슴을 마지거나, 청각장애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칠 때 교직원이 말리는 척 하면서 성추행’ 한 일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 제4집〉

- 사건: 10진정0328900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 위원회명: 차별시정위원회
- 결정일자: 2010.10.4
- 주문요지: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 중 일부 발췌>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고추’가 나오면 ‘고0’, ‘자’가 나오면 ‘자0’ 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당시 피진정인은 이00, 김00 학생의 성기를 건드린 사실이 인정된다. (중략) 피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들이므로 피진정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적 언동은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수학교에서 또래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지체장애 아동이 팔을 흔드는 척 하면서 교실이나 복도에서 비장애아동의 치마를 들추는 행위’, ‘중학교 2학년 정신지체 남자 아동이 자폐성장애 여자 아동에게 좋아한다면서 강제로 뽀뽀를 하는 행위’, ‘비장애아동이 복도에서 정신지체 여자 아동의 엉덩이를 장난처럼 만지는 행위’ 등이 있다.

3) 특수학교에서 폭력 사례

특수학교에서는 또래 친구들 또는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언어 폭력과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학급 선생님이 지체장애 아동에게 바보’라고 하거나, ‘특수학급을 특수부대’, ‘생님이 아동에게 “너 참 싸00 없이 행동한다” 등이 있다. 또는 ‘K지역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장애학생을 교사가 자로 머리와 얼굴을 때린 행위’, ‘S지역 특수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장애학생을 벌을 세운다며 사물함에 넣은 행위’, ‘C지역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어깨에 꼬집히고 멍든 자국이 발견되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 한 일’, ‘S지역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장애학생을 엮드리게 하거나 무릎 꿇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K지역 K특수학교 교사가 학생 상습 폭행

이 학교 여교사 박모씨는 올 3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밀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짚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묶고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한다.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점심시간에 장애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때리니까. 그 학생에게 공격을 받은 다른 반 교사가 장애학생의 머리를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세차게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 교사에게 왜 그랬냐고 질문했을 때 ‘행동수정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는 그 학생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려주려고 한 행동이므로 교육적 행위이다’라고 했습니다.

- 제목: 장애인에 대한 장애학교 교사의 괴롭힘
- 사건구분: 차별
- 기관유형: 교육기관
- 위원회명: 장애인차별위원회
- 회의일자: 2010.11.15
- 주문요지: 검찰총장에게 고발 등
- 판단요지: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아동 등에 대한 폭행 등 학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등 위반.

<결정문 중 일부 발췌>

교실 등에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해행동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자해행동을 할 때마다 막대기로 손등을 수차례씩 때린 사실, 피해자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겨 일으킨 사실, (중략)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입을 수차례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된다.

Ⅲ. 장애아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1.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1) 인권교육의 의무화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이며, 이러한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은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법을 촘촘히 만들고 학교폭력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도 장애가 다름이 아니라 열등함으로 취급되는 이상, 사람들의 편견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차별행위들을 모두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장애이해교육’, ‘인성 및 인권교육’, ‘교사의 인성 교육 강화’, ‘인성교육 강화(공동체 수업 등)’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동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그런데, 얼핏 위 정의규정만을 보면, 동법에 따른 ‘학교폭력’은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아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 역시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법 전체규정을 살펴보면, 동법은 ‘아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전제로 절차와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서 제외되고 있다(강영구 변호사, 2013).

마포구 장애인부모회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2013)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8.3%가 ‘선생님이 무시하자, 아동들도 영향을 받아서’라고 답하였으며, 또한 응답자의 95.7%가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적 폭력이 같은 반 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와 차별이 당연시되고, 문제행동의 수정을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도처에 깔린 공간에서, 장애가 ‘열등함’이 아니라 ‘다름’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학교와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 왔던 줄세우기와 억압적인 생활지도, 체벌 등을 금지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하여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것 역시 시급하다.

2)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지원교육 명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6조의 2에서 장애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상담가 또는 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대응절차에서의 보호규정일 뿐, 사전에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은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포구장애인부모회, 2013).

따라서 교사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인력을 확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 돌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빈곤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하여 교사가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아동에 맞는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안 제28조)

현행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p><u>제28조(개별지원교육)</u></p> <p>① 교사는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빈곤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이하 “개별지원교육”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의 추가 배치 2. 수업 내 또는 수업과 병행한 개인별 지도 3.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4.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제공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보건 및 정신건강 부문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 학생복지지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개별지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2. 징벌에서 예방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대부분의 피해아동 및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금전배상과 같이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징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이다(실제로 학교가 가해아동에 대하여 ‘처벌’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처벌’의 내용 역시 실제로는 가해아동에 대한 ‘징계’나 ‘금전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해아동의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해아동을 징계하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아동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이 다시금 공동체 내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의 징벌적 사법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를 회복적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가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법 제20조, 법 제14조) → ② 사안이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자치위원회는 가해아동에 대하여 징벌적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법 제13조, 제17조) → ③ 징벌적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는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이는 마치 ‘처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모두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처벌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즉, 많은 경우 학교폭력은 ‘공동체 내 관계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회복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벌은 가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책임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피해아동에 대한 반발과 보복심을 가지도록 만든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아동이 가장 원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처벌이나 금전 배상이 아닌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해아동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아동 역시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려야 한다. 결국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지 않은 일방적 처벌은 가해아동의 선도에도, 피해아동의 치유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내실화 및 화해조정권한 부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폭력 발생 신고가 있으면 위 전담기구가 먼저 가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무조건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 역시 매뉴얼을 통해 일정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사안을 자치위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다.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I.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 기본 대응요령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가.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였을 때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나. 조치 방안

- 담임교사가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을 자치위에 회부하지 않은 그 어떤 교육적 노력도 자치 ‘학교폭력 은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는 자신의 면책을 위해서라도 사안을 무조건 자치위에 회부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행 학교폭력 대책에서 교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교육’은 증발하고 ‘처벌’만이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실상 ‘학교폭력 전담기구’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전국 초·중·이 배치율은 약 10%에 불과하며,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부장’ 또는 ‘담임교사’ 혼자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

다. 특히, 장애아동 관련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특수교사 1인에게 학교폭력 사안이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맡겨질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과수업 외 별도의 생활교육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스런 업무일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사들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방식의 교육적 해결보다는 처벌과 격리라는 보다 손쉬운 방식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될 법적인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이 교사 개인의 책임과 부담이 아닌 학교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가해아동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문상담인력 양성의무를 부과하고, '책임교사'를 2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현재 법상 전담기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담임교사'를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하여 대안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1차적으로 가·피해아동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피해아동간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화해조정 및 실질적 지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어떤 사안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자치위원회는 반드시 가해아동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아동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자치위원회는 애당초 학교폭력을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로지 가해아동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그 양형을 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가해아동에 대한 징벌 외에 가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아동에 대하여 무조건 징벌적 조치가 취해지고, 그 결과가 아동부에 기재되는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아동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책임지기 보다는 무조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2년 학교폭력근절 대책 이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아동부에 기재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아동에게 돌아가고 있다. 즉, 가해아동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는 피해아동 역시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위의 징벌적 조치 전 화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위는 가해아동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가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논의하는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자신을 변론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자치위원회 진술시 보조인의 조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가해아동에 대해서는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가·피해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피해아동이 속한 공동체 전체, 이를 테면 학급 단위 상담과 인권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위가 전문상담, 사회복지,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IV. 나오는 말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제일 좋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정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특히 법안 개정과 이행이 중요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교육적 접근 즉,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아동들의 장애이해교육이 법 개정과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교육현장에서 장애이해교육과 인권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이며, 이러한 인권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은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

기 어렵다. 즉, 아무리 법을 촘촘히 만들고 학교폭력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도 장애가 다름이 아니라 열등함으로 취급되는 이상, 사람들의 편견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차별행위들을 모두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장애 이해교육’, ‘인성 및 인권교육’, ‘교사의 인성 교육 강화’, ‘인성교육 강화(공동체 수업 등)’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이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조 인력을 확대하고 개별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 인력을 확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 돌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징벌에서 예방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모두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처벌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화해조정 및 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실질적인 솔루션 지원)→ 학교장(학생부 기재 금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맡겨질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로이 개정될 법적인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이 교사 개인의 책임과 부담이 아닌 학교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가해아동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가해자의 처벌정책이 아닌 예방 형태의 방향으로 장애이해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법에서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관련법의 적극적인 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 장애아동 폭력 예방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0).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2010.1.1~12.31)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2010-2014). 교육과학기술부.
- 김용수(2010).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방법 이대로 좋은가-학교폭력예방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성기(200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 김현철(20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시론적 고찰, 법교육 연구, 5(1), 69-83.
- 고성희(2007).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폭력경험과 폭력에 관한 인식차이. 한국사회체육학 회지, 29, 683-691.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한빛 문화사.
- 마포구 장애인부모회(2013). 장애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발표와 지역사회 정책 대안 마련 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엄동섭(2012).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책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그리고 교육적 대응' 세미나 발표문. 한국법교육학회
- 오원석(2010).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괴롭힘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 교육연구, 12(4), 167-189.
- 이진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93-127.
- 이현수·김다현(2012).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위기 관리 이 론과 실천, 8(4), 143-156.
- 이현수 외(2013).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특수교육원
- 이현수 외(2013).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0).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2010).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 에이블 뉴스, 10년간 피땀으로 제정된 '장애인 법'.
- 전권배(20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전우광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I. 들어가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 4. 10제정되고 2008. 4. 11부터 시행됨으로써 금년이 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이 ‘권리’의 관점에서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과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장애인차별이 없는 정책목표하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통합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2011. 8)하였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2013년에 수립했고, 금년 3

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토론의 주제를 대전시의 장애인복지 일반현황과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인권 관련 주요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대전광역시의 복지환경 변화 및 성과

1. 등록 장애인 수 증가

2013. 12. 31 현재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1,532,811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71,44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장애인등록자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6년간의 장애인등록 변화를 보면 2008년말 현재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볼 때 7,093명이 증가하여 11%가 증가하였다.

〈표 1〉 장애인 등록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명)

계	지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호흡기등기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71,441	36,409	5,204	731	7,664	7,203	7,874	6,356

〈표 2〉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인원수(명)	64,348	68,835	71,164	71,626	71,647	71,441

※ 최근 장애인등록 재심사 등 등록기준 강화로 증가추세 변동이 작은 것으로 분석됨

장애인 전체 인구가 전체 시민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앞장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장애인복지예산 증가

장애인복지과 신설(2008. 7)과 함께 장애인복지예산도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시 전체예산 3조 4,219억원의 3.4%인 1천 119억원 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시의 2008년도 대비 2배가 넘는 165%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과 비교해 볼 때 15.1%가 증가한것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애인복지과 소관예산만 등재한 것으로 타 부서의 장애인복지 관련예산 포함 시 이보다 훨씬 높음)

〈표 3〉 년도별 장애인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	44,870	53,188	64,813	82,164	93,835	103,483	119,169
증가율(%)	23	18.5	21.8	26.7	14.2	10.3	15.1

위의 〈표 3〉 과 같이 매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데에는 최근 우리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면서 차별이 없는 복지, 균형있는 복지를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토록 예산이 매년 증가한 원인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평생교육사업 추진, 충청권 최고 규모의 대전충청권 역의료재활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및 운영,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증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도 〈표 4〉 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 77개소에서 2012년말 현재 119개소로 최근 5년간 5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등을 다양하게 늘려나간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년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시설수	77	83	99	107	119	125	
증가율(%)		7.8	19.2	8.1	11.2		

〈표 5〉 장애인시설 종류별 분류

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 재활 시설	판 매 시 설	의 료 재 활 시 설
	소 계	유형별 거주등	단 기 거 주	공 동 생 활	계	복지관	주 간 보 호	체 육 시 설	심부름 센 터	수 화 역	점 자 도 서관			
125	58	18	10	30	49	6	33	3	1	5	1	15	1	2

4. 장애인복지·인권 최우수 도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 4월 제정되고 2008. 4월 시행됨을 계기로 하여 기존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되었던 장애인계(직원 3명)를 2008. 7월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장애인복지과(직원 12명)로 조직을 개편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및 국회가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비교연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사회복지사업, 특히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제 지역간의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장애인복지·인권 최우수 도시로 대전이 선정된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2013년에 보건복지부 주관 시행한 복지행정상 장애인복지분야(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창안사업) 최우수상 수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그동안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추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책의 구체화

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2011. 8)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2011. 10)

2011. 10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2012. 2월과 2013. 1월, 2014년 1월에 정기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토의를 가진바 있으며,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심의,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2013. 11. 30)

기본 계획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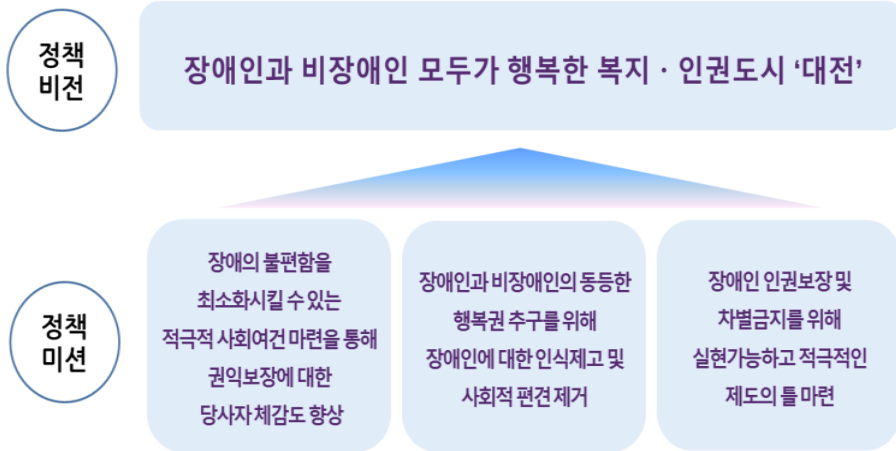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기본계획 중 1차 년도인 '14 시행계획 수립(2014. 3)

- 9개 분야, 28개 핵심과제, 63개 세부 시행과제 선정

※ 기본계획수립 시·도 : 대전, 경기도, 전남 / 2014년 시행계획수립 : 대전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과제



나. 정책과제(9개분야, 28개 핵심과제 / 63개 세부과제)

1. 차별금지를 통한 인권보장(4)
2. 근로권 보장(3)
3. 기본소득 보장(2)
4. 건강권 보장(3)
5. 교육권 보장(4)
6. 문화·여가권 보장(3)
7. 접근권·이동권 보장(3)
8. 일상생활권 보장(4)
9. 거주시설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

다. 2014년 세부시행계획 추진계획 및 방향

① 차별금지를 통한 인권보장(4)

-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 및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지원방안 마련
-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 ('14. 상반기 운영 준비중)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본격 실시,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확대
- 모니터링단 교육 및 장애인관련 단체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근로권 보장(3)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 : 공무원 신규채용 4%이상 설정 추진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워크투게더 센터, 장애학생 기업연수,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
 - 사업장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복지일자리 개발 및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창업지원 확대, 유관기관 연계강화

③ 기본소득 보장(2)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인상 추진 : 7월부터 기초급여 인상(200천원)
- 장애수당의 급여지원 확대 : 타 시·도 지급액 등을 감안 증액 검토 추진
- 중증장애인의 지자체 지원확대 지속 노력

④ 건강권 보장(3)

- 장애인 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실태 조사 실시계획 수립(시+복지재단)
- 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및 보청기 등 자부담 금액이 큰 보장구의지원금 상향조정 추진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정비 및 대상자 선정 예산반영
- 재활병원내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조기사회복귀 지원 및 방문재활)

⑤ 교육권 보장(4)

- 특수교육 순회교육 대상자 수요에 따른 학급설치 및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적용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의 평생교육 지원 기능 및 원격대학 활용 강화
- 통합학급 일반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 확대

⑥ 문화·여가권 보장(3)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문화바우처 사업 지속 추진
- 장애인 문화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문화육구 충족

- 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 지속 추진, 확대검토 (추경등 예산확보)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3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정비조치

⑦ 접근권·이동권 보장(3)

- 저상버스 확대 도입(27대), 년도별 도입계획에 따라 순차적 도입
- 저상버스 운전기사 친절교육, 버스 안내 단말기 추가 적정 설치
- 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누계 98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노선조정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BF 인증제 확대

⑧ 일상생활권 보장(4)

- 독거와상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 국비와 연계하여 독거와상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추가급여 지원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확대 운영 방안 추진 : '15년 1개소 확대(누계 3개소)
- 청각 언어장애인 가정 중심 언어재활, 청능치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
- 발달 장애아동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 사전조사 및 예산확보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추진 및 농촌지역 주택개조사업 지속 추진
- 청각 언어장애인복지관 준공 및 개관 운영

⑨ 거주시설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2)

-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지원 강화 : 예산확보 후 지킴이단 구성 운영
-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강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추진

3. 장애인 차별적요소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대전시 자치법규중 차별적 용어가 있는 자치법규 36건을 발굴하여 2013년도까지 31건을 정비하고 현재 5건을 미정비(정비율 86%)

- 일부 자치구에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정비 조례는 조속히 개정 예정임

※ 대전 자치법규의 차별적 용어 개정 내역

구분	자치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
1	대전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86조(방청의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2013. 10. 15삭제	2013.10.25
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사용의제한)교류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이 있는자 및 정신질환자	제7조(사용의제한)교류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삭제2010.08.13>	2010.08.13
3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조례	제13조(입장의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및 정신질환자	제4조(행위의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이용자 에게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	2012.04.13
4	대전광역시 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7조(관람의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2. 정신이상자	제7조(관람의제한)_____ _____ 2. 삭제	2009.12.31
5	대전광역시 보훈공원 관리조례	제5조(입장제한)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또는 전염병질환자	제5조(입장제한)시장은 _____ _____ 제한할 수 있다. 1호 전문삭제	2010.10.01
6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2조(사용제한및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제12조(사용제한및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2010.08.13>	2010.08.13

구분	자치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상(우수), 중(보통),하 (미흡)로 평정한다.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_____	2010.07.23
8	대전광역시 한발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행위의제한) 수목원 및 광장에서 다른시민의 이용에 지장 또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개·고양이등동물을데리고 입장시입가리개및목줄을 착용하지않는행위와배변봉투를가져오지않거나배설물을치우지않고버려두는행위	제5조(행위의제한)수목원및광장에서 _____	2010.08.13
9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제4조(이용자의행위제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사람에 대하여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개·고양이등동물을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않는 행위와 배변봉투를 가져오지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제4조(이용자의행위제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개·고양이등동물을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배변봉투를 가져 오지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다만,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	2011.02.11
10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2013. 12. 27. 삭제	2013.12.27
11	대전광역시동구대청호 자연생태관운영조례	제10조(입장의제한)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정신이상인 자	제10조(입장의제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전염성질환이 있는자	2010.02.25

구분	자치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
12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와상해의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만 한다.	2013. 12. 27 개정	2013.12.27
1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시험은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3. 의사발표의정확성과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시험은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3.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 <개정2012.05.21>	2012.05.21
14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제17조(사용의제한)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자	제17조(사용의제한)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010.01.06
15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와상해의기준)①제4조 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제1급내지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상해의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_____ “ 장애 등급”1 _____급부터제14급에 해당될경우에 한한다.	2013.06.17
1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시험은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 능력및적격성을 [별지제9호 서식에의거검정하며,다음의평정요소마다각각상(우수),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_____ _____ _____ 3. 의사표현의논리성	2013.05.13
17	대전광역시 서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용자대상의범위)③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 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자.	조례폐지<2011.01.01>	2011.01.01

구분	자치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
18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 체력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이용제한)운영자는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제한할수있다.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2013.12.23 삭제	2013.12.23
19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이용제한)구청장 및 위탁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수있다. 2.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2013.12.23 삭제	2013.12.23
20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제한)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방청을허가하지 아니한다. 3. 정신에이상이있는자	2013.12.9 삭제	2013.12.9
2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와상해의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규정된 “ 폐질등급 ” 제1급부터제14급에해당될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상해의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함은 _____ “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경우에 한한다.	2013.06.17
22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 시험은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 능력및적격성을별지제11호서식에따라검정하며다음의평정요소마다각각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평정한다. 3. 의사발표의정확성과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 시험은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	2012.10.26
23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 마을 운영 조례	제4조(이용제한)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이용을제한할수있다. 2. 전염성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제4조(이용제한)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이용을제한할수있다. 2. 전염성질환자	2013.06.04
24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	제12조(사용의제한)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2. 전염성질환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결함이 있는자	제12조(사용의제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2. 전염성질환	2013.06.04

구분	자치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
25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제한)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방청을허가하지아니한다. 3.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개정예정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제한)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방청을허가하지아니한다. 3.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제79조(방청의제한)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방청을허가하지아니한다.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2013.02.08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이용의제한)②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는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개정예정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이용제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복지관의이용을제한할수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2013. 10. 25 개정 (해당내용 삭제)	2013.10.25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	제6조(이용제한)구청장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 시설 또는 타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자.	2014. 1. 10 개정 (해당내용 삭제)	2014.1.10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소득 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용자대상의범위)③조례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한“용자금의상환능력이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같다. 2.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없는자	2013. 6. 28 폐지	2013.6.28 폐지

구분	자치법규명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 보호특별지원조례	제3조(보호대상자의범위)①이 조례에의한 보호대상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조례폐지 2012-06-15>	2012.06.15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와상해의기준)①제 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 45조에규정된 “ 폐질등급 ” 제1급부터제14급에해당될경우에 한한다.	2013. 10. 4 개정	2013.10.4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이용제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 간질환자		개정예정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5조(입장의제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전염병질환이 있는사람		개정예정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 시험은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11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한다.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면접 시험은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11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한다.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개정2012.04.20>	2012.04.20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회의 규칙	제79조(방청의제한)①다음 각 호의1 에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개정예정

4.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개소(2014. 하반기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2014년 하반기에 개소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대전인권사무소 개소를 협의해왔으며, 예산 및 인력이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 대전사무소가 개소되면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구급·보호시설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교육 및 유관기관, 인권단체와의 교류 등이 확대되어 복지·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개소를 위한 추진사항〉

일 시	내 용
2013. 5. 20.	안전행정부에 2014년도 소요정원 요구안 제출 * 위원회는 안전행정부에 7명 증원(나머지 인력은 본부에서 충원) 요구하였으나 3명 증원(4급1, 6급1, 7급1)
2013. 5월~ 7월	안전행정부와 대전인권사무소 신설 관련 협의
2013. 8월 ~ 9월	안전행정부, 대전인권사무소 신설 방침 확정 및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협의 *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청사임차료 등 예산협의 진행
2013. 10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인건비 협의결과를 반영한 2014년도 소요정원 최종 확정내역 통보 * 부산·광주·대구인권사무소는 7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음 - 차후 소요정원 내역 확정시 대전사무소 규모 별도검토 필요
2014년 상반기	인권위(안전행정부), 확정된 2014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직제령 개정 * 직제령 개정 이후 청사임차, 인원채용 등의 절차를 진행
2014년 하반기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예정)

Ⅲ. 앞으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성화 계획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세부계획 내실 추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년차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조기완료 등 맞춤형 재할여건 조성

1.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우리시 6개 장애인복지관중에 중구 소재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종합복지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 이용에 어려운 실정으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금년말 준공, 내년 상반기 개원하여 8천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
요

- 위 치 : 동구 원동 85-5 / 규모 : 부지 550㎡, 건물 2,911㎡(지하2,지상7)
- 사업비 : 63억원 (국비 3, 특별교부세 10, 시비 50)
- ⇒ 추진목표 : 착공('12. 12) → 준공('14. 11) → 개원('15. 상반기)

2. 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시설 운영

도가니 사건이후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도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해왔으며, 현재 준공을 마치고 운영준비 중에 있다.

□ 차별없는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소통과 사고의 전환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구별이 없는 즉, 차별이 없는 통합사회를 실현하여, 장애인복지 수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장애연령에 따라, 장애상태에 따라 각자 필요한 욕구사항이 다르고 이에 맞는 보호시책 또한 신속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들어 장애아동지원법이 제정되고, 발달장애인지원법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 만큼 장애별, 생애주기별 보호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해 하는 요인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장애인들과 대화하면서 개선해 나갈 때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환경 불편에 앞서 마음의 불편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2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중심으로

이영옥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중심으로

Ⅰ 이영옥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8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 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 대표
 5. 법조인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제8조 및 제9조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가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5조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할 시기나 몇 년 단위(1년 혹은 3년 등)로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8조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의미와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장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통해 보편적인 인권 보장의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집행기구로서의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2013년 11월8일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 교육, 이동 및 접근 등 일상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거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권익옹호, 법률구조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장애인인권센터에 3천8백만원(2014년)의 보조금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4. 장애인 차별구제 및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센터는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별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

⑤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와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과 시의회가 나름대로 장애인정책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그에 대응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삶의 질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3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김선태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Ⅰ 김선태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속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의 신체와 정신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특히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변화되고 실천될 때 선진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는 법적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라는 타인존중의 인권감수성이 높을 때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주변을 둘러볼 때 사건이 이슈화될 때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고 있고, 규제 중심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린 '도가니'라는 영화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라는 특수교육 정책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냈고, 전국의 특수교육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상설모니터단'을 190여개 조직하여 매월 정기모니터링과 사안발생시 특별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자기주장과 자기보호능력이 열약한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과 학부모, 학교구성원 모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사회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인식개선과 함께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현수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1.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1) 통합교육의 바탕 다지기 : 장애이해교육의 강화

통합교육의 확산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원치 않는 학교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게 된다. 통합교육은 장단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통합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 즉, 장애학생에 대한 심리·행동특성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막연한 생각으로 ‘차별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들 중 장애학생들에 대한 피해사례들의 대부분은 장애학생들의 평상시 행동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 이해교육 없이 물리적인 통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우선적으로 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대학에서 장애학생의 심리·행동특성과 지도방법에 대한 학점을 대폭 확대하고,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장애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과 인권감수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이 강화될 때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 전문가 확대 배치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배치하여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심리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일반교사에 대한 특수

교육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1)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의 가동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처벌을 무겁게 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 상호간에 진정성 있는 관계가 요구된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앞으로 잘 지내자.”라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함께 가야할 동료로 학생들 간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절차를 교육적으로 바꿔야 하며, 학교폭력 예방 전담기구를 통한 예방시스템의 가동과 화해조정권한의 강화가 요구된다.

2) 학생과 함께하는 담임교사

예방시스템의 출발은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감시자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과 점심식사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조인력의 확대보다는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생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식사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밀착해서 마음을 살피는 담임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가정에서는 부모이며,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최고일 것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학교폭력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나오는 말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이며 교사가 항상 웃으며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믿음가는 학교이다. 통합교육 환경에

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 대상이 아닌 비장애학생의 동료, 친구로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학생의 인식 변화와 함께 실천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학생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투와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 교사가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거나 무관심으로 대할 때 비장애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칭찬해 줄 때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예방의 중심에는 학교구성원 모두여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학생이 먼저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벽이 없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교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가 아니라 선도가 우선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의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법률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경찰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력위원의 역할과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금의 일들이 일시적인 관심과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된다.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토론 4

장애인 선거권자 선거참여 편의제공 방안

김영영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담당관)

장애인 선거권자 선거참여 편의제공 방안

■ 김영영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담당관)

I. 서론

우리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구현을 위하여 모든 선거권자가 투표를 비롯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들을 강구하고, 특히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한 다양한 편의제공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유권자의선거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II. 본문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 후보자 및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투표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선거정보제공과 투표과정의 불편함과 소외감이 없도록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 선거운동 지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들 수 있고, 후보자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실비는 국가에서 부담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범위]

장애종류	장애등급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모든 등급의 사람
그 밖의 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선거정보 지원

①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을 통한 장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제공을 위하여 작성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입후보안내설명회, 각종 교육 등을 계기로 후보자 등의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② 점자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동봉) 등 발송

-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발송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
 ※ 점자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보조인식기 등 제공

③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

- 후보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송연설, 경력방송, 토론회 등)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시에 수화 방영을 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회 등을 이용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투표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 제공

①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소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선거권자 등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선거권자의 접근이 용이한 임시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는 1층에 설치하되, 적절한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예정임.
 - ※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1층이 아닌 투표소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1층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운영
- 선거 당일 계단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휠체어 이용자 등)를 위해 임시경사로 설치

②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교통 및 투표편의 제공

- 선관위 홈페이지에 음성을 통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구축
 - ※ 시각장애인이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투표소 위치 등을 음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시청 및 각 구청에도 협조요청
- 장애인 선거권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화 등으로 신청받아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 차량을 제공하고, 휠체어 등 탑재가 가능한 차량 및 2인의 활동보조인 지원예정
- 투표당일에는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 투표소에 일반기표대보다 넓고, 낮은 장애인겸용 기표대(투표소별 2대)를 설치하여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 제공
- 모든 투표소에 돋보기 등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공
-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예정

③ 거소투표를 통한 투표편의 제공

- 병원·요양소·수용소 등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한 후 투표소에 가지 않고 기거하는 거소에서 투표
 -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자 수용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는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고, 위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 없이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음

Ⅲ.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선거권자임에도 잘 들리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 등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선거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 또한, 법과 현실의 경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실천하여 「유권자 중심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 방안

윤석연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활성화 방안

■ 윤석연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어느덧 6주년입니다. 그간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단체 장으로써 하고싶은 말도 많고 할말도 많지만 몇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일반택시나 버스를 타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대전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 운영대수는 사랑콜(리프트차량) 35대, 나눔콜(개인택시) 55대로 90대 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일 전화를 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적어도 1일전에 예약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단 2대의 차량만이 운영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누구나 그러하듯 급한일이 예고하고 오지는 않는다.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던지, 먼길 이동이 필요한 일이 발생해도 대전의 중증장애인들은 당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이동지원서비스를 예로 들어보면,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바우처방식 장애인 콜택시를 1,290대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리프트차량도 100대로 대전광역시의 약 300%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바우처방식의 콜택시 운영으로 당일 통화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어 중증장애인이 이동을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전시와 부산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교

구 분	대전	부산
운영주체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차량현황	사랑(휠체어)콜 35대 나눔(개인택시)콜 55대	두리발(휠체어 탑승 차량) 100대 바우처 방식 장애인 콜택시 1,290대
예약시간	08:00~19:00 (원래는 2일 전 예약이었으나 최근에 차량 1일전부터 당일예약)	하루 전 예약 즉시콜(매일) 08:00~01:00
예약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선착순 예약만	이용일 1일 전에 예약 접수 및 당일 즉시 콜로 이용 가능

예전의 부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우리 대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장애인들은 보다 편하고 쉽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노력들이 장애인 이동권의 차별을 줄이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일일 것이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장애인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은 한달 8만원의 월세도 내기 어려운 분도 있다. 자녀들과는 왕래하지 않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분들의 생활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비루하다.

실제로 지난 2월 송과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씨, 작은 딸(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 모녀가 살던 집 창문은 청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였고, 완전히 탄 번개탄이 발견됐다. 이들은 현관문을 침대로 막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뒤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했다.

9년 전부터 이 집에 살던 박씨는 월 50만원인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게 막막해지자 두 딸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길면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씨의 남편이 12년 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계는 급격히 기울었다. 박씨의 두 딸은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2014.03.01 | 서울신문

문제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3모녀 모두 근로 능력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다고 모른척하기에는 그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더 높은 위험수위에 놓여있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초 5개구 장애인과의 만남의 시간에 연로하신 여러분의 장애인분들이 토로하시기를 자녀들이 있어서 수급권도 받을 수 없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씀이 많았다. 이야기인즉, 자녀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데 아이들 돌키우면서 자기 식구 먹구살기도 빠듯해 자신들의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기에 장애인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 장애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 장애인들은 선뜻 일하고자 나서지 않는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그들도 일자리의 필요성을 알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을 포기하면, 의료비 등 장애라서 지출되는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일을 포기한다.

저소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가정의 수급권 판정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장애인가정이 극단적 빈곤상태

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 어느정도의 소득안에서 수급권을 유지해주거나 장애라서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의료보호만이라도 유지해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이 자신의 잔존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고 실제 장애인과 가족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좋아지고,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과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차별받으면 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6주년이 되었다.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장애인! 권리를 보호받는 장애인!'을 위해 우리는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론회 일정

대 구

- 일시 및 장소 : 2014. 4. 10(목) 14:00,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 사회 : 권혁장,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축하공연	❖ 개회선언	14:00~14:20	
	❖ [기 념 사]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초청공연] ‘종렬씨의 눈물’ (조민제, 전근배)		
이야기마당	<p>〈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약속, 인권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 인권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팀 활동가) 	14:20~14:55	
	<p>휴 식</p>	14:55~15:05	
	<p>〈공부도 인권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계획 정경렬 (대구광역시남부교육교육청 장학사) • 경험으로 말하는 장애인 교육 현실 도숙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15:05~15:40	
	<p>〈장애인 유권자가 말하는 6·4 지방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점검 은종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 장애인 참정권! 내 것인 권리가 주는 불편함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15:40~16:15	
	<p>폐 회</p>		16:15~16:30
	<p>정리 및 폐회</p>		16:15~16:30
	<p>정리 및 폐회</p>		16:15~16:30

2014. 4. 10. _ 대 구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약속, 인권조례〉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인권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팀 활동가)

〈공부도 인권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계획

- 정경렬 (대구광역시남부교육교육청 장학사)

경험으로 말하는 장애인 교육 현실

- 도숙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장애인 유권자가 말하는 6·4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점검

- 은종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장애인 참정권! 내 것인 권리가 주는 불편함

-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약속, 인권조례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과거에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주어지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개념은 이제 ‘당사자주의’와 ‘권리’의 관점에서 차별금지·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이러한 복지 환경의 변화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례 제정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구시에서도 2011년에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장애인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제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 본 발표문은 ‘조한진·최승원·박경수·양승미·조백기·전혜연·김민정·남민희·최윤영. 2012.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현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운동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성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오랜 노력이 장애인의 권리규범으로 성문화된 것과 차별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은 동 법률의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차별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손해배상, 입증책임, 벌칙 등 총 6개 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그동안 외국에서나 이론적으로나 거론되어 왔던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둘째, 최근 장애인운동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셋째,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제8조). 넷째,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이용, 사법·행정 절차와 서비스 및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2장). 다섯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제3장). 여섯째,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형태로 두고 있다(제40조). 일곱째, 법무부장관에게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제43조). 여덟째,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제46조). 아홉째,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7조). 열째,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를 도입하였다(제48조). 열한째,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하고(제49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도입하고 있다(제50조).

2. 장애인복지법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법은 범상의 장애 범주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

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완해오고 있다. 1989년 12월 30일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동법은 2013년 10월 31일 현재 제25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며(제3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4조). 또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이외에도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고(제5조),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며(제6조),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7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제9조).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3.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 조례

1) 관련 조례의 현황

2013년 3월 28일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 13곳, 기초 지방자치단체 58곳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표 1).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표 1〉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현황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에 관한 조례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30일에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 조례는 제2조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를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동 조례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또한 시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책무가 있다(제3조). 또한 대구광역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목표 달성을 위

한 장애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과 추진전략, 여건 변화와 전망,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행·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

4.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30일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 조례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동료 간 상담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 보장구 수리·개조·부품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 서비스,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육아 서비스,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진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동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제3장), 지역사회전환 지원(제4장), 보칙(제5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II.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방향의 제안

1.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1) 제안의 배경

2000년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복지법·인신보호법 제·개정 등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적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같이 장애인 인권

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고 사후적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보호와 차별시정 시스템이 미흡하고 허약한 실정이다.

특히 2012년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이 6.9%에 불과하나 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38.3%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권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법률적 지위의 미흡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인권 선진국의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P&A) System)처럼 보다 접근성 높고 실효적인 장애인 권익 보호와 차별시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계획의 방향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이 대구시가 제공하는(또는 제공해야 하는) 도시생활의 혜택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구시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의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를 통한 대화와 시민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적 편견·배제, 차별, 빈곤,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향상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적과 체류자격을 이유로 그동안 국가단위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장애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권리 실현이 '도시에 대한 권리'(rights to the city)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UN 산하기관인 UNESCO와 'UN 해비타트'(UN-Habitat)에 의하면, 도시를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집합적 공간으로 보고, 이에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재산이나 토지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또 나이·성별·계층·인종·국적·종교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나 배제 없이 도시가 제공하는 혜택을 함께 향유할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요구인 식수·먹을거리·위생에 대한 권리는 물론 적절한 주거·대중교통·안전·의료·복지·교육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2.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1)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현황

2013년 3월 28일 현재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14곳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표 2). 이 중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경우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기속 규정으로서 단체장에게는 동 센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표 2〉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관악구 장애인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광주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동구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북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센터’
	광산구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 신고센터’
대전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센터
	안산시 장애인인권상담센터
	오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이천시 장애인인권상담센터
	군포시 장애인 인권보장센터
충청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아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전라북도 장애인인권센터	익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여수시 장애인인권센터
	순천시 장애인인권센터

포함된다(김기곤·김재철, 2011, pp. 13-14).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오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의 경우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가 “구청장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산구도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의 경우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권센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인권센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목적

현재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대구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및 동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장애인인권센터를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활성화

장애인인권센터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 UN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장애인의 인권침해 조사, 법률구조,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사무 전담기구,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단체 등 기존의 조직·인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 법인 근무자 등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금지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위주의 규율)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차별·인권침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 사례와 침해 상태의 발견·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지원 등을 통해 개선을 촉진하는 규율)의 방법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 등을 도출하고 장애인 인권 관련 여러 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 포함)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수행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수행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차별의 예방·상담,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인권침해의 조기 발견, 신속한 구제 지원, 그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 데이터 수집·관리
- ② 장애인 인권차별의 상담, 사례 연구
- ③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 ④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 ⑤ 인권침해의 조기 발견, 신속한 구제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 응급조치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계획

1) 제안의 배경

2010년에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 개선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른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 정도의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장애인의 16.8%, 비장애인의 13.8%가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의 45.5%, 비장애인의 53.1%가 ‘많은 편이다’고 응답하여, 결과적으로 ‘매우 많다’와 ‘많은 편이다’는 응답을 합하면 장애인이

62.3%, 비장애인이 66.9%로 나타났다. 장애·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부정적인 인식, 사회적 편견의 제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교육이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보건복지부 외, 2013)을 수립·추진하여, 시·도 교육청 주관의 다양한 장애 인식 개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1교시’ 장애 이해 수업을 실시하며 일반학급 담당교사에게 연 500명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과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과정의 개발·운영을 통하여 일반교육 교원과 특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범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장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만,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과 차별금지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2013년 1억 1,000만원에서 2014년 8,900만 원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p. 121).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사법 절차에서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국가 당사국의 의무는 즉각적인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편의제공의 규모와 교육·훈련의 정도·내용에 있어서는 각 당사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경찰관 등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을 위해 계급별 기본 교육, 주요 직무 교육, 관서별 교육 등에 ‘경찰과 인권’, ‘피해자 보호’ 등의 인권 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고, 2009년을 기준으로 경찰청 직원 967명, 지방경찰청 직원 11,682명, 경찰서 직원 212,885명이 장애 인권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경찰청, 2009). 그러나 형사사법·행정절차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볼 때, 경찰을 비롯하여 검찰, 교정본부, 법원,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법 집행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은 아직 미진하다고 하겠다.

2) 계획의 방향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교육 및 의료재활은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그릇된 편견이 불식되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있어 장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며, 그래야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개선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초기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장애 개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의 역량에 대한 인식 개선, 각종 사회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의 인식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 인식 개선의 홍보·프로그램 등 확장적인 방식의 인식 제고와 개선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대구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09. “경찰청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 현황”.
- 김기곤·김재철. 2011. “인권도시 광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시민과 공감하는 인권도시 추진 방향과 실천 과제 —”. 포커스광주 15: 1-29.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201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Ⅵ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Ⅵ

▶▶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약속, 인권조례

장애인 인권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팀 활동가)

장애인 인권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

■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팀 활동가)

1. 들어가며

- 모든 장애인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6~7년의 투쟁 끝에 2008년 4월 11일 시행이 되었음.
- ‘한국 최초의 인권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법으로서 고용, 교육, 재화·용역, 금융, 가정, 시설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계층 중에서도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조항을 넣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 계층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권리침해 구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실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그동안은 개인이 참거나 직접 싸우는 등의 행위에 그쳤다면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뒤에는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적법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5년이 지나고 6년을 맞이하는 이때, 아직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거나 이름만 알고 있는 장애인당사자가 92.2%(보고서 ‘2011년 장애인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에 응답 비율로 봤을 때 아직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것이 사실임.
- 그래서 각 지자체 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증진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광역시 역시 2011년 5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
-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이미 지역 장애계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법률의 작동을 돕기 위한 조례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살기 좋은 대구광역시 만들기 조례안’이 완성되었지만 각 주체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실효성 담보를 위한 항목들이 상당 부분 빠진 채 조례가 제정

이 된 상황임.

- 인권증진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목적이 녹아날 수 있어야 함.
-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적장애 인권침해사건인 ‘염전노예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각종 시설비리 문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동권의 문제 및 접근성의 문제가 존재, 활동보조서비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권증진조례는 더욱 더 중요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 현재 각 지자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등) 마다 인권증진조례가 있으며, 기본계획이 세워진 서울 등의 내용과 그 동안의 상담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2.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본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조례의 필요성

1) 현실: 장애인차별 상담을 진행해오면서

- 2009년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개통 이 후, 동료적 심리상담, 단순 정보제공성격의 상담을 제외하면 연간 30건(1건당 최소 2~3회 이상의 상담진행) 내외의 차별간주 상담 건이 현재 접수되고 있음. 재정적 여건의 한계로 인한 홍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의 대응수준 역시 높은 차원의 대응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진행을 하고 있음.

〈주요 차별대응사례〉

① 2008.04.18. “장애인의 시간도 비장애인의 시간만큼 소중합니다” (장애인이동권)

- 대구역 네거리에는 1978년 건설된 건설된 지하보도가 있으나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지하상가의 이용과 대구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1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선 요구.
- 대구시,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인정, 횡단보도 미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대구역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② 2009.08.28. “우리 아이도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체육활동에서의 차별)

- 윤아무개(여, 49세) 씨는 피해자 오아무개(남, 20세, 자폐성장애 1급) 씨의 어머니로 “A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 장애우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라며 상담요청.
- 전화연락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청소년 수련관에 본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전담인력 및 강사인력, 공간문제 등 운영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것을 확인. A구청에 상황에 대해 의뢰를 하였으나 별 다른 해답을 얻지 못함. 이에 내담자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당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A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2항을 근거로 “민간위탁 중인 시설이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그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라며 장애인 편의제공의 의무가 구청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권고조치를 이끌어 냄.

③ 2009.12.14. “내가 원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신체노출, 누군가가 보고 있다” (사생활권 침해, 복지시설)

- C재단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Y시설에서는 최근 건물을 리모델링하며 복도, 방, 거실, 공동화장실, 공동샤워실 앞 등에 CCTV 최초 17대, 최종 37대 가량을 설치하고, 화장실 문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모니터가 사무실 내에 있어 24시간 시설생활인들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체가 노출되고 있었음.
- 전화연락, 서류통보 등을 통해 생활시설 측은 시설생활인의 안전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나, 사건의 진행맥락 상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감시, 노동권탄압과 연계된 측면 역시 존재하고 있었음. 이에 변호사, 노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된 영상물, 시설종사자와의 인터뷰를 진행. 도중에 민간단체의 개입에 관한 시설간부들의 저항이 있었음. 향후 관련된 정황, 증거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 및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함.
- 진정을 통한 국가인권위 조사, 상담원 모니터링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인 문제요인이었던 화장실 유리창 보수, CCTV 촬영중단 등 조치를 이끌어 냄. 그러나 향후 시설의 대응에 따라 법적 문제 및 시설 안전/보호주의 논리에서의 인권침해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므로 주시할 필요.

④ 2010.05.03. “정신병원에서의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정신장애인” (성폭력, 괴롭힘 등)

-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병원인 S병원에서 1994년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피해자(정신장애2급, 여성, 36세)가 당시 보호사로 근무하던 가해자(남, 69세)로부터 2009년과 2010년 초 사이 수차례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가해자는 원내 TV방, 면회실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담하게 성폭력을 행하는 가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치밀함까지 보임.

마지막 사건이 있었던 당시 야간 근무를 했던 간호사가 현장을 목격하고, 책임간호사를 불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피해자는 모두 진술했다고 하였음. 발견된 후 이 사실로 인해 직원은 해고되었고(10.3.5)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함. 그러나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은 이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고 알게 되었으며, 상담이 접수된 시점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지역사회 연계로 즉각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지원, 가해자 법적 대응 지원, 피해발생병원 법적 대응 지원, 제도적 개선 지원으로 나누어 문제해결 노력.

- 당시 피해자의 진술 외 강간 및 성추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물증은 없는 상황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원 안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1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신병원에 입원한 채 요양·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오히려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및 가족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 내에 알려 나감.
- 기자회견, 검사면담, 성명 발표 등을 통해 1심 선고에서 가해자는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 받음. 이에 강간이 아닌 화간, 항거불능의 불인정 등을 이유로 가해자 측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역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결을 얻어 보수적인 대구에서의 긍정적인 판례를 얻어냄.
-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및 기타 자원을 활용한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에 이와 관련된 재발방지 대책으로 ①피해발생 정신병원에 대한 입원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②정신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③정신병원 내 입원인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권리지원 시스템 구축, ④정신병원 입원인 등에 대한 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실시 및 강화, ⑤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환경 조성 등을 요구.
- 이에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대구시 보건담당과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 기획준비과정에 참여를 하여 의견 개진. 협의체 내에서의 활동으로 향후 계획에 여성입원환자에 대한 성인교육 실시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입원환자 직접 면담으로 피해여부 확인 등을 약속 받음. 본 사례는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로 2010년부터 2012년 초까지 진행됨.

⑥ 2010.11.10. “뇌병변 3급인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 맞아 뇌진탕 진단으로 입원 중입니다” (교육, 학교폭력, 괴롭힘 등)

- 일반중학교에 재학 중인 뇌병변 3급의 장애학생이 친구에게 구타당하여 온 몸에 타박상과 멍이 생겼고, 뇌진탕 진단으로 입원 중인 상황이라는 상담 접수. 어머니, 피해학생과의 면담결과 중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구들로부터 구타, 놀림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을 구경하다 대뜸 구타 당하게 됨.
- 교장의 성의 없는 사과, 피해자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의 일방적인 학교 자치위원회 개최와 가해학생에 대한 단순한 10시간 봉사활동 판정 등 왜곡된 결과로 사건이 진행되어 갔으나, 청소년폭력

대응기관과의 연계와 공동조치, 학교 측에 대한 직접 연락과 방문, 항의공문발송 등으로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협박, 추가 가해 금지, 피해학생 병원비 지원 등의 협의를 이끌어 냄.

⑦ 2011.01.24. “회사에서 저를 자진퇴사시키기 위해 부당노동을 강요하고, 인권을 무시합니다”

(고용, 괴롭힘 등)

- M회사에 96년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년 경 과로로 인해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중간에 다시 고관절혈관 문제로 지체 6급을 추가로 판정받음.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문제와 산재 등을 회사에 투고하였더니 그 후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상사의 괴롭힘이 시작됨.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를 지녔음에도 일반적으로 텔레마케팅 업무에 배치하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자 지체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온 종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를 시키는 일에 배치.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회사에 항의하고 있었음.
-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사건정황과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접수, 이와 별도로 노동상담소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산재행정소송, 임금체불 민사소송, 부당정직 대응을 동시에 지원.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힘으로 최대한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보조적인 역할을 전화 및 만남으로 수행함.
- 현재 가장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산재판결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진행상태가 미진하여 항의를 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됨.

⑧ 2012.01.19. “캠핑에 갔다 자원봉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복지시설, 폭력, 괴롭힘 등)

-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상담을 의뢰.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모 복지관에서 주최한 40명 규모의 캠핑에 자녀가 참가하였으나, 당시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대학생 김모씨(22세)에 의해 구타당하여 어깨, 옆구리 등에 피멍이 들어 온 것을 귀가 후 발견.
- 부모 면담 결과 캠핑에서 돌아온 날 당일 복지관 측은 피해사실에 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옷을 갈아입는 자녀를 보고 직접 알았다고 함. 당시 담당직원이 2명이 채 되지 않아 문제발생 확인조차 힘들었을 것으로 보였음. 당시 조만간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가해자의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대응이 진행되어야 하여, 복지관, 자원봉사자에 연락을 취하며 진행.
- 피해부모의 의사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다음 달 가해자와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 가해자 대응과 별도로 복지관으로부터 사과와 담당직원 시말서 제출,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등의 조치를 약속받아냄.

⑨ 2012.01.25. “비정상인은 대출상당도 받을 수 없나요?” (재화와 용역, 금융상품)

- 지체장애 1급, 언어장애가 있는 내담자가 대출상당을 받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당사자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비정상활동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안 된다’는 식으로 상담을 거절.
-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차별에 해당함을 은행에 알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가 차별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해당은행 상급담당자, 피해자가 참여한 가운데 3자 면담 및 합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람센터 상담원이 참관함.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대책마련과 장애인권교육, 상담체계 약속을 받았으며, 해당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1회 시행함.

⑩ 2012.03.10. “의원후보가 장애인에게 반말을 해도 됩니까?” (괴롭힘 등)

- 모 장애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체 2급 장애여성으로, 동료들과 출장을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선거표를 두른 한 모 정당 예비후보가 자신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반말을 함.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야, 니 어디가노?”, “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등의 반말, 장애비하를 서슴치 않아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차별진정을 접수하였음. 그러나 조사도중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오히려 당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과하라고 해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통화 상으로 사과.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넘긴 것 등에 더욱 당황스러워 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조사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 및 주의를 주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시의원예비후보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의 장애인식과 조사에서의 고려 등에 대한 문제점을 네트워크 사례회의를 통해 공유함.

⑪ 2013.02.27. “사라진 장애인경사로.. 불법점유물이라고요?!”(국가 및 지자체, 재화용역 등)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모모씨는 평소 대구의 변화가 거리의 자주 이용하던 화장품 가게에 경사도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상가들을 살펴보니 총 4군데 설치가 되어 있던 경사도가 철거된 사실을 확인 함.
- 모모씨가 경사로 철거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 건설안전과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사로를 철거했다”며 “민원에 답변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경사로를 전부 철거해야 하니, 취하하는 게 어떠냐”는 연락을 받음. ‘개인 사정’을 이유로 민원을 취하 함.
- 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민원을 제기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 함. 구청 관계자는 그에게 “경사로는 불법점유물이라 도로점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한다, 이 답변이 나가면 다른 경사로들도 다 치워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청의 경사로 철거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무시한 행동이다, 경사로는 한 개인을 위한 설치물도 아닌데 도로점용료를 내라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고 진정서를 제출 함.
-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고, 도로교통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충 되는 것을 확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통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냄.

⑫ 2013.04.07. “장애인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가요?!”(국가 및 지자체, 고용 등)

- 지체장애 1급, 2008년부터 장애인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내담자는 2011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를 함.
- 그런데 내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아래의 답변을 받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근거(제19조의 2.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법 제2조 5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았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현재 개별진정은 기각으로 처리 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이끌어 냄.

- 위의 개별적 차별상담 외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차별인식을 해소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형성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인 4월 11일을 중심으로 매년 50~60건의 차별 집단진정을 기획하여 진행. 2012년 총선에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577-1330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총선 투표소 접근권 모니터링 실시로 참정권에 대한 문제제기. 현재지역 내 장애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2013년에는 ‘지역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포커스로 독립적인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대응기관 설치, 소통 부제로 통과된 ‘장애인인권증진조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예산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이 된 만큼 지역사회도 변해야 한다”며 “시가 의지를 갖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함.

<대구시 연도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 맞이 장애인차별집단진정 경과(개괄)>

- 2009년 4월 10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 - 총 61건의 집단진정 제출
*포커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이행 촉구
- 2010년 4월 12일 : 2주년 기자회견 “장애인, 차별을 증언하다” - 총 60건의 집단진정 제출
*포커스 : 장애인 보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상법의 충돌 등 제기)
- 2011년 4월 11일 : 3주년 기자회견 “장애인, 차별의 빗장을 열자” - 총 56건의 집단진정 제출
*포커스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노력 촉구
- 2012년 4월 17일 : 4주년 기자회견 “장애인은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싶다” - 총 101건의 집단진정 제출
*포커스 :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선거후보의 장애인차별 등 시정 촉구
- 2013년 4월 11일 : 5주년 기자회견 “장애인차별, 이제 지역이 바뀌어야 한다.” - 총 79건의 집단진정 제출
*포커스 : 지역사회의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고용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책 마련 촉구 등

2) 한계: 민간단체가 가지는 장애인 권리옹호의 한계

- 장애인의 권리침해 구제 활동 및 대응 등에 있어 민간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장애인당사자와의 교감, 접근성 등을 갖고 있으며, 성과적인 면에서도 진보적인 면들이 있고, 접근과 해결과정에서도 권리옹호 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등의 역동성으로 함축되는 장점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이자 한계점으로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문제에 대한 상황적 맥락과 해결의 방향이 장애인당사자의 진술에만 기대 자칫 편향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 있음.
- 또한,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행이 제한되거나 확장되기 어려운 제반여건이라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한국의 제도적·문화적 한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이 가해 측일 경우 등에 접근이 제한되거나 외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 즉, 안정되지 않으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민간단체의 장점을 살려 보장받기 어려우며, 제도화로 비교적 안정될 경우에는 ‘안정화는 곧 독립성 훼손’이라는 한국식 사회구조의 독특한 문제점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

3) 제언: 장애인 인권증진조례 실효성 담보를 위해

- 2013년 11월 4일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린 바 있음. 서울시에 사는 장애인의 인권증진 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결과 보고서에서 인상 깊은 몇 가지가 있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함.
- 첫 번째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제도나 정책이 보편적인 인권을 기본 가치로 하여 출발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소수자로서 겪는 여러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① 권익보장(인식개선, 차별금지, 권익옹호), ②중점 권익증진(시설거주 장애인, 여성장애인, 아동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를 향한 ③ 인프라 강화(소득 및 주거지원, 이동 접근 등 편리성 제고, 교육 문화생활 지원)등의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보고서: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수립 경과보고: 박옥순)’ 이처럼

보편적 인권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말뿐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항목들이 나올 수 있었음.

- 두 번째로 기본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서

<기본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장애인당사자, 인권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계획
-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과 시스템 구축사업을 함께 수립하는 종합계획
 -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동시에
 - 중점 권익증진 계획과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 인프라 강화 계획을 포함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13.7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12.4월)과 연계 추진하는 계획

위의 성격과 범위를 살펴보면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의지와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하여 기반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세우겠다고 하고 있음. 이것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과 시스템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으며, 장애의 개념 자체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장애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함.

- 마지막으로 보자면 비전과 정책 목표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짐.

- 비 전 : 장애인권 친화적 서울 조성
- 정책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추진분야 및 중점과제

<권익보장> ▶ 인식개선 ▶ 차별금지 ▶ 권익옹호	<중점 권익증진> ▶ 시설거주 장애인 ▶ 여성 장애인 ▶ 아동 장애인 ▶ 발달 장애인	<인프라 강화> ▶ 소득 및 주거 지원 ▶ 이동·접근 편리성 제고 ▶ 교육문화생활 지원
--------------------------------------	---	---

위의 정책목표를 보면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철폐, 그리고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 중에서도 약자인 계층에 대한 중점적 권익증진도 나와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음. 그 외에 인프라 강화에서도 소득과 주거, 이동 및 접근권, 교육 등 생활영역에 기반 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함.

- 이렇듯 서울시의 계획을 보면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을 포함하고 기본권에 맞추어 계획된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 탈시설화 계획 등 총 48개 세부사업으로 짜였으며,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비마이너 기사 발췌.)' 보듯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나가며: 대구 지역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 대구에서 인권증진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음. 현재,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장애인의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하며 대구 지역의 장애인정책들과 조례들을 살펴보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인권증진조례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조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예로 장애인의 이동권(저상버스, 도시철도, 특별교통수단, 도로정비 등) 조차 보장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처해 있음.(전국적으로 2004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2009년 978대, 2010년 838대, 2011년 693대가 도입되는 등 2011년 기준 3,899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운행 중. 현재 대구시는 11%라는 부끄러운 도입수준을 보이고 있음.)
- 편의시설 설치 및 도로 정비 등에 있어서도 대구의 대표적인 근린생활시설 공간영역인 시내 동성로만 본다 하더라도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 기간 중 장애인의 접근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이동하지 못하는 구간들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공사 후에는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자의로 설치해 놓은 경사로를 오히려 철거하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이 있음.
- 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 영역에서는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2년 기준(당시 1급 장애인만 대상) 7,020명 중 2,206명에 불과하며, 이 중 대구시 추가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고작 362명(1급 220, 2-3급 125, 긴급 17)에 머물

고 있어 아주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활동지원제도와 시비추가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구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500만원 지원정책 외, 주거 및 활동 보조, 소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어떠한 지원체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탈시설 의향이 있음에도 여전히 수 많은 장애인당사자가 생활시설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는 실정임.
- 앞서서 이야기한 민간단체의 장애인 차별 상담 및 대응활동과 다양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으려면 인권증진조례의 실효성 담보와 함께 기본계획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세울지가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음. 그리고 대구의 장애인권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더욱 인권증진조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인권증진조례가 장애인당사자와 지자체의 의견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조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이며, 더불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대구지역의 장애인 인권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임.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공부도 인권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계획
(2014학년도 대구특수교육운영계획 중심)

정경렬
(대구광역시남부교육교육청 장학사)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계획 (2014학년도 대구특수교육운영계획 중심)

Ⅱ 정경렬 (대구광역시남부교육교육청 장학사)

■ 현황

○ 중증장애학생지원

- 모든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운영 : 8교 240학급 1,386명
 - ※ 전공과 15학급 145명
 - ※ 대구세명학교 개교(정신지체영역 28학급 182명 예정, 2014.9.)
- 건강장애학생 교육 : 병원학교3학급,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 등교 곤란 학생 교육 : 순회학급 19학급 운영

○ 통합교육 지원

- 특수학급 : 274학교 399학급 1,951명(유15, 초223, 중95, 고66)
- 일반학교 완전통합교육 : 1,072명

○ 현장중심 특수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4개소(동부, 서부, 남부, 달성) 운영
- 대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진로직업, 스포츠 특화, 2014.9.)
-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화

○ 능동적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

- 특수교육실무원 : 410명
- 사회복지무원 : 96명
- 장애통합보조원 : 38명

- 행복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서비스 지원
 - 통학지원, 치료지원, 상담지원, 자료지원, 보조공학지원

■ 비전 :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 전략 : 4대전략 18개 중점과제 설정 추진

4대전략	18개 중점 과제
I. 학생의 5대 역량을 기르겠습니다.	11. 건강·체력 중심 신체적 역량 계발 -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스포츠 클럽 활동 활성화, - 제1회 대구광역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 5종목, 600명, 10월경 -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1교 1종목, 1인 1운동 활성화 - 스포츠강사 특수학교 8교 전체 배치 12. 긍정·도전 중심 정서적 역량 계발 - 정보화대회(대구, 전국), 직업기능경진대회 ※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3연패(2011,2012,2013), 직업기능경진대회 우수(2012) -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중점 학교 운영 : 특수학교1교, 특수학급4학급 13. 소통·배려 중심 사회적 역량 계발 -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일반-장애이해 교육, 특수-장애인권 교육) - 맑은소리 하모니카 연주단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 - 일반학교·특수학교·복지시설 간 자매결연 14. 정직·자율 중심 도덕적 역량 계발 - 학생생활 평점제 운영 및 교외 생활지도 철저,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15. 통합·창조 중심 지적 역량 계발 - 학습 사이트 활용 활성화(에듀에이블, 이압사이트, 꿈사랑학교, 에듀넷 등)
II. 역량 기반 교육을 지원 하겠습니다.	21. 역량 기반 특수교육 대구행복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교육 대구행복교육과정 각론 개발(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제2014-6호) 22.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 병원학교, 화상강의, 일반학교 재학생 지원 강화, 순회교육 지원 23. 배움 중심 수업의 질적 향상 -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정착,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마련 24. 꿈과 끼 사람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직업교육전문기관 위탁 기회 확대, 대학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 -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및 특수교육-복지일자리 참여 확대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전공과 운영 내실화 25. 돌봄과 배움의 유아특수교육 -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26. 통합과 자립의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장애학생 대상 대입설명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4대전략	18개 중점 과제
<p>III.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p>	<p>31. 장애학생을 위한 안전한 배움터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정비, 상설모니터단 운영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강화, 재난상황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 활용 - 특수교육보조인력 및 관련인력 운용 철저 <p>32. 미래 지향적 특수교육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교육거점학교운영, 학교별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 특수교육기관 신(중)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세명학교 개교(2014.9. 28학급 182명 예정) - 특수 및 일반교원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각급 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이행 <p>33. 행복특수교육 지원 교육행정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맞춤형 재정지원 효율성 증대 - 교육행정기관별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기관 자원 적극 활용
<p>IV. 신뢰와 행복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p>	<p>41.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통합학급 운영·관리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시각, 청각 지원)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미설치교(교육 및 행정지원), 재택순회교육 지원 <p>4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핵심영역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특수교육 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교육연구회 운영, 특수교육정보화대회 운영 지원 <p>43.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운영 - 학교별 교과 연계형 및 일반인 대상 장애인식개선 정책 지속 추진 <p>4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진단·배치 체계 확립, 취학의무교육 대상자 적령 취학 지원 - 관련서비스 만족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지원, 통학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지원, 자료개발 지원 등 -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토요일현장체험프로그램, - 방학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학교중심 계절학교), 특수학급(지원센터 중심 계절학교)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공부도 인권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이란

경험으로 말하는 장애인 교육 현실
- 기대와 설렘 그러나 현실은 억척 부모 -

도숙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경험으로 말하는 장애인 교육 현실

- 기대와 설렘 그러나 현실은 억척 부모 -

Ⅰ 도숙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저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를 가진 15살 사내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에서 사무처장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과연 제가 수많은 장애학생의 엄마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였지만 제가 겪은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거치면서 느낀 감정들과 상처는 저만 겪었던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 다행스럽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는 사실이지 무척 기대하였습니다.

사실 저 뿐만 아니라 여느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학교입학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간 심란한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등 수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몇 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구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니 여간 반갑지 않았습디다. 앞으로 배제되고 구분되고 차별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생각에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기대한 것일까요? 아님 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우리 아들의 학교 생활은 녹녹치 않았습디다. 아까 얘기한데로 우리 아들은 뇌병변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으며, 지적장애가 동반되어 단순한 이동보조만으로 학습을 따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디다.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 받아들이고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저도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나섰습디다.

입학하게 된 초등학교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으며,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도 받지 못한 상

황이었지만 학교 측에 끊임없는 요청과 요구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며, 우리 아들을 지원해주는 특수교육 실무원도 배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보내고 새롭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겪었던 모든 과정들을 또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겪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갈 중학교에 미리 찾아가서 학교상황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하여 우리 아들의 상황도 자세하게 알려 드리면서 교내 엘리베이터 사용과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에 관한 요청을 하고 흔쾌히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학하고 나보니 학교의 상황은 입학하기 전에 면담 시 약속을 받았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이동을 하려면 학교 안 급식실 용도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특수교육 실무원은 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자녀를 데리고 지난 초등 6년을 보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 이 학교를 3년이나 다녀야 하기에 먼저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교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요청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긴 덕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인 제가 나서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먼저 개선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하는 허무함과 함께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경험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체험학습,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은근히 '위험하다,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 참가를 하지 않는게 어떠냐' 아니면 '학교에 특수교육 실무원이 1명뿐이어서 한 아이의 체험학습에 따라가게 되면 다른 학생의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 배치가 불가하다. 정 가고 싶으면 어머님이 따라 오도록 하여라...' 등 여전히 장애학생은 수없는 배제와 차별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나아진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 차별

을 받고 있으니 진정을 하겠다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간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많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앞장서서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 현실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로써는 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면 중,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 장애자녀 특히나 발달 장애 자녀를 두신 분들이 수 없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를 특수학교로 진학시킬 것인가, 특수학급이 있는 통합학교로 진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혹시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통합학교에서 충분히 적응을 잘 해낼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장애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고 진학을 희망하는 우선 순위는 그 아이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안전, 타인에게 해 입지 않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률로만 제정되어 있고 지금의 나의 삶에는 전혀 녹여나지 못하는... 법만 제정이 된다면 이러한 힘든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던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법이 있는데도 관련된 규칙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못하고 힘겹게 싸워야지 만이 얻어 낼 수 있다면 과연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아님 내가 그 법을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힘겹게 싸워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장애학생의 좀 더 나은 학교생활과 교육지원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인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뒷받침하는 법률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당국과 선생님, 학부모, 장애·비장애학생 등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장애학생과 그들의 인권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장애인 유권자가 말하는 6·4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점검

-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를 중심으로 -

은종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6·4 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점검

-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를 중심으로 -

| 은종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1.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해결과제¹⁾

“투표는 정치적 행동의 초석이다.” (Voting is the foundation stone for political action)
-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

우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시민권으로서 참정권이 갖는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발달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모두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혹자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또는 「주민투표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보다 정확하게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 혹자는 원칙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선거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하거나’ 혹은 ‘대리투표를 포함한 왜곡된 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참정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법률로서 명문화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발효를 통해서도 (모든)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참정권

1)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중 김치훈(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의 글

보장을 위한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는 현실세계에서 여전히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장벽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투표권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기해보도록 하겠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실장벽 1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주민투표법」의 결격조항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그리고 「주민투표법」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투표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치산선고가 비단 발달장애인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제한과 직결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우선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금치산’은 민법 개정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민법의 부칙에 따르면 개정 민법의 시행 당시에 이미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만 그 인용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결국 개정 민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2018년 7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 등의 금치산선고에 따른 투표권 박탈조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만일 범법행위에 의하지 않은 유일한 투표권 박탈의 법적 기준인 이 ‘금치산선고’가 「공직선거법」의 필연적인

개정 때 단순히 ‘성년후견심판’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계속 기능하게 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찬반논쟁은 차지고라라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시행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민법 개정의 취지가 성립되려면 성년후견인을 둠으로 인해 오히려 기본적 시민권인 투표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결격조항은 이제 법률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금치산선고’나 ‘성년후견심판’이 투표권 박탈의 법적 기준으로 부적합한 이유는 이 규정이 발달장애인들 가운데서도 차별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보이는 두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한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인 국가권력의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4조는 협약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존 법,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또한 국내적으로도 장애를 사유로 한 법률의 결격조항은 점차 폐지하는 흐름 속에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은 성년후견인을 둔 정신장애인인 Alajos Kiss라는 헝가리인이 헝가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후견인을 두었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그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의 단순한 존재유무가 투표권 부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ECtHR 2010년 5월 20일 판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양친이 될 조건 중 하나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입양할 권리를 제한하였으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입양특례법」이 새로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이 결격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조용하여 「공직선거법」 등의 금치산선고에 따른 투표권 박탈조항도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실장벽 2 - 물리적 접근성 위주의 장애인 참정권 담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차별금지의 추상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더불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까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제6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제65조),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 또는 자막광고(제70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제151조), 그리고 기표행위가 어려운 시각 또는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동반 허용(제157조) 등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의 물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ibility) 보장을 위한 규정만이 있을 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cognitive accessibility)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은 전무하다.

새로운 장애인용 기표대의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 또한 정확히 물리적 접근성 이슈라는 점에서 그간 장애인의 참정권 운동이 쟁취한 여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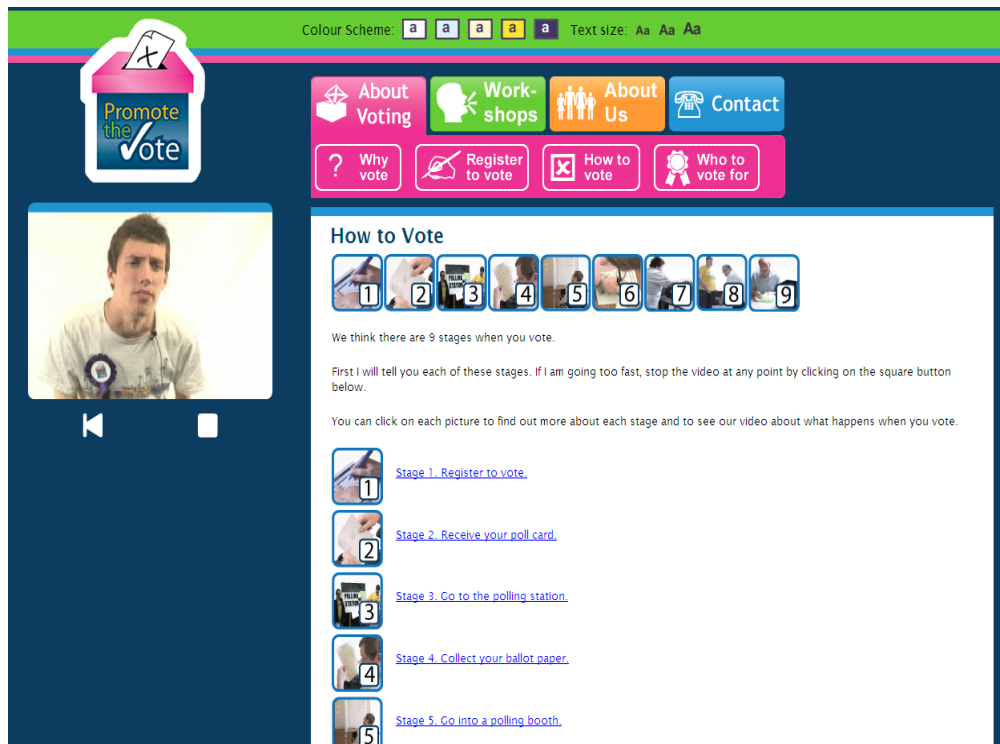
그렇다면 장애인의 참정권에 있어서 물리적 접근성과는 다른 인지적 접근성의 보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단순히 투표라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서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의 투표행위까지 전 과정을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인지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선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사전경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식 혹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후보자나 투표절차에 대한 정보가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소에서 적절한 인적 조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현재의 숫자와 글자로 이루어진 투표용지는 예를 들어 후보자의 사

진이나 당의 로고 그림 등을 삽입하여 발달장애인이 보다 정확하게 선택하고 기표할 수 있는 특수투표용지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접근성 보장 위하여 아래에 예시되어 있는 영국 등 외국의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영국의 선거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가 재정을 지원하는 ‘Promote the Vote’ 웹사이트(www.promotethevote.co.uk). 운영팀원 및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사람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임)〉



〈영국의 리즈시 (Leeds City)에서 배포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정보 책자의 일부〉



논의를 마무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주민(국내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게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공직선거종류 및 투표절차 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모의투표체험도 실시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외국인의 참정권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앙선거관위.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중앙선거관위나 지역선거관위가 지금까지 단 한차례라도 교육이나 모의투표체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버전의 후보자나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 책자 제작을 검토해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외면 받고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소수의 의견일수록 더욱 소중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기본원리가 아니던가? 올해의 6·4 지방선거는 그리고 이 간담회 자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정치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2, 3개월 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책자와 웹사이트를 제작하거나, 지역선거관위별로 교육이나 모의투표체험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투표용지를 새롭게 디자인

인한다거나, 법률과 규칙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묻고, 연구하고,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올해 내에 정책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

2.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와 문제점과 개선방안²⁾

시작하는 말

“참정권”은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이 권리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투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도 제한이 있어 개선의 여지를 다분히 품고 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러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는 참정권 중에서 선거권의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논점을 좁혀서 시각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겪는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고 그 해결책을 논해 보기로 한다.

선거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벽들

시각장애인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 겪는 문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1) 입후보자 정보습득의 제한, 2)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3)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 4) 투표용구와 대리투표 인정 등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1) 입후보자 정보습득의 제한

시각장애인들이 입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

2)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중 하성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의 글

요한 매체는 점자선거홍보물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입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넷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시각장애인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점자홍보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점자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비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홍보물이 동일하게 시각장애인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평등의 이념 실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점자홍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현재 시각장애유권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작되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동 조 제2항에 규정된 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규정된 면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활자로 된 선거공보의 면수와 점자의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을 일반 활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제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일반활자형 선거공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다. 물론 후보자의 사진과 같은 시각적 표현이 점자형 선거공보에서는 빠지지만 일반 활자와 동일한 정보를 점자로 표현 할 경우에 비해 일반 활자보다 약 3배가량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은 개정 시급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수차례 장애인단체들과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자공보물의 면수제한 폐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작된 공보물 원고 전체를 점자로 만들어 제공되도록 개정해야 함을 건의한 바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과 제작기간을 고려한 제작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일반 활자 선거공보 제작 시에도 활자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면수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

거소투표는 부재자투표의 한 형태이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거소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송달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동봉된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식인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면 투표소까지의 이동이나 투표보조인의 문제를 겪지 않고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청기간이나 투표일자보다 늦게 접지형 투표안내문이 송달됨으로 거소투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거소투표를 미리 신청하더라도 독거 세대의 경우 투표보조용구 등이 동봉되지 않아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투표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장애인의 거소투표 장려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

투표소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투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없다는 건의는 꽤 오래된 사안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그러나 투표소 선정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전국 동시 선거의 경우 투표소를 지역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편의시설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투표소를 선정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주민 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의 공공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는데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투표소를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투표업무를 진행할 공간의 접근성 즉, 가장 짧고 효율적인 동선을 염두에 두고 투표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투표용구와 대리투표인정 등

선거일에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 만큼 여러 가지 건의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가장 공식적인 부분 몇 가지만 건의한다.

투표소 안내를 현재 목자 인쇄물로만 안내하고 있어 활자를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중증시

각장애인이 혼자서 투표소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투표소 위치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투표소 위치를 한번 파악해 두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2011년 서울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소 변경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을 생각해 보면 늘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고정관념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소 안내를 점자 또는 문자, 전화를 통한 음성안내와 함께 투표당일 이동지원서비스 신청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투표당일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나친 기록남기기를 위해 사진촬영(집 앞에서 나오는 모습, 차에 탑승하는 모습, 투표소 앞에 도착한 모습)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대단히 심리적인 불편을 초래한다. 앞으로는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고려하여 별도의 이용사실 확인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표용구의 문제이다. 현행 기표용구는 도장형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자신의 기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다. 기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 둘째, 기표용구의 크기가 투표용지의 기표란 크기와 유사하여 잘못 투표하거나 무효표 처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손으로 더듬어 서툴게 찍은 도장이 두 칸에 걸쳐서 찍힐 수도 있고 제대로 기표란에 찍히지 않을 수도 있다. 끝으로 기표용구의 재질이 종이이고 기표과정에서 서툴게 찍을 경우 투표용구를 보고 누구에게 기표했는지가 노출된다.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현행방식으로 기표방법을 유지할 경우 기표도장의 크기를 기표란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할 확률도 높아지고 투표용구에 인주를 묻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본인이 기표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다른 방법은 도장형식의 기표가 아닌 천공식 기표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버튼을 눌러 투표용지에 구멍을 내고 투표용구에 넣어 기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투표보조인의 문제이다. 투표보조인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투표소는 동행한 가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일관성 있는 투표보조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사전 신청 없이도 장애인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즉석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마치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시민의 축제이다. 이러한 선거조차도 쉽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투표안내문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안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지지자를 선택해야 하고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지도 못한다. 까다로운 투표보조인제도를 운영하는 투표소를 만나면 도움도 못 받고 혼자서 기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시민의 축제로 선거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장애인 유권자가 말하는 6·4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내 것인 권리가 주는 불편함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장애인 참정권! 내 것인 권리가 주는 불편함

▣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매번 선거시기가 오면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성토도 이어진다. 그런데 불만을 이야기 하기는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불만을 이야기 하지는 않고 미진한 듯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서는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책과 비판만 곁들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듯한 느낌까지 들게 한다.

그동안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근원적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는 편의제공이나 정보제공 영역 등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많이 언급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몇 년의 세월동안 확대되거나 참여가 늘어나서일까? 작은 불만이나 불편들만 조금 더 해소하면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것인가?

권리를 막고 있던 것들

▣ 권리부정과 감추어져있던 부정 선거

아마 그 누구도 작은 불편의 해소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받겠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인은 최근까지 여전히 정치적 무권리 상황에 놓여있었고 대리인에 의한 투표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의 정치적 권리가 배제를 넘어 훼손당하거나 박탈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공공연히 전해지는 소문과 의혹, 그리고 심증들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재하는 사실이라고 믿어져왔다. 다만 이런 사실들을 잘못 드러냈을 때

의 과장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겨진 진실로만 존재했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의심은 그동안 실증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폭넓은 의혹의 공감을 받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은 때로는 장애인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선거부정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오던 집단이 있었다는 의심이 그랬고 참여에 대한 협조를 방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다는 확신어린 심증이 그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가능한 어떤 기관도 이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고 이런 의혹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들을 밝혀내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2012년 제보로 인해 밝혀진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이런 의혹들은 수면위로 올라왔고 이제 그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와 시정이 가능해졌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거소투표 신청, 투표강압 등의 선거범죄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들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28건이고 피해자는 총 660명이었다. 조치 내역으로는 경고 11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이다”

- 진선미의원 보도자료(2013. 1. 22 블로그) -

이중 가장 두드러진 범죄유형은 거소 대리투표 행위로 피해자가 660여명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시설 직원에 의한 투표 강압행위까지 적발되었다고 한다.

■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2012년 10월 17일자 에이블뉴스 보도에 의하면 당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 유권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21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7%가 ‘안 되어 있다(전혀 6.1%+대체로 65.6%)’고 응답했다. 반면 ‘잘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26.9%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투표 참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거동 불편으로 인한 투표소까지의 이동 어려움(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26.4%)’, ‘투표소 내 장애인 투표안내 도우미 및 보조 인력 부족(20.3%)’, ‘장애유권자에 대한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부족(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는 대답이 71.2%(매우 불만족 11.8%+불만족하는 편 59.4%)이나 차지했다.

정보제공은 당해선거 선거를 이해하고 후보에 대한 선택기준을 세우기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후보 간의 근본적으로 입장과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나 정책의 차이를 유권자가 확인하기위해서는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하는 후보가 부족했고 선관위역시 이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소홀했다. 어쩌면 소홀뿐만 아니라 의도적 회피의 경향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도 역시 다르지 않다 접근에 대한 어려움은 많은 장애인들이 선거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다 오랜 세월 유권자 대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선거를 통한 정치적 대리인을 뽑는 행위는 절박한 과제도 아니었고 정치집단들에게 역시 매력적인 유권자가 아니었다. 때문에 기어서 업혀서 들러서 가야하고 눈총 받으며 선거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해마다 좋아진다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선거관련 편의제공은 늘상 민원의 대상이다 어떤 곳은 승강기가 없는 2층에 기표소가 설치되어있고 청각장애인이 선거 안내를 받으려 해도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곳은 거의 없다 아마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 받을 만큼 정치적으로 조직화 되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한 조치가 있어야한다

2013년 선관위에 의해 밝혀진 장애인 생활시설 선거개입 사건은 그동안 소문과 확정어린 의혹으로 묻혀 왔던 시설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사실로 드러냈다. 문제는 그 사건이 단지

한 시설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침해사례가 만연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시설에서 행해졌거나 행해질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조치이다.

- 시설장애인들의 거소투표를 명백한 사유 이외에는 제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참관인이나 선거 감시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 후보의 출입이나 홍보활동이 선관위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단위와 협력 하에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 선거전 선거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기위한 종사자와 시설 거주, 이용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이후 선거 부정행위에대한 확인을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 선거에 대한 정보와 편의가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기위해서는 그 준비과정에 이에 대한 확고한 이해관계를 가진 장애단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선거공보물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특성상 공보의 이해를 위한 별도의 설명이나 정보가 필요함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아예 시작부터 유권자를 배제하고 시작하는데도 후보자의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제작이 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했는지 공약을 이해했는지에대한 확인은 하지 않는다. 후보에 대한 선택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가?

선거공보의 확정과정에 발송과정에 전달과정에 이린 저러한 문제제기를 받고 수정되거나 해명을 하기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정보는 별반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나 선거를 관리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별로 다르지 않다.

- 장애유형별, 특성별 선거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기위한 자문기구가 선거 시기 동안 선관 위 책임 하에 상설화 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선거공보의 제작에 대한 자문, 선거 토론에 대한 자문, 투표에 대한 접근등을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접근성 역시 정보제공 차원에서 둘러져야한다 이를 위해서 선거사무가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단위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 되거나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도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인 지원을 명문화 하는 규정이 있고 2010년에 국가인권위 또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 할 것들을 촉구한 바가 있다. 현재 선관위가 그 권고를 어떻게 수행 하는지에 대한 소명도 필요한 것 같다.

참정권의 보장은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 져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인권단체와 장애인 채등과의 개선테이블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투표장에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주요 정책요구 에 대한 후보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교육이나 정책간담회).

편의시설이든 선거에 대한 공정성 확보이든 당사자의 관점과 당사자의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장애인 후보를 왜 국가가 지원해야하는지 되묻는 천박한 인식을 개선해야할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장애인들이 만족해하지도 않는 공보물!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빈약한 공보물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 제도는 요구에 의해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민주화된 사회라면 국민의 요구에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11.23]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해야” 인권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점자형 선거공보’도 그 면수 제한으로 인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지 못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점자

형 선거 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자문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설혹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현황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결과〉(2010.5.20. ~ 2010.6.2.)

○ 2010. 6·2 지방선거 정당 및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93개)

		총 수	점자 공보물 제작 (인원, 정당수)	비율(%)
후보자		74	45	60.8
각 정당별 비례대표의원	○○도 의원	7	2	28.6
	○○시 의원	4	2	50
	○○시 의원	5	3	60
	○○시 북구의원	3	2	66.7
총 계		93	54	58

〈부산일보 보도(2010. 5. 28.)〉

-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560명 중 점자 선거 공보 제작자는 157명으로 전체의 28%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8.31]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가 부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령 상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만 활동보조인 경비부담 합리적 이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부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전체 후보자 수 10,020명, 예비후보자 수 집계 없음) 난립이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출 금액은 최대 231백만원(7만원 × 55명 × 60일)으로 전체 선거예산액 14,432백만원의 1.6% 수준으로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 기간의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점,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이 예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부담하지 않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예비후보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현저하게 제약하여 이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참고자료]

장애인선거권자의 선거참정권 보장·지원 대책

I. 선거운동 및 선거정보 접근 강화

1.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임제도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두어 선거운동 실시
 - ※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

2.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송

-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 등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후보자의 재량사항이나 각급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 및 방송사에 수화 또는 자막방송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안내하였음

3.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등

-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제한면수 이내에서 별도로 작성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 전액부담제도를 정당·후보자에 안내하여 작성을 적극 권장
-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선거사무안내 책자, 투표안내문에 인쇄하여 배부

II. 장애유형별 투표편의 제공

1. 장애인에 대한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가. 개 요

- 주 관(지체장애인단체와 공동시행)
 - 위원회 : 시위원회 및 구·군위원회
 - 장애인단체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및 8개 구·군지회

○ 제공대상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시 및 관할구·군위원회 또는 (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구·군지회 포함. 이하같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 희망자 접수 : 선거일 전일까지
 - ※ 선거일 당일 신청 시에도 접수하여 투표권 행사 적극지원

나.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 1개조당 차량 1대와 투표활동보조인 2명(차량운전자 포함)이 투표활동보조인제도 신청자를 투표소까지 이동
- 거주지에서 해당 투표소, 해당투표소에서 歸嫁까지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을 통한 선거서비스 확대

다. 구·군위원회별 차량 및 활동보조인 확보

(1) 장애인 지원차량 및 활동보조인 확보 및 배치하여 운영

- 제19대 국선의 경우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투표활동보조인제도를 운영하여 활동보조인 99명, 휠체어 탑재차량 등 지원차량 50대를 이용하여 870여명의 장애인에게 투표편의 제공

-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활동보조인제도를 적극 안내 홍보하여 장애인선거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편의 적극 지원

※ 제18대 대통령선거 지원차량 및 활동보조인 확보 배치 현황

구 분 \ 위원회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차 량 (대)	3	5	4	4	7	6	7	9	45
활동보조인 (인원)	6	10	8	8	14	12	14	18	90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통한 투표참여 인원

구 분 \ 위원회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참여인원	17	64	67	16	101	115	233	257	870

(2) 장애인 지원(교통편의)차량 확보

- 가급적 휠체어 등의 탑재가 가능한 차량으로 확보
 - ※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장애인 전용차량 지원요청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및 구·군지회에 투표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소유차량으로 확보

(3) 투표활동보조인 확보방법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하여 장애인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경중의 지체장애인 등 적임자를 확보
 - ※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확보된 투표활동보조인을 구·군위원회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함.

라. 위원회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역할분담(예정)

위 원 회 (구·군위원회 포함)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구·군지회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희망자 예약접수 •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 지역유선방송사 등 자막방송 실시 - 자치단체 반회보·소식지 등 게재의뢰 • 「투표활동보조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 지원 • 선거일 지역별 차량 및 인력배치 등 장애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교통편의 지원차량에 대한 표지」 제작 지원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관련 행사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희망자 예약접수 •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의 각종 장애인단체 및 회원에게 투표활동보조인 희망 신청 안내 - 에이블 뉴스를 통한 홍보(http://www.ablenew.co.kr) • 「투표편의 차량」 확보 및 지원 • 「투표활동보조인」 확보 및 지원 • 선거일 차량 배차 및 「투표활동보조인」 배차 • 장애인선거권자에 대한 투표보조활동 요령 교육 실시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단」 발대식 행사개최 (주관)

마.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단 발대식 후원

[가칭 : 대구장애인 투표참여 홍보 및 수송대책본부 출범식]

- 주 관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참여대상
 - 장애인선거권자 「투표활동 보조인」
 - 장애인단체의 자원봉사자 및 회원 등
- 후원내용
 - 장애인선거권자에 대한 투표보조활동 요령 교육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 실시

2. 음향유도 차임벨 설치를 통한 투표편의 서비스 실시

선거일 당일 투표소를 찾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소 출입구 위치를 알려주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선거서비스 실시

가. 대 상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등록회원이 많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투표소에 설치

나. 차임벨 설치 :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10개~15개 투표소에 음향유도 차임벨 설치하여 투표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19대 국선시부터 차임벨 설치

3. 수화통역사의 선거사무원 위촉

일반 투표소를 찾는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투표편의 서비스 실시

가. 대 상

대구광역시 농아인협회 등록회원이 많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투표소

나. 수화통역사 위촉 운영 현황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수화통역사 10명 위촉
- 제18대 대통령선거 수화통역사 15명을 15개 투표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함과 더불어 구·군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8개 부재자투표소에도 2일간에 걸쳐 배치, 실질적인 투표편의 서비스 실시(배치 연인원 : 31명)
- (사)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로부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추천을 받아 해당투표소에 배치함으로 유권자 중심의 실질적인 투표편의 서비스 실시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일반투표소를 파악하여 배치할 예정임.

다. 활 용

- 수화통역사를 선거인명부 대조석에 배치하여 투표소를 찾는 농아인 유권자에게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 병행

Ⅲ. 투표편의를 위한 투표소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1층 투표소 확보 추진

- 대선시에는 투표소 예정장소 실태조사 및 일제점검을 통하여 588개 투표소 중 575개 투표소를 1층으로 확보(97.8 %)
- 2층이상 투표소(지하층 포함) 13개 모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투표참여 취약계층의 투표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투표안내도우미 등 배치로 각별히 관리하였음
-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 1층 출입구에 임시기표소 마련하되, 장애인 단체 등에 1층 외 투표소 선정의 불가피성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임

2. 거동불편장애인 투표소 이동통로 확보

가. 투표소 예정장소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휠체어 이동통로 미설치 투표장소에 임시경사로 설치

나. 투표소 내부 등에 단차(턱)가 있어 이동에 불편이 있는 투표소에도 임시경사로 설치

다. 임시경사로는 재질이 견고한 고강도 PVC 소재로 설치하되, 1/8이하의 경사도 유지 및 휠체어 추락방지턱 설치

※ 국선시 투표소 예정장소를 2012. 2월말까지 장애인 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일제 전수조사로 미비점 보완

- 투표소 예정장소 하수구 등의 트렌치에 고무판 설치(휠체어 바퀴나 시각장애인 지팡이가 빠지는 것 방지)

- 투표소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의 위치가 건물 앞쪽이나 뒤쪽에 달리 설치된 경우를 발견하고 그 환경에 부합하는 별도의 장애인통로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각 투표소에 부착 게시

3. 장애인용 기표대 설비 : 모든 투표소

- 가. 모두 투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1~2대 이상 반드시 설비
 - ※ 이번 지방선거때는 기존의 기표소보다 넓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새로운 기표대를 제작 활용 예정
- 나.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투표하러 온 경우 장애인용 기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기표대에 들어가서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기표판” 비치·제공

4. 모든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제공 등

- 가.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각 구·군지회 등 시각장애인 단체 등을 방문하여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등 안내
- 나. 시각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투표용지 고정홈’이 있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전투표소에 선거별로 1매 이상 비치
- 다. 투표소위치정보 ARS 시스템 등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투표장소 안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5. 투표행위 보조 허용

-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한 투표보조로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음

6. 투표안내 도우미 확보 및 운영

- 가. 투표소마다 4인이상 확보·배치(제18대 대선시 2,352명) ⇒ 오전·오후 각 2명씩 교대 근무
- 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투표소, 특히 점자유도블럭이 미설치된 투표소이거나 투표소 접근에 다소 불편한 곳에 위치한 투표소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있는 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도우미 배치·활용

다. 투표안내 도우미에 대한 장애인 안내요령 교육 강화

○ 주 관 : 구·군위원회

○ 시 기

- 1차(안내도우미 선정 후) ⇨ 구·군위원회가 실시

- 2차(선거일 전일 또는 투표당일) ⇨ 투표관리관이 실시

○ 방 법

- 1차 교육은 안내도우미 선정 후 전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유형별 전문강사 초빙실시

- 2차 교육은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 매뉴얼상의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지원」 매뉴얼에 의하여 예절교육 실시

장애인선거권자에 대한 투표안내 요령

장애인이 투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투표안내도우미로 자원한 여러분들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람직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말은 삼가세요

- ▲ 귀머거리, 병어리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란 표현은 “비장애인”으로 사용합니다.
- ▲ 뇌성마비 장애인을 ‘뇌성마비 환자’라 불리서는 안되며, 반드시 ‘뇌성마비인’으로 지칭해야 합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 ▲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를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뒤에서 사전동의 없이 밀면 놀라고 불쾌해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 ▲ 계단을 오를 때는 먼저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합니다.
- ▲ 계단 또는 경사로를 내려올 때는 앞으로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또는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
- ▲ 이 때 휠체어에 탄 사람의 상체를 휠체어의 등받이에 붙이도록 합니다.

□ 보행 장애인이 계단 또는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 보행 장애인의 계단 또는 경사로 이용을 도와 줄 때는 장애인 옆으로 걸으면서 팔

을 뺀 장애인도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 듣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정면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안내표지를 적극 활용

- ▲ 마주보는 자세에서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리게,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 합니다.
- ▲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 또는 메모지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표정을 관찰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먼저 주변공간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후 천천히 이동

- ▲ 함께 걸을 때는 흰지팡이 반대쪽에 서서 자신의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어주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팔을 잡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반 발짝 정도 앞에서 돕습니다.
- ▲ 시각장애인의 팔이나 지팡이를 잡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입니다.
- ▲ 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예외적인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춰서서 위치·공간 구조와 이동상황(올라간다, 내려간다 등)을 설명합니다.
- ▲ 출입문이 닫힌 경우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주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열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안내할 때 ‘이쪽, 저쪽’, ‘시계방향, ○시방향’, ‘몇 발짝, 몇 미터’ 등을 사용하면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정신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주의깊게 듣고 자세하게 안내

- ▲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 장애인의 연령에 어울리는 존칭어를 사용하며 예의를 지킵니다.

토론회 일정

부 산

- 일시 및 장소 : 2014. 4. 11.(금) 14:00,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 사회 :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산무소장)
- 좌장 :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기념사]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
	❖ [축 사] 송근일 (부산광역시청 복지건강국장)	14:10~14:15
	❖ [축 사] 변경택 ((사)열린네트워크 대표)	14:15~14:20
발제 및 토론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14:20~14:45
	[토론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발제2]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15:10
	[토론2] 장애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신수현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발제3]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15:10~15:45
	[토론3]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흥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토론4]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 현황 및 성과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5:45~16:00
	폐 회	16:00

2014. 4. 11. _ 부 산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발제 2]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2] 장애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 신수현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발제 3]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토론 3]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 이흥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토론 4]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 현황 및 성과

-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과제

■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성과와 평가’는 서울, 부산에서 공통으로 발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집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 송정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1. 하나의 차별사례를 들며

지난 해, 본 단체로 상담이 한 건 접수되었다. 대학교 내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차별의 건이었다. 내담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강의실은 1층으로 배치하여 주었지만 2층 이상에 있는 컴퓨터실, 세미나실, 강당, 식당 등은 이용할 수 없어서 우리 단체를 찾아오기 1년 전, 개인적으로 학교에 개선요청을 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당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지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최대한 빨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에 30주년 학술대회가 대학에서 열렸는데, ‘이 특강을 듣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는 다시 학교에 항의를 했다. 특강이 열린 곳은 강당이었고, 강당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항의에 대해, 학교측은 미안하다며, 출석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다.

이 일이 있는 며칠 후 그는 우리 단체를 찾아왔다. 그는 듣지도 못한 특강에 출석인정을 받는 것이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자신은 배우기 위해 학교에 입학했는데 배우지 못한 상태로 출석인정만 받는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고, 항의를 한 자신에게 학교가 ‘이 정도면 배려해 줬다’고 말하는 게 자신을 더 비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학교는 필자도 다닌 학교였는데, 재학 당시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필자 또한 편의시설에 관한 항의를 했던 학교였다. 그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장차법) 시행 전이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학교 편의시설 문제제기를 했었다. 필자가 소송할 당시, 학교는 ‘해당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개선의견을 관사에게 전달했고, 학교측이 개선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3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었다.

해당학교에 대해 또다시 상담이 접수된 후, 우리 단체 상담원이 학교를 찾아갔지만 내담

자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학교는 해당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시설관리팀에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리모델링도 끝난 상태였다. 물론 리모델링 시 엘리베이터 설치도 고려되지도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장차법 제49조2항1호의 차별의 고의성, 2호의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라 법원 구제조치를 바로 신청하려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사례로 남기고 싶어 진정절차부터 밟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원으로부터 ‘학교측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개선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권고까지는 필요없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다. 1차 필자의 사례가 있었고, 현 내담자의 사례에서도 말과 실천이 달라서 학교에 관해 진정을 했는데, 조사원은 내담자의 말보다 학교측의 개선의견서 한 장을 더 신뢰하는 듯했다. 우리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차별에 대해 이같은 인권위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하니, 조사원은 ‘첫 사례는 법원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만이 인권위에 접수된 사례여서 반복적인 차별사례라 보기 힘들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물론 조사원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이 사건을 맡은 조사원의 생각은 그러했다.

게다가 지난 해 11월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2014년 3월에서야 조사원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 사례를 들어 토론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법 규정의 모호성, 국가인권위와 법원 관계의 문제, 신속한 대처 부재,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인권감수성에 관한 문제점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의 한계

2-(1) 법원 구제조치와 인권위 진정의 동시진행 사건에 대한 ‘각하’ 처리 문제

장차법을 살펴보면, 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 특히 장애인의 경우 법률용어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무엇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억울한 차별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 분명한 데, 그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법원에 구제조치 신청을 하면, 진정은 각하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서술한 사례에서도 내담자는 인권위 진정, 법원구제조치 신청, 손배소까지 모두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청했고 본 단체 상담원이 절차를 여러 번 안내한 후에서야 이해했다. 따라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단지 절차를 잘 몰라서 법원과 인권위에 모두 접수했다가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된 사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2-(2) '1년 이내'로 제한된 짧은 진정 시효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1항4호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차별행위를 당한 1년 이내에 진정하지 못하면, 이후 진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사건의 경우, 차별행위를 당한 자신이 어떤 절차를 밟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한참이 지나서 관련 기관종사자가 사건을 알게 되거나 주위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1년이 지난 경우도 허다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나 상당히 많다. 물론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장애인사건의 경우 홍보만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2-(3)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편의' 규정의 부재

장차법과 시행령에는 고용, 교육, 교통수단, 문화예술 등 각 영역별로 정당한 편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31조 건강권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편의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처방이 나왔는지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자신에게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왜 그런 진단이 나왔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통이 어렵다. 또 지체장애인의 경우,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촬영기만 있거나 키를 재는 신장계가 서서 검사하는 기계만 구비되어 있을 경우, 검진을 받기 어렵다. 의료기관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건강권과 연결된 정당한 편의 내용과 적용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2-(4) 모니터링 규정의 부재

앞서 설명한 정당한 편의와 관련하여 장차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즉 누군가가 정당한 편의와 관련해 진정을 해야만 개선할 수 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010년 동안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¹⁾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이행률이 50%를 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도 ‘정당한 편의제공 평균이행률’이 8.7%로, 턱없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1〉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평균 이행률

(단위: %)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복도	작업대	화장실	기타시설	정당한 편의	평균
49.8	34.2	16.2	62.9	27.9	32.0	43.6	33.9	8.7	34.4

* 자료 : 2010년 공공기관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그리고 지난 2011년 동안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초·중·고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이 또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행률이 50%를 넘지 못한 46%로 조사되었고, 정당한 편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곳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평균이행률’도 28.8%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2〉 경상남도 학교기관의 ‘정당한 편의’ 평균 이행률

(단위: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이행률
총 평균이행률	39.8	26.7	20.0	28.8

* 자료 : 2011년 학교기관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1) 조사대상이 된 공공기관 (총1,012곳) : ▶ 행정기관(도청,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의회, 주민센터, 세무서, 차량등록사업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촉진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 사법기관(법원, 경찰청,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등), ▶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공공이용시설(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시·군민회관, 복지관, 공원) ▶ 우체국

결과를 통해 경상남도과 교육청에 개선요청을 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져 예산을 확보하는 등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제대로 개선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이후 다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우리같은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여 행정기관에 제안하지만 행정기관이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차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에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이행여부 확인하는 관련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시정권고를 한 후, 실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권고받은 자가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3항에 의하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4항에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권위가 권고의 내용을 이행했는지를 살펴봐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분기마다 열리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권고 이행여부를 보고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을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의 건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된다.

2-(5) 관계자의 인권감수성 결여

법무부 산하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활동은 너무나 미약하다. 시정명령 건수를 확인해보니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한 사건이 2건밖에 되지 않았다(2014년3월 27일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후 불이행된 사건이 법무부에 통보되어도, 법무부 내에서 시정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아도 그뿐이기 때문이다.

장차법시행령 제25조3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2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어 놓아, 매 분기별로 1회만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장관과 차관은 인권교육을 받고 일정기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관에서 연수를 하거

나 인권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출신 중에서 위촉하는 것도 아니다. 인권문제에 민감한 사람이 위촉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바람일 뿐이다. 결국 장관과 차관이 인권감수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심의위원회의 소집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현 상황인데, 이를 보완할 어떠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서론에서 제시했던 사건도 조사원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인권교육자료를 만들어 내고 인권교육강사양성업무를 하는 부서는 있어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원을 포함한 인권위 직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 즉 일반공무원들이 받는 기본교육 외에는 인권에 관한 의무교육이 없어 조사원 개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 신속한 대응의 부재

장차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관련 진정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년 (4월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연도별 진정건수	585	710	1,649	874
월평균 진정건수	73.1	59.2	137.4	72.8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갑자기 사례가 많아졌던 2010년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원 수는 23명밖에 되지 않는다²⁾. 이 중에서 두 개의 장애차별조사과별로 과장과 서기관 총4명을 제외하면 19명이다. 그러니 2011년을 기준하면, 한 명당 46건의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사건이 진행되면, 조사부터 조정, 위원회 보고 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고 집단진정이 발생하면 진정인을 만나 조사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특히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하므로 조사원은 사건발생지가 제주이든, 경남이든, 강원이든 나가야 한다. 그런데 매주 1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업무는 밀릴 수밖에 없고, 신속한 대처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다.

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개의 장애차별조사과 직원명단 참조.

실제로, 본 단체가 인권위에 사건을 접수하면, 처음으로 조사원에게 전화가 와서 문제에 관한 진술을 하기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출까지는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전국에 4곳에만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중에서 조사권을 가진 서울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 장애인들의 접근성조차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지만 소외와 배제에 익숙해 있는 장애인들의 경험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따라서 현 시스템은 장애인차별 사건을 조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2-(7) 같은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문제

차별행위자를 고소하거나 진정을 하여도, 차별행위는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론에서 밝힌 사건도 비슷한 경우이다. 1차적으로 소송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또다시 다른 피해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어도 해당 차별행위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금전적 손익계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배상금을 물고 말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뿐 아니라 지치게 될 것이고, 차별행위자는 계속해서 범망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전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은 손익계산에 따라 결코 개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제언 -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및 기능의 확대방안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다(장차법 제1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따라서 위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법이 모호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지속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

본 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차별상담 건을 접하며 정말 차별행위자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별사건, 예를 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한 강당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배려받시고 참석 안해도 출석인정을 하는 등의 사건 등도 허다한데, 출석인정을 해주면 차별행위가 아닐까. 이후 개선의지를 보이면 차별행위가 아닌 것일까.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조목조목 법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장차법의 한계,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및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3-(1) 법원 구제조치와 인권위 진정의 동시진행 허용 및 일시 조사중지 처리

「2-(1) 법원 구제조치와 인권위 진정의 동시진행 사건에 대한 ‘각하’처리 문제」는 법원구제조치 신청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1항 5호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될 경우 ‘각하’가 아니라 ‘일시 조사중지’ 등 다른 표현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인권위 사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하다.

물론 법원구제조치 결과와 국가인권위 진정결과가 달라질 상황을 막기 위한 현 조치일수 있겠으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 공무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직권남용, 폭행 등으로 재판을 할 경우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위원회에 진정이 유지된다. 즉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허용된 사안일 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동시진행이든 아니든 늘 이루어져 왔던 문제이다.

게다가 법원구제조치의 경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가 아닌가를 통한 조치 혹은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시정권고하는 곳이므로, 동시 진행된다고 해서 결과의 다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후 동시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경우, 법원의 구제조치에서 다를 차별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를 차별행위의 모호성만 정리하면 될 문제라고 본다.

3-(2) 진정시효의 확대 및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적용

「2-(2) ‘1년 이내’로 제한된 진정시효의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관련 종사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시효를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는 아동성폭력범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진정 시효는 ‘1년 이내’로 너무나 짧다. 피해장애인이 진정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차별을 당하고도 차별을 당했는지 모를 수 있으므로, 관련 종사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3)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편의’ 세부규정 마련

「2-(3)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편의’규정의 부재」는 장애인의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또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처방전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제공,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누워서 검사할 수 있는 X-레이 검사기구 또는 신장계 등 접근가능한 검사도구 도입 등 의료기관에서 갖춰야할 정당한 편의 종류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혹여 필자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다른 영역에도 정당한 편의에 관한 내용과 적용기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편의’규정에 관한 재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3-(4) 인권위 모니터링 규정 및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권고이행 모니터링 규정 마련

「2-(4) 모니터링 규정의 부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인권위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관련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도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시정명령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런데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장애관련 진정 건은 3,800여건에 달하는 반면, 시정명령 건이 겨우 2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차법 속에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권고이행에 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5) 인권교육 규정 신설 및 국가인권위 산하 위원회에 의무적 장애인 할당

「2-(5) 관계자의 인권감수성 결여」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3-(5)-① 인권업무 종사공무원(고위직 공무원포함)에 대한 의무적이고 수준높은 인권교육 실시 규정 신설.

「2-(5) 관계자의 인권감수성 결여」는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이 얼마나 인권에 관해 무지한가를 말해주는 문제이며,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직위해제를 당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³⁾

그런데 인권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일반공무원 수준의 기본교육 외에는 인권에 관한 의무교육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벌어진 상황(조사원의 차별인식 부재 및 시정명령 건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도 세미나, 내부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 보인다.

따라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고위직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의무적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원과 고위직 공무원은 직접적 판단을 하는 지위를 갖기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도 더욱 철저하고 수준높은 인권교육 규정과 실습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2013). 독일연수보고서 참조.

3-(5)-② 국가인권위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 의무적인 장애인할당 규정 마련

「2-(5) 관계자의 인권감수성 결여」는 관련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건의 최종 조치를 지원하는 상임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인권감수성과도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만 보아도, 장애인위원으로 할당된 위원은 없다. 물론 여성할당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 경증장애인 위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성할당 몫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즉 한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뿐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약50%가 장애차별 진정임을 볼 때,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장애인할당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은 그 유형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신체장애유형에 속하는 위원 1인, 감각장애(시각, 청각 등)유형에 속하는 위원 1인, 정신적 장애유형을 대변할 수 있는 부모 혹은 관계기관출신의 위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 판단과 법무부의 소극적인 판단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타당할 것이며, 장애차별에 관한 넓은 이해가 관련기관 내부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3-(6)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확대 및 지역사무소의 조사권한 확대

「2-(6) 신속한 대응의 부재」는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상 벌어진 문제라고 본다. 진정 건수에 비해 조사원 수도 적을뿐더러, 국가인권위 소속 지역인권사무소는 진정 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모든 사건을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역청’처럼 지역 인권사무소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인권사무소 조사원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이 갖고 있는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장차법 시행5주년 기념토론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요즘은 신속한 행정절차가 시대의 요구 중 하나여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절차들이 간소화되는 등 신속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차별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스템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지역 인권사무소 조사원의 전문성을 문제삼아 조사권 부여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이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처럼 시험점수로 담보가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원도 그러한 절차를 갖추면 될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의 확대와 조사권 부여에 관한 사안은 정부가 국민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적극 나서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국가 가치관에 달려있는 문제일 것이며,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지역인권사무소를 전국에 3개만 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3-(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일부 도입

「2-(7) 같은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길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별 행위자가 반복된 차별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가까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피해액을 약 3백만원으로 보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약5천만원으로 본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는 약5천만원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같은 제도가 일부라도 도입된다면, 차별행위자의 반복적인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률적 한계상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부분만이라도 도입해 ‘실제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혹은 ‘차별행위를 멈추기 위해 드는 개선비용의 1/2’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이 또한 차별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3-(8) 장차법의 특별법화 추진

지금까지는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의 한계」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제언을 하였다. 끝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장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제언이다. 바로, 장차법의 특별법화 추진해 관한 것이다.

지난 해 「장차법 시행5주년 기념토론회」에서도 언급했지만, 장차법의 특별법화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장차법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하는 법이지만, 일반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법과 늘 충돌한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형법과 행정절차법 속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는 세부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장차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관계기관의 도덕적 책임에 달려있다. 상법 732조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성폭력특별법은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보니 언제나 형법보다도 우선하여 법률 간 해석상의 논란이 없다.

각각의 법률 관계자들이 어떤 법을 우선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모호한 차별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 등은 자체 법률지원팀을 활용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부터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법의 특별법화는 장차법 제 1조에서 밝힌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진 장애인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제정한 유일한 법이 장차법이다. 그만큼 차별받고 살아가는 현실을 바꾸고 싶은 장애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법률이 바로, 장차법인 것이다. 그 간절함으로 제정한 장차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부디 장차법 시행6주년 기념토론회에서는 장차법의 특별법 승격을 환영하며 추진된 경위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4. 마무리하며

앞서 2-(6)에서 문제로 지적한 사건해결의 신속성과 장애인의 접근성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제언이 필요하다. 바로 민간단체의 역동성을 담보로 하는 P&A기구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P&A기구가 각 지역별로 설치된다면, 장애인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인권지원기관이 생기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차별을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달리, 정서적 상담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처럼 진정, 소송 등 장애인 혼자서 처리하기에 어려운 법적절차를 지원하여, 차별을 당하고도 절차가 어려워 법적구제를 포기하는 일을 다수 방지할 수 있다. 즉 차별대응에 있어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중간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P&A기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설치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더 이상 P&A기구 설치에 관해 장차법에서 논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난항을 겪게 된다면, 장차법을 통해서라도 하루 빨리 P&A기구 형태의 기관설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대표를 맡아 일하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 기구로서 겪는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자주 발생하는 휴대폰 사기사건의 경우, 차별이라고 보기도 애매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그렇고, 경찰에 고소한들 사기를 친 가해자를 찾을 길이 막막할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련 대기업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휴대폰 요금 안내교육, 직원인권교육 등을 요구했지만 기업의 태도는 매우 고자세이다. '우리같은 기관의 법적 권한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정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때문에 법률상 규정된 P&A기구의 설립은 간절한 소망과도 같다.

물론 이런 기구가 없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만큼 P&A기구의 설치는 앞서 제언한 8가지 권리구제 확대 방안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끝으로, 앞서 문제로서 지적한 8가지 '장차법의 한계 및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의 한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므로, 하루 빨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2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Ⅰ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지난 해 부산의 한 모병원에서는 장애인 직원들이 직장 내 차별대우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병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지 석 달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신문에 기사화된 바 있다.¹⁾

위와 같이 장애인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사례가 피진정인의 비협조로 실제적인 조사와 사후조치가 제대로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나 인터넷상 공개되지 않은 문제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 판단된다.

이 발표문에서는 현재 부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차별현황을 살펴보고, 위와 같

1) 부산일보 2013. 10. 30.자 인터넷판. 기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지목된 콜센터 직원 J씨는 여전히 진정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30·여) 씨 등 병원 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계약직 근로자 5명은 지난 7월 중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상관인 J씨로부터 “병원 이미지를 떨어뜨리니 2명 이상 모여 다니지 마라”는 말을 듣는 등 지속적으로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석 달이 넘도록 권고나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8일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받았지만, 답변서 내용이 한쪽 직원의 입장에 치우쳐 있어 양쪽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지난 18일 재요청했다”며 “진정인들이 피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그 뒤로 병원으로부터 답변이 없어 조사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 사이 진정을 제기한 5명 중 2명은 최근 응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3명 중 한 명은 지난 7월 말 재계약 시점을 한 달 가량 남기고 압박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내년 6월께 계약이 만료된다.』

은 차별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시 이에 대해 제도적인 구제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향후 보다 나은 권리구제확대방안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개진하고자 한다.

II. 부산지역 장애인차별현황과 문제점

1. 부산지역 장애인차별현황파악의 어려움

부산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장애인 차별실태 및 그에 대한 상담과 구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부산지역에도 장애인차별 내지는 인권상담을 하는 곳이 다수 있지만²⁾, 위 기관들이 각자 상담내용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취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애인차별진정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차별현황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차별사유별, 연도별, 장애종류별로 통계를 내고, 다시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 및 이용영역, 교육시설의 이용영역등으로 분류한다음, 사건처리의 유형별현황과 권고이행현황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 전화평지를 통해 접수된 차별상담내용이 장애유형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등으로만 분류되어 발표된 바 있다.³⁾

결국, 부산지역내에서 한 해 일어나는 장애인차별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와 현황을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예를 들어, (사)열린네트워크내 장애인차별상담센터,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내 장애인차별상담,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내의 인권센터등 각 지역별로 또한 각 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상담을 행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3) 서재경, 권리옹호의 길을 걷기 시작한지, 5년째,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5주년 성과와 평가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17-22면 참조

다만,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차별모니터링작업을 통해 재화용역과 시설등의 장애인차별개선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있으나, 이는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인 작업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차별사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 장애인 인권상담센터의 통계자료 취합의 필요성

현재도 나름 개별단체에서 매해마다 장애인인권침해상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들이 각 장애인인권단체에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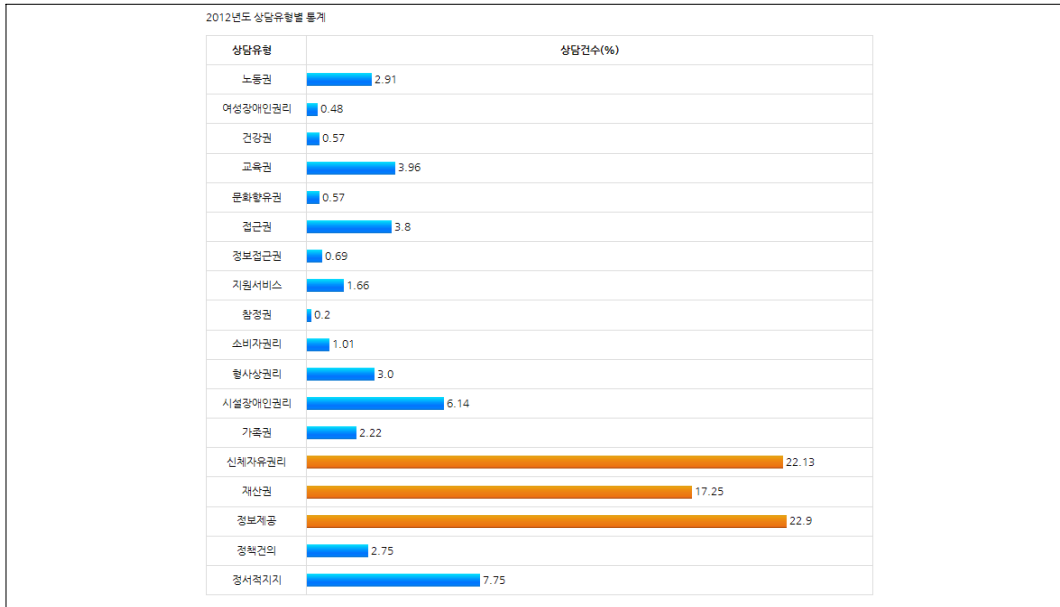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부산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장애인인권단체들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이를 취합하여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예로 아래에서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1577-5364)를 통하여 접수한 상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계표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그래프는 상담유형별로 이를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 처리내역과 최종 결과를 알기에는 부족한 정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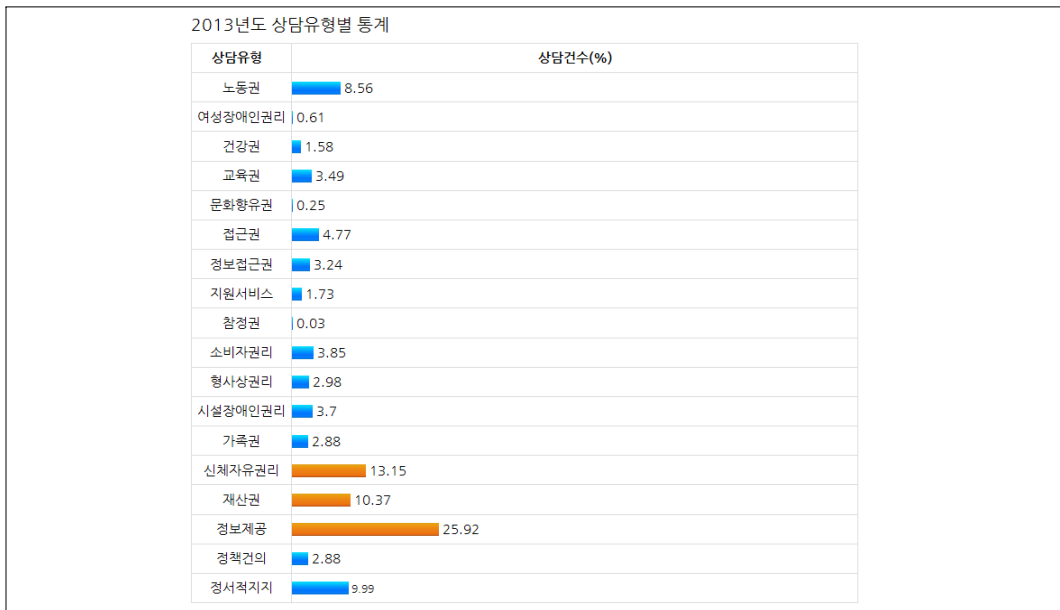
더구나 이 그래프에서도 지역적인 통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⁴⁾ 위 단체의 각 지부들에서 접수되어 상담이 이루어지는 내역들도 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면 각 지역별로 어떤 유형의 상담이 많고 적은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유의미하게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차별사례 관리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3. 10.에 발간한 「장애인 권익옹호 상담활동에 대한 분석 및 체계 구축-(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보고서 33면에서는 상담건수를 지역별로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응답자의 지역을 알 수 있는 3,464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장애인 등록비율에 비해 상담비율이 적었으나, 전남 지역은 등록비율 5.88%의 5배에 이르는 26.21%, 광주지역은 등록비율 2.72%의 6배에 이르는 16.43%, 대전지역은 등록비율 2.83%의 4배에 이르는 11.7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 2012년도 장애인인권침해 상담유형별 통계⁵⁾



〈표 2〉 2013년도 장애인인권침해 상담유형별 통계⁶⁾



5)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15775364.or.kr/bbs/board.php?bo_table=B24&sca=2012)

6)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15775364.or.kr/bbs/board.php?bo_table=B24&sca=2013)

Ⅲ. 권리구제방안

1. 장애인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실효성에 대한 의문

일반적으로 장애인차별상담전화등으로 다양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인권상담 통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장애인차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인권침해상담센터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인권과 장애차별금지운동에 관여했던 전문 활동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문제는 상시적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예를 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경우에도 개별상담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고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만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는 개별 상담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유사사례에 대한 대응의 효율성차원에서 1년 또는 3년 단위의 상담사례집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예를 들어, 관련자들의 이름이나 상호, 법인명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OO등으로 처리)으로 자료를 축적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실제적인 지원은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의 구축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권리구제’영역에서의 비전문적인 조언들로 인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차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제대로 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상황의 개선은 종종 공익소송과 같은 기획‘소송’등으로 이어져야만 제대로 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바, 지역에서는 역량부족으로 인해 인권‘상담’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상담차원의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과 구제절차를 통한 소송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판단되고, 이를 위한 지역의 장애인인권단체들과 법률가집단,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등이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

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과 공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장애인인권센터’인데, 최근 제정된 부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부산지역의 장애인인권구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부산장애인인권조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산시 장애인인권조례제정과 장애인인권센터의 실질화

2013년 당시 이미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수의 장애인인권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 장애인인권조례는 그 내용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하다는 평을 듣고 제정되었다. 현재 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부산시 장애인인권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 위탁 운영, 감시 기간과 대상,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 피해자 보호 등에서 가장 구체성에서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와 그 역할이다.

부산장애인인권센터가 향후 갖추어야 할 부산지역 장애인인권센터로서의 비전과 방향은 도대체 어떠한가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내용으로, 보장(Protection)과 옹호, 권리구제(Advocacy)가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필자는 이에 더하여 독립(Independence)과 참여(Participation)를 들고 싶다.

부산장애인인권조례의 장애인인권센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활동
 2.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7.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설치될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를 보면,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와 관련된 명실 공히 구체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행위와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접수 및 상담, 나아가 관련자료 수집활동,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등의 요청에 따른 조사 및 현장지도 감독에의 참여, 법률구조활동지원등 이른바, ‘권리옹호 및 구제기관’(Protection&Advocacy)이 행하는 실제적인 기능을 일정한 수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 장애인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사실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부여가 필요할 것이나 상위법과의 관계와 법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를 규정하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특히 시설내의 장애인인권침해사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사건(오하이오주 P&A 자폐아동 징벌방 사건⁷⁾)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사건의 내용은, 2011년 12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립(이하 ‘CCS’라 함) 소속 고등학교 재학생중 자폐증세를 지닌 한 학생의 학부모가 Legal Rights Service(이하 ‘LRS’라 함)⁸⁾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내용인즉, 해당 학교 내에 설치된 특별한 교실(창은 없었으나, 빛은 충분

7) <http://www.disabilityrightsohio.org/sites/default/files/ux/lrs-ccs-invest-report-sept-2012.pdf>

8) 오하이오 주에 설치된 P&A기구의 명칭.

히 들어오는 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떨어져서 수업을 하도록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장애학생이 그 방에 일정기간 방치됨으로써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그로 인해 포도상구균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부모도 애초에는 비록 그 방의 사용에 동의했다고 하나, 그 방 자체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위 방의 이용을 강제하는 결정을 하자, LRS에 위 방의 사용과 관련된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LRS는 조사를 개시하였고, 자료들을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인터뷰하였다. CCS가 그러한 시설의 운용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 교육청이나 CCS에 그러한 골방(seclusion room) 사용에 대한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 학교의 시설을 방문하고 인근에 다른 시립학교들에도 유사한 훈육실(processing room)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아가, 교장과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학생이 타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위 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시설이용전에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으며, 교사의 감시 하에 10분 이상 그 방에 두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부정적인 행동이 계속될 경우에는 추가 10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학생이 그 방에 들어가기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위 방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학교의 직원들은 위기관리교육(crisis prevention intervention)을 받았으나,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LRS는 위와 같은 시설운용은 비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으로, 특히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부적절하므로 폐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학교 당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관련서류들(시설의 명칭, 관리규칙, 시설이용대장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학교당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자 소송을 취하하였다. 서류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된 학생의 경우, 보고서상 학교는 해당 학생이 자폐증으로 진단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시설⁹⁾등에 일시 격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했으며, 2011년 한 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시간 40분에 이르는 장시간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는 훈육의 명분으로 밀대걸레로 청소를 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2011년 11월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감각치료실(sensory room)이 아닌 훈육실(processing room)의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¹⁰⁾

9) 보고서에서는, 자폐증 아동이 감각치료실(sensory room)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학교의 훈육실(processing room)이 위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징벌격리방(seclusion room)을 장애아동교육목적방(감각치료실: sensory room)으로 교체할 것
- 학생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징벌조치를 중단할 것
- 학생 자신과 다른 학생에게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경우에 한하여만 위와 같은 시설을 운용할 것 등

위에서 본바와 같이, 오하이오 주의 P&A 기구인 LRS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정보접근권의 절대적인 보장’이다. 조사대상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정보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그 이상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유로운 시설접근과 관련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인터뷰 등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안에 가장 적절한 판단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준다는 점이다.¹¹⁾ 따라서, 이러한 조사권(자료제출을 포함)의 실질화가 향후 장애인인권센터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국, 부산 ‘장애인인권센터’에서도 현행법 체계상 확보하지 못한 ‘실질적인 조사권’의 부재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우린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인권센터’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장애인 인권센터내에 ‘상근변호사’를 두는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가 단지 ‘상담소’의 역할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소송으로 차별해소와

10) 장애아동교육법(The federal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A)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장애아동 최소한의 제한 하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다른 건물이나 교실에 격리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of 2000 (H.R. 4365)에서도 ‘격리’란 장소적인 폐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정리(time-out)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CS는 미국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불필요하고도 위험한 관행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11) 이와는 반대로 환자나 미성년자의 부모들이 P&A기구의 자료접근을 거부한 사례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Ga. Advocacy Office, Inc. v. Camp, 172 F.3d 1294, 1297 (11th Cir. 1999) (이 판결에서는, P&A소속 변호사와의 동행방문을 거절한 사안)

권리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역 로스쿨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향후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지역의 로스쿨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통하여 공익관련법의 개설을 요구하고, 장애인단체가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공익변호사, 장애인권을 위해 헌신할 변호사들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존과는 다른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법률가그룹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 그룹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권보장 및 권리구제가 가시화될 것이다.

3. 전국적인 P&A 기구의 법제화작업에 대한 평가

여기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P&A 기구의 법제화작업과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과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장애인복지법에 P&A 기구나 체계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 법률상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등을 두어 아동학대예방이나 노인학대예방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나가는 장애인인권옹호기구의 성격규정과는 불일치하는 면이 있고, 장애인권리옹호기구가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는 달리 ‘소송’까지 그 업무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한계점이 분명해 진다 할 것이다.¹²⁾

둘째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여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장애인인권법’이나 ‘장애인권리보장법’¹³⁾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관련 포괄적인 권리옹호의 기본법이 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입법이며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돌이켜 볼 때 새로운 장애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급박한 장애인인권침해의

1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 제정), 성년후견인제도(2013년 7월 1일 시행),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제1호 발의), 발달장애인지원계획(보건복지부, 2012년) 등 최근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국가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1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내용으로,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제도 도입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각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멀고도 지난한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법들과의 조율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하게 될 것이기에 이 역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셋째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P&A기구나 체계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각 지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범으로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차별금지조례’¹⁴⁾가 제정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모범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조사권’같은 초기 P&A의 씨앗을 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는 방향이다. 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장애인인권옹호’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역시 큰 틀에서는 장애인‘인권’법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부활’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장애인인권보장기본법’과 같은 포괄적인 장애인인권법제정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를 근거로 P&A기구가 출범할 수 있다면 이는 향후 ‘장애인인권기본법’등이 추구하는 포괄적인 P&A체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각에서는 야당통합과 지방선거정국으로의 와중에 ‘장애인권리구제법’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장차법으로서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인권리구제’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생각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직법으로서의 성격상 한계로 인하여, 장차법은 인권위원회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시도가 필요하다.

14) 현재 전라남도, 대구, 서울, 경기도등 다수의 지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부산시의회의 경우, 2013년 3월 ‘부산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17조 제1항)하고 그 권한으로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및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지원을 규정(제17조 제2항 제1, 4호)하여 장애인권리옹호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한 마디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부정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가칭 '장애인권리구제법'이 특정정당이나 국회의원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제정된다고 할 경우, 이는 다른 여타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법률들과 제대로 된 조화를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잘못하면 기존의 '장차법'을 무력화하는 역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또한 가칭 '장애인권리구제법'이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장차법'과 동 떨어진 법으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장차법은 '권리구제'를 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 필요할 경우 형식에 부합하는 내용과 실질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포용력 있는 모법이므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로 장차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명칭의 장애인권리구제법 추진운동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인 것이다.

결국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애인권리구제는 장차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구제'의 구체화작업을 통하여 장차법 개정으로 통한 권리구제기구의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장애인인권센터의 위탁운영이다. 장애인차별금지 조례가 예상하고 있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은 부산 장애인계의 새로운 희망이다. 현행 부산 장애인인권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성의 제고와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구축등과 같이 위탁운영의 장점이 충분히 존재하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는 기존의 여러 단체 중에 한 곳이 '유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여러 단체가 각

기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어필하여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나, 이는 복지관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보다는 부산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컨소시엄형태로 바람직한 센터의 구성과 설립, 운영로드맵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센터의 유치나 위탁을 시간상 다소 미뤄서라도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협업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고, 지역 내에서 바람직한 인권센터의 모델을 구축하는 꾸준한 작업을 통해 부산장애인인권센터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IV. 맺는 말

지역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방지와 차별금지를 위한 첫걸음은 조례제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음인 장애인인권센터로의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독립적’이면서 ‘참여적’인 장애인인권센터의 탄생, 그것이야말로 지역 내 장애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커다란 진보라 할 것이다. 그런 장애인인권센터의 탄생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2013년도에 진행했던 ‘지하철역사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이나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등의 사건들이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의 최종결정으로 이뤄진 것을 큰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렇듯 서울에서, 공익변호사그룹중심으로 이뤄진 성과들이 전국의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해 확산되고 또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이나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들이 향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각 지역의 장애인인권센터들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결성되어 서로의 노하우와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적인 특성들을 살려 나가는 이른바 ‘집중형’ 중앙센터과 ‘확산형’ 지역센터가 서로 공존하는 형태의 전국적인 장애인인권센터의 조직화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신수현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장애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 신수현 (열린네트워크 부산지부장)

□ 법적 근거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약칭 장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차별금지의무 이행자’,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극적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능 및 한계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로부터 **즉각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인권보장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치법규
- 법률의 규정없이 제정이 가능한 수익적 조례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례
-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교육시설, 가정 등에 대해 조사, 현장지도, 감독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
-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거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권리옹호의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권리옹호기관’¹⁾으로서의 역할 수행 불가

1)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문제서술, 긴급전화 신고접수, 자료 및 정보 수집, 현장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이행권고 조치 및 사례관리, 소송, 상담, 정보제공 및 의뢰, 자기 옹호훈련 실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권한 및 역할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변호, 지지, 주장,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권리옹호기관

□ 장애인인권센터의 지위와 권한

-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지위와 권한
 - 비영리 민간단체
 - 정부의 예산 지원
 - 다수의 변호사가 상근하여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조사와 대리소송 가능(피해 장애인을 대신하여 지정된 원고의 일을 맡을 ‘원고적격’ 권한)

- 국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의 경우
 - 학대행위에 전문적 이해를 가진 권리옹호자(변호사) 개입 허용
 -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시 조사, 방문, 분리 및 보호조치(쉼터운영) 등의 권한 부여
 - 조사거부 등의 업무방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 장애인인권센터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정부)로부터 독립 운영, 무료 서비스 제공
 - 권리구제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권리침해 징후가 있을 경우 직권 조사 가능. 이 경우 관계기관과 시설의 협조 의무
 - 피해자를 피해 상황 또는 가해자로 부터 분리하고, 보복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호조치(쉼터 운영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겸비)
 -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정보제공 및 연계
 - 법률에 의한 조사권한 부여
 - 인권침해,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인력 상근
 - 당사자의 참여 보장, 의사 존중, 충분한 정보 제공
 -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공익변호사 상근)
 - 조사결과와 개선조치권고에 대한 공적보고서 발행
 - 지속적인 감시와 긍정적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권리옹호 협약서’ 개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포함)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단,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 제외
-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전액 예산 지원
- 신고방해, 조사거부 등 업무방해시 처벌
- 인권침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장애인인권센터와의 협조
- 장애인의 입원·입소·입교시 장애인권리옹호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당 장애인에게 공지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알려줄 의무
-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에 관한 시책 마련
-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발굴 및 신고체계구축 방안 마련
- 시민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등 정보 제공

□ 부산시 장애인인권조례의 주요내용

- “장애”, “장애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차별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제3조 시의책무)
-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함(제4조 시민의권리)
-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²⁾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 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연계, 성별·연령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³⁾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지침 포함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개선조치, 제정·개정·폐지 등 요구(제8조 실태조사)
-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⁵⁾(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⁶⁾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시장은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제외

화 방안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1. 신체적·정신적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3. 센터 등 임시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심리적·사회적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 주어지지 않는)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4)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위원회는 장애여성을 포함한 장애인 과반수 이상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장애인·인권기관·시의회·변호사자격·학계에서 구성하고, 위원은 임기 2년에 두 번 연임.
- 6) 센터의 업무는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활동** 2.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7.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등으로 명시

(제18조 업무의 위탁)

-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대상으로 해마다 교육 홍보 의무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단체·법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도록 권장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음(제19조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제20조 표상 등)

□ 실효적 이행 방안

- 법률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형성
 - 현행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권리옹호기관으로 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신고 접수 긴급전화, 현장조사, 응급조치 및 보호시설, 상담 및 교육, 홍보, 사후관리 등 가능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전문기관의 협조 의무
 - 직접 소송권(원고적격 인정), 예고없는 시설조사권,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권 등의 법적 권한이 장애인인권센터에 부여된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의 도입
 -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 또는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참조) 장애인인권조례 전국현황

- 광역자치단체 12개, 기초자치단체 56개 지역에서 제정(2013년 8월 현재)
- 장애인인권센터는 대부분 임의사항이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접근·조사, 법률구조활동 등 장애인권리옹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한조차 주어져 있지 않음.

지역	조례명	제정일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2013.2.20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3.02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5.0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8.05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6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0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30	

지역	기본계획주기	시행계획주기	실태조사/결과처리	센터설치/접근·조사권	인권위원 총원/장애인 비율
서울	매년	기본계획내포함	기본계획내포함	임의/ ×	×
전남	5년	매년	실시/ 결과 의회보고	의무/ ×	15인 이내/과반
광주	5년	매년	실시/ 결과 의회보고	임의/ ×	15인 이내
대구	5년	매년	실시/ 결과 의회보고	×	15인 이상/과반

지역	기본계획주기	시행계획주기	실태조사/ 결과처리	센터설치/ 접근·조사권	인권위원 총원/ 장애인 비율
제주	5년	매년	실시/ 결과 의회보고	×	30인 이내/과반/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대전	5년	매년	실시/ 결과 의회보고	×	15인 이내/과반
강원	5년	매년	실시	×	15인 이내/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인천	5년	매년	실시	임의/ ×	15인 이내
경기	5년	매년	실시/ 결과 의회보고	의무/ ×	15인 이내/과반
부산	5년	매년	실시/3년마다	임의/△	15인 이내/과반
세종	5년	매년	실시	×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충남	5년	매년	실시/	임의/△	15인 이내/과반

Ⅵ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Ⅵ

▶▶ 발제 3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 현실과 제언 -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 - 현실과 제언 -

Ⅰ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I. 들어가는 말

‘무장애 도시’ 라는 말은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 불리는 말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지 않을 수 있다. 아직은 두 용어가 별 구분 없이 혼재해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도 ‘무장애 도시’에 대한 담론이 산발적이긴 하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무장애 도시의 개념은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 왔지만 지극히 일부에 의해서 다루어졌을 뿐이었고 주로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생활용품들에 의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 2008년 대전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인천시는 설계중인 공공기관 건물은 반드시 BF 인증획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경기도도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2010년에 Universal Design 가이드를 개발추진과 아울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 인권도시 프레임 조성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 부각이 유행처럼 퍼져 나갔다. 이에 진주시와 광주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풍에 합류해 나갔고, 다른 도시들도 이러한 현상에 동참하여 하나 둘 성과를 더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장애 도시’란 반드시 장애인이라 불리는 사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상을 주로 염두에 둔 명분으로 더 힘을 실었다. 무장애 도시의 붐은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의한 통합사회,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장벽은 당사자의 저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에 따른 담론확산으로 이어졌다. 장애인에게 이동보조기구 보급의 확산으로 출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불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차별과 배제라는 비인권적인, 야만의 사회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국내 문제는 국제 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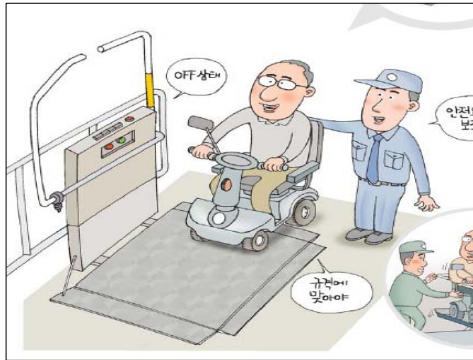
무장애 도시 건설은 너무나 방대한 일이라 꿈에 가깝다. 학교의 엘리베이터, 공공기관의 경사로 하나를 설치했던 세월이나 과정의 수고를 되새겨 볼 때, 도시 전체의 프레임에서 그 안에 산재한 수많은 장벽의 요소들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과제는 백년 지 대계를 세워도 부족한 실정이다. 무장애 도시 건설은 장벽을 없애거나 소위 공간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서 그 어떠한 인식의 메커니즘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 '베리어 프리'의 개념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장애 도시건설을 위한 제반 과정에서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다. 무장애 도시 건설을 위한 담론이나 설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 무장애 도시 건설의 과정에서의 당사자와의 참여구조, 파트너십에 의한 협치의 실현은 무장애 Universal Design의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전문가 집단과 행정에 의한 하향식 결정 구조가 아니라 전문가의 역할과 행정부 그리고 당사자의 경험적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유니버설 디자인 이념이 꿈꾸는 가치를 더욱 근접하게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II. 무장애 도시의 이해

'무장애 도시'라는 말의 의미를 도시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무장애 도시'라는 말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베리어 프리(Barriera Free)라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는 이미 베리어 프리를 뛰어넘어 유니버설 디자인 패러다임을 요구받는 시점의 인식에서 무장애 도시라는 말을 배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건설 또는 UD도시 건설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베리어 프리(Barriera Free)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으로써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입원율이 크게 낮아졌고, 일본에서도 이미 일반 용어로 정착되어 쓰이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 편의시설 개념의 지하철 리프트



* 편의시설 개념의 아파트 경사로



* 역사 뒤편을 이용한 휠체어 통로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장애인 이동 통로를 좌측 사진처럼 역사 외곽동선을 따라 분리되어 있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이념과는 대치되는 대표적인 시설물이며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분리하는 대표적인 인식의 메커니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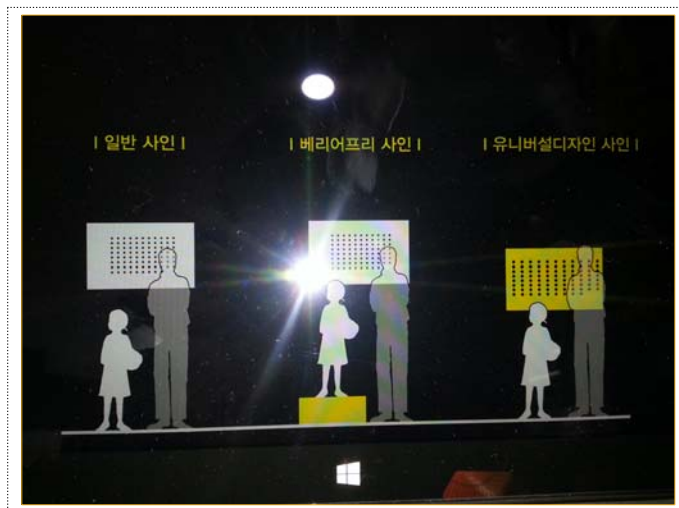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한다.

- 나이, 성별, 장애여부, 신체크기, 신체능력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 서비스의 디자인

- 노인용이나 장애인용, 어린이용이라는 특별한 배려를 없이 동등한 배려를 목표

-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 사용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Intuitive Use)
-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 적은 신체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Ⅲ. 무장애 도시의 필요성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 12월(통계청) 11.3%로 노인인구가 542만 명이 되었다. 통계청은 2005년 2010년에는 11.3%가 되었다. 이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15%가 넘을 것이며,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금의 증가로 보면 23%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부터는 55년~63년 출생자가 노인으로 진입할 경우 매년 6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가 일부 소수자를 위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임산부, 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면 인구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릴 것으로 보여 진다.

가령(加齡)에 의한 일반 장애

① 지각능력의 변이		
Sensory 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들리지 않는다. • 잘 보이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어렵다. • 감각이 둔해진다.
② 이동능력의 변화		
Dismo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 힘들다. •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고 서기가 힘들다.
③ 평행과 낙하		
Balance & fal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넘어지기 쉽다. • 균형을 잃기 쉽다. 	
④ Memory & Conf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하기 어렵고 쉽게 잊는다. • 혼란스럽다. 	

인간이 가지는 이상향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늙지 않는 것이다. 늙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말속에는 병들거나 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의료 기술이 발전 할수록 노인과 장애인은 더 많아 지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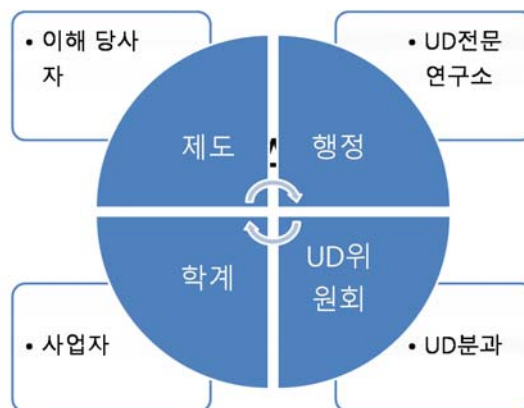
실제 1차 세계대전 당시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은 병사 중 단지 400명만이 생존했고, 그 부상자중 90%는 후송되기 전에 사망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는 하반신 마비 중 2천명이 살았고 60년대 후반에는 85%가 목숨을 구했다. 항생제를 비롯한 새로운 약품의 발달로 생존 기회는 점점 증가하였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척추손상 환자들이 호흡기, 방광, 또는 신진대사의 문제로 초기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거의 사라진 90년도에는 사지마비 환자들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인구도 장애의 범주를 넓히는데 한몫을 한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장애인 중 1/3이 65세 이상이다. 오늘날 미국 전 인구의 13%인 3200만이 65세 이상이다. 2020년이 되면 17%인 5천백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암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

IV. 무장애 도시 건설의 현황 및 과제

국내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어가고 있다. 대전시는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및 조례를 시행하였고 UD도시 사업을 추진을 시내 도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공공사업에 UD의무적용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착수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목표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또 화성시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시행에 들어갔으며 화성시에 첨단 보조공학기술과 유니버설디자인이 결합된 보조기구 상설 전시 체험장을 개관 하는가 하면 공공사업에 UD체크리스트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진주시, 인천시, 광주시 등도 변화물결을 이어 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위주로 ‘유니버설 디자인’ 공법을 도입한 아파트가 등장했고, 해운대구와 사상구에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제정한바 있는데 조례 조항 속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포함돼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생각하는 思考에서부터 지형, 도로, 건축물, 생활용품등 삶의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산은 지형적 여건상 산비탈 지대와 오래된 건축물도 많으나 상대적으로 전국 최고의 고령화 상곡곡선을 향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노령화는 과속화 되고 수용해야 할 환경은 미치지 못해 향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거한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단위로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 하나 무장애 도시 건설은 국가프로젝트 또는 지자체 단위의 도시발전계획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세워져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은 물론 건축, 설계에 관련된 제 전문교육과정과 사업현장에 UD의무화를 적용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피드백의 과정에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 맺음 말

아직 장애를 초래하는 주류생활환경에서도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편의시설조차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분리, 차별 메커니즘으로 인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게 하는 완전하지 못한 장벽제거에 속한다. 따라서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한다. 앞으로는 'Universal Design한 가능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친인권적인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공평하고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환경,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하루 겪어야 하는 생활의 문제임에도 소수약자들의 문제로, 시혜적인 관점에서 항상 후순위의 과제로 치부되어 왔다. 도시의 이동·접근의 장벽은 인권적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이 상존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동시간의 단축은 경쟁이자 효율성의 극대화이고 삶의 윤택성, 가치실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철도 이동수단도 이동의 가능성을 넘어서 보다 빠른 이동을 위해 KTX라는 보다 발전된 속도 향상으로 서울-부산을 두 시간대로 좁혀 왔다. 단순히 편리성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생산성의 문제이자 삶의 질의 문제다. 그러한 사회에서 어느 계층은 갈수도 없는 곳이 있는가하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부산의 휠체어 이용인 들은 대중이동수단인 지하철로 갈수 없는 곳이 많다. 물론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지만 이는 특별한 요금과 특별한 시간의 여유와 특별한 인내심을 반드시 요구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교통수단이다. 언제 어디서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저상버스, 지하철)을 확대하여야 하며, '두리말'과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그야말로 심야시간이나 대중교통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의 목적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주 수단으로 운영되고 대중교통수단은 아예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 현 실태 이다.

뿐만 아니라, 보행권의 문제도 교통수단 못지않게 심각하다. 크게는 장애유무를 떠나 보행중심의 거리문화 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보행로는 차가 진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러나 차도와 건축물 사이에 인도가 설치되는 관계로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이후로도 인도를 통해서 건물로 진입하는 상태로 보존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절대적 인도로서 보호되어야 할 의식이 무분별해지는 원인과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인도를 점유해 보행자가 이를 피해 다니기 위해 질주하는 차도를 넘나들어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되고 있다. 어디 이뿐이라, 도로 접한 건물의 경우 차량진입을 위해 난

도로에는 보행자는 안중에도 없고, 건물지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낸 급경사는 보행자에게 가히 위협적이다. 또 단차로 인해 더 이상 갈 수 없어 되돌아가야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일일이 열거하기에 숨이 가쁠 정도이다.

가령(加齡)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면 곧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일례로 모두에게 숙지된 사실 하나를 들자면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로 설치되었지만 오히려 보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머지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소수가 계단이용이 가능한 소수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하리라 본다.

몇몇 정책수립 과정이나 도시시설 구축과정에서 거버넌스에 의한 협의의 구조를 강조한 예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번번이 형식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나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협치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치가 필요한 것은 단지 민주주의적 절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많은 과정 속에 행정주의와 전문가주의가 양산한 시행착오에 의한 요구이다. 이제는 도시의 장애의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상에 목적을 위한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 질 때만이 그것이 행정이던 도시 건축물이든 도로든 간에 도덕성과 정의의 명분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표 1-1〉 유니버설디자인조례 현황(2014. 3. 기준)

연번	조례명	상정일
1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	2012-11-23
2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2013-11-11
3	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	2013-11-08

〈표 1-2〉 조문 중 “무장애”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포함 조례 현황(2014. 3. 기준)

연번	조례명	상정일
1	경기도오산시공공디자인조례	2013-05-27
2	강원도 인제군 공공디자인 조례	2011-06-14
3	충북 옥천군 공공디자인조례	2013-02-20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조례	2012-02-20
5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조례	2013-12-26
6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012-07-19
7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2012-01-01
8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2013-12-02
9	경남 창원시민 복지조례	2007-02-28
10	경남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2014-03-06

* 참고자료

-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김기곤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와 실천방안-이호창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3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흥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 이흥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목 적

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지대가 많고 경사가 심하여 보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보행의 안전과 쾌적함을 담보할 수 없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들의 현장 조사를 통해 보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보행권을 확보한다.

□ 조사 지역 기준

1. 장애인저상버스 운행 지역
2. 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
3. 공공시설 및 변화가 지역

□ 조사 지역

1. 남항동 (영선아랫로타리 ~ 대교사거리)
2. 동삼동 (절영복지관 ~ 영도여고 / 절영아파트 ~ 벽산비치아파트)
3. 청학동 (상리복지관 ~ 영도구청)

□ 모니터링단 구성

휠체어사용장애인 / 목발사용장애인 / 보행장애인

□ 법률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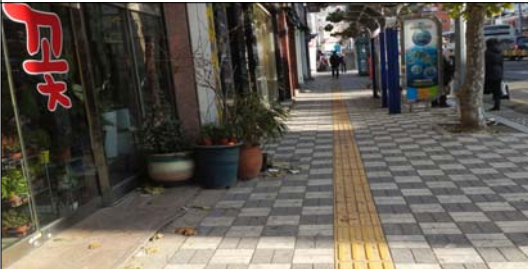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부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 용어 정의

- 보행권 :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 권리를 말한다.
- 보행환경 :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 보행약자 :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 보행장애물 구역 :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분전함 등)로 녹지대로 활용가능하다.

□ 보도환경 모니터링 결과

1. 남향동(영선아래로타리 ~ 대교사거리)

보 도	
	<p>보도 유효폭은 기준에 충족하며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보도의 수평이 대체로 균일하다. 일부 장애물로 인해 보행의 주의를 요한다.</p>
	<p>보도 유효폭은 기준에 충족하며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보도는 평탄하나 좌우 기울기가 발생하여 수평이 유지되지 않는다.</p>
	<p>보도블록 교체가 오래된 보도는 수평이 맞지 않고 보도 전체 구간에서 좌우기울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행의 안정감이 떨어진다.</p>

보도블록	
	<p>보도블록을 교체한 보도의 보도블록은 이음새가 일정하고 보도블록이 파손되지 않아 보행의 안정감이 높지만 미끄러운 재질로 인해 목발 사용 장애인은 바닥에 물이 있을 시 넘어질 위험이 있다.</p>
	<p>보도블록이 칩하 되어 상하 돌출이 발생해 보행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목발 사용 장애인 및 보행 장애인은 돌출된 곳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p>
	<p>보도블록 간의 이음새가 맞지 않고 개별 보도블록의 면적이 넓어 보도블록의 기울기가 심하고 칩하가 곳곳에 발생하여 돌출된 곳이 많아 보행의 안정감이 매우 낮고 위험하여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p>

장애물	
	<p>상가의 전시용 화분이 보도의 일부를 점하고 있어 충돌의 우려가 있어 안전에 주의를 요한다.</p>
	<p>상가의 물건들을 보도에 내놓아 보행 시 충돌의 우려로 인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냉장고 등 무거운 물건일 경우에는 충돌 시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p>



상가의 입간판이 보도를 점하고 있어 보행 시 주의를 요한다.

2. 동삼동(절영복지관 ~ 영도여고 / 절영아파트 ~ 벽산비치아파트)

보도	
	<p>보도의 유효폭은 기준을 충족하나 일부 구간은 지붕이 있는 정류장 대기시설로 인해 보도의 폭이 급격히 줄어들어 보행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p>
	<p>보도의 유효폭이 기준에 미달하고 경사진 길이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차도로 보행을 해야 함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p>
	<p>보도의 폭이 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행 시 매우 불편하고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의 우려가 높아 보행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p>

보도블록	
	<p>보도블록의 이음새는 균일하고 수평도 일정하지만 보도블록의 재질이 미끄러워 바닥에 물이 있을 시에는 목발 사용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p>
	<p>보도블록이 파손이 되어 돌출과 침하가 심하고 수평이 맞지 않아 보행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p>
	<p>파손된 보도블록을 방치하여 보도의 수평이 맞지 않고 블록 간의 높낮이 차로 인해 목발 사용 장애인 및 보행 장애인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p>

장애물



철로 된 장애물이라 충돌 시 부상의 우려가 매우 높다.



상가에서 내놓은 풍선막대형 입간판으로 인해 보도의 폭이 줄어들고 보행 시 충돌의 우려가 높아 주의를 요한다.



노점의 상품들이 보도의 일부를 점하고 있어 보도의 폭이 줄어들고 보행 시 충돌의 우려가 높아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3. 청학동(상리복지관 ~ 영도구청)

보 도	
	<p>보도의 유효폭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행이 가능하며 보행의 안정감과 쾌적함이 높다.</p>
	<p>보도의 유효폭이 기준에 미달하고 매우 협소하여 안정감과 쾌적함이 낮으며 차도와 인접해 위험하여 보행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p>
	<p>보도의 폭이 매우 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 장애인 및 목발 사용 장애인의 보행 안정감과 쾌적함이 매우 낮고 보도 폭이 협소하여 보행 시 안전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p>

보도블록



이음새가 일정하고 보도블록이 파손되지 않아 보행의 안정감이 높지만 미끄러운 재질로 인해 목발 사용 장애인은 바닥에 물이 있을 시 넘어질 위험이 있다.



블록 간의 이음새가 일정하고 파손된 곳은 없지만 보도블록 간의 좌우 수평이 균일하지 않은 곳이 있어 보행의 안정감을 감소시킨다.



맨홀 덮개가 보도블록과의 수평이 맞지 않아 침하가 발생하여 보행 장애인 및 목발 사용 장애인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장애물



유효폭이 협소한 보도에 가로수 전신주 등의 장애물로 인해 보행 시 상당한 불편을 가증시킨다.



돌출된 가로수보호대로 인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을 가로막아 보행을 원천 봉쇄하여 차도로 보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장애물이다. 목발 사용 장애인 및 보행 장애인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보행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경사진 길에 큰 화분으로 인해 보행의 안정감이 더욱 떨어지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목발 사용 장애인 및 보행 장애인이 넘어지면 부딪쳐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

□ 요약 및 제언

영도지역 보도환경 모니터링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률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현장조사는 보행보도 보도블록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1. 보행보도	고지대인 동삼동의 보도 유효폭은 협소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보도가 많아 보행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보도블록을 교체한 보도는 대체로 수평이 유지되나 보도블록이 오래된 곳은 좌우기울기가 발생하여 바닥의 수평이 균일하지 않다.
2. 보도블록	새로 교체한 보도블록은 블록 간의 이음새가 균일하고 파손된 곳이 적어 대체로 수평이 유지 되지만 미끄러운 재질이라 바닥에 물이 있을 시 목발 사용 장애인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오래된 보도블록의 경우는 블록 간의 이음새가 맞지 않고 파손되거나 침하된 곳이 많으며 맨홀 덮개 등의 높이 차로 인해 보행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3. 장애물	상가의 상품과 입간판 등이 보도를 점하고 있고 보도가 협소한 곳은 가로수 전신주 등으로 인해 더욱 좁아져 보행 시 충돌의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돌출 가로수보호대는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보도환경 조사를 살펴보면 영도지역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동약자의 경우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약자의 보행과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도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보도환경 가이드라인 구축 및 추진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서울시는 보도환경의 무장애환경조성을 위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새로운 보도 환경 조성을 힘쓰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2000-10-26조례 제 3652호)」가 제정이 되었다.

제1조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산광역시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구·군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역여건에 맞는 구·군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도구는 법률과 부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내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영도구는 기존의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보도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행약자가 목적지까지 보행하기에 어려운 보도들이 많이 있다. 보도환경의 개선을 통해 보행약자의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는 보도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영도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보도환경조성 지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대안을 통해 주민들과 보행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토론 4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 현황 및 성과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모니터링 현황 및 성과

■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토론회 일정

제 주

- 일시 및 장소 : 2014. 4. 25.(금) 14: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 사회 :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기획팀장)
- 좌장 : 진희중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축사	❖ 개회선언	14:00~14:05
	❖ [기념사]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
	❖ [축 사] (제주특별자치도)	14:10~14:15
	❖ [축 사]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14:15~14:20
발제 및 토론	[발제1]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의 배경 및 과제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4:20~14:45
	[토론1] 당사자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지역 장애인관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고은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14:45~15:45
	[토론2] 해외 선진국의 장애인 관광현황 및 정책 문성종 (한라대학 교수)	
	[토론3] 농아인 관광의 현주소 배우리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팀장)	
	[토론4] 발달장애인 제주지역 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토론5] 제주지역 장애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 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5:45~16:00
	폐 회	16:00

2014. 4. 25. _ 제 주

[발제 1]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의 배경 및 과제

-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토론 1] 당사자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지역 장애인관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 고은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토론 2] 해외 선진국의 장애인 관광현황 및 정책

- 문성중 (한라대학 교수)

[토론 3] 농아인 관광의 현주소

- 배우리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팀장)

[토론 4] 발달장애인 제주지역 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토론 5] 제주지역 장애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

- 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발제 1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의 배경 및 과제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정의 배경 및 과제

▮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 조례제정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이 2013년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국민들의 여가 욕구 수준 증가와 함께 저가 항공사 활성화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음
 - 올레 개설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은 웰빙 문화와 결합되면서 제주 관광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관심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제주지역의 관광정책의 질적 측면 강화 및 국제적 수준 의 선진관광 수용시스템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즉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한 관광향유권의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됨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관광’의 관심대두 및 정책적 변화

- ‘복지’는 지금 최대의 사회적 이슈,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복지관광(Social tourism) 대두되고 있음.
 - 여가와 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행복추구권임
 - UNWTO(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총회에서 “Accessible Tourism for All(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을 채택, 접근가능한 관광을 관광윤리 혹은 책임관광의 중요요소로 인식

- 일본 오키나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관광지” 목표로 관광배리어 프리선언 및 관광배리어프리센터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Tourism & Handicap 인증제도 도입(이동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시각장애 상징 마크 로고로 표시)하여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관광시설(숙박시설, 식음료 시설, 관광지, 여가문화공간 등) 인증, 교육 및 홍보, 각종 연구사업 병행
- 우리나라도 2013년 1월초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장애인 여행정보 웹사이트 “함께하는 여행(accessible.visitkorea.or.kr)” 및 스마트폰 앱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사업” 추진,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등

- 미래 관광트렌드에 맞춘 장애인관광에 대한 시각변화 : 복지 + 산업

- 장애인 관광이 ‘시혜’로서의 수용태세에서 ‘새로운 마켓 창출’의 정책전환
 예) 매년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2000년 전체인구대비 2% → 2008년 4.5%), 장애인 관광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자원봉사자, 의료인 동반하는 형태 및 장기 체류형
-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뉴시니어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 부상, 소극적 실버관광을 넘어 본격적인 실버복지관광 시대로의 도래라는 미래 관광트렌드 가치를 지님(한국관광연구원(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예)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연령별 분포 :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2011년 기준 98만4천명으로 전체 외래관광객 중 11.3%를 차지, 2006년 43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년계층 등의 모두를 위한 관광과 투자라는 인식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광정책 수립과 새로운 표적시장의 증가로 인한 관광비즈니스 대책마련, 노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광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등의 관광향유권 보장 미흡

- 관광접근성에 있어 관광행위의 제약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

- 관광시스템에 있어 접근성(accessibility)은 관광객과 관광목적지 혹은 관광서비스와 연결에 있어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관광자원으로의 접근, 관광서비스 전달, 관광 관련 정보의 제한 등에 관광행위가 제약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노인 등의 관광약자의 장애요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에 있어 관광활동시 처한 장벽은 신체적 장애요소, 환경적 장애요소(법·제도적 장애, 물리적 장애, 태도), 사회적 요소(의사소통, 사회적 태도, 참여와 융합)이며, 이는 장애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

- 장애인관광 모니터링 실태조사(이훈, 2010)

- 관광활동 참여 제약요인으로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정보부족, 여행경비 지원부족을 제약으로 인식
- 응답자의 80%가 장애인여행을 위한 법규마련과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기
- 정부차원의 여행관련 재정지원(준조세지원, 여행보조금 지원, 버스할인, 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여가비 지원 등), 관광지 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및 관광지 개발, 장애인 패키지 및 배낭여행 제도마련, 공기업의 장애인 후원제도, 장애유형별 시설마련 등) 개선요구
- 한국관광공사(2010년), 『전국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구에서 제시된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을 보면 제주는 16개 시도 중 전남, 대전, 경기 다음으로 전국 13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 9〉 시·도별 설치 현황(2009, 보건복지가족부)

지역	대상 건물수	대상편의 시설 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2003 설치율
서울	15,436	527,801	440,513	330,565	83.5%	62.6%	86.4%
부산	6,532	226,497	185,834	147,820	82.0%	65.3%	72.8%
대구	3,689	134,089	107,081	81,625	79.9%	60.9%	76.8%
인천	7,785	234,402	189,265	143,154	80.7%	61.1%	70.9%
광주	3,811	135,171	105,694	79,229	78.2%	58.6%	84.9%
대전	3,035	107,789	80,260	48,002	74.5%	44.5%	73.9%
울산	3,514	117,097	96,887	72,071	82.7%	61.5%	72.3%
경기	22,501	719,927	538,893	331,768	74.9%	46.1%	69.8%
강원	3,801	138,975	112,292	80,725	80.8%	58.1%	69.7%
충북	4,248	161,432	122,293	95,992	75.8%	59.5%	68.4%
충남	6,595	248,991	194,555	138,792	78.1%	55.7%	79.8%
전북	5,129	191,880	146,831	106,776	76.5%	55.6%	73.3%
전남	4,307	183,267	130,997	94,249	71.5%	51.4%	70.0%
경북	8,670	314,522	218,487	161,291	69.5%	51.3%	73.5%
경남	6,368	236,895	183,837	136,915	77.6%	57.8%	74.1%
제주	2,309	82,057	61,650	49,276	75.1%	60.1%	67.9%
총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 장애인 등 관광약자 대상 관광인프라 관련 신문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언론을 통해서 본 제주의 장애인관광 실태

(제주일보 2011년 11월 23일)

식당서 쫓겨난 장애인의 눈

(眼)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들 안내견 있다는 이유로 출입 못해 마음의 상처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눈과 귀와 발이 되어주는 제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인데 식당 출입을 거부당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경 제주를 찾았던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이응술** 씨(49)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제주일보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씨는 이씨와 동반인 **박중화** 씨와 박씨의 안내견 풀리 등과 함께 제주시내 대형 음식점을 찾았지만 안내견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이 식당 관계자는 “다른 손님들이 비위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견이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거부했을 시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관광도시로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열린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다”며 “짖지도 않고 우리 옆에 앉아서 있는 안내견이라는 설명을 하며 양해까지 구했지만 결국 풀이오는 것은 차별이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이씨의 울분을 듣기 위해 기자가 직접 식당을 찾았다.

이씨와 동료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식당 밖 주차장에 서 있었다.

이씨는 기자와 만나자마자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견과 동행해

야 하니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자 식당 관계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며 “5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쳐 식당 밖으로 나왔다”고 그동안의 실랑이 과정을 설명했다.

또 “5분 여 뒤 식당 관계자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가 나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당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본 후 이씨의 동료들에게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박씨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 세상으로 나왔지만 풀이오는 것은 차별된 시선 뿐”이라며 “발을 쥘다는 입장보다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경봉 기자
angelko@jejunews.com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박중화**씨(사진 오른쪽)는 최근 제주시내 대형 음식점을 찾았으나 안내견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불만을 토로했다. 고기철 기자 haru@jejunews.com

(제주일보 2011년 10월 11일)

제주, 장애인 관광 편의시설은 만족스러운가



나의 의견
김용하

반딧불이
동행봉사단

제주도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2010년 관광객 75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 77만7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820만명과 외국인 100만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11월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된다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의 선호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지 관람시설은 선진화 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강원도 흥천군 장애인 제주 문화체험 등 6회에 걸쳐 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끼고 눈으로 직접 본 결과이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통

행로에는 돌을 깔아 오히려 통행 하는데 더욱 불편을 주고 있고 경사로 옆 화장실 출입구는 균형을 맞추어 시설해야 하는데 그대로 설치해 생색에 그쳤다.

사실 관광지는 더욱 가파르다. 관람장 내부에 계단으로 시설을 해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함에도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는 현장을 보며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참피스러웠다.

이 밖에도 장애인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식음료 시설, 주차장에서 승선장까지 거리가 너무 먼 유람선 선착장 등 장애인 관광 편의 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은 너무 많았다. 다행히 최근에 개장한 코끼리 쇼를 관람하는 곳은 휠체어 관람석이 깨끗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장애인들의 보고 싶어하는 영주십경 중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산방굴사 등은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조그마한 시설만 갖추면 만족한 관광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관람시설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전문인들의 의견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조언을 받아 설치해 선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나눔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국제 관광도시 제주의 휠체어 상태 ‘엉망’ “대수 늘리고, 비치된 휠체어 관리 신경 써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12 13:45:09



▲ 산굼부리의 휠체어. ©유영희

9월 30일~10월 2일.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등불장애인야학교는 봉사자 포함 33명과 함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관광을 할수 있는 장애학생이 여섯명이었다. 이중 전혀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두분이고, 네분은 스틱과 보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라 출발시 세대의 휠체어를 가지고 갔다.

제주도가 적어도 국제관광도시인 만큼 편의시설은 다 못 갖추었더라도, 편의도구 정도는 비치되어 있을 줄 알았다. 없는건 아니었다. 그런데 관리가 부족하고 비치 대수가 형편없이 부족해 스틱을 짚는 분들을 교대로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라수목원 휠체어는 타이어 바람이 완전히 빠져버려 휠이 바닥에 닿아 슛제 쇠가 굴러간다.

절물 휴양림은 휠체어가 달랑 한대 비치되어 있다. 산굼부리에 비치된 휠체어 두대는 얼마나 관리를 안했는지 녹이 저렇게 다닥다닥 슬어 브레이크가 잘 당겨지질 않았다.

제주도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분들도 꽤 많이 찾고 있다. 연세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적지 않을 터이다.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 관광객들과 장애인의 제주 여행을 위해 제주시에 서는 각 관광지마다 휠체어 대수를 늘리고, 비치된 휠체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산발적인 정책추진으로 체계적·종합적 관리의 부재**

- 그동안 장애인관광 관련 산발적 정책추진이 있어왔으나 연속성 및 정책추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음.

- 2006년 ‘장애인사랑 제주투어’ 관광상품 개발(제주자치도 주최,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및 제주도관광협회 주관, 복지관광차원에서 여행요금 50%할인)
- 제주도 : 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 운영(2011년 26회 1,750명)
- 서귀포복지관 : 장애인 제주관광복지사업단 ‘해피누리’발족, 장애인관광객 연간 20만 명 유치 계획
-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사업 중 ‘장애인 탐방로’ 추가 증설
- 제주올레 10코스 ‘휠체어 구간’ 조성, 2012년초 ‘제주올레길 장애인도 함께 걸어요’ 행사 개최

- 관광진흥법 및 조례 등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도 관광관련 부서의 정책추진 관심 미흡

- 관광관련 법규인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4호(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48조의 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와 제주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3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등에 의해 국민의 관광복지증진 및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관광분야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의 관광관련 부서의 주도적인 정책이나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에서는 소외되어 왔음. (*2013년 관광진흥기금 -장애인 리프트 차량 배치사업 2억 편성)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3. 생략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2011.4.5 본조신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② 생략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1. ~7. 생략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천만 관광객 시대의 글로벌 수용태세 개선은 관광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조례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 및 정책추진 필요

-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조성, 외국인 2백만·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글로벌 수용태세 개선 요구됨. 특히, 올해 도에서는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 TF팀’ 구성 운영중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각종 제주관광에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사업 추진을 포함시켜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임.

2. 조례제정의 관점

○ 사회적 측면: 모두를 위한 관광(All for Tourism)

- 관광이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함. 장애인 및 노인 등 특정집단에 대한 배려차원의 접근으로 인식하여 복지분야의 시혜의 대상적 접근 혹은 중복성 아니냐는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됨. 다양한 장애로 인해 관광활동에 제약 받는 사회집단이 많음.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특정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들 관광약자들의 가족 등의 동반자 또한 동일한 관광제약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관광자원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접근가능성의 보장과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

층형 관광정보의 획득을 위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며, 결국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조성 이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함.

○ 경제적 측면: 관광산업의 성장을 견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 등의 조치를 특정계층을 위한 부가적인 투자나 비용으로만 인식해 왔으나 이미 일본, 싱가포르, 홍콩, 유럽 등의 서구사회에서는 관광비즈니스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미래사회의 고령화사회의 예측,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및 외래관광객 중의 노인인구의 증가 등은 미래 관광트렌드임.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관광시장개척의 일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함.
- 또한 관광사업자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장자체의 잠재성과 생산적 가치 및 효과에 대한 조사와 홍보 및 설득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제주관광의 중장기적 가치 실현 : 품격있는 선진관광지 이미지 제고

- 관광은 고객의 니즈를 잘 배려해야 하는 서비스산업임. 양질의 하드웨어적 제공 뿐만 아니라 종사원의 서비스나 배려 등에 있어서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관광시장에서 배려가 필요한 고객층의 증가에 따른 글로벌 수용태세 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동북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 또한 1천만 관광객의 선진관광도시에 있어서의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광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결국 장애인 및 노인계층 등 특정계층뿐만이 아닌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및 여건개선차원의 접근이 되는 것임.
-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관광배리어프리 도시를 관광이미지 홍보에 사용하는 것처럼 품격있는 글로벌 관광지로서 제주가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통한 제주관광이미지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3. 조례제정 이후 성과

가. 2013년도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약자 복지관광매뉴얼 제작사업 추진

- 조례에 의거하여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12월 까지 복지관광매뉴얼 제작 및 배포사업을 추진하였음
- 장애인 접근성이 용이한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이동 등이 안내 및 장애유형별 제주관광코스 개발 등을 실시하였음
- 장애인당사자를 모니터링요원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총 280개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관광지, 숙박, 음식점, 병원 등 260개소에 데이터 수집정리 및 DB구축
- 이동약자 복지관광 매뉴얼을 총 1,000부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및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배포하였으며 최근까지 파일(PDF)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자립생활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장애in제주” 제작사업 추진

- 조례에 의거하여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공공기관등 장애인이 관광 및 지역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하여 앱 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주지역의 관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음
- 그리고 각 관광지 및 사업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사용성 평가를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나. 2014년도

-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예산에 관련 사업 2건이 반영되었음

1)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사업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례 제정에 따라 복지관광 센터 운영으로 관광이미지 제고
- 사업비: 100,000천원
- 추진계획: 센터 운영 계획 수립(2014년 1월)
 센터 민간위탁 공모 절차 이행(2014년 2~3월)
 센터 운영(2014년 4월~12월)

2) 장애인용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 사업필요성: 제주방문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아 제주관광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26만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 및 소리도서를 제작하여 제주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제주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
- 사업비: 20,000천원
- 추진계획: 시각장애인용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2014년 1월)
 점자 및 소리도서 제작 및 배포(2014년 2월~6월)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및 각 지회, 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 등 배포)

4. 조례 주요내용

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위한 시책수립(제3조)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 대상시설 확충, 전문인력양성등 관광환경조성과 복지관광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실시(제5조)

-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대상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하도록 인증제를 실시하는 내용

다.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제11조)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과 관련하여 지문과 심의를 위한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라. 행·재정적 지원(제12조)

-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대 상시설 및 설비확충, 관광교통수단 등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마. 복지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13조)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2013-05-15 조례 제 10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없이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의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말한다.

제3조(시책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관광약자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8.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및 수단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의 관광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규정하는 공영관광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②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4조의 대상시설에 대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10호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시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및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전문인력 및 종사원 등의 교육 및 양성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
4. 관광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의 관광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3.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4.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6. 접근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8.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1

당사자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지역 장애인관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고은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당사자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지역 장애인관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 고은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1. 들어가며

- 삶의 질. 이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복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로써 국가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음. 삶의 질은 지극히 주관적인 척도로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으며, 각자의 처한 환경과 욕구 해소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특히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해소는 삶의 질을 가장 크게 결정짓는 요인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되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고 있으며, 이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의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태임. 이렇듯 장애인의 욕구가 변화되어 지는 시점에서 장애인의 관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함.
- 제주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임.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제주지역의 입도 관광객이 2013년도에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음.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주 관광에의 욕구는 매우 높으나 관광환경 및 인프라 구성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관광을 즐길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제주지역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관광약자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관광환경의 문제점

가. 열악한 물리적 환경 및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개정되면서 편의시설 설치가 법제화 됨. 이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관련법들이 제·개정된 이후에 설치된 주요 관광자원에서는 어느 정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각종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실제 당사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는 관광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숙박·음식업체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더욱 심각한 실태임. 2013년 제주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센터에서 제주지역 333개소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결과 77.7%의 설치율로 전국 평균인 79.2%보다 낮게 나왔음. 이는 전체 숙박업소 4곳 중 1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또한 전체 333개소 중 30개소만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마저도 일반 객실에 비하여 20~30%이상 비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었음.
- 음식점소 역시 2011년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귀포지역 모범음식점 7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및 입식 테이블 설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불과 21%에 해당하는 15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음.
-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원하는 곳’이 아닌 ‘갈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광 욕구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차별적 환경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하며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나. 이동수단의 문제

- 현재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장애인 관광객의 관광형태는 개별관광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개별관광객의 가장 큰 이동수단은 렌터카이며, 현재 제주도내에 렌터카 보유대수는 16,000여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정작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핸드콘트롤

이 설치되어 있는 렌터카는 단 2대뿐이며,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승합차는 단 1대에 그치고 있음.

- 제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제주시 주요 관광지를 도는 제주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제주시티투어는 2가지 코스로 각 4회씩 총 8회 운행하고 있으며, 개별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용의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일반 관광버스의 형태의 버스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함.
-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40대의 67%에 불과한 27대만이 운행되고 있음, 이는 관광객을커녕 제주도민의 수요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는 2006년 10대 도입된 이후 추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고장 등으로 인하여 8대만이 운행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관광을 위해서 배편을 통해 특장차를 직접 가지고 오거나, 일반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안겨서 이용해야하는 등 관광행위에서 자존감이 격하되어지고 있음.

다. 정보접근의 문제

- 제주도청에서는 관광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관광지, 숙박, 음식점, 이동수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시설 및 업소의 장애인이 이용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음. 경사로 설치, 장애인화장실 등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당사자가 별도로 알아봐야하는 이중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본 인권포럼에서 전년도 실시한 제주지역 관광지 및 숙박시설에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관광지 사이트 87개 중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사이트는 4개에 불과하며, 숙박업소 사이트는 47개 사이트 중 단 1개 사이트만이 접근가능 하였음.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실태라고 할 수 있음.
- 웹 상에서만 아니라 관광안내 책자에서도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이 관광 코스를 정하거나 목적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현지에 와서 여기저기 다녀보는 수밖에 없으며, 실제 관광을 즐기는 시간보다 접근 여부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경우를 낳고 있음.

라. 관광지에서의 편의제공 문제

- 관광지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휠체어 및 이동수단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치되어 있더라도 관리소홀로 인한 타이어 바람빠짐, 펑크 등의 문제로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관광지에서의 종사자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 또한 시각장애인의 관광안내를 위한 큰 글씨 안내지도, 점자 등으로 작성된 안내지도 및 음성안내기 등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기 비치 등 관광지 안내 정보 제공 및 편의제공이 매우 취약함.

3.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가. 관광환경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대상 관광지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실태조사와 함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인증제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체들이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이동환경 개선

- 현재 장애인관광의 가장 큰 형태인 개별관광에서의 이동수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렌터카에서의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함. 현재 제주도내에 렌터카 업체는 6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차량 300대 이상 보유한 업체는 약 10개 업체가 있음. 따라서 30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핸드컨트롤이 달린 차량 2대와 리프트가

- 설치된 승합차 1대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제주시티투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장애인 등의 관광약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정류소 및 이동환경 개선을 통하여 제주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장애인 단체관광객을 위하여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전세버스 마련이 필요함. 보유 버스가 40대 이상인 업체는 전체 57개 업체 중 20개 업체임. 이들 업체에 대해서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전세버스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구입비용이 높고 이용빈도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전세버스 업체에 일임을 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에서 관리·운영하게 할지에 대한 방안은 논의가 되어질 필요가 있음.

다. 정보접근에의 개선방안

-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애인의 여행과 관련된 웹 사이트 ‘함께하는 여행’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여기서는 관광지 및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의 양이 적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실제 이용 코멘트를 통해 정보의 질을 높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웹 접근성은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이며, 장애차별적인 요소임. 도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업체에 홈페이지 개선을 권고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함.

라. 복지관광센터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지난해 5월 제정되었음. 이를 통해 관광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법제화 되었

고, 제13조에는 복지관광센터의 운영과 기능을 명시함.

- 복지관광센터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관광약자의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 시킬 수 있음.
- 복지관광센터의 운영은 관광약자에 대한 전담인력이 양성할 수 있고, 이는 장애 유형별 관광코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장애특성을 고려한 관광코스 개발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됨.
- 지난해 5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 복지관광센터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제주지역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약자가 관광주체로서 제주지역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복지관광센터의 운영이 시급함.

4. 마치며

- 장애인 관광은 장애인 복지의 시혜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즉,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생산적 관광의 실천이자, 관광가치 창출의 기반임.
- 매년 장애등록인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관광은 나홀로 관광형태보다는 가족단위, 활동보조인 등을 동반하는 장기체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른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임.

■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 토론 2

해외 선진국의 장애인 관광현황 및 정책

문성종
(한라대학 교수)



INDEX

-  제주관광의 패러다임
-  WHO 사례
-  UNWTO 접근가능한 관광
-  Tourism for all UK



제주관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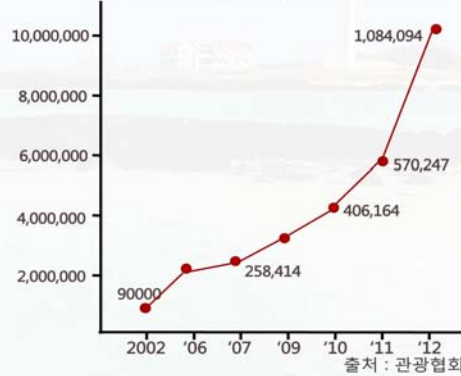
안전관광현황

2008-12년 제주관광객수 현황



출처 : 관광협회

2002-12년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



출처 : 관광협회


2013년 제주관광객 1083여만명 초과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함(2002년 9만명 ▶ 2013년 180만명)

5

WHO 사례



WHO 사례

 사례

- WHO(2011) - 전세계 약 10억명 신체장애(전체인구의 약 15%)
- WHO(2009) - 60세 이상 노인인구 전세계인구 10% 차지
2050년까지 20% 증가 예상

↓

선진관광 :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제약없는
방문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호주, 영국, 유럽연합 연구 :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관광이 관광시장
에 대두되고 있음

↓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관광형태는 일반관광객보다 더 소비하고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편견을 없애고 모든이들이 장
애없이 관광을 즐길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7



3

UNWTO 접근가능한 관광



UNWTO 접근가능한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

- UNWTO(2005) - 접근가능한 관광 2013년도에 새롭게 업데이트



모든이들 접근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지침을 마련함

-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 지침



- (1)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 (2) 상세한 장애인 지원서비스 내역의 공개
- (3) 공평하고 쉬운 예약시스템의 운영 등을 정보제공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9

UNWTO 접근가능한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

- 일반적 권고 사항 - 주차시설, 사인(check-in등), 엘리베이터,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가격(평등), 터미널, 숙박시설, 연회시설(레스토랑등), 박물관 및 관광객 관심을 끄는 빌딩, 여행일정의 버스, 기차, 컨퍼런스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권고 사항 지침 마련
-각 시설마다 참고 가능한 장애없는 시설 매뉴얼 마련

※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단순히 접근가능한 관광자원·시설에 관한 정보를 나열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검색과 직접 예약이 가능하고 사진 및 지도(map)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관광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barrier free 인증제도도 마련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서 인증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신청인 인증 수수료 부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해밀턴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장애물 없는 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시설 지침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불편과 편견없이 관광을 즐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10



Tourism for all


Tourism

- **Tourism for all UK**

-영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사회적 약자가 관광을 하기 쉽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광제도개선등도 제안하고 있음.
 -세계 유수의 관광박람회인 Barrier-free Tourism Day at ITB Berlin 2014에서도 접근가능한 관광인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해 논의 하였음.
- **에어프랑스**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SAPHIR** 를 운영하고 있음. 24시간 이전에만 예약 하면 짐 수속과 비행기 자리 배정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줌.

12

Tourism for all

Tourism

- 마티니크(Martinique)캐리비언 프랑스령**
 - 마티니크는 장애인 관광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관광지 중 한 곳임. 인증 제도는 주요 관광지과 유적지에서 장애인의 이동과 관광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제도임.
 - 더불어 숙박과 레스토랑도 인증 제도를 사용하며,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가 필요함..

The Barrier-free destinations in Germany Association

13

Tourism for all

숙박

- Hôtel Carayou *** (장애인 관광 인증 제도)**
 - Pointe du Bout, 97229 Les Trois-Ilets, Martinique
 - Tél : 00 596 66 04 04
 - 요금: 130€ / 박 부터
- Club MEDITERRANEE (장애인 관광 인증 제도)**
 - Les Boucaniers, Sainte Anne, Martinique
 - Tél : 00 596 76 72 72
 - 요금: 문의

스페인의 아로나관광지는 장애인을 위해 관광에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있음.

14

궁극적으로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을 위한 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장애인이 관광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인적, 시설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특히 시설 마련과 함께 장애물없는 관광가이드북을 제공해야 할 것임.



THANK YOU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3

농아인 관광의 현주소

배우리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팀장)

농아인 관광의 현주소

▮ 배우리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팀장)

I. 문제제기

2013년 제주는 일천만 관광객을 돌파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올레길 걷기와 한라산 탐방,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크루즈선이 증가하고 저가항공의 활성화와 국제선 직항노선 확대도 한몫했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도 18.4%나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제주가 천만관광객을 돌파하면서 양적으로는 충분히 향상되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했다. 이제는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대상자에 구애받지 않는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애인관광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누구든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보고 즐기는 것이 관광이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관광의 문턱이 높기만 하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70.4%가 재방문객이며, 제주여행형태는 개별관광이 91%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농아인관광객의 경우, 제주 재방문률은 10%로 매우 낮다.

왜 청각장애인의 재방문률이 낮은지, 장애인 관광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각장애인 관광분야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 및 관광서비스 질 향상 등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제주지역 장애인 관광의 현실을 개선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여행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II. 청각장애 및 수화통역의 정의

1. 청각장애인

가. 사전적 정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나. 청각장애 등급기준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

장애등급	장애 정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수화통역

가. 수화통역사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인습기호, 몸짓, 표지, 수화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공인평가체제를 통하여 수화통역인에 대한 전문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수화통역사 자격증 사용범위

교육(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 통역),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통역), 미디어(뉴스, 예술 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수화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나. 청각장애인통역사

문맹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인정시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으로서 통역을 행하는 자의 관련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심사를 행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통역인에 대한 자격 인정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사용범위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 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민원(관공서 이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III. 농아인 관광편의제공 현황

전국현황					
○. <표-1> 전국 시·도별 농아인 관광편의제공 현황					
	수화P.I.P ¹⁾ 제공	수화 해설사 배치	관광업계종사자 수화교육		
전국 16개 시·도	서울(3곳) 제주(1곳)	서울	서울, 인천, 울산, 강원, 부산, 전북		
비고	- 서울시립미술관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 제주전쟁역사박물관	- 농아인 해설사 5명	- 특강방식 (상시개설 ×) - 전북 :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 중 수화교육은 필수과목		
⇒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제주를 제외한 곳에는 농아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이 전무한 실정 그나마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이 있으나 관광지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표-2> 전국 5곳 콜센터 농아인 상담편의제공 현황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제주
수화상담 (이용시간)	○ (9:00-22:00)	○ (9:00-18:00)	○ (9:00-18:00)	○ (8:30-18:30)	×
문자상담 (이용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9:00-익일6:00)	×
비고	다산콜센터 02-120	미추홀콜센터 032-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바로콜센터 051-120	제주120콜센터 064-120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5지역에서 120콜센터를 운영 중					
⇒ 제주를 제외 하고 4개 지역에서 농아인을 위한 수화상담과 문자상담을 진행 중					
※ 자료출처 : 전국 17개 시·도 농아인협회, 각 지역 콜센터					
※ 조사방법 : 전화조사					

1) P.I.P (Picture In Picture)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화면과 별도로 작은 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화면을 말한다.

제주현황

- . 관광전담수화통역사 채용 : 2012.3월, 1명 채용(계약직)
- . 관광전문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2012.3~ 현재

- . 제주지역 농아인관광 현황(2012, 2013)

- <표-3> 입도현황

	2012년	2013년
농아인관광객(명)	458	428

- <표-4> 관광전담수화통역 이용률(출장통역기준)

	2012년	2013년
관광전담수화통역 이용률(%)	377(82%)	425(99%)

- <표-5> 관광문의 세부영역

	관광지	숙박	렌터카	음식점	기타
2012년(%)	40%	26%	25%	6%	3%
2013년(%)	21%	31%	21%	5%	22%

- <표-6> 제주지역 관광지 농아인편의 제공 현황

	수화P.I.P 제공	수화 해설사 배치	관광업계종사자 수화교육
도내 관광지 (145곳)	1곳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없음	없음

※ 조사방법 : 우리센터 자체자료 및 관광지전화조사

IV. 농아인관광의 문제점

1. 관광의 시작에서부터 오는 불편함(항공권 및 렌터카 예약)

- 대개 항공권 예약은 전화예약 또는 인터넷예약을 주로 한다. 인터넷예약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편리하지만 고령자에게 인터넷예약은 관광을 시작하는데, 큰 고비가 된다. 특히, 고령의 농아인에게 인터넷예약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이 대부분이며, 컴퓨터를 보유하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은 전화예약이다.

농아인들은 어떻게 전화예약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수화통역사를 통해서 전화예약을 시도한다. 어떤 항공사들은 통역사가 전화로 농아인 당사자의 비행기 예약을 하고 결제는 출발 당일 공항결제 가능하다. 그러나 몇몇 항공사는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하도록 하는데, 예약을 하고 수화통역사를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여도 본인과 직접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직접 찾아가서 항공권 예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62%정도가 도내 이용 교통수단으로 '렌터카'를 꼽았다. 농아인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농아인관광객은 렌터카 이용을 원할 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을 거부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나마 청각장애인들도 차량을 빌려주는 렌터카 회사를 찾아도, 이미 예약이 꽉 차있거나 하여 어려움이 많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2. 도내에 농아인 관광객을 위한 수화해설 제공 전무

- 매년 400명 이상의 농아인 관광객들이 제주에 방문하고 있으나, 농아인 관광객의 제주 재방문 의사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농아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수화해설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들의 관광은 그저 눈으로 보는데만 그쳐, 실질적으로 제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광 의사가 없는 것이다.

현재, 수화통역센터에 관광전담 통역사 1명(계약직)이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통역사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등 관광중심지로써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나, 농아인관광객에게는 그저 자연이 아름다운 정도의 섬으로 기억될 뿐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농아인 당사자가 직접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3. 시설·환경적 측면에서의 보완

- 청각장애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므로 관광에 있어서는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하겠지만, 관광지 입장권 구매에서부터 청각장애인은 쉽사리 관광지 입구를 지나가지 못한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기초수준의 수화를 구사하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관광관련 홈페이지 및 관광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영상 등은 음성해설(외국어해설 포함) 또는 가끔 자막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청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청각장애인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청인과 달라 한글을 완벽하게 해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4.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 청인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장애만을 실제 장애라고 인식하고,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의 경우,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청인들에게는 장애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한 배제에서부터 오는 문제점이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나타나 관광 환경 개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우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가늠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V. 농아인 관광의 대안

위에서 우리는 농아인 관광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우 농아인 관광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첫째, 최근 정부 콜센터 등 공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는 수화상담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관한 문의 등은 본인확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면서 카드회사로 직접 방문해야했다. 그러나 수화상담서비스를 마련하여 농아인이 직접 화상으로 얼굴과 신분을 확인하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각 항공사에 수화상담서비스를 마련하여 농아인이 직접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불공정하게 예약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민원을 제기하여도 담당기관에서는 권고조치를 할 뿐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똑같은 불이익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관광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스토리텔링 관광을 시작하는 현 단계에서 농아인 스토리텔러 양성도 병행해야 한다. 수화를 아무리 잘하는 통역사라도 농아인 당사자만큼 스토리를 생동감있게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

농아인들은 장애의 특성상 눈으로 보고 그것을 수지기호와 비수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수지기호라는 것은 손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비수지 기호, 즉, 얼굴과 신체의 움직임으로 그 언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좀 더 생생하고 활동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농아인 스토리텔러 양성을 통해 제주 장애인관광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셋째, 수화는 언어다. 언어의 요건이 고유의 어휘와 문법적 체계에 있다고 할 때 수화라는 시각언어는 음성언어와 다른 방식(수화)으로 어휘와 문법을 표현한다는 것이 다를 뿐 동등

한 언어다.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여 영어나 중국어처럼 별도로 동영상 등에 수화해설P.I.P를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업계종사자들에 대한 기초수화교육을 실시하여 간단한 수화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간단한 안내를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집중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각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각 당사자들이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장애 인식교육을 함께 하도록 규정한다. 장애인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장애유형별 체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인식 교육을 함으로써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6주년을 맞이한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제주 관광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오는 불편함과 관광 수화해설 및 수화정보 제공 전무, 관광업계 종사자 수화교육 및 장애 인식 교육 미비에서부터 비롯된 농아인 관광의 현 주소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관광전문통역 인력 확충

현재 제주에 1명뿐인 관광전담통역사 채용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관광업계종사자 수화교육을 의무화하여 농아인 개별관광객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관광 수화정보시스템 구축

관광 관련 홈페이지 영상 및 관광지별 영상에 수화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은 수익과 떼려야 뗄 수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관광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보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관광 활성화에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농아인협회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내부자료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방문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4

발달장애인 제주지역 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발달장애인 제주지역 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I. 발달장애인의 현실 -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1. 발달장애인은 소수의 장애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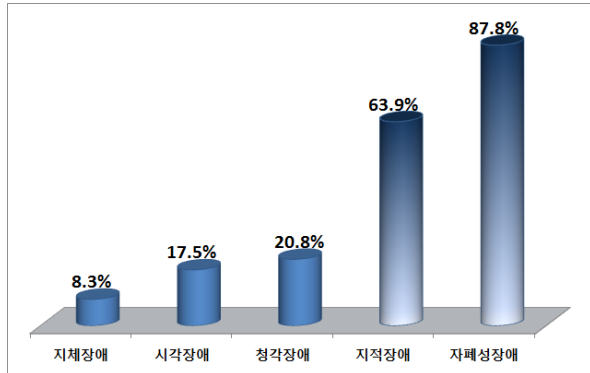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아인 등 발달장애인은 약 19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등록장애인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 18세까지의 아동기의 경우 전체 9만 5천여명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1년 12월 말 기준) 제주도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약 3천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도내 등록장애인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12월 말 기준)
- 소수의 발달장애인은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장애 내의 주요 이슈에서도 배제되는 이중 소외에 처해 있습니다.(예 :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지원 이슈)

2.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입니다.

-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중증의 비율이 높습니다(보건복지부, 2011 등록장애인 현황).
 -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2급)의 비율은 각각 8.3%, 17.5%, 20.8%
 - 반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중 중증장애인(1-2급)의 비율은 각각 63.9%, 87.8%
-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지만,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3. 발달장애인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적응행동(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용적 기술)의 한계, 사회적 상호작용(타인과의 눈빛, 언어, 행동) 결함,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특별한 행동(자해행동, 상동행동, 공격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은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언어, 학습, 이동(mobility), 자기결정, 자립생활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장애유형별 중증장애(1~2급) 비율

II. 발달장애인 관광환경 개선의 필요성

1. 신체적 장애인과 다른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관광환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체계가 신체적 장애인을 위주로 설계·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특히 발달장애인은 문화, 여가, 관광 영역에서 신체적 장애인과 다른 욕구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선진국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독특한 욕구를 인정하여 인지수준, 적응행동 및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 문화, 관광 프로그램 있습니다.
 - 미국 일리노이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Special Recreation Center 운영사례
 - 사정프로그램

- 서비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여가, 문화, 관광에 대한 욕구 측정 및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자 정보 수집 및 연결 서비스
- 관련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여가, 문화, 관광에 대한 컨설팅
-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양성
- 장애인을 위한 여가, 문화, 관광을 위한 연구개발

2. 발달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관광환경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2013년 제주장애인부모회에 접수된 발달장애인 제주도 관광 차별사례를 살펴보면 여행자보험가입거부 6건, 숙박시설 이용거부 4건, 음식점 이용거부 3건, 체험기구 탑승거부 4건, 체험프로그램 참가거부 2건, 택시탑승거부 1건등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발달장애인자조모임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나 관리자의 동행 없는 당사자 여행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광 안내문, 안내 표지판의 제작과 체험기구 및 프로그램 참가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안내자와 안내문 비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 현재 제주도 장애인관광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그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성과 욕구들이 고려되지 않으며, 각 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로 인해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개인중심 서비스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관광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광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장애인관광정보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Ⅲ. 장애인관광정보지원센터가 담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

1. 사정 프로그램

- 서비스 의뢰인(장애인 또는 보호자)과의 상담을 통한 관광에 대한 욕구 측정 및 정보 제공

2. 서비스 제공자 정보 수집 및 연결 서비스

- 발달장애인 친화적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정보수집 및 이용자와의 연결

3.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연구·개발

-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이 가입가능한 여행자 보험상품의 개발 및 이용자와의 연계
-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관광상품의 직접개발
 (예 : 캠핑 & 하이킹, 등산, 동물사랑활동, 감귤수확체험등)

4. 발달장애인 관광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양성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광안내사 및 해설사 양성
- 기존 관광안내사에 대한 장애인해교육 실시

5. 민간 여행사 및 숙박시설등에 대한 장애인관광 컨설팅

- 장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유도 및 컨설팅

6. 발달장애인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

-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 표지판, 이정표의 개발
-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관광 안내문의 제작
- 모든 장애유형에 친화적인 U/D 환경 조성

7.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 발달장애인 관광에 있어 차별사례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 발달장애인 차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의 사법절차 상의 법률 조력

8.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확보

- 발달장애인의 인지수준, 적응행동 및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 문화,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관광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Ⅱ

▶▶ 토론 5

제주지역 장애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

오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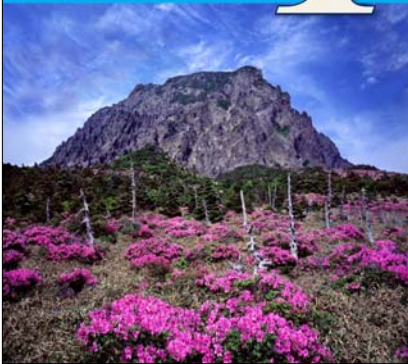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Chapter

I

제주관광의 현주소



1. 제주방문 관광객 주요동향
2. 관광객 1천만 시대의 의미와 주요성과
3. 1천만 관광객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방문 관광객 1천만, 외국인관광객 2백만시대 개막!



◆ 제주관광 반세기 만에 관광객 1천만 관광객 시대 개막

- '13년 관광객 수 : 10,851천명('12년 대비 12.0% 증가)
 - '13년 관광수입 : 6조 5천억원('12년 대비 18.4% 증가)
 - '13년 외국인 관광객 수 : 2,334천명('12년 대비 38.8% 증가)
 - 중국인 관광객 대폭 증가(1,812천명, '12년 대비 67.2% 증가)
 - ※ 2014 내도연방(3.17) : 2,008천명(내국인 1,704 / 외국인 304)
- 제주방문 최단기 2백만명 돌파(전년보다 13일 앞당겨)**



제주방문 관광객 1천만 시대의 의미와 주요성과

◆ 제주관광 반세기 만에 관광객 1천만 관광객 시대 개막

- 제주가 변방에서→대한민국 중심→세계로 도약계기(국제자유도시)
- 1·2·3차 산업 규모의 동반성장→제주경제 변화와 성장주도
- 관광이 제주미래 견인할 지주산업→도민과 다음세대에 희망제시

◆ 제주관광 국제위상 제고 및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확인

- 미국 CNN : 제주, 아시아 최고의 주말 휴양지 (푸켓의 라이벌)
- 중국 환구시보 : 제주, 해외 3대 섬관광지 (하와이, 몰디브포함)
- 해외 주요섬관광지 중 1천만명 처음 등극(하와이 8,235천명, 오키나와 6,413천명)
- 국제회의도시 아시아 6위, 세계 22위 (국제협회연합, 2012)
- 아시아 크루즈기항지 1위(아시아크루즈협회, 2013)

◆ 관광객 증가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원확보 → 도민사회 재투자

- 2012년 실질GRDP 성장률 전국 1위 : 5.3%(전국평균 1.9%)
- 고용률 전국 1위 : 70.8%(전국평균 64.2%)
- 지방세, 국세 성장률 전국 1위 : 17.6%, 33.1%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행복도 1위(중앙일보, '14.1)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 수상 등 75분야 10,266백만원 재정인센티브

제주방문 관광객 1천만 시대의 의미와 주요성과

중앙정부 시각과 평가

- ① 대통령(지역발전위원회회의, '13.7) 언급: 정부-지자체 상생사례
 - 제주: 관광산업육성→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정부 : 무사증제도 도입, 규제 완화, 인프라확충 등 맞춤형 지원
- ② 「해외관광홍보체계 구축」 성과평가 최고등급(국무총리실, 2010-2012)
- ③ 「해외관광객 유치」 지자체 합동평가 최고등급(안전행정부, 2010-2012)
- ④ 「국민여행실태조사」 만족도 1위(문화체육관광부, 2011-2012)

중앙언론의 시각과 평가

- ① 제주, 관광객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지역' (동아일보, '13.11)
- ② 「新 대한민국 24시-제주 新풍속도」 (서울신문, '13.7)
 - 제주올레 열풍→올레길 주변 동네구멍가게 등 제주마을 활성화
- ③ 「제주 부동산 3大 호재에 나홀로 활황」 (매일경제신문, '13.7)
 - 中 관광객, 영어교육도시, 귀촌수요→ 지역경기 호황 견인
- ④ 제주가 3무의 섬에서 4무의 섬(3무+불황) 변모(중앙일보, '12.11)



지역경제 체감지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RDP	10조4,687억원	11조2,584억원	11조9,778억원	-	
1인당 GRDP	19,147천원	20,383천원	21,440천원	-	
관광객수	총 관광객	7,578천명	8,740천명	9,691천명	10,851천명
	내 국 인	6,801천명	7,695천명	8,010천명	8,517천명
	외 국 인	777천명	1,045천명	1,681천명	2,334천명
	중 국 인	406천명	570천명	1,084천명	1,812천명
	크 루 즈	49회/54천명	69회/64천명	80회/140천명	184회/38만명
총 관광수입	33,867억원	45,052억원	55,293억원	65,463억원	
국제직항노선	18개	26개	38개	57개	
국제회의 인원(세계순위)	51천명(27위)	78천명(26위)	86천명(22위)	104천명(22위)	
기업체 인센티브관광객수	20,573명	29,639명	11,504명	50,890명	
관광숙박업 객실수(가동률)	11,782실(74%)	12,130실(74%)	13,956실(76%)	16,265실(78.2%)	
관광사업체수	1,020	1,125	1,272	1,375	
전세버스가동률	46%	47%	54%	61%	
렌터카 가동률	45%	49%	53%	61%	
면세점(4사) 매출액	4,690억원	5,675억원	6,772억원	7,625억원	
카지노 매출액	1,017억원	1,017억원	1,438억원	2,258억원	
재래시장(3개) 매출액	2,103억원	2,234억원	2,529억원	2,580억원	



지역경제 체감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환전실적	2.03억 \$	2.95억 \$	4.04억 \$	5.98억 \$	
화폐수급	도내 공급화폐	2,030억원	2,214억원	2,560억원	2,497억원
	도내 환수화폐	6,574억원	7,280억원	7,664억원	8,140억원
	환수초과액	4,544억원	5,066억원	5,104억원	5,643억원
은련카드	매출액(가맹점)	402억원(274개소)	1,129억원(907개소)	2,270억원(2,487개소)	6,499억원(2,806개소)
세수실적	국세	4,394억원	4,657억원	6,200억원	-
	지방세	5,215억원	5,814억원	6,841억원	7,663억원(잠정)
관광진흥기금 수입총계		105억원	119억원	134억원	196억원
수입	출국세	35억원	34억원	53억원	76억원
	카지노	56억원	64억원	64억원	103억원
용자	융자금액(업체수)	1,200억원(112개)	1,242억원(128개)	1,759억원(182개)	1,960억원(231개)
	이자보전액	34억원	42억원	54억원	68억원
보조	관광보조사업	7억원	13억원	21억원	22억원
	사회복지	4,493억원	4,879억원	5,696억원	6,893억원
예산사업	교육분야	1,094억원	1,240억원	1,394억원	1,528억원
	골목상권	69억원	158억원	147억원	145억원
	대중교통	248억원	365억원	379억원	471억원
	농수산업	3,761억원	4,237억원	4,645억원	4,675억원

Chapter II

제주관광의 비전과 전략



1. 제주관광 2천만 시대 준비전략

제주관광 2천만 시대 준비전략

비전 → 국민에게 꿈과 행복을 드리는 고품격 제주관광

목표 → **2025 제주관광 2천만시대 도약**
 - 내국인 1,300만, 외국인 700만, 관광수입 15조원 -
 ※ 2018년 관광객 1,500만명, 관광수입 11조원

핵심가치 → 『장애없는 (Barrier Free) 관광환경조성』

Chapter III 관광약자 관광활성화 정책방향



1. 관광약자 관광활성화 정책 비전
2.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례
3.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추진성과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추진방향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기대효과

관광약자 관광활성화 정책방향

비전 누구나 행복한 국민행복 관광지 제주

목표 『장애없는 (Barrier Free) 관광환경조성』

핵심가치

<p>장애없는 관광인프라</p> <p>관광약자 장애 불편없는 관광지 인프라 구축 (Hardware)</p>	<p>관광약자 정보접근성 제고</p> <p>온-오프라인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Information)</p>	<p>민·관 협력체계 구축</p> <p>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치 강화 (Together)</p>
--	---	---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례

1 경주 장애인 관광도우미 센터

- 센터개소 : 2005년
- 운영주체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 주요사업
 - 장애인 관광코스 기획 및 개발
 - 관광객 편의시설 조사, 설치 및 개선요청
 -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 여행정보 서비스 제공 등



2 진주시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만들기』

- 진주시 무장애 도시조성조례 제정 : 2013. 11. 8
- 진주형 무장애도시(Barrier Free) 인증기준 운영
- 주요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BF(인증기준)의무화 추진
 - 이동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조성
 - 시민인식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추진성과

H 장애없는 관광 인프라 개선

- ①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무장애 편의시설 개선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3. 9월 ~ 2014. 1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천지연 등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턱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②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전세버스 제작사업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휠체어 리프트버스 제작보급(1대)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추진성과

H 장애없는 관광 인프라 개선

- ③ 장애인, 노약자 관광객 휠체어 대여 서비스
 - 사업기간 : 2012. 11월 ~ 현재
 - 대여대수 : 30대
 - 대여장소 : 공항 · 제주항 관광안내소, 웰컴센터
 - 대여료 : 무료
 - 대여방법
 · 이용 희망 관광객 휠체어 이용 신청서 작성
 · 제주관광 종료 후 휠체어를 대여 장소에 반납하고 귀가



- ④ 관광지 유아 편의시설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13. 5월 ~ 8월
 - 사업대상 : 총 50개소
 · 공영관광지 : 16개소
 · 사설관광지 : 34개소
 - 사업내용 : 관광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추진성과

H 장애없는 관광 인프라 개선

- ⑤ 제주여행지킴이 안전망 구축
- 추진배경 : 여성 등 나홀로 관광객의 안전망 조기 구축을 통해 제주이미지 제고
 - 사업비 : 94백만원
[서버구축10, 프로그램개발45, 단말기구입39]
 - 사업기간 : 2012. 8. ~ 9.
 - ※ 서비스시행일 : 2012. 9. 15.
 - 주요내용
 -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 연계 긴급 SOS 시스템 개발 및 관제서버 구축
 - 나홀로관광객 전용단말기(300대) 구입, 대여
 - 관제시스템 구성도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추진성과

S 관광약자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 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 2013. 5월
- ②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 IN』 앱 개발
- 관광지, 숙박지, 음식점 등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③ 이동약자를 위한 관광매뉴얼(이지제주) 제작 : 2013. 12월
- ④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평가 : 총 2회(2012 ~ 2013)
- ⑤ 점자 관광가이드북 제작 보급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추진방향

H 장애없는 관광 인프라 개선

- ① 공영관광지 편의시설 개선 : 관광지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 시설 개보수 및 추가 조성
- 사업대상 : 공영관광지 53개소(향후 사설관광지로 확대 추진)
- ②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전세버스 보급 : 1대(200백만원)
※ 2017년까지 연 1대 보급계획(총 5대)
- ③ 장애인 전동보장구 무료 충전시설 확대 : 15개소(24백만원)
※ 2013년 공공시설 충전시설 배치 : 10개소(14백만원)
- ④ 공영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평가(연 1회) : 관광지별 사후조치 및 개선지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추진방향

I 관광약자 정보 접근성 제고

- ① 관광약자 관광안내센터(복지관광센터) 운영
- 주요기능 :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등
- ② 장애인 관광코스 개발 및 장애인 관광홍보를 제작
- 주요내용 : 이동에 장애없는 관광코스 홍보 및 홍보물(점자책) 제작
- ③ 스마트 관광기반 서비스 확충
-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NFC 등)

[사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추진방향

T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체계

- 「국민행복 관광지조성위원회(복지관광 자문위원회)」구성 운영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 구 성 :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분야 전문가
- 역 할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시책 및 관광환경 대상 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 등
 - ※ 2013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조사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조사대상 : 공영관광지 19개소
 - 조사내용 : 장애인 맞춤 관광환경 개선사항

②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장애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 정보교류 및 합동추진
- 협력방안
 - * 도 : 기본계획 수립,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실시, 행정시 사업비 지원
 - ※ 관련부서 : 관광, 복지, 교통, 건축분야
 - * 행정시 : 행정시 소관 공영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기대효과

1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동 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

2 복지관광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 관광지 이미지 제고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인 쇄 | 2014년 4월

| 발 행 | 2014년 4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970 | F A X | (02) 2125-0924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16-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